

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000714-01

#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 실태조사

2018



#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 실태조사

본 보고서를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  
실태조사』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8. 11.

수행기관 : 한국방송학회

책임연구원 : 김 경 희 (한림대학교 미디어스쿨 교수)

공동연구원 : 조 연 하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정책과학과 교수)

최 은 경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외래교수)

심 미 선 (순천향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연구보조원 : 장 대 흥 (경희대학교 정치학과 박사수료)

정 지 영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과 박사수료)

이 보고서는 연구용역수행기관의 결과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연구요약

### I. 서론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표현이 증가하고 이와 관련된 사회적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그러한 규제가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지만, 온라인 성희롱과 성폭력, 여성혐오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온라인 성희롱과 성폭력, 여성혐오표현이 얼마나 만연해있는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전문가 심층인터뷰, 온라인 사이트 사례분석, 설문조사, 판례분석 및 통신심의사례 분석, 국내외 법·제도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제도적 대안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 II.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및 혐오표현의 국내외 법·제도

남녀고용평등법, 인권위법, 양성평등기본법 등 입법상의 정의와 대법원 판결을 종합해 볼 때, 성희롱의 법적 개념은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주는 행위와 성적 요구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와 같이 두 가지 행위 유형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주로 업무, 고용 등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을 중심으로만 법적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인권위법과 양성평등기본법의 정의조항에서 ‘그 밖의 관계에서’가 어떤 관계로까지 볼 수 있는지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 한계로 지적된다.

온라인 성폭력은 온라인이라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기기를 사용한 젠더 폭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온라인 성폭력의 개념을 넓게 보면, 온라인상에 유포된 불법 도촬물, 비동의유포 성적 촬영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게임 내 성폭력, 사진 성적 합성 외에도 사이버스토킹, 성적 사이버불링, 단톡방 내 성희롱과

지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에 관한 현행 법률 체계를 보면, 기본법인 형법에 성폭력에 관한 범죄규정 및 처벌조항에 관한 간략한 규정만 두고, 가중적 구성요건과 기타 사회적으로 중요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은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개인의 성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온라인 성폭력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로 적용하여 규제할 수 있다.

여성혐오표현이란 성별에 기하여 역사적으로 차별을 받아온 여성 집단에 대한 부정적 편견에 기반한 적대적 표현행위이다.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는 크게 형사적, 민사적, 행정적 규제로 분류하여 설명할 수 있다. 혐오표현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표현으로 접근한다면, 형사규제가 가능한데, 대표적으로 형법상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 있다.

국내에서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표현 규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여성에 대한 차별이나 비하 등의 혐오표현, 과도한 욕설이나 저속한 언어 사용 등으로 혐오감을 주는 게시물 등에 대한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 이외에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기노출·성적 행위를 노골적으로 표현하거나 성매매를 유인하는 정보 등에 대해서도 시정요구 한다. 이와 별도로 권리침해와 관련한 시정요구의 대상에는 모욕 등 명예훼손 정보,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사진, 영상 등을 게재하여 초상권을 침해하는 정보가 해당하는데, 대부분 온라인 성폭력에 해당하는 지극히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으로 인터넷의 특성상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로 인한 피해가 회복 불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불법·음란 콘텐츠 규제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에 불응할 경우 직접 적용 가능한 관련 법률상의 처벌규정이 없다는 점과 시정요구를 받고도 불응하는 기간, 그 후 다시 삭제 등의 명령을 하는 기간 등 불필요하게 시간이 낭비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 Ⅲ.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표현 관련 사이트 실태

차별적 발언과 폭력 및 혐오에 가까운 글(말)이 생산되는 온라인 커뮤니티 4곳을 선정해 해당 사이트 내 활동이 가장 활발한 대표 게시판의 게시물에 나타난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 실태를 조사했다. 분석기간은 첫째, 강남역 화장실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을 중심으로, 2016년, 2017년, 2018년 5월 18일부터 5월 30일까지(2주

간) 분석했고, 둘째는 2018년도 ‘미투’사건으로 대표되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무죄를 선고받은 8월 14일과, ‘몰카’ 사건으로 대표되는 홍대 모텔 촬영·유포 사건에 징역 10개월이 선고된 8월 16일이 포함된 8월 13일부터 19일까지(7일) 분석했다.

분석 결과 강남역 살인 사건과 미투 및 몰카 사건에 대한 사이트별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 관련 게시물에서 여성혐오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양한 형식의 신체공개 및 모욕적 표현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석대상 사이트들이 여성혐오(남초) 사이트라는 성격을 감안하더라도, 온라인 공간 내 여성혐오가 얼마나 적대적이고 노골적이며 적극적인지 발견할 수 있었다. 나아가 극단적 여성혐오는 온라인 공간에서 그치지 않고, 성폭력, 성범죄로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 **IV.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표현 피해자 및 피해구제 실태**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표현에 대한 정성 분석을 위해, 2018년 6월부터 10월말까지 피해자 3명과 피해자 상담 및 관련 분야 활동가, 학자 및 언론인 등의 전문가 등 총 13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했다. 피해자 및 피해 구제 실태를 위해 질문은 피해 경로 및 유형, 피해자의 대응 방식을 위주로 이루어졌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피해자들이 성폭력 피해를 인식하게 되는 경로를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로를 추적하는 것도 쉽지 않다. 둘째, 피해자가 상황을 인지하고 난 후, 이성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주변의 반응과 시선에 대해 심리적으로 충격과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여성의 경우 주변의 시선과 반응에서 2차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자 지원 업무를 하는 관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일반인들의 인식개선 및 젠더 공감이 필요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사건에 비해 지원 센터의 전문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며, 피해자들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정신과 치료에 대한 예산도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관련 연구의 결과들이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며, 불법 동영상 유통 플랫폼의 강력한 처벌은 가능한지, 해비 업로더들은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실질적인 논의들이 가장 시급하다.

## V.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표현에 관한 여성 인식

온라인에서의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표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대~40대 여성 6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온라인에서 성희롱·성폭력을 직접 경험했거나 직접 경험하지 못했더라도 목격한 적이 있는 여성으로 했으며, 20대, 30대, 40대 각각 200명씩 연령별로 할당하여 표집했다.

분석 결과, 20~40대 여성 응답자들의 반수 이상은 오프라인 세상보다 온라인 세상에서 양성평등의식이 정착되어 있지 않고, 남녀 간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여성이 고립되어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또 조사 참여자 반수가량은 오프라인 세상보다 온라인 세상이 권위적이며, 오프라인 세상보다 온라인 세상에서 여성의 자율성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조사에 참여한 20~40대 여성들 대부분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의 성희롱·성폭력·여성혐오표현이 심각한 상태라고 답해, 온라인에서의 성희롱·성폭력·여성혐오표현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구체적인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여성 참여자 10명 중 대략 4명 정도가 온라인 성희롱과 성폭력을 직접 경험했다고 나타났는데, 이는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이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직접 경험 여성들이 가장 많이 겪은 일은 온라인에서 원치 않는 음란물(글, 영상, 음향파일 등)을 전송받은 것으로 10명 중 9명가량이 원치 않는 음란물을 전송받은 경험을 갖고 있었다. 또 직접 경험 여성 2명 중 1명은 온라인에서 성적인 욕설이 담긴 메시지(메일, 댓글, 카톡 등)와 자신의 외모를 대상으로 한 불쾌한 메시지(메일, 댓글, 카톡 등)를 받은 적이 있었고, 온라인에서 사적 만남을 강요받은 적이 있었다.

그러나 온라인 성희롱과 성폭력을 직접 경험했거나 목격했을 때 조사 참여 여성 10명 중 2~3명(24.5%)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안타깝게도 그 이유 중 가장 많은 응답은 ‘신고를 해도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였다. 여성들이 경찰의 수사와 법적 처벌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더불어,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법적·제도적 대책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의 직·간접경험자들이 경찰에 신고한 여성 54명 중 6건만이 처벌을 받았고, 24건은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성 참여자들은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인식(77.7%)이 높았으며, 조사 참여자의 90.3%가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의 원인을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답

했다. 따라서 여성 참여자들 대부분은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사법적 제재를 강화해야한다’(90.8%)고 보았다.

이와 별도로,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언론보도의 역할과 문제점 등을 살펴 보고자 하는 질문에 여성 참여자들 86.0%는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지속적인 보도는 이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불행하게도 현재 언론에서는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여성혐오표현 관련 보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언론이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선정적으로 보도’한다는 데 동의한 비율은 60%를 넘었지만, ‘여성의 시각을 반영하여 보도’(29.8%), ‘공정하게 보도’(19.3%)한다는 데 동의하는 비율은 30%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VI.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표현 관련 판례 및 심의사례

2010년대 초반부터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그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현상을 감안하여, 2010년 4월 15일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정 이후 동 법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를 적용한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였다. 대법원 판결에 기초하면,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피해자 의사에 반한 촬영인지’의 구성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은 촬영 당시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분 관계, 피해자의 고소 경위, 피해자의 진술 반복 내용 등이다. 그리고 입법 취지 및 연혁, 보호법의 등에 비추어 볼 때, ‘촬영물’이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영상물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해자 의사에 반한 촬영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그 촬영물의 반포가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해당한다. 하지만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의 촬영과 자의에 의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유포행위도 촬영행위와 동일하게 처벌하기 위한 것이고, 촬영대상이 된 피해자 본인은 촬영물 ‘제공’의 상대방인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인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며,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 여부와 피해자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자 의도와 촬영 경위, 촬영장소와 각도, 촬영 거리 등의 판단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 상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2013~2017년 통신심의사례집에서 일부 온라인 성폭력 관련 심의사례를 분석한 결과, 온라인 성폭력은 온라인에서 특정된 피해자가 등장한 성관계 동영상 타인에 의해 유포된 경우로 나타났다. 혐오표현 분석에서 지적된 문제 내용은 일반 사이트에 특정인이 아닌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저속한 욕설 등의 표현으로 차별과 비하의 내용이 대부분이다. 2018년 통신심의사례 분석에서는 온라인상의 여성혐오표현은 여성의 능력을 폄하하고 특정 신체부위를 희화화하는 표현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력 및 성적 대상화하여 폄하 및 혐오하는 표현의 강도는 이전보다 더욱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성을 폭력 및 성적 대상화하고 더 나아가 성상품화 하는 표현은 대부분 음란하고 저속한 욕설로 이루어져 있어 혐오의 정도가 더 강했다. 한편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결정례를 분석한 결과, 온라인 성범죄의 유형은 내부 전산망을 통한 직원 성희롱 표현,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한 성희롱 표현, 원하지 않는 음란 기사 전송을 통한 성희롱 등으로 나타났다.

## VII. 결론

관련 입법과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성희롱은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주는 행위와 성적 요구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와 같이 두 가지 행위 유형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현행 관련 법에서 주로 업무, 고용 등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만을 중심으로 정의되고 있는 것이 그 한계로 나타났으며 인권위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업무, 고용 등의 관계 이외의 ‘그 밖의 관계에서’가 어떤 관계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지 그 범위에 대한 입법해석이 요구된다.

온라인 성폭력은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기기를 사용한 젠더 폭력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형법에 성폭력에 관한 범죄규정 및 처벌조항에 관한 간략한 규정만 두고, 가중적 구성요건과 기타 사회적으로 중요한 성폭력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특별법을 통해 규제하고 있다. 성폭력 관련 주요 입법인 성폭력처벌법의 한계를 보면, 첫째, 자신의 신체를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 신체를 직접 촬영하지 않고 촬영대상이 이미지인 촬영물, 그리고 가공이나 합성에 의한 영상물인 경우, 불법촬영과 불법유포로 포섭할 수 없다. 둘째, 불법 촬영죄

와 불법 유포죄의 처벌강도가 보호법익에 비해 약하다. 셋째, 불법촬영물 반포 등의 행위가 주는 피해의 정도가 더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촬영행위와 반포행위가 동일하게 처벌되고 있다. 넷째, 비영리 목적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카메라 등 이용촬영물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다.

여성혐오표현이란 성별에 기하여 역사적으로 차별을 받아온 여성집단에 대한 부정적 편견에 기반한 적대적 표현행위이다. 합리적인 근거 없이 성별에 기인한 차별과 증오를 유발하는 표현이라는 점에서 부당한 표현이다. 이에 대한 규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규제가 가능하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표현으로 접근하면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의 형사규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개념에 관한 법적 정의가 불명확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규제수단이 부재하다는 점이 법과 제도의 한계이다.

한편 국내에서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표현 중에서 불법·음란 콘텐츠 규제는 공적 차원에서 이를 차단하는 행정적 규제가 가능한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인터넷서비스운영자의 자율규제도 가능하다. 하지만 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에 불응할 경우, 관련 법률상의 처벌규정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2010년 4월 15일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정 이후의 대법원 판결에 기초하면,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피해자 의사에 반한 촬영인지’의 구성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은 촬영 당시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분관계, 피해자의 고소 경위, 피해자의 진술 반복 내용 등이다. 입법 취지 및 연혁,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촬영물’이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영상물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해자 의사에 반한 촬영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그 촬영물의 반포가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해당한다. 하지만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의 촬영과 자의에 의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유포행위도 촬영행위와 동일하게 처벌하기 위한 것이고, 촬영대상이 된 피해자 본인은 촬영물 ‘제공’의 상대방인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인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며,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 여부와 피해자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자 의도와 촬영 경위, 촬영장소와 각도, 촬영거리 등의 판단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 상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판결의 한계점을 보면, 첫째, 피해자 동의를 받고 촬영한 영상물의 반포행위에 대한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성립여부 판단에서 반포행위 그 자체에 대한 동의 여부가 고려되지 않고 있다. 둘째,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영상물에 한해서만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가 성립된다고 봄으로써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의 촬영과 자의에 의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에 대한 처벌이 불가하다.

성폭력처벌법을 중심으로 입법 개선안을 제안해보면, 첫째, 카메라 등 이용촬영물의 촬영 및 반포 등의 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해야 한다. 둘째, 촬영행위와 유포 행위 처벌을 차별화하고 재유포행위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촬영행위와 반포 등 행위의 결합범을 가중처벌하는 입법이 요구된다. 넷째, 재촬영물, 재편집물 등을 처벌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다섯째 성표현물과 타인의 얼굴 이미지의 디지털 합성사진을 처벌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여섯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영리 목적으로 카메라 등 이용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재산적 이익을 회수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 일곱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카메라 등 이용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링크 등과 같이 카메라 등 이용촬영물을 공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제3자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도 촬영물의 유포행위에 포함하는 입법 개정이 요구된다.

그 밖에 인권위법과 양성평등기본법의 성희롱 정의조항에서 업무, 고용 등의 관계 이외의 ‘그 밖의 관계에서’가 어떤 관계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지에 관한 법적 해석이 필요하며, 이를 포함하여 성희롱 개념을 정의할 수 있는 입법개선이 요구된다. 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여성혐오표현 유통의 피해가 상당히 중대하고 행위의 해악성이 중대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 감독 관리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 등이 피해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피해 및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포함하는 민사상 구제수단이나 행정법적 구제수단을 모색해야 한다.

본 연구가 실시한 사이트 사례분석, 피해 및 피해구제실태, 여성 인식조사, 판례 및 통신심의 사례분석,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도출해본 정책적·제도적 대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온라인 여성혐오표현 규제안 마련이 시급하다. 성차별적 혐오표현에 적절한 대응 수단은 방송통신망을 관리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의 행정기관을 통한 법제도적 대응이 형사법적 대응에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잠재적인 피해자 및 피해대상이 있을 경우를 예상하여 혐오표현을 정보통신망에서 제

거·배제시킬 수 있는 즉각적이며 임시적인 대응조치를 법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와 관련한 책무 강화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자율 규제 및 책무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기존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표현 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새로운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이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특정 단어나 음란물, 스팸 등을 차단하는 기술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외에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했을 때 즉각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전반적인 사회적 시스템 재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과 교육 등이 필요하다. 동의 없이 유포된 타인의 온라인 동영상이나 사진을 보는 행위만으로 법적 처벌을 하는 일은 쉽지 않겠지만, 그러한 행위가 잘못된 것이며 누군가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행위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정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기존에 오프라인에서의 성 평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상의 양성평등을 위한 교육을 직장, 학교 등에서 의무화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여성혐오표현은 성 평등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하게 교육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초·중·고등학교 대상의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개인별·집단별 이해를 도모하는 맞춤형 교육 설계 등이 필요하다. 이에 더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온라인 매체를 이용하는 책임의식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함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피해 해결 및 사회적 인식에 영향력이 큰 언론은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여성혐오표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언론이 할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언론이 각종 혐오발언을 경쟁적으로 중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수준에서 배제하고 비판적으로 보도하는 준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목 차

<b>I. 서론</b> .....	1
1.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목적 .....	3
2.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 .....	4
1) 연구 내용 .....	4
2) 연구방법 .....	5
3. 온라인 성희롱, 성폭력, 여성혐오표현에 대한 개념 정의 .....	7
<b>II. 온라인의 성희롱·성폭력 및 혐오표현의 국내외 법·제도</b> .....	9
1.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및 혐오표현 관련 국내법 .....	11
1) 온라인 성희롱 관련 법률 .....	11
2) 온라인 성폭력 관련 법률 .....	19
3) 온라인 혐오표현의 개념 및 법적 규제 .....	26
2. 온라인 성희롱·성폭력·혐오표현 관련 국내 제도 및 정책 .....	29
1) 인터넷사업자의 자율규제 .....	29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규제 .....	31
3) 국가인권위원회의 직장 내 성희롱 규제 .....	37
4) 국회와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 및 대응정책 .....	38
3.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및 혐오표현 관련 해외 법·제도 .....	42
1) 「사이버범죄방지협약」 .....	44
2) 「시청각미디어 서비스지침」 .....	45
3) 「전자상거래 지침」 .....	46
4) 시민단체와 자율규제 기구 .....	46
5) 영국 사례 .....	48
4. 소결 .....	51

Ⅲ. 온라인의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 관련 사이트 실태 .....	57
1. 분석 개요 .....	59
1) 분석대상 및 기간 .....	59
2) 코더간 신뢰도 .....	62
3) 분석 사이트 개요 .....	63
2. 분석 결과 .....	65
1) ‘강남역 살인사건’에 대한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표현 .....	65
2) ‘미투’와 ‘몰카’ 사건에 대한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표현 .....	74
3. 소결 .....	93
Ⅳ. 온라인의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표현 피해자 및 피해구제 실태 .....	97
1. 피해 경로 및 유형 .....	100
2. 피해자의 대응방식 .....	102
3. 2차 피해와 2차 가해 .....	105
4. 피해자에 대한 지원 현황 및 문제점 .....	106
5. 소결 .....	109
Ⅴ.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표현에 관한 여성 인식 .....	113
1. 조사 설계 .....	115
2. 응답자 특성 .....	116
3. 조사 결과 분석 .....	117
1) 온라인에서의 성평등 정도에 대한 인식 .....	117
2)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인식 .....	119
3) 온라인에서의 여성혐오표현에 대한 인식 .....	158
4)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한 인식 .....	169
4. 소결 .....	171

<b>VI.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여성혐오 표현관련 판례 및 심의사례</b> .....	177
1. 온라인 성폭력 관련 판례분석 .....	179
1) 온라인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실태 .....	179
2)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관련 대법원 판례분석 .....	180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사례분석 .....	192
1)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여성혐오표현 심의동향 .....	192
2) 심의사례 분석 .....	194
3. 국가인권위원회 시정권고 사례분석 .....	201
1)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시정권고 조치 .....	201
2) 온라인 성희롱 시정권고 결정례분석 .....	203
4. 소결 .....	207
<b>VII. 결 론</b> .....	213
1. 온라인 성폭력·성폭력 및 여성혐오표현 관련 실태와 문제점 .....	215
1) 관련 입법 및 판례의 실태와 그 한계 .....	215
2) 사이트 현황 및 문제점 .....	221
3) 여성 인식의 실태와 이를 통해 본 문제점 .....	224
2. 형법학자가 본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표현 규제 개선안 .....	230
1) 온라인 성폭력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	230
2) 온라인 성폭력 촬영물 규제강화방안 .....	239
3.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표현 개선안 .....	251
1) 입법 개선안 .....	251
2) 정책 및 제도 개선안 .....	258
3)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제언 .....	267
■ <b>참고문헌</b> .....	271
■ <b>부 록</b> .....	277
별첨-설문지 .....	279

# 표 목 차

<표 II-1> 성희롱의 법적 정의 .....	12
<표 II-2> 직장 내 성희롱의 법적 성립요건 .....	15
<표 II-3> 성희롱 관련 법 비교 .....	17
<표 II-4> 아동복지법의 성희롱 관련 조항 .....	18
<표 II-5>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에서의 성폭력범죄의 정의 .....	22
<표 II-6>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24
<표 II-7> 성폭력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 형법과의 법정형 비교 .....	25
<표 II-8>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국 업무 현황 .....	34
<표 II-9>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청소년 유해정보 등급DB 구축 누적 현황 .....	36
<표 III-1> 분석기간 내 분석한 게시글 수 .....	61
<표 III-2> 데이터 분류 기준 .....	61
<표 III-3> 일부 변인별 코더 간 신뢰도 .....	62
<표 III-4> 강남역 살인사건에 대한 사이트 분석 게시글 현황 .....	65
<표 III-5> 강남역 살인사건에 대한 사이트별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 현황 .....	69
<표 III-6> 강남역 살인사건에 대한 사이트별 게시 유형 .....	69
<표 III-7> 강남역 살인사건에 대한 사이트별 게시 세부내용 .....	70
<표 III-8> 개드립넷의 강남역 살인사건에 대한 게시 구성별 여성혐오 세부 유형 .....	71
<표 III-9> 디시인사이드의 강남역 살인사건에 대한 게시 구성별 여성혐오 세부 유형 .....	72
<표 III-10> 강남역 살인사건에 대한 사이트별 키워드 유형 .....	72
<표 III-11> 강남역 살인사건에 대한 게시 세부내용별 키워드 유형 .....	73
<표 III-12> ‘강남역 살인사건’에 대한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표현 사례들 .....	74
<표 III-13> 미투와 몰카에 대한 사이트 분석 게시글 현황 .....	75
<표 III-14> 미투와 몰카 사건에 대한 사이트별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 현황 .....	76
<표 III-15> 4개 사이트의 미투와 몰카 사건 및 관련 게시 내용 현황 .....	76
<표 III-16> 4개 사이트의 미투와 몰카 사건 및 관련 게시 내용 중 피해자 특성 .....	77

<표 III-17> 4개 사이트의 미투와 몰카 사건 및 관련 게시 세부 내용 중 키워드 유형 .....	78
<표 III-18> 일간베스트의 미투와 몰카 사건 및 관련 게시 내용 중 피해자 특성 .....	79
<표 III-19> 일간베스트의 미투와 몰카 사건 및 관련 게시 내용 중 성희롱·성폭력 여성혐오 현황 .....	80
<표 III-20> 일간베스트의 미투와 몰카 사건 및 관련 게시 내용 중 여성혐오 유형 .....	81
<표 III-21> 일간베스트의 미투와 몰카 사건 및 관련 게시 내용 중 여성혐오표현 유형 .....	82
<표 III-22> 개드립넷의 미투와 몰카 사건 및 관련 게시 내용 중 피해자 특성 .....	83
<표 III-23> 개드립넷의 미투와 몰카 사건 및 관련 게시 내용 중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 현황 .....	84
<표 III-24> 개드립넷의 미투와 몰카 사건 및 관련 게시 내용 중 여성혐오 유형 .....	84
<표 III-25> 미투와 몰카 사건 기간 중 여성 희롱 및 혐오 키워드들 .....	86
<표 III-26> 트위터 마이너 갤러리의 미투와 몰카 사건 및 관련 게시 내용 중 피해자 특성 .....	87
<표 III-27> 트위터 마이너 갤러리의 미투와 몰카 사건 및 관련 게시 내용 중 성희롱과 여성혐오 현황 .....	88
<표 III-28> 트위터 마이너 갤러리의 미투와 몰카 사건 및 관련 게시 내용 중 여성혐오 유형 .....	89
<표 III-29> 트위터 마이너 갤러리의 미투와 몰카 사건 및 관련 게시 내용 중, 성희롱과 여성혐오표현 언어 .....	90
<표 III-30> 루리웹 베스트의 미투와 몰카 사건 및 관련 게시 내용 중 피해자 특성 .....	91
<표 IV-1> 심층면접 대상자 속성 .....	99
<표 IV-2> 온라인 성폭력 피해 유형 .....	101
<표 IV-3>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의 대응 단계 및 특징 .....	103
<표 V-1> 조사 설계 .....	116
<표 V-2> 응답자 특성 .....	116
<표 V-3> 온라인에서의 성평등 정도에 대한 인식 .....	118
<표 V-4> 응답자의 연령대와 온라인에서의 성평등 정도에 대한 인식과의 평균 분석 .....	119

<표 V-5>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직접 경험자와 간접 경험자 .....	120
<표 V-6> 응답자의 연령대와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직간접 경험에 대한 교차분석 .....	120
<표 V-7> 직접 경험자의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유형별 경험 여부 .....	121
<표 V-8> 직접 경험자의 연령대와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경험 유형에 대한 교차분석 .....	124
<표 V-9> 직접 경험자가 응답한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의 유형 .....	124
<표 V-10> 직접 경험자의 연령대와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의 유형과의 교차분석 .....	125
<표 V-11> 간접 경험자들이 목격한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의 유형 .....	126
<표 V-12> 간접 경험자들의 연령대와 목격한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의 유형과의 교차분석 .....	128
<표 V-13>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경험 및 목격 시 대응 방법 .....	129
<표 V-14> 응답자의 연령대와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경험·목격 시 대응 방법과의 교차분석 .....	131
<표 V-15> 해당 서비스 신고센터 신고 시 가해자 처벌 여부 .....	131
<표 V-16> 응답자의 연령대와 해당 서비스 신고센터 신고 시 가해자 처벌 여부와의 교차분석 .....	132
<표 V-17> 경찰 신고 시 가해자 처벌 여부 .....	133
<표 V-18> 경찰 신고 시 가해자가 처벌 받지 않은 이유 .....	133
<표 V-19> 응답자의 연령대와 경찰 신고 시 가해자가 처벌 받지 않은 이유와의 교차분석 .....	134
<표 V-20>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은 이유 .....	135
<표 V-21> 응답자의 연령대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은 이유와의 교차분석 .....	135
<표 V-22>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경험 및 목격 후 정서적 변화 .....	136
<표 V-23> 응답자의 연령대와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경험 및 목격 후 정서적 변화와의 평균 분석 .....	137
<표 V-24>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성희롱·성폭력 심각성에 대한 인식 .....	138
<표 V-25> 응답자의 연령대와 성희롱·성폭력 심각성 인식과의 평균 분석 .....	138
<표 V-26> 온라인 성폭력 유형에 대한 인식 .....	140

<표 V-27> 응답자의 연령대와 온라인 성폭력 유형에 대한 인식과의 평균 분석 ...	142
<표 V-28> 온라인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인식 .....	143
<표 V-29> 응답자 속성과 온라인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인식과의 교차분석 .....	143
<표 V-30>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식 .....	144
<표 V-31> 응답자 속성과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식과의 평균 분석 .....	145
<표 V-32> 온라인 이용 시 정서적 두려움에 대한 인식 .....	147
<표 V-33> 응답자 속성과 온라인 이용 시 정서적 두려움에 대한 인식과의 평균 분석 .....	149
<표 V-34> 온라인에서의 행위적 위축 정도 .....	150
<표 V-35> 응답자 속성과 온라인에서의 행위적 위축 정도에 대한 교차분석 .....	152
<표 V-36>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발생 원인에 대한 인식 .....	153
<표 V-37> 응답자 속성과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발생 원인에 대한 인식과의 평균 분석 .....	155
<표 V-38>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해결 방안에 대한 인식 .....	156
<표 V-39> 응답자 속성과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해결 방안에 대한 인식과의 평균 분석 .....	158
<표 V-40> 온라인에서 여성혐오표현 경험 여부 .....	158
<표 V-41> 응답자의 연령대와 온라인에서 여성혐오표현 경험 여부 교차분석 ...	159
<표 V-42> 온라인에서 여성혐오표현 노출 후 정서적 상태 .....	160
<표 V-43> 응답자 연령대와 온라인에서 여성혐오표현 노출 후 정서적 상태와의 평균 분석 .....	160
<표 V-44> 온라인에서 여성혐오표현 노출 후 취한 행동 .....	161
<표 V-45> 응답자의 연령대와 온라인에서 여성혐오표현 노출 후 취한 행동과의 교차분석 .....	162
<표 V-46> 온라인에서 여성혐오표현 노출 후 나타난 변화 .....	163
<표 V-47> 응답자 연령대와 온라인에서 여성혐오표현 노출 후 나타난 변화와의 평균 분석 .....	164
<표 V-48> 여성혐오표현에 대한 인지도 .....	164
<표 V-49> 응답자의 연령대와 여성혐오표현에 대한 인지도와의 교차분석 .....	165

<표 V-50> 여성혐오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	166
<표 V-51> 응답자의 연령대와 여성혐오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의 평균 분석 .....	167
<표 V-52> 여성혐오에 대한 인식 .....	168
<표 V-53> 응답자의 연령대와 여성혐오에 대한 인식과의 평균 분석 .....	169
<표 V-54>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한 인식 .....	170
<표 V-55> 응답자의 연령대와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한 인식과의 평균 분석 .....	171
<표 VI-1> 연도별 디지털 성폭력범죄 발생 추이 .....	179
<표 VI-2> 개인 성행위 관련 시정요구 및 중점 모니터링 현황 .....	193
<표 VI-3> 방통심의위의 통신심의 중 차별 비하 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	195
<표 VI-4> 2013~2017 통신심의사례집 온라인 성폭력 관련 심의사례 .....	196
<표 VI-5> 2013~2017 통신심의사례집 온라인 여성혐오표현 관련 심의사례 .....	197
<표 VI-6> 2018년 온라인 여성혐오표현 관련 심의사례 .....	199
<표 VI-7>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 피해 조치 .....	203

## 그림 목 차

[그림 II-1]	여가부의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 이용절차 .....	41
[그림 II-2]	여가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지원내용 .....	42
[그림 III-1]	개드립넷의 익명친목 게시판 .....	66
[그림 III-2]	<디시인사이드 주식갤러리 사례 5> 역사에 남을 트윗(2018년 5월 20일) .....	68
[그림 III-3]	루리웹 베스트의 여성혐오표현 사례 .....	69
[그림 III-4]	일간베스트의 미투 관련 게시글 .....	79
[그림 III-5]	일간베스트의 몰카 관련 게시글 .....	80
[그림 III-6]	<디시인사이드 트위터 마이너 갤러리> 게시글(2018년 8월 17일) .....	87
[그림 III-7]	루리웹의 미투와 몰카 관련 여성혐오표현들 .....	92
[그림 IV-1]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의 삭제지원 프로세스 .....	107
[그림 IV-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지원 경로 .....	108



---

# I

---

##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목적	3
2.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	4
3. 온라인 성희롱, 성폭력, 여성혐오표현에 대한 개념 정의	7



## 1.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목적

한국에서 혐오표현의 문제가 대두된 것은 2010년 이후이다. 2010년 즈음부터 ‘반(反)다문화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외국인 혐오가 유행했는데, 이 당시에는 ‘혐오표현’이라는 용어 대신 ‘인종 차별적 표현’이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었다. 2010년에는 이러한 인종 차별적 혐오표현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종차별 모니터링 사례 발표와 의견표명 그리고 인종차별철폐협약 정부보고서에 관한 의견표명을 한 바 있다(홍성수, 2016).

대검찰청 <2016 범죄분석>을 보면, 성폭력 범죄 중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범죄인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일명 몰카 범죄)가 크게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2006년에는 전체 성폭력 범죄의 3.6%(517건)였는데, 2015년 들어 전체 성폭력 범죄의 24.9%(7730건)를 차지하여 높은 범죄 증가율을 나타냈다(박길자, 2017,3,15).

온라인에서의 여성혐오표현 또한 크게 늘어났다. 2016년 주요 커뮤니티 게시판의 게시물을 분석한 연구(추지현, 2017)에 따르면, 여성혐오 관련 게시물이 전체 분석대상 81,890건 중 60%가 넘는 5만 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혐오표현물에 대한 신고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통신사업자들이 방임하고 있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으로 경찰에 신고해도 별다른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추지현, 2017, 24-28쪽).

최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는 지난 2018년 3월 12일 대한민국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온라인 성폭력을 예방하는 조치를 강화할 것, 특히 온라인 플랫폼 및 온라인 배포자들이 범죄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차단하지 못할 경우 상당한 재정적 제재를 부과하는 등과 같이 여성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폭력을 명확히 범죄화하는 법안을 마련할 것,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피해자의 요청 등에 따라 범죄 콘텐츠를 삭제하고 차단한다는 당사국의 계획을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sup>1)</sup>

1)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2018,3,23).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8차 최종권해 관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currentpage=6 &menuid=001004002001&pagesize=10&boardtypeid=24&boardid=7602537>

이와 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온라인 성희롱·성폭력과 여성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그러한 규제가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지만, 온라인 성희롱과 성폭력, 여성혐오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온라인 성희롱과 성폭력, 여성혐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은 우리 사회에서 온라인 성희롱과 성폭력, 그리고 여성혐오표현의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온라인 성희롱과 성폭력, 여성혐오표현이 얼마나 만연해있는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제도적 대안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 2.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

### 1) 연구 내용

본 연구는 온라인상에서 여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성희롱과 성폭력, 여성혐오 피해 실태조사를 파악하기 위해 피해지원 기관 상담사 등 전문가 인터뷰를 진행하고,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해 성희롱과 성폭력, 여성혐오표현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을 수집해 분석하고자 했다. 또 온라인 피해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20대와 30대, 40대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온라인 성희롱과 성폭력, 여성혐오표현의 피해를 경험하고 있으며, 피해를 경험한 여성들은 온라인 성희롱과 성폭력, 여성혐오표현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조사했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심의위에서 심의한 온라인 성희롱과 성폭력 및 여성혐오표현에 대해 피해 사례를 수집하여, 어떤 유형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온라인 성폭력의 판례를 분석했다.

또 문헌 검토를 통해 국내 온라인 성희롱과 성폭력 및 여성혐오표현 방지를 위한 제도를 알아보고, 외국의 관련 법·제도 등을 조사하여 국내에서 도입할 만한 제도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와 같이 전문가 심층인터뷰, 온라인 사이트 사례분석, 설문조사, 판례분석 및

통신심의사례 분석, 국내외 법·제도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온라인 성희롱과 성폭력 및 여성혐오표현에 대한 정책적·제도적 대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온라인 성희롱과 성폭력 및 여성혐오표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문헌 조사, 온라인 사이트 사례분석, 초점 집단 인터뷰와 심층인터뷰, 설문조사 등의 연구방법을 활용했다. 각 방법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문헌 고찰 및 분석

먼저 기존 문헌을 조사하여, 온라인 성희롱, 성폭력, 여성혐오표현에 대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사이트 분석의 코딩가이드, 설문조사의 측정문항 등을 구성하는데 활용했다. 두 번째로 기존 문헌과 인터넷 사이트 조사를 통해 국내외 해외의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표현에 대한 관련 법·제도 등을 조사했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현재의 대응방안을 평가하고, 해외의 관련 법·제도 중에서 우리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했다.

### (2) 온라인 사이트 사례분석

온라인 사이트의 선정은 1차 전문가 인터뷰와 연구자들의 조사 분석과정을 통해 짧은 층이 많이 이용하면서, 온라인 성희롱과 성폭력, 여성혐오표현으로 문제가 됐던 사이트를 선정하여 분석했다. 구체적인 분석대상은 일간베스트, 개드립넷, DC인사이드, 루리웹으로, 성희롱·성폭력·여성혐오표현이 많이 유통되고 이용자가 많은 곳이다. 분석은 강남역 화장실 살인 사건과, ‘미투’, ‘몰카’라는 이슈와 관련된 게시글들을 중심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했다. 구체적인 분석대상과 분석방법은 3장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표현 관련 사이트 실태’에 기술했다.

### (3) 온라인 설문조사

여성들의 온라인 성희롱과 성폭력, 여성혐오표현에 대한 경험과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온라인 성희롱과 성폭력, 여성혐오표현의 주요 피해자인 20~40대 여성 600명(20대 200명과 30대 200명, 40대 200명으로 연령별 할당 표집)을 대상으로 하되, 온라인 성희롱과 성폭력, 여성혐오표현에 직접적인 피해 경험이 있거나 온라인에서 피해를 직접 목격한 경험이 있는 여성으로 한정했다. 20~40대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이유는 이들이 온라인 성희롱과 성폭력, 여성혐오표현의 주요 피해자이기 때문이다. 조사는 조사 전문회사에 의뢰하여, 온라인 설문으로 실시했다. 설문은 온라인에서의 성희롱과 성폭력, 여성혐오표현에 대한 노출 경험 여부와 빈도, 온라인에서의 성희롱과 성폭력, 여성혐오표현의 피해 경험이 자신에게 미친 영향, 온라인에서의 성희롱과 성폭력, 여성혐오표현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 등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인 조사방법과 내용은 5장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표현에 대한 인식’ 부분에 기술했다.

### (4) 판례 분석 및 방송통신심의위 심의 사례 분석

온라인 성희롱과 성폭력, 여성혐오표현에 대해 어떤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대법원 판례분석과 방송통신심의위의 통신심의사례를 분석했다. 성폭력 관련 판례 중에서도 최근 국내에서 피해 건수가 급증하고 성폭력처벌법상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를 다룬 대법원 판례에 주목하고,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한 주요 판례에 관한 분석을 실시했다. 2010년대 초반부터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가 증가추세를 보이는 점을 감안하여, 2010년 4월 15일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정 이후의 판례를 분석대상으로 했으며, 온라인 성폭력과 관련된 판례로 범위를 국한했다.

통신심의사례분석은 방통심의위에서 매년 발간하고 있는 <통신심의사례집>의 최근 5년(2013~2017년) 동안의 사례를 분석대상으로 했다. 하지만 사례집 특성상 실제 통신심의 전수를 정리한 것이 아니고, 위반 유형별 대표 사례를 소개하여 이해를 돕는 데에 그치기 때문에 분석대상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분석대상 심의사례는 문제내용, 심의근거, 세부조항, 심의결과의 분석유목에 따라 분석을

실시했다.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6장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여성혐오 판례 및 사례 분석’ 부분에 기술했다.

### (5) 심층 인터뷰 및 초점집단인터뷰

온라인 성희롱과 성폭력, 여성혐오표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3단계의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1단계로는 온라인 성희롱과 성폭력, 여성혐오표현에 대한 정의와 유형을 파악하고 현황을 파악하여 구체적인 연구 설계를 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시민단체(3명), 학계(1명), 법조계(1명)를 대상으로 초점대상인터뷰를 실시했다. 2단계로는 온라인 성희롱과 성폭력, 여성혐오표현을 경험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 3명을 대상으로 1대1 심층인터뷰를 진행했다. 더 많은 피해자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했으나 피해자 인터뷰는 신중을 기해야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인터뷰를 흔쾌히 허락하지 않으면 진행하지 않았다. 3단계로는 온라인 사이트 사례 분석, 피해자 인터뷰 분석, 방송통신심의 사례 분석,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안 도출을 위해 전문가 7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 1대1 심층인터뷰, 이메일 인터뷰를 실시했다. 구체적인 심층인터뷰 방법에 대해서는 4장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표현 피해자 및 피해구제 실태’부분과 7장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표현 개선안’부분에 기술했다.

### (6)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형법 학자 자문과 연구진 워크샵

국내의 법과 제도 분석, 온라인 사이트 사례 분석, 피해자 및 전문가 인터뷰 분석, 설문조사 결과, 판례분석과 통신심의 사례 분석 등 전체 연구 결과를 토대로, 형법 학자들의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검토를 통해 법적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마지막으로 연구진 전체 워크샵을 통해 온라인 콘텐츠의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표현에 대한 사회적·제도적 대응방안을 도출했다.

## 3. 온라인 성희롱, 성폭력, 여성혐오표현에 대한 개념 정의

온라인 성폭력이 무엇인지, 온라인 성희롱과 어떻게 다른지를 정의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 연구에 착수해서 정리할 때까지 온라인 성폭력, 성희롱, 여

성혐오표현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기존 연구와 법적인 정의들을 토대로 가닥을 잡고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정의를 내려 보았다. 특히 본 연구는 온라인 성희롱, 성폭력, 여성혐오표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이기 때문에 법적인 개념에 주안점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개념 정의는 다음과 같다. 온라인 성폭력은 온라인이라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기기를 사용한 젠더 폭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온라인 성폭력의 개념을 넓게 보면, 온라인상에 유포된 불법 도촬물, 비동의유포 성적 촬영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게임 내 성폭력, 사진 성적 합성 외에도 사이버스토킹, 성적 사이버불링, 단톡방 내 성희롱까지 포함한다.

온라인 성희롱이란 온라인상에서 대화, 메일, 게시글 등을 통해 성차에 기반한 모욕적인 발언, 성적 언급과 농담 등을 통해 불쾌감, 수치심, 혹은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라는 개념이 포함됨으로써 온라인 여성혐오표현을 포함하지만, 여성혐오표현은 성적 표현뿐 아니라 성적이지 않은 표현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온라인 성희롱과 구분될 수 있다. 온라인 여성혐오표현은 온라인이라는 공간에서 성별에 기하여 역사적으로 차별을 받아온 여성 집단에 대한 부정적 편견에 기반한 적대적 표현행위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개념은 본 연구가 온라인 성희롱, 성폭력, 여성혐오표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내려 본 정의 일 뿐, 앞으로 학문적·제도적으로 더욱 정제되고 정교화 되어야 하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밝힌다.

## II

# 온라인의 성희롱·성폭력 및 혐오표현의 국내외 법·제도

1.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및 혐오표현 관련 국내법	11
2. 온라인 성희롱·성폭력·혐오표현 관련 국내 제도 및 정책	29
3.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및 혐오표현 관련 해외 법·제도	42
4. 소결	51



# 1.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및 혐오표현 관련 국내법

## 1) 온라인 성희롱 관련 법률

### (1) 성희롱의 법적 개념

성희롱은 국제사회에서 널리 사용되는 용어인 ‘sexual harassment’를 번역한 것으로, 통상 업무와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성적 언동을 지칭한다(윤정숙·박미숙, 2016). 성희롱에 관한 법규를 제정하려는 움직임은 직장 내 성희롱을 방지하는 법규 제정에서 출발하였다. 성희롱이란 용어는 유엔이 1985년에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제3차 세계여성대회에서 채택한 ‘2000년을 향한 여성발전 전략’에서, 직장 내 성희롱을 사전에 방지하고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면서 처음 사용되었다(박선영 외, 2011).

그런 점에서 특별히 직장 내 성희롱에 국한하여 성희롱을 정의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sup>2)</sup>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직장 내 성희롱과 성희롱의 개념 사이에는 주체와 객체(행위자와 상대방)의 범위 차이가 있을 뿐 발생의 경위와 행위수단, 피해에 관한 표현은 동일하기 때문이다(박선영 외, 2011). 동 법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외에 성희롱의 개념 정의조항을 두고 있는 현행법으로는 고용관계에 국한되지 않는 입법인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인권위법)과 양성평등기본법이 있다. 인권위법<sup>3)</sup> 제2조에서는 성희롱을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

2) 2007년 12월 21일 전문이 개정되었는데,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2001년 5월 24일 제정되어 2001년 11월 25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는 것이 입법 취지이다.

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양성평등기본법<sup>4)</sup> 제3조 제2호는 성희롱을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와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sup>5)</sup>로 정의하고 있다. 성적 언동이나 요구에 불응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국한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이나 인권위법과 달리, 양성평등기본법은 성적 언동이나 요구에 응하는 것에 대한 혜택을 주겠다는 의사표시 행위도 포함하고 있는 차이를 보인다.

〈표 II-1〉 성희롱의 법적 정의

법	개념 정의
인권위법 제2조 제3호 라목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4)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이 2014년 5월 전부 개정되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 구 여성발전기본법의 성희롱의 개념을 일부 수정하였는데,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성희롱 행위유형을 '성적 언동' 만으로 국한했던 것을 '성적 요구'를 추가하였으며,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로 변경하였다.

법	개념 정의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	(직장 내 성희롱)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와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한편 대법원<sup>6)</sup>이 정의하고 있는 성희롱의 개념은“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남녀고용평등법, 인권위법, 양성평등기본법 등 입법에서의 정의와 대법원의 해석을 종합해 볼 때, 성희롱의 법적 개념은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이거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이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정의된다. 즉 성희롱은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주는 행위와 성적 요구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와 같이 두 가지 행위 유형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주로 업무, 고용 등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을 중심으로 법적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인권위법과 양성평등기본법의 정의조항에서 ‘그 밖의 관계에서’가 어떤 관계로까지 볼 수 있는지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 한계로 지적된다.

6)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2) 성희롱의 성립요건<sup>7)</sup>

앞에서 살펴본 법적 정의조항에 기초하면,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요건은 성희롱 당사자 및 상대방, 업무 관련성, 성적 언동 또는 요구, 성적 모욕감, 고용상의 불이익과 같은 요소로 구성된다(윤정숙·박미숙, 2016). 먼저 성희롱 당사자와 상대방의 성립요건에 대해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성희롱 당사자를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로, 상대방을 ‘다른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해, 인권위법이나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를 행위자로 규정하고 상대방을 특정하지 않고 있다. 또 업무 관련성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성적 언동 등을 ‘직장’이라는 공간적 범위 및 근무시간이라는 시간적 범위 내의 행위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 간에 업무수행과 관련이 존재하면 성희롱이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성적 언동은 한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또는 그가 있는 곳에서 육체적, 시각적, 언어적 행위 여부를 불문하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성적인 요소가 내포된 행위로서, 이로 인하여 굴욕감이나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강동욱, 2009, 41쪽). 대법원<sup>8)</sup>은 ‘직장 내 성희롱’의 전제 요건인 ‘성적인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

성적 모욕감은 ‘의사에 반한 성적 언동이(합리적 사람/여성에게) 모욕감을 줄 만한 것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즉 행위자의 의도나 동기가 아니라 피해자가 느낀 감정을 중시하는 것이다. 고용상의 불이익은 조건형 성희롱과 환경적 성희롱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는데, 전자는 상관이 피해 근로자에게 성적 대가나 보답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하면 해고 혹은 승진 탈락이나 휴직 등과 같이 채용이나 근로 조건상의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후자는 피해 근로자가 거부하면 고용상의 실질적 불이익이 아닌 적대적인 환경을 만들어 피해 근로자를 정신적으로 괴롭게 하고 성적 언어나 행동 등으로 혐오감을 유발하여 고용

---

7) 일부 내용은 이인영 교수(홍익대)의 자문에 기초하였음.

8)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환경 자체를 악화시키는 것이다.

〈표 II-2〉 직장 내 성희롱의 법적 성립요건

성립요건	내용
성희롱 당사자 및 상대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희롱 당사자: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남녀고용평등법)</li> <li>• 성희롱 행위자: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인권위법, 양성평등기본법)</li> <li>• 성희롱 상대방: 다른 근로자(남녀고용평등법)</li> </ul>
업무 관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적 언동 등을 직장이라는 공간적 범위 및 근무시간이라는 시간적 범위 내의 행위로 한정하지 않음</li> <li>• 당사자 간에 업무수행과 관련이 존재</li> </ul>
성적 언동 또는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또는 그가 있는 곳에서 육체적, 시각적, 언어적 행위 여부를 불문하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성적인 요소가 내포된 행위로 인해 굴욕감이나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li> </ul>
성적 모욕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사에 반한 성적 언동이(합리적 사람/여성에게) 모욕감을 줄 만한 것인지</li> </ul>
고용상의 불이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건형 불이익: 성적 대가나 보답 요구 거부에 대한 채용이나 근로 조건상의 실질적 불이익(승진 탈락이나 휴직 등)</li> <li>• 환경적 불이익: 성적 대가나 보답 요구 거부에 대해 적대적인 환경을 만들어 정신적으로 괴롭히고 성적 언어나 행동 등으로 혐오감을 유발하여 고용환경 자체를 악화시키는 불이익</li> </ul>

한편 관례상의 성희롱 성립요건을 보면, 대법원<sup>9)</sup>은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아닌 이상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성희롱이 성립할 수는 없다.<sup>10)</sup>

9)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10)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직장 내 성희롱 사건 관련 주요 대법원 판례와 일부 하급심 판례<sup>11)</sup>를 분석한 윤정숙·박미숙의 연구(2016)에서는 성희롱의 판단기준을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종래 대법원은 직장 내 성희롱 판단기준을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나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성적인 농담이라고 하여 성희롱으로 보는 것은 아니며, 그 판단은 개별적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인지,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다. 당시 성희롱 개념이 막 자리 잡기 시작한 단계에서 직장 내 성희롱을 성적자기결정권 문제로 보기보다는 선량한 풍속 내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의 입장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여, 소위 성희롱 판단의 관점에서 일반인 관점을 도입하여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성적자기결정권 보호를 기본 법익으로 하는 성희롱의 경우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성적자기결정권의 보호객체인 피해자 관점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 대법원은 성희롱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를 구성요건으로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여전히 판례에서는 행위자의 동기나 의도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당사자의 연령과 관계, 행위상황과 행위장소,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상적 반응과 내용, 행위내용 및 정도, 행위의 일회성 또는 지속성 여하 등의 구체적 상황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이런 입장은 피해자인 여성의 입장을 고려하기 보다는 일반인 관점을 곳곳에 유지하는 한편, 합리적 피해자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

11) 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두487 판결;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3414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대법원 2008. 9. 25. 2008두1192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10. 22. 2009누39782 판결.

### (3) 성희롱의 법적 규제

성희롱 개념 정의조항을 두고 있는 법 중에서 일정한 규제 및 구제조치가 규정되어 있는 것은 인권위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이다(홍성수 외, 2016). 반면 양성평등기본법은 양성평등(구 여성발전기본법에서는 남녀평등) 이념 실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성희롱 피해자 구제 절차와 방법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성희롱 방지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성인지 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다(법 제18조).<sup>12)</sup> 성인지 교육이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때 양성평등법은 일정한 규제 및 구제조치를 규정하거나 성희롱 피해에 대한 법적 처벌을 하기보다는 성인지 교육과 이를 위한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는 입법이다.

〈표 II-3〉 성희롱 관련 법 비교

	국가인권위법	남녀고용평등법	양성평등기본법
소관 기관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행위자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	국가기관 등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
상대방	불특정	다른 근로자	불특정
행위의 요건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
방법	성적 언동 등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	성적 언동 또는 요구
피해	①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②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①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①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②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

12)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에 관한 시책 마련 및 예방교육 실시,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등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다.

	국가인권위법	남녀고용평등법	양성평등기본법
조치 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위자에게 특별인권교육, 손해배상 등 시정권고</li> <li>• 소속기관의 장에게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인사조치, 재발 방지대책 마련, 손해배상 등 권고</li> <li>• 당사자 간 조정 또는 합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주에 대해 시정 지시,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희롱에 대한 구제 및 시정 조항 없음</li> </ul>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2012). 26쪽 참조

그 밖에 아동복지법에도 성희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성희롱의 개념을 정의한 규정은 없고 아동(18세 미만의 사람)을 상대로 한 금지행위와 그에 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금지행위에 관한 동 법 제17조에서 아동에 대한 성희롱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데, 제2호에서“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행위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조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아동 성희롱 행위에 대해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표 II-4〉 아동복지법의 성희롱 관련 조항

조항	내용
제17조 (금지행위)	<p>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lt;개정 2014. 1. 28.&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li> <li>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li> <li>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li> <li>4. 삭제&lt;2014. 1. 28.&gt;</li> <li>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li> <li>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li> <li>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li> <li>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li> <li>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li> <li>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li> <li>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li> </ol>

조항	내용
제71조 (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7. 10. 24.> 1. 제1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온라인 성희롱에 관한 입법은 부재하다. 성희롱을 정의하고 있는 국가인권위법, 양성평등법,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온라인 성희롱에 관한 별도의 조항은 없지만, 성희롱 개념에 대해서는 이들 현행법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행위는 주체와 객체(행위자와 상대방)의 범위, 발생의 경위와 행위수단, 피해 정도의 차이가 예상되므로 법 적용상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진료과정의 성희롱에 대한 적용 가능한 관련법으로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지적할 수 있듯이, 온라인 성희롱에 대해서는 특별히 인터넷상에서의 정보를 규율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불법정보의 유통금지에 관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에서는 음란물, 명예훼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정보, 청소년유해정보 등의 불법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을 뿐,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성희롱 정보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

## 2) 온라인 성폭력 관련 법률

### (1) 온라인 성폭력의 개념

온라인 성폭력과 동일 개념으로 사용되는 용어로는 사이버 성폭력, 디지털 성폭력 등이 있다. 국내에서 1990년 후반부터 걸으며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2000년대 들어 폭증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폭력이자 범죄인 사이버 성폭력에 대해 서승희(2017)는 기본적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젠더 폭력을 통칭하는 개

념이라고 보고, 불법 도촬, 비동의유포 성적 촬영물 등 디지털 촬영기기로 촬영한 촬영물을 사이버 공간에 유포하는 성범죄가 사이버 성폭력의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성적 사이버불링, 게임 내 성폭력, 사이버스토킹, 사진 성적 합성, 단톡방 내 성희롱 등을 사이버 성폭력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또 사이버 성폭력과 일부 중첩되는 개념인 디지털 성폭력은 디지털 기기 사용에 초점이 맞추어진 개념으로, 유포가 이뤄지지 않은 불법 도촬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므로 디지털 성폭력은 온라인이나 사이버 공간이든 오프라인 공간이든 공간을 고려하지 않은 개념으로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여 촬영된 성폭력이나 디지털 공간에 유포된 성폭력물까지 포함하는 좀 더 광범위한 개념이라는 점에서 온라인 성폭력이나 사이버 성폭력 개념과 차별화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과 온라인 성폭력은 성폭력이 발생하는 공간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며, 디지털 성폭력은 촬영이나 유포를 위해 사용되는 기술이 디지털이라는 점이 강조된 개념이다.

이와 같은 용어 정의에 기초하면, 온라인 성폭력은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기기를 사용한 젠더 폭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온라인 성폭력의 개념을 넓게 보면, 온라인상에 유포된 불법 도촬물, 비동의유포 성적 촬영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게임 내 성폭력, 사진 성적 합성 외에도 사이버스토킹, 성적 사이버불링, 단톡방 내 성희롱까지 포함한다.

## (2) 성폭력의 법적 규제<sup>13)</sup>

성폭력범죄에 관한 현행 법률 체계는 기본법인 형법에 성폭력에 관한 범죄규정 및 처벌조항에 관한 간략한 규정만 두고, 가중적 구성요건과 기타 사회적으로 중요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은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정훈진·박광섭, 2013). 개인의 성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같은 특별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성폭력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과 같은 특별법을 추가로 적용하여 규제할 수 있다.

성폭력 관련 특별법에 대해 살펴보면, 성폭력에 대해서는 기본법인 형법 제32

---

13) 일부 내용은 이건호 교수(한림대)와 이인영 교수(홍익대)의 자문에 기초하였음.

장에 규정된 강간과 추행의 죄를 통해 처벌하였으나, 성폭력범죄가 점차 흉포화, 집단화, 지능화, 저연령화되고,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범죄가 증가하자 기존의 법체계로는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이에 폭력이 수반되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자 1994년 1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입법목적은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이 법은 형사특례법으로, 일반법인 형법에 우선 적용되지만 특별법으로서의 한계를 지닌다. 실체 형법적 성격과 형사절차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회복지적 성격도 지니고 있는 복합적 성격의 법률이다(오영근, 2008).

하지만 이후에도 성폭력범죄가 해마다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날로 흉포화되고 있으며,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 가능성이 높고 은밀하게 행해지므로 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재범방지 등을 위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해졌다. 게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어 각 사항에 대한 효율적 대처에 한계가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이런 필요성에 따라 2010년 4월 15일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 제정되었다.<sup>14)</sup> 입법목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입법 취지에 근거하면, 성폭력처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와 사회질서 확립이다. 성폭력처벌법은 형법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형법에는 없는 유형의 성폭력범죄에 대해 중한 형벌을 예정하고 있는 특별법이다(정훈진·박광섭, 2013). 그리고 각종 성폭력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조항을 담고 있는데, 그

14) 일련의 아동 대상의 성폭력범죄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됨에 따라 그 대책수립의 일환으로 2010년 4월 15일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한 성폭력처벌법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성폭력범죄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중 피해자보호 관련 조항은 2010년 4월 15일 제정된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약칭 성폭력방지법)」으로 흡수되었다.

법정형은 형법상의 성범죄에 비하여 현저히 가중되어 있다(최상욱, 2011).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에서는 성폭력범죄를 정의하고 있다(최상욱, 2011). 제1호에서는 형법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의 음행매개죄, 제243조의 음화 등의 반포 등의 죄, 제244조의 음화 등의 제조 등의 죄 및 제245조의 공연음란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성풍속에 관한 죄는 선량한 성풍속을 해하는 범죄로서, 기본적으로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가 아니다. 제2호에서는 형법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하거나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약취 유인 매매 등 죄, 이러한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 등 죄를 성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추행, 간음, 추업의 목적이 있으므로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다. 제3호에서는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혼인빙자등간음죄 이외의 모든 범죄를 성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제4호와 5호 전단에서는 강도강간죄 및 특수강도강간죄를 성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범죄는 전형적인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며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그리고 제5호에서는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까지(미수범)의 죄를 성폭력범죄로 규정함으로써 제13조의 통신매체 이용음란죄, 제14조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도 성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역시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예를 들어 통신매체를 통해 원치 않는 음란정보를 수신하게 되는 경우, 수신인의 성적 수치심 내지 혐오감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므로 규제의 필요성이 분명히 존재한다(표Ⅱ-5 참조).

〈표 Ⅱ-5〉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에서의 성폭력범죄의 정의

호	정의	성격
제1호	형법 제22장 풍속을 해하는 죄 중 제242조의 음행매개죄, 제243조의 음화 등의 반포 등 죄, 제244조의 음화 등의 제조 등 죄 및 제245조의 공연음란죄 등	선량한 성풍속을 해하는 범죄로서, 기본적으로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가 아니다.
제2호	형법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 중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하거나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한 약취, 유인, 매매 등 죄, 이러한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 등 죄	직접적으로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는 않지만 추행, 간음, 추업의 목적이 있으므로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다.

호	정의	성격
제3호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혼인빙자등간음죄 이외의 모든 범죄	전형적인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제4호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제5호	제3조에서 제15조까지의 죄(특수강도강간 등, 특수강간 등,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최근 스마트폰 이용의 증가 등으로 인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뿐 아니라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과 관련한 성폭력범죄도 증가추세에 있다. 1997년 백화점 여자 화장실 몰래카메라 발견으로 사회적 논란이 되었으나 당시 이를 성폭력 범죄로 처벌한 근거가 없었고, 그 후 1998년 12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관련 처벌조항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를 신설할 당시 처벌 대상이 촬영자의 ‘촬영행위’만을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가 오히려 더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는 피해자 촬영물 유폐행위는 처벌이 불가하였다. 따라서 2006년 10월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추가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개정에서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를 유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다.

2010년 4월 15일 현행 성폭력처벌법이 제정되면서 그 규정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다시 2012년 12월 18일 개정에서 처벌 대상에 ‘제공’ 행위를 추가하였고,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제2항)을 추가하였다. 이로써 비록 촬영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반포 등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반포 등의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가 규정하는 범

죄는 성범죄 및 성적 프라이버시,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제14조에서는 촬영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로만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신체를 스스로 촬영하는 것은 동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신체 이미지 촬영물에 대한 재촬영이나 편집하는 행위도 포섭되지 않는다. 또 처벌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와 촬영물의 반포, 제공 등의 행위에 대해 동일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어, 촬영과 반포 등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미치는 효과가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표 II -6〉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조항	요건	법정형
제1항	① 다른 사람의 신체를 ②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③ 촬영하거나 반포, 판매, 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히 전시 상영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항	① 다른 사람의 신체를 ② 촬영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으나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③ 반포, 판매, 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히 전시 상영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3항	① 영리를 목적으로 ②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③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행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처벌법 제14조를 다시 정리해보면, 촬영행위와 반포 등 유통행위를 모두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다. 제1항은 의사에 반한 다른 사람 신체의 불법 촬영과 그 불법 촬영물의 불법 유포를 함께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불법 촬영의 객체는 다른 사람의 신체이고 불법 유포의 객체는 다른 사람의 신체 촬영물이며, 불법행위는 동의 없는 촬영과 촬영물의 유포이다. 따라서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법행위는 다른 사람의 신체 촬영물로 그 객체가 제한되며, 동의 있는 촬영과 촬영물 유포는 제외된다.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는 제1항에서 제외하고 있는 동의를 받은 다른 사람의 신체 촬영물의 유포이다. 즉 행위객체는 다른 사람의 신체 촬영물이며, 불법행위는 동의를 받은 촬영물의 유포이다. 한편 제3항에서는 특별히 동의를 받지 않은 촬영물을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적용범위는 ①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와 ② 의사에 반하지 않은 촬영이지만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로 구

분된다. 양 죄의 법정형은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에 가중처벌하고 있다. 즉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지 않은 촬영과 유포에 대한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비해,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은 촬영물 유포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강도가 더 약하다. 또 영리의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으로 유포하는 경우에는 더 가중처벌하고 있는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형법의 법정형을 비교하면, 성폭력 촬영물 유포행위의 법정형은 유사범죄의 법정형과 단순히 비교할 때 경하게 처벌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영리 목적의 경우에만 제3항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영리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영리의 목적이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그 파급효과나 피해자의 불이익의 결과가 심히 중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영리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표 II-7〉 성폭력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 형법과의 법정형 비교

법	요건	법정형
성폭력 처벌법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죄(의사에 반하여: 제14조 제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죄(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제14조 제2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 유포죄(제14조 제3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명예훼손죄(제307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제309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 통신망법	사이버음란물 유포(제44조의7, 제70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비방 목적 사이버 명예훼손(제44조의7, 70조 제2항)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

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적자기결정권보다는 미래의 주역인 아동과 청소년의 성 자체를 보호법익으로 상정하고 있다. 2010년 4월 재범 가능성이 높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목적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의 강화뿐만 아니라 재범방지 제도 보완을 위해 개정되었다. 아청법이 성폭력법과 다른 점은 아동대상 성범죄의 범위확대, 형사 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와 관련된 내용, 성교육 전문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다(정훈진·박광섭, 2013).

한편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성폭력처벌법과 아청법 외에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규제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에 관한 동법 제44조의 7에서는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동 법 제74조에서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결국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상의 성폭력범죄 뿐 아니라 그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사업자들의 책임에 대해서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법에 해당한다.

### 3) 온라인 혐오표현의 개념 및 법적 규제

혐오표현이란 인종, 민족, 종교, 성별 및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등에 기하여 역사적으로 차별을 받아온 집단에 대한 부정적 편견에 기반한 적대적 표현행위이다(이승현, 2017). 인종, 민족, 종교, 성별, 성적 기호 등을 이유로 사회적 소수자나 약자를 대상으로 한 차별적 표현으로, 좀 더 넓게는 폭력을 선동하는 표현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에 기초하면, 여성혐오표현이란 성별에 기하여 역사적으로 차별을 받아온 여성 집단에 대한 부정적 편견에 기반한 적대적 표현행위이다. 여성혐오표현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성별에 기인한 차별과 증오를 유발하는 표현이라는 점에서 부당하며, 그 표현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위법한 표현으

로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여성혐오표현의 개념에 관한 법적 정의가 불명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인터넷환경에서는 여성혐오표현이 더욱 손쉽고 빠르게 널리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과거 전통적 미디어를 통해 혐오표현이 전달되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는 크게 형사적, 민사적, 행정적 규제로 분류하여 설명할 수 있다. 혐오표현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표현으로 접근한다면, 형사규제가 가능한데, 대표적으로 형법상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를 들 수 있다. 혐오표현은 종종 표적 집단과 그 구성원에 대한 모욕표현으로 나타난다(홍성수 외, 2016). 현행 형법은 공공연한 모욕표현에 대해 모욕죄를 인정하고 있다.<sup>15)</sup> 형법상 모욕죄는 사실 적시가 없는 경멸과 멸시로 추상적 관념을 사용하여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가치판단의 의사표시를 의미하므로, 구체적인 진술보다는 욕설이나 경멸적 용어를 사용한 혐오표현이 모욕죄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온라인상의 모욕은 형법상으로도 출판물에 의한 모욕행위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에서도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을 뿐이어서 그 처벌이 극기 미미한 상황이라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정완, 2009).

반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공공연한 혐오표현의 일부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홍성수 외, 2016). 형법 제 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이루어진 명예훼손 행위를 제1항보다 가중처벌하고 있다.<sup>16)</sup> 또 제308조에서는 사자의 명예훼손을 다루고 있고, 제309조에서는 출판물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으면서 가중처벌을 하고 있다. 출판물, 다시 말해서 언론이나 미디어의 확산성, 등 때문에 피해의 정도가 더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혐오표현에 사실을 적시하는 내용이 포함된다면 명예훼손죄가

15)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6) 제307조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적용된다.

그리고 온라인 혐오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표현일 경우, 온라인상의 명예훼손을 규율하는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된다. 그러므로 온라인에서 여성혐오표현에 대한 형사규제는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며, 일반법인 형법에 비해 가중처벌하고 있다. 우선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제1항 제2호<sup>17)</sup>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70조에서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특칙으로서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관련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형법<sup>18)</sup>에 비해 가중처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디지털 명예훼손죄의 경우 디지털이라는 특성상 시간과 공간의 무제한성, 고도의 신속성과 무제한 전파성 등으로 인해 훨씬 더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김현아 외, 2018). 한편 성별을 비롯하여 성적지향·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은 부분적으로 성희롱으로도 간주될 수 있다.

종합하면, 현행법상 온라인에서의 여성혐오표현을 규제하는 별도의 형법상의 처벌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여성 개인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 형법상의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으며, 여성 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했다고 판단되면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로 처벌가능하다. 특별히 온라인상의 여성혐오표현은 정보통신망을 적용해 가중 처벌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여성 개인이 특정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며, 여성 전체 집단에 대한 표현일 경우 형법

---

17)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1.9.15., 2016.3.22.>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18) 사실 적시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을 적용한 처벌이 불가능하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피해자 특정을 구성요건으로 하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식별 가능해야 하며, 여성이란 집단에 대한 표현은 피해자 특정이 불가능하므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온라인상의 여성혐오표현에 대한 형법상의 규제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며, 실효성이 떨어지는 규제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 2. 온라인 성희롱·성폭력·혐오표현 관련 국내 제도 및 정책

### 1) 인터넷사업자의 자율규제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표현 규제는 크게 두 가지 맥락에서 이루어진다. 첫째, 불법·음란 콘텐츠의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다. 둘째, 온라인 이용에 있어 개인에게 가해진 폭력을 처벌하는 것이다. 이 중 불법·음란 콘텐츠 규제는 이를 차단하는 것으로 공적인 차원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지만, 포털사이트 같은 인터넷 서비스 운영자 차원에서도 가능하다. 즉 자율규제 차원에서 인터넷사업자는 게시물의 불법성이나 유해성을 심사할 수 있고, 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러한 포털사이트의 내용규제는 당사자나 제3자의 신고나 포털사이트의 모니터링을 거쳐서 이루어진다. 처리 방법은 게시물을 내리거나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한 블로그/카페 접근제한이나 폐쇄, 불법 정보의 노출 제한, 그리고 상습적 위반자의 서비스 이용제한이나 계정 폐쇄 등이 있다(이수연 외, 2014).

이용자 수가 많은 대형 포털사이트에는 불법정보 및 유해정보를 신고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서, 해당 페이지 자체 내에서도 메일, 전화로 신고접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신고 시스템은 신고처리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거나 신고처리과정을 확인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또 포털사이트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는 정보는 게시물처럼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연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개인 간의 메일이나 채팅을 통해 일어난 부분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사이트 관리자에게 자율규제 요청을 통해 게시물 삭제 등 피해를 줄이고자 하고 있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7).

개별 인터넷사업자 자율규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2009년 인터넷사업자들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는 동시에 이용자의 책임을 제고해 인터넷이 신뢰받는 정보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사업자들이 이용자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등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네이버, 카카오, 아프리카 TV 등의 회원사가 주축으로 되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orean Internet Self-governance Organization; 이하 KISO)’를 설립하였다.<sup>19)</sup> 특히 KISO에서는 회원사가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의 게시물 또는 검색어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해 각 회원사가 지켜야 할 게시물 또는 검색어에 대한 처리기준 등을 정책규정으로 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회원사의 게시물에 대한 자율심의를 진행한다. 따라서 이를 위한 신고접수 및 처리가 종합적으로 가능한 ‘KISO종합신고센터’를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 중이다. 해당 센터는 가짜뉴스신고센터, 유해게시물 신고센터, 명예훼손 게시물 신고센터, 검색어 신고센터, 부동산클린매물신고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KISO의 자율심의는 기본적으로 회원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거나, 기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정책위원회에서 논의·의결한다. 심의결정은 심의세칙에 의해 전체 위원 가운데 2/3 이상의 동의를 통해 의결된다. 다만 위원들의 의견이 다양한 경우 오프라인 회의 등을 통해 최종으로 결정하는 방식을 병행하여 유연하고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또 심의결정 후에는 심의결정문을 작성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 심의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심의는 정책위원의 요청에 의해 개시되며, 정책 관련 사항, 기타 정책위원회에서 논의할 만한 신규 사안 등을 상정할 수 있고, 이는 회의를 통해 추가 정책결정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심의결정 과정은 일정한 양식에 따라 시스템 혹은 서면으로 심의안을 상정함으로써 시작된다. 이후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위원장의 검토를 거쳐 사안에 따라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의결 혹은 오프라인 회의를 통한 의결로 진행된다.<sup>20)</sup>

---

19)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홈페이지 <https://www.kiso.or.kr> 참조.

20)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2016), <KISO 자율규제 백서> Vol. 2 참조.

##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규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고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부호·문자·음성·음향·동영상 등의 형태로 공개되어 유통되는 불법정보와 청소년유해정보를 심의하고 있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7).

먼저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심의절차 등을 살펴보면, 심의대상 정보를 불법정보, 유해정보, 권리침해정보 등 분야별로 각각 구분하여 심의하고 있다. 이를 위반내용별로 분류하면, 불법정보는 도박 등 사행심 조장, 불법 식의약품, 마약 거래, 문서위조, 범죄 관련 기타 법령 위반 등이다. 유해정보는 음란·선정 및 폭력·잔혹·혐오 등이며, 권리침해정보는 개인정보 유포, 인격권 침해,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다. 심의의 근거가 되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이하 정보통신심의규정)」에서 온라인 성폭력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에 관한 제8조이다. 제8조 제1호에 따라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성적 행위 묘사한 내용, 성폭력 행위 묘사한 내용 등의 정보를 심의하며, 2호의 사목에 근거하여 사람 또는 동물 등에 대한 육체적·정신적 고통 등을 사실적·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잔혹 또는 혐오감을 주는 내용을 심의한다. 또 4호의 다목에 근거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타인을 모욕하는 내용을 심의한다. 온라인 혐오표현에 관한 별도의 심의규정이 없고, 명예훼손이나 불법정보 범주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는 통상적으로 심의대상 인지, 사무처 검토, 통신심의소위원회 심의·의결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지방법은 일반인 신고, 관계기관 심의신청 및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심의대상을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위원회 자체 통신 모니터 요원을 활용하여 사회적 이슈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신속한 심의대상 인지로 시의적절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사무처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인지된 심의대상 정보에 대해 증거자료 채증, 사실관계 확인 등의 검토를 거쳐 통신심의소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있으며, 명백한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자율심의협력시스템을 통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율심의를 요청하고 있다.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의 내용을 확인하고 불법·유해성을 판단하여

심의·의결하고 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 통신특별위원회에 자문을 구할 수도 있다. 심의대상이 정보통신심의규정에 위반될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등의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sup>21)</sup>에는 온라인상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 정보에 관해 규정되어 있다. 이 법에서 규정한 불법정보에는 “음란정보, 명예훼손 정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반복적으로 유발하는 정보, 정보통신시스템을 훼손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정보, 청소년 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않은 정보, 도박 등 사행 정보, 불법적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온라인 불법 정보에 대한 심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심의위원회의 직무로 명시하고 있다(제21조 제3호).<sup>22)</sup> 심의위원회는 독립적 심의기구로서,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 7)상의 불법 정보에 대해 이용자 혹은 관계기관의 신고와 심의위원회 자체 모니터링으로 콘텐츠를 심의한다. 심의한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가 삭제, 접속차단, 이용해지, 청소년 유해정보 표시 등의 시정요구를 할 수

- 
- 21)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1. 9. 15., 2016. 3. 22.>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 22)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4.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5.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의 건전화에 관한 사항

있으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2항<sup>23)</sup>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시정요구를 명할 수 있다(김현아 외, 2018). 즉 온라인상의 성폭력과 같은 불법정보에 대해 심의 및 시정요구 권한을 가진다. 2015년 12월 10일, 심의의 개시 등에 관한 정보통신심의규정 제10조에서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제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심의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심의 신청자격을 제3자에게까지 확대하였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7).

이전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청소년보호팀 또는 정보문화보호팀에서 성매매, 음란·선정성 정보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촬영물을 음란물로써 심고할 수 있지만 성폭력으로 다룰 수 있는 담당 부서가 없는 상황이었다(김현아 외, 2018). 하지만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표현 등이 급증하고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되고 이에 대한 심의도 급증할 뿐 아니라 심의기간이 오래 걸려 해당 콘텐츠가 방치되는 경우 등의 문제의 심각성이 짙어졌다. 특히 개인 성행위 동영상, 이른바 ‘지인 합성사진’ 등의 디지털 성범죄 정보가 늘어나게 되었다. 이런 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고자 심의위원회는 2018년 4월 16일 통신심의국 산하에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신설하고, 불법 영상물을 신속 삭제 및 차단하기 위해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선 차단(자율규제) 조치 후 긴급 심의하는 방안을 도입하였다(이미나, 2018).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불법·유해정보 신고를 통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불법정보 대상과 청소년유해정보를 심의하고 있다. 통신심의국 아래 통신심의기획팀, 법질서보호팀, 사회법익보호팀, 청소년보호팀, 정보문화보호팀, 디지털성범죄대응팀 등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온라인 성희롱·성폭력·혐오표현 심의와 주로 관련된 팀은 성 관련 불법촬영 정보와 성 관련 초상권 침해 정보 등을 담당하는 디지털성폭력대응팀과 폭력·잔혹성 정보와 특정 계층의 차별·비하 등 건전한 사회통합 및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정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정보문화보호팀이라고 볼 수 있다(표II-8 참조).

23)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관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개정 2016. 3. 22.>

〈표 II-8〉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국 업무 현황

분류	업무
통신심의 기획팀	통신심의 정책 수립 및 시행/ 통신심의 업무의 기본계획/ 통신심의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 통신심의 통계의 총괄, 유지 및 관리/ 실무협의회의 운영 등 통신심의 관련 지원/ 통신심의 관련 소위원회의 운영/ 통신심의 관련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소관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회의 공개 등
법질서 보호팀	도박 등 사행성 정보 심의/ 개인 정보 침해 및 금융 등 경제관련 정보 심의/ 상표권 및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보 심의/ 소관 심의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 요청/ 소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통보 등
사회법익 보호팀	식·의약품 관련 불법정보의 심의/ 국가 법익 침해 관련 정보 심의/ 그 밖에 법질서보호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법령 위반 정보 심의/ 소관 심의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 요청/ 소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통보 등
청소년 보호팀	음란·선정성 정보의 심의/ 성매매 정보의 심의/ 소관 심의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 요청/ 소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통보 등/ 청소년 유해정보 등급DB의 등급분류 등
정보문화 보호팀	폭력·잔혹성 정보 심의/ 특정 계층의 차별·비하 등 건전한 사회통합 및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정보 심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규서비스의 불법·유해정보 심의/ 웹캐스팅 정보 심의/ 해외 불법·유해정보 차단/ 소관 심의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 요청/ 소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통보 등
디지털 성폭력대응팀	성(性) 관련 불법촬영 정보 심의/ 성(性) 관련 초상권 침해 정보 심의/ 소관 심의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 요청/ 소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통보 등 /소관 모니터요원의 선발, 운용 및 관리 등

2018년 5월 1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성폭력처벌법에 근거하여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며, 불법 촬영물 피해자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어폭력 또는 피해자 및 가족의 신상을 공개하는 행위 역시 불법 촬영물만큼 심각한 2차 가해행위로 보고 심의를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이런 방침에 따라 같은 해 5월 29일부터 100일간 웹하드(동영상 등이 업로드되고 다운로드 되는 채널)를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을 집중 모니터링 및 불법음란정보 필터링 상시 작동 여부를 집중 점검하였다. 그 결과 4584건의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통사례를 적발하고 사업자를 통하여 삭제 조치하고, 경찰 수사를 의뢰하였다. 유통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불법정보 인식, 송·수신을 제한하고 제한, 자체 모니터링 운영, 경고문구 발송 등 기술적 조치 이행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 등록취소 요청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웹하드 사이트에 지속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을 유포해 부당한 이

득을 취한 상습 유포자 297개 계정, 총 2천848건에 대해서는 형법상 음란물 유포죄 등 처벌을 위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8년 7월 24일 인터넷에 유포되는 성범죄 정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의 유관단체는 물론 시민단체와의 공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sup>24)</sup>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모니터링 이외에 개인으로 온라인상에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피해를 겪고 있다면 국번 없이 1377번으로 전화하거나 인터넷 피해구제센터 홈페이지<sup>25)</sup>로 신고접수가 가능하다. 신고 시에는 신고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와 유해정보 제공 사이트 또는 발생 사이트의 상세주소(URL), 신고의 이유 및 불만 내용, 증거자료를 기입해야 하고 증거자료가 미비하면 접수처리가 안 될 수 있다. 신고가 처리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 이용자에게 알린다. 인터넷피해구제센터에서는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악성 게시물 및 댓글 등으로 인한 피해를 다루고 있다. 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 대해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하고 분쟁을 조정한다. 또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보유한 이용자 정보의 청구를 하고 법률 상담 등의 도움을 준다. 인터넷피해구제센터에서는 크게 권리침해정보 심의, 명예훼손 분쟁조정, 이용자 정보제공청구, 권리침해 상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sup>26)</sup>

먼저 권리침해정보 심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명예훼손, 모욕 또는 초상권침해 등 타인의 권리(인격권)를 침해하는 정보에 대한 심의 및 시정 요구한다. 이때 성과 관련 불법촬영 정보 및 성 관련 초상권침해 정보는 통신심의국 디지털성범죄대응팀에서 전담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명예훼손 분쟁조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관해 이뤄지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게시한 자에 대해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한 이용자 정보의 청구를 지원한다. 법률상담 등 도움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사이버 권리침해와 관련된 상담을 상시 접수받는다.

24) <http://www.kocsc.or.kr/cop/bbs/selectBoardArticle.do>.

25) <http://remedy.kocsc.or.kr>.

26)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익보호국 인터넷피해구제센터 홈페이지 <http://remedy.kocsc.or.kr/ddmsIndex.do> 참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불법 또는 청소년 유해정보로 확인된 디지털 성폭력 관련 게시물 또는 영상물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나 게시관 관리운영자에게 삭제 및 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는 인터넷사업자에 대한 제재수단이나 처벌규정이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또 시정요구를 받고도 불응하는 기간, 그 후 다시 삭제 등의 명령을 하는 기간 등 불필요한 시간낭비도 문제이다(김현아 외, 2018). 이에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디지털 성폭력 관련 게시물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정요구에 불응할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와 별도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에 대한 사전예방 차원 노력의 일환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5호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의 건전화에 위하여 음란물 등 불법·유해 정보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그린i-Net’ 소프트웨어에 탑재하여 가정 내에서도 불법·유해정보가 차단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2018년 8월 기준으로 국내 필터링 사업자, 웹하드 사업자 등 46개 사업자에게 배포하고 있다.

〈표 II -9〉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청소년 유해정보 등급DB 구축 누적 현황

(2018년 8월말 기준, 단위: 건)

연도	'01~'11	'12	'13	'14	'15	'16	'17	'18. 8.	합계
DB 구축	801,554	328,961	273,328	301,894	414,171	410,053	458,731	220,191	3,208,883

(2018년 8월말 기준, 단위: 건)

정보 유형	사이트	동영상	앱	합계
DB구축	2,818,295	367,455	23,133	3,208,883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SNS 사용의 활성화에 따라 영상물의 편집·변형이 활발해지고, 이에 따라 해시값 필터링 기술의 한계가 발생함에 따라, 불법 유통 촬영물의 고유한 특징점을 DNA값으로 추출하여 DB로 구축, 해당 DNA

DB를 웹하드 등의 사업자 차단 모듈에 적용하여 동일 영상물의 업로드 및 다운로드를 차단할 수 있는 ‘불법 유통 촬영물 DNA 필터링 통합시스템’ 사업을 2018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또 2019년 1월부터 기존의 해시DB와 함께 DNA DB를 추가하여 사업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sup>27)</sup>

### 3) 국가인권위원회의 직장 내 성희롱 규제

2005년 성희롱 피해자가 진정할 수 있는 제도가 여성부에서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되었다. 그리고 인권위법에 따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인 성희롱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즉 국가인권위원회는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 및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그 내용을 진정하거나,<sup>28)</sup>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sup>29)</sup> 만일 진정 및 직권조사사항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결정하면 필요한 구체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sup>30)</sup>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결정례에서 2014년 기준, 언어적 성희롱은 39.3%이며 육체적+언어적 성희롱은 30.7%, 육체적 성희롱이 20.7%이다. 2015년 기준으로는 언어적 성희롱이 41.8%, 육체적+언어적 성희롱 30.6%, 육체적 성희롱이 19.4%로, 언어적 성희롱이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최근에 와서는 SNS 등을 이용한 온라인상의 성희롱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인권위원회 2014년과 2015년 성희롱 시정권고 결정례에서는 메신저 및 사내망을 이용한 성희롱 시정권고 결정례를 찾아볼 수 있다. 성적인 교제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듯한 메시지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으로 송부하거나 문자메시지에 하트 이모티콘을 넣어서 보내는 경우, 여성의 속옷 차림 사진이 들어있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의 게시글 주소를 여러 명의 여직원에게 휴대폰 문자로 보내어 보도록 하는 경우, 사내 전산망에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악의적인 표현을 올리는 등 메신저나

27) 그린i-Net 사업 및 불법정보 DB 제공에 관한 내용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하였음.

28) 인권위법 제30조 제1항.

29) 인권위법 제30조 제3항.

30) 인권위법 제39조.

사내망을 이용한 성희롱 등이 그 경우이다(윤정숙·박미숙, 2016).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시정권고 결정례를 보면, 여성의 속옷 차림 사진이 들어있는 인터넷 모 포털사이트 카페의 게시글 주소를 휴대폰으로 전송한 행위에 대해 피진정인은 유머로 전송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게시글 제목이 성적인 내용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 포함된 여성 사진의 노출정도, 가슴이나 엉덩이 등 성적인 부위를 강조하는 사진 속 여성의 포즈 사진의 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합리적인 여성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보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서 정한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 바 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진정인이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의 방지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성희롱을 하였으므로,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다. SNS를 이용한 성희롱의 증가에 따라 온라인 성희롱 시정권고 결정례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4) 국회와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 및 대응정책<sup>31)</sup>

##### □ 국회

현재 성폭력처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법사위 심사로 회부되어 특례법 개정이 논의 중이다. 그 내용을 보면 자신의 의사에 반한 ‘몰카 범죄’에 대해 현행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지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기준을 상향하였다. 또 자신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촬영된 경우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경우, 현행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상향하였다. 그리고 성적 대상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신체 이미지를 촬영한 경우, 신체 촬영물을 편집한 경우,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을 타인이 유포하는 경우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원 구성이 완료되었는데, 계류 중인 디지털 성범죄

---

31) 향후 계획이나 대책에 관한 일부 내용은 최철 변호사(법무법인 웅빈)가 제공한 자료(2018. 8. 9.)를 토대로 함.

대책 관련 주요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성폭력처벌법) 외에도 정보통신사업자 삭제·접속차단 등 조치 의무 신설(전기통신사업법), 개인영상정보 안전한 처리 및 보호(개인영상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숙박업자 성폭력 처벌법 위반 시 최대 영업장 폐쇄(공중 위생관리법), 수사기관 요청 시 즉시 영상물 삭제·차단(정보통신망법) 등에 관한 법안이 계류 중이다.

#### □ 청와대

초소형 카메라 내지 변형 카메라가 공중화장실 등에 설치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하고, 변형 카메라 제조·수입·판매 등 사전 규제가 전무한 상황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 변형 카메라 수입·판매업 등록제 도입 관련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 □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를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뒤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하는 경우에도 징역형으로만 처벌할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 □ 경찰청

채팅방이나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같은 SNS 등 두 사람 사이의 대화에서 일어난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등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적용될 수 없다. 그러나 성폭력, 스토킹의 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다른 범죄들과 같이 경찰체계를 통해서 처벌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는 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신고를 하는 등 직접 나서야만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이수연 외, 2014).

현재 온라인 범죄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구 사이버테러대응센터)이 담당하고 있는데 해킹, 바이러스 유포와 같은 사이버 테러형 범죄, 통신/게임 사기, 불법사이트 운영, 개인정보 침해, 불법복제 등 경제와 관련된 범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사이버안전국의 홈페이지에는 사이버 범죄를 크게 ‘정보통신

망 침해 범죄’,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불법 콘텐츠 범죄’로 나누고 있다.<sup>32)</sup> 이 중에서 ‘불법 콘텐츠 범죄’는 사이버음란물, 사이버 도박,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사이버 스토킹의 범죄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이버 성폭력, 성희롱, 혐오표현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고 주변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최근 불법촬영 및 유포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에 강력 대응하고자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산하에 사이버 성폭력 전담 수사팀을 신설했다.<sup>33)</sup>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사이버 성폭력 수사팀은 앞으로 전문 기술이 요구되는 고난이도의 사이버 성폭력 사건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전국 지방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수사팀의 수사를 조정하며, 해외 기반의 음란물 사이트 및 웹하드 업체 등 불법촬영 유포의 주요 공급망에 대해 외국 수사기관의 긴밀한 공조로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수사를 펼칠 계획이다. 또 특별히 여기에 여성 수사관과 사이버테러 전문 수사관 등 총 6명을 배치하여, 2차 피해 방지, 유포자료에 대한 신속한 삭제·차단 등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운영하고자 한다.

향후 경찰청은 ‘성평등위원회’와 ‘성평등정책담당관실’ 설치하고, 생활안전국 안에 ‘여성대상범죄 근절 추진단’을 신설·운영하며, 서울지방경찰청에 운영 중인 ‘여성대상범죄 특별수사팀’을 모델로 하여 각 지방경찰청에 ‘여성대상범죄 특별수사팀’을 신설한 예정이다. 그리고 사이버안전국에 ‘사이버성폭력 수사팀’을 신설할 예정이다.

#### □ 여성가족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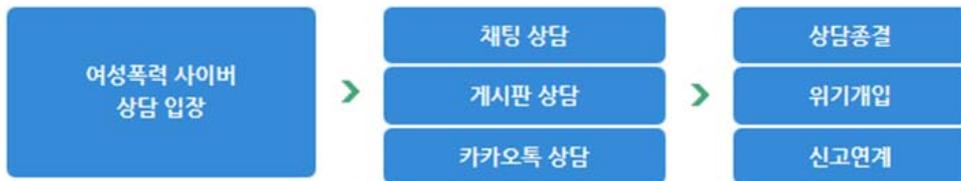
현재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표현에 대한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차원의 피해자 지원은 기존 성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 안에서 받을 수 있다. 기존 성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를 보면, 여성긴급전화 1366과 해바라기센터, 기존 성폭력상담소 및 시민단체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는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으로 긴급한 구조, 보호,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언제라도 전화를 하면 상담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전국 38개소에서 긴급번호를 365일 24시간 운영하여 피해자를

32)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 <http://cyberbureau.police.go.kr> 참조.

33) 남정훈(2018. 8. 9). 경찰청에 사이버성폭력 전담 수사팀 신설.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180809004987>.

지원하며, 피해자가 사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바라기센터나 성폭력상담소 등 적절한 곳으로 연결해준다.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로서 피해자가 2차 가해 없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심리치료 지원을 제공한다. 또 성폭력피해 상담소에서도 성폭력 상담, 컴퓨터연계, 법률지원 등을 하고 있다. 피해자 지원 체계 안에서 법률지원은 법률전문가를 통한 민형사상의 법률 상담 지원, 무료법률 구조사업 위탁기관에 연계를 통한 무료 법률 구조 등이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을 통해 변호사 선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여가부에서는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도 운영하고 있는데,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데이트폭력, 디지털성폭력, 성희롱 등 여성폭력피해에 관한 상담을 채팅, 게시판,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제공하고 있다(그림 II-1 참조). 사이버 상담은 기존 성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와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운영함으로써 그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II-1] 여가부의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 이용절차

2017년 9월 26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이 수립된 이래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체계가 수립되었다. 이에 따라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2018년 4월 30일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이에스더, 2018). 지원센터는 디지털 성범죄를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유포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디지털 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불법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지원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해 상담, 삭제지원, 수사지원, 소송지원, 사

후모니터링(점검)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전화나 인터넷 사이트로 신고가 접수되면, 삭제지원 전담 인력이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해당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하는 것은 물론, 경찰 신고를 위한 증거까지 수집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등을 지원하고, 피해자를 위한 무료 법률서비스와 의료비 지원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발생 시 전화나, 비공개 온라인게시판<sup>34)</sup>을 통해 상담 접수하면 피해 양상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센터는 상담지원, 삭제지원, 수사지원을 이행한다. 특히 피해 영상 삭제 지원, 관련 증거물 확보, 삭제 지원 리포트 제작, 사후 모니터링 등의 삭제지원과 채증자료 작성 지원, 신고 및 조사 동행, 의견서 작성 등 수사 지원을 중점으로 한다. 이 외에도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연계하여 무료 법률, 의료, 보호시설 등을 지원한다.

상담 지원	삭제 지원	수사 지원	기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문의 응대</li> <li>- 지원 내용 안내</li> <li>- 피해자 지지 상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 영상 삭제 지원</li> <li>- 관련 증거물 확보</li> <li>- 삭제 지원 리포트 제작</li> <li>- 사후 모니터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증자료 작성 지원</li> <li>- 신고 및 조사 동행</li> <li>- 의견서 작성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연계</li> <li>- 무료 법률 지원 연계</li> <li>- 의료 지원 연계</li> <li>- 보호시설 연계</li> </ul>

[그림 II-2] 여가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지원내용

#### □ 범정부 차원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범정부 차원에서 웹하드 등 정보통신사업자가 불법 촬영물 유통을 방조하거나 불법 수익을 얻을 경우, 공범으로 처벌할 예정이다.

### 3.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및 혐오표현 관련 해외 법·제도

성희롱과 성폭력 그리고 혐오표현에 대한 개념은 해외에서도 논의는 활발하지만, 명확한 개념 정의가 진행 중에 있다. 사회통념과 도덕 기준에서 받아들이기

34) [www.women1366.kr/stopds](http://www.women1366.kr/stopds).

힘든 표현을 법률로 규제를 하는 것이 옳은가를 두고 의견이 대립하기도 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만큼 상당한 사건이라고 규정하는 것도 논란이 많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유럽사회는 ‘특정 집단을 향해 적대감을 표현하는 행위’가 인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보고, 혐오표현을 규제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혐오 발언이 상대를 폄하, 멸시, 조롱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체적 괴롭힘과 폭력을 유발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대응하려 하고 있다. 이에 유럽연합은 혐오표현과 혐오표현이 유발할 수 있는 희롱과 폭력을 어떠한 법과 제도로 접근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국제사회는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 이후 구축되어 온 국제인권규범의 합의 과정에서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였다. 특히 인종적 혐오표현이 표현행위에 그치지 않고 인종적 소수자에 대한 폭력과 박해의 연장선이라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모으게 되었다. 유엔은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Genocide Convention)」(이하 ‘제노사이드협약’) 제3조(c)에서 제노사이드에 대한 직접 혹은 공연한 선동을 처벌하는 행위로 이해하고 있으며, 1965년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ICERD)」(이하 ‘인종차별철폐협약’) 제4조에서는 인종적 우수성이나 적대감에 근거한 사상의 전파와 인종 및 피부색·민족적 출신이 다른 집단에 대한 폭력행위를 비롯한 차별 및 폭력 선동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자유권규약 제20조 제2항은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는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들 조항을 근거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와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각종 권고나 의견을 통하여 해당 표현행위에 대한 금지가 표현의 자유와 양립한다고 표명하고, 회원국에 위와 같은 혐오표현을 규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유럽인권협약은 혐오표현을 정당하게 제한 가능한 표현행위로 적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동 협약 제10조 제2항을 통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될 수 있으며 그 제한이 정당성을 가지기 위한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유럽인권법원을 통해서 살펴보면 혐오표현으로서 제한이 정당화되는 경우는 위의 제10조 제2항에 따른 정당성을 가지는 경우나 혹은 제17조 권리의 남용으로서 제10조 표현의 자유의 범주로부터 제외되어 위법한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이다. 이와 같이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유럽공동체의 합의는 이미 1997년 유럽평의회의 「권고 제20호」를 통해

이루어졌다. 동 권고에는 혐오표현이 ‘인종적 적대감, 제노포비아, (호모포비아), 반유대주의, 그리고 불관용에 기한 적대감을 확산, 선동, 증진, 정당화하는 모든 형태의 표현으로, 이때 불관용이란 공격적인 민족주의와 자민족중심주의, 그리고 소수자, 이주민, 이주민 출신 사람들에 대한 차별과 적대감으로 표현되는 불관용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정부, 공권력, 공공기관 및 관료들이 혐오표현을 하지 않을 책임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또한 이에 대응하기 위해 형법뿐 아니라 민법, 행정법 등으로 이뤄진 종합적인 법제를 수립할 것, 형사적 제재수단으로서 사회봉사명령을 도입할 것 등을 회원국에 요구함으로써, 혐오표현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을 독려했다. 나아가 유럽연합은 2008년 ‘형사법에 의한, 인종주의와 외국인혐오의 특정 형태 및 표현 방지에 관한 프레임 결정’을 채택해, 인종, 피부색, 종교, 혈통 또는 출신 국적 및 민족과 관련해 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인 폭력과 증오의 선동 등을 형법상 범죄로 규정, 처벌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제1조에 따르면, ‘인종, 피부색, 종교, 혈통 또는 출신 국적 및 민족에 따라 규정된 집단 또는 그 일원에게 공개적으로 폭력과 증오를 선동하는 행위’ 등이 의도적으로 행해졌을 때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며, ‘소책자, 이미지, 기타 자료의 공개적 보급 혹은 배포’를 통해 폭력과 증오를 선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 1) 「사이버범죄방지협약」

조소영 외(2016)<sup>35)</sup>의 연구에 따르면, 유럽은 사이버범죄에 대한 최초의 국제적인 조약인 「사이버범죄방지협약」의 추가의정서인 「컴퓨터를 통한 인종주의, 외국인 혐오적 행위의 처벌에 관한 사이버범죄 협약의 추가의정서」를 통해 인종과 국적 등에 기한 혐오표현의 금지를 합의하고 있다. 사이버범죄방지협약(Convention on Cybercrime)은 2001년 11월 8일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에서 의결되고, 2015년 11월 기준 47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사이버범죄방지협약의 초안을 작성할 당시에 컴퓨터시스템을 통해 범해지는 인종차별적 행위 및 외국인 적대적 행위의 범죄화에 관한 규정에 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일부 회원국은 이러한 규정이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권리와 일치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유럽평의회는 유럽범죄문제위원회에게 「컴퓨터를 통한 인종주의,

---

35) 조소영 외(2016) 인터넷에서의 혐오표현 규제개선방안 연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외국인 혐오적 행위의 처벌에 관한 사이버범죄 협약의 추가의정서」를 제정할 것을 전문가 위원회에 위임하여 최종적으로 2003년 1월 28일 서명을 시작으로 2006년 3월 1일 5개국에 인준함으로써 발효되었다. 이 추가의정서는 2015년 12월 기준 24 개국에 의해서 인준되어 있다. 추가의정서는 유럽이사회 비회원국도 가입할 수 있으며, 현재 캐나다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비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다. 동 추가의정서에서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는 인종주의 및 외국인 혐오적 표현물은 ‘인종, 피부색, 혈통·국적·민족적 출신(위 요소들이 종교를 명분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포함)에 기하여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적대감, 차별, 폭력을 촉구, 증진, 선동하는 모든 글, 이미지, 사상이나 이론의 공표’를 의미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종적 혐오표현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인터넷 혐오표현 중 특히 인종주의 등에 기인한 경우를 사이버범죄 범위로 포섭하여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는 컴퓨터를 통한 인종주의 및 외국인 혐오적 자료의 배포(제3조), 인종주의 및 외국인혐오에 기한 위협(제4조)과 모욕(제5조), 제노사이드 또는 인류에 대한 범죄의 부정, 축소, 인정 또는 정당화(제6조), 그리고 위 범죄에 대한 방조와 교사(제7조)를 사이버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국내적 입법 기타의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 2) 「시청각미디어 서비스지침」

유럽연합은 기술의 발전과 콘텐츠의 다양화에 발맞추어 2007년 「시청각미디어 서비스지침」(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s: AMSD)을 발표하였다. 관련된 구체적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일반규정) 제3조는 수신자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예외로 주문형(on-demand) 시청각 미디어서비스가 동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제4항 (a)(i)은 공공정책(public policy), 공중보건의 보호(the protection of public health), 공공 안보(public security), 소비자 보호(the protection of consumers)를 위해 필요한 조치일 경우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 때 첫 번째 사유인 공공정책에 포함되는 것으로 ‘청소년 보호, 인종·성·종교·국적에 기한 적대감 선동에 대한 대항, 개인의 인간 존엄의 침해에 대한 방지’의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즉, 인종·성·종교·국적에 기한 혐오표현에 대항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수신자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장(모든 시청각서비스에 적용되는 규정)

제6조는 ‘회원국은 적절한 수단으로 관할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공급자가 공급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가 인종, 성, 종교 또는 국적에 근거한 혐오의 조장을 포함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에 의해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회원국으로 하여금 시청각미디어를 통한 혐오표현의 유포를 방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어서 제9조 제1항은 회원국의 의무로서 시청각미디어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상업적 시청각 커뮤니케이션에 혐오표현이 용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즉, 상업적 시청각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성, 인종 또는 민족적 출신, 국적, 종교나 신념, 장애, 연령, 성적지향에 기한 모든 차별 조장’이 금지된다.

### 3) 「전자상거래 지침」

「전자상거래 지침」(Electronic Commerce Directives) 제3조 제4항 역시 「시청각미디어 서비스지침」 제2장 제3조에서 수신자의 자유의 예외사유로서 혐오표현을 둔 것과 동일한 규정을 역내시장에 대한 역외 서비스제공의 자유의 예외사유로서 명시하고 있다. 동 지침 제3조(역내시장) 제2항은 다른 회원국의 정보사회 서비스(information society service) 제공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시에 동조 제4항에서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다른 회원국의 서비스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즉, 제4항은 ‘회원국은 다음 조건이 이행된다면 일정한 정보사회서비스에 관하여 제2항으로부터 제외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a) 그 조치에는 (i) 다음 이유 중 하나가 필요하다.’고 하고 (i)로 ‘공공정책, 특히 미성년자 보호 및 인종·성별·종교·국적을 이유로 한 증오와 개인에 관한 인간 존엄성 위반의 모든 유인에 대한 투쟁을 포함한 형사범죄 예방·조사·탐지·소추’를 명시하고 있다.

### 4) 시민단체와 자율규제 기구

국제적 합의를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주체 중 하나인 국제 시민단체의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도 확인된다. 대표적으로 표현의 자유 관련 단체인 ‘제19조(Article 19)’는 표현의 자유를 위한 글로벌캠페인을 통해 국제인권법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논의를 기반으로 ‘표현의 자유와 평등에 관한 캠페인 원칙’을 발표하였다. 이 원칙은 국제법, 각국의 법률과 법원의 판단에 반영된 종래의 실무, 국제사회

가 인정한 법의 일반원칙에 입각한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각국의 혐오표현 제한법 제정의 현실화를 목표로 규제대상 행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적의, 고취, 선동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INHOPE(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ternet Hotlines)와 같이 국제적인 인터넷 자율규제기구에서는 국제 공조를 통하여 혐오표현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 단체는 1996년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유럽 각국에서 개설되기 시작한 아동포르노 핫라인 간의 협력의 필요성을 공감한 유럽 각국 시민단체가 모여 1999년 출범시킨 것으로, 유럽 각국 외에도 미국, 캐나다, 러시아 및 일본, 대만, 호주 등의 시민단체가 가입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현재 45개국 51개 시민단체가 핫라인을 통해 인터넷 상 불법정보에 대한 감시를 하고 있다. 이 단체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불법정보는 아동포르노, 아동성폭행을 목적으로 아동에게 감정적 신뢰를 주기 위한 고의적 우호행위(grooming), 혐오표현이다. 이 때 혐오표현은 ‘국적, 인종, 성적지향과 같은 특정 특성에 기하여 개인이나 집단을 폄하하는 표현(communication)’이다. 한편, 2016년 5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글로벌 IT기업인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하여 혐오표현 대응을 위한 ‘불법적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강령(Code Of Conduct On Countering Illegal Hate Speech Online)’을 발표하였다. 이 때 불법적 혐오표현은 2008년 유럽연합의 ‘형사법에 의한, 인종주의와 외국인혐오의 특정 형태 및 표현 방지에 관한 프레임 결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현을 의미하며, 동 행동강령은 테러 선동과 인종 등을 이유로 한 폭력과 증오 선동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불법적 혐오표현을 검토했고 이를 삭제·차단을 위한 조치를 각 사의 가이드라인에 명시할 것, 신속하고 유효한 조치를 위해 전담팀을 설치하여 해당 표현을 검토했고 필요한 경우에는 24시간 안에 삭제·차단 조치를 취할 것, 혐오표현의 삭제·차단 등과 관련하여 각 회원국 정부와의 소통체계 구축,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및 불법적 혐오표현에 관한 이용자들의 교육 및 인식 제고를 위한 활동, 대항언론의 활성화를 위한 활동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에 앞서 2015년 12월 독일은 테러와 인종주의에 대항하기 위해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와 협의를 마치고 24시간 이내 해당 혐오표현을 삭제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이를 통해 독일의 혐오표현 규제를 온라인상에서도 최대한 관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조소영 외, 2016, 47-59).

## 5) 영국 사례

영국에서는 평등법의 괴롭힘 조항을 통해 연령, 장애, 성전환, 인종, 종교 또는 신앙, 성별, 성적지향과 관련한 언어적 괴롭힘을 차별행위로서 규제하며, 증오선동은 공공질서법을 통해 처벌한다(홍성수 외 2017).<sup>36)</sup>

### (1) 차별적 괴롭힘

영국의 평등법(Equality Act 2010)은 보호되는 인적 속성과 관련하여 사람의 존엄을 침해하거나 그 사람에게 위협적이거나 적대적이거나, 멸시적이거나 굴욕적이거나 모욕적인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이나 효과가 있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행위를 괴롭힘(harassment)으로 규정한다(제26조). 여기서 보호되는 인적 속성은 연령, 장애, 성전환, 인종, 종교 또는 신앙, 성별, 성적지향이다. 평등법 해설은 면대면, 편지, 이메일, 전화 등의 방식을 통해 악의적 루머를 퍼뜨리거나, 특정 사람을 놀리고 약 올리고 못살게 구는 등의 행위를 괴롭힘의 예시로 들고 있다.

### (2) 증오선동

영국의 공공질서법(Public Order Act 1986) 제3부는 피부색, 인종, 국적, 출신 국가나 민족으로 이루어진 집단의 개인들을 대상으로 한 증오·고무의 고의성이 있거나 모든 정황상 증오가 고취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경우, ①위협적, 폭력적 또는 모욕적 언어나 행동을 사용하거나 문구를 게시하는 행위, ②위협적, 욕설적 또는 모욕적인 문서를 출판 또는 배포하는 행위, ③위협적, 폭력적, 또는 모욕적 언어나 행동이 포함된 연극을 공개적으로 상영하는 행위, ④그러한 시각 이미지나 소리의 기록을 배포, 상영 또는 재생하는 행위, 방송하거나 방송 프로그램에 포함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단, 행위자가 위협적, 폭력적, 모욕적인 속성을 의도하지 않았거나, 그러한 효과가 있음을 인지하지 않았다면, 그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공공질서법은 「2006년 인종 및 종교 관련 증오법(Racial and Religious Hatred Act 2006)」에 따라 종교적 사유에 관한 증오선동죄(제3A부)를 신설하였다.

---

36) 홍성수 외. (2017) 혐오표현 실태와 규제방안 실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2008년 제정된 「형사정의와 이민법(Criminal Justice and Immigration Act 2008)」 제74조에 따라 성적지향 관련 증오선동죄가 추가되었다. 종교 및 성적지향 관련 증오선동죄에 관한 제3A부는 인종적 증오선동과 달리 위협적 표현 행위만을 금하고 있다. 한편, 표현의 자유 보호와 관련해 종교 혹은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증오선동의 해석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데, 제29J조는 특정 종교나 기타 신념 체계와 그것을 따르는 이들의 가치관이나 관습에 대한 토론, 비판, 반감·싫어함·조롱·모욕의 표현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것이 아님을, 제29JA조는 성적 행위나 관습에 대한 토론이나 비판, 그러한 행위나 관습을 삼가거나 수정할 것을 권유하는 것은 그 자체로 성적지향과 관련해 위협적이거나 증오선동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 (3) 사이버 왕따 강력 대응

영국 정부는 최근 사이버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이버따돌림을 조장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광고주의 보이콧을 촉구하면서, 이들 사이트 운영자들이 책임의식 강화를 강조했다. 더불어 시민단체들도 항의성명을 발표하면서 사이버폭력 근절에 적극 노력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NoBullying.com)에서는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에 대한 가이드 맵을 개발하여 게재했다. 이 사이트에서는 전 세계 사이버안전 및 관련 법률에 대한 최신 소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녀가 사이버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징후, 자녀를 위해 취해야 할 구체적인 부모의 행동 등을 정리해 놓았다. 이외에도, 영국정부는 대표적인 SNS인 트위터를 상대로 불량 트윗 신고 기능 확대 및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는 압박을 넣는 등 정부 주도하에 사이버폭력에 대응하고 있다.

영국에서도 사이버폭력으로 인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2013년 8월 페이스북에 연결된 유명 상담 사이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ask.fm)’에 고민 상담을 올렸던 청소년들이 사이버협박에 시달리다 자살한 사건인데, 14세 소녀 한나 스미스가 대표적이다. 한 인터넷 상담 사이트에 습진에 걸린 고민을 털어냈다가 사이버 집단폭력의 희생양이 됐다. 스미스의 글에는 고민을 덜어주는 답변보다는 비방 및 조롱하는 댓글이 홍수를 이뤘고 페이스북 계정도 자살을 종용하는 악성댓글로 도배됐다. 결국 스미스는 수많은 네티즌으로부터 협박받는 상황에 절망했고 급기야 페이스북에 자살을 암시하는 글을 남기고 자살했다. 심지어 사고 이후에

도 스미스를 추모하는 페이스북 페이지와 친언니의 페이스북에 여전히 악성댓글이 달리는 등 사이버폭력이 계속되고 있다(김태한, 2013.8.7.).<sup>37)</sup>

영국에서는 같은 해 4월에도 유사 사이트에서 사이버폭력을 견디다 못해 15세 소녀 조시 언스워스가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최근 사이버따돌림을 조장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사이버폭력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다(이정진, 2013. 8.14).<sup>38)</sup>

트위터를 통한 사이버폭력도 발생했다. 2013년 7월 영국의 한 여성 운동가인 페레즈는 여성의 인권신장을 위해 10파운드 화폐에 소설가인 제인 오스틴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캠페인을 벌이다 트위터로 욕설과 비난은 물론 강간·살해 협박까지 받았다. 뒤이어 캐서린 메이어 타임지 유럽 편집자 등 일부 여성언론인들도 트위터를 통해 강간 및 폭발물 협박을 받는 등의 SNS를 통한 사이버폭력이 발생하기도 했다(지연진, 2013, Businessspectator.com, 2013).<sup>39)</sup>

#### (4) 온라인 아동 성범죄 강력 대응

최근 영국은 온라인 아동 성학대·성범죄가 증가하는 현상을 우려해, 인터넷업체들의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아동학대예방기구(NSPCC)는 게임 사이트와 소셜 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는 미성년자 그루밍 범죄, 아동 성학대 생중계 등 사례가 발견되는 즉시 차단할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실제 영국 국가범죄수사국(NCA)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온라인상의 아동 성학대와 관련해 모두 8만 210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는 2012년 대비 7배나 증가한 것이다. 영국 정부는 온라인상의 아동 성범죄 대응 및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18개월간 관계기관에 2100파운드(약 301억원)를 추가 지원하고, 아동보호단체와의 협력 사업에도 260만파운드(약 37억원)를 투입할 계획이다. 영국 정부는 ‘마이크로소프트’(MS)사와 공동으로 업계 전문가 회의를 열어 온라인상의 아동 그루밍 범죄를 발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중에 있으며, ‘온라인 유해 백서’(Online Harms White Paper)를 통해 범죄 유형을 공개하고 있다(News1, 2018. 9. 4.).<sup>40)</sup> 또한 2018년 8

37) 김태한, 2013. 8. 7. 영국, ‘악플’ 피해자 자살 잇따라 ‘슬렁’, 연합뉴스.

38) 이정진, 2013. 8. 14 영국 ‘사이버 폭력’ 심각...악플때문에 자살도, 뉴스와이.

39) 정한라(2013, 38) 국내외 사이버 폭력 사례 및 각국의 대응방안.

40) News1, 2018.9.4. 英정부, 온라인 ‘아동 성범죄’ 단속 강화<https://www.msn.com/ko-kr/>

월 영국 정부는 빈곤국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며, 케냐의 사이버보안센터를 후원하는 방식으로 외국의 소아성애자를 추적하는 데 지원을 하기로 했고, NCA는 이미 84개국과 함께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 중이며, 범죄자를 찾아내고 기소하기 위해 사법당국과 긴밀히 공조 중이다.<sup>41)</sup>

#### 4. 소결

남녀고용평등법, 인권위법, 양성평등기본법 등의 입법에서의 정의와 사법부 해석에 기초하면, 성희롱의 법적 개념은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이거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이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다. 이렇게 볼 때 성희롱은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주는 행위와 성적 요구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와 같이 두 가지 행위 유형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성희롱 개념 정의에 관한 현행법의 특징을 비교하면, 남녀고용평등법이나 인권위법은 성적 언동이나 요구에 불응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국한하고 있는데 비해, 양성평등기본법은 성적 언동이나 요구에 응하는 것에 대한 혜택을 주겠다는 의사표시 행위도 포함하고 있는 차이를 보인다. 현행법의 한계로는 성희롱의 법적 개념이 주로 업무, 고용 등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만을 중심으로 정의되고 있다는 점과 인권위법과 양성평등기본법의 정의조항에서 업무, 고용 등의 관계 이외의 ‘그 밖의 관계에서’가 어떤 관계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지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온라인 성폭력은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기기를 사용한 젠더 폭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온라인 성폭력의 개념을 넓게 보면, 온라인상에 유포된 불법 도촬물, 비동의유포 성적 촬영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게임

---

news/world/%E8%8B%B1%EC%A0%95%EB%B6%80-%EC%98%A8%EB%9D%BC%EC%9D%B8-%EC%95%84%EB%8F%99-%EC%84%B1%EB%B2%94%EC%A3%84-%EB%8B%A8%EC%86%8D-%EA%B0%95%ED%99%94/ar-BBMQffp.

41) 뉴시스. 2018. 10. 08 英 온라인 스트리밍 활용한 빈곤국 아동 성범죄 증가 <https://news.joins.com/article/23030463>.

내 성폭력, 사진 성적 합성 외에도 사이버스토킹, 성적 사이버불링, 단독방 내 성희롱까지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에 관한 현행 법률 체계를 보면, 기본법인 형법에 성폭력에 관한 범죄규정 및 처벌조항에 관한 간략한 규정만 두고, 가중적 구성요건과 기타 사회적으로 중요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은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개인의 성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온라인 성폭력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과 같은 법을 추가로 적용하여 규제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성폭력처벌법은 성폭력범죄에 대해 중한 형벌을 예정하고 있는 특별법으로서, 최근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과 관련한 성폭력범죄의 증가추세를 반영하여 성범죄 및 성적 프라이버시,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관한 조항(제14조)을 두고 있다.

온라인 성폭력 관련 주요 입법인 성폭력처벌법의 입법상 한계를 보면, 첫째, 카메라 등 이용촬영에 관한 제14조 제1항에서는 불법촬영과 불법유포를 함께 규정하면서 불법유포의 객체를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불법촬영물로 제한하고 있다. 이것은 촬영의 주체가 본인이 되어 자신의 신체를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 신체를 직접 촬영하지 않고 촬영대상이 이미지인 촬영물, 그리고 가공이나 합성에 의한 영상물인 경우, 불법촬영과 불법유포로 포섭할 수 없다는 것이 그 한계이다. 특히 최근 지인의 사진과 음란물을 합성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제작해서 SNS에 유포하는 행위가 명백한 성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이와 같은 디지털 합성 사진이나 동영상을 통해 지인의 신상정보까지 공개되는 경우가 있어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또는 초상권침해라는 또 다른 법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둘째,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보호법익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합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하는 강제추행죄와 범죄의 성격과 보호법익의 침해 내용 면에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처벌강도가 더 약하다.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의 벌금형인데 비해, 성폭력처벌법의 불법촬영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셋째, 성폭력처벌법은 처벌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와 촬영물의 반포, 제공 등의 행위에 대해 동일하게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촬영물의 반

포 등의 행위가 주는 엄청난 피해효과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다. 넷째, 동법 제14조 제3항에서는 동의를 받지 않은 촬영물을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영리 목적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 등 그 파급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여성혐오표현이란 성별에 기하여 역사적으로 차별을 받아온 여성 집단에 대한 부정적 편견에 기반을 둔 적대적 표현행위이다. 합리적인 근거 없이 성별에 기인한 차별과 증오를 유발하는 표현이라는 점에서 부당한 표현에 해당하며, 표현의 정도가 심하면 위법한 표현으로 규제할 수 있다. 여성혐오표현의 개념에 관한 법적 정의가 불명확하고 이를 규제하는 별도의 입법이 존재하지 않아서 효과적인 규제수단이 부재하다. 다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규제가 가능하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표현으로 접근하면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를 적용하여 형사규제를 할 수 있다. 즉 여성 개인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을 하거나 여성 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판단되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 가능하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여성이란 집단을 대상으로 한 혐오표현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실상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한편 국내에서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표현에 관한 규제는 크게 두 가지 맥락에서 이루어진다. 첫째, 불법·음란 콘텐츠의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다. 둘째, 온라인 이용에 있어 개인에게 가해진 폭력을 처벌하는 것이다. 이 중 불법·음란 콘텐츠 규제는 공적 차원에서 이를 차단하는 행정적 규제가 가능한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포털사이트 같은 인터넷 서비스 운영자의 자율규제도 가능하다. 하지만 불법·음란 콘텐츠 규제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에 불응할 경우 직접 적용 가능한 관련 법률상의 처벌규정이 없다는 점과 시정요구를 받고도 불응하는 기간, 그 후 다시 삭제 등의 명령을 하는 기간 등 불필요하게 시간이 낭비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피해자 보호수단의 한계라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이외에 인권위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인 성희롱 피해를 진정 받는다.

현재 성폭력처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법사위 심사로 회부되어 특례법

개정이 논의 중이며, 청와대는 초소형 카메라 내지 변형 카메라가 공중 화장실 등에 설치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하여 변형 카메라 제조·수입·판매 등 사전 규제가 전무한 상황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 변형 카메라 수입·판매업 등록제 도입 관련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법무부는 디지털 성범죄를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뒤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하는 경우에도 징역형으로만 처벌할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해킹, 바이러스 유포와 같은 사이버 테러형 범죄, 통신/게임 사기, 불법 사이트 운영, 개인정보 침해, 불법복제 등 경제와 관련된 범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표현에 대한 여성가족부 차원의 피해자 지원은 기존 성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 안에서 받을 수 있다.

유럽사회는 ‘특정 집단을 향해 적대감을 표현하는 행위’가 인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보고, 혐오표현을 규제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혐오 발언이 상대를 폄하, 멸시, 조롱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체적 괴롭힘과 폭력을 유발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대응하려 하고 있다. 유럽의 대표적인 법과 제도를 살펴보면, 첫째, 사이버범죄에 대한 최초의 국제적인 조약인 「사이버범죄방지협약」의 추가의정서인 「컴퓨터를 통한 인종주의, 외국인 혐오적 행위의 처벌에 관한 사이버범죄 협약의 추가의정서」를 통해 인종과 국적 등에 기한 혐오표현의 금지를 합의하고 있다.

둘째, 유럽연합은 기술의 발전과 콘텐츠의 다양화에 발맞추어 2007년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지침」을 발표하였다. 관련된 구체적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일반규정) 제3조는 수신자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예외로 주문형 시청각 미디어서비스가 동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제4항 (a)(i)은 공공정책, 공중보건의 보호, 공공 안보,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일 경우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 때 첫 번째 사유인 공공정책에 포함되는 것으로 ‘청소년 보호, 인종·성·종교·국적에 기한 적대감 선동에 대한 대항, 개인의 인간 존엄의 침해에 대한 방지’의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셋째, 「전자상거래 지침」 제3조 제4항 역시 「시청각미디어 서비스지침」 제2장 제3조에서 수신자의 자유의 예외사유로서 혐오표현을 든 것과 동일한 규정을 역내 시장에 대한 역외 서비스제공의 자유의 예외사유로서 명시하고 있다. 동 지침 제

3조(역내시장) 제2항은 다른 회원국의 정보사회서비스 제공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INHOPE와 같이 국제적인 인터넷 자율규제기구에서는 국제 공조를 통하여 혐오표현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2016년 5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글로벌 IT기업인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하여 혐오표현 대응을 위한 ‘불법적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강령을 발표했다. 영국의 경우, 정부는 최근 사이버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이버따돌림을 조장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광고주의 보이콧을 촉구하면서, 이들 사이트 운영자들이 책임의식 강화를 강조했고, 온라인 아동 성학대·성범죄가 증가하는 현상을 우려해, 인터넷업체들의 단속을 전례 없이 강화하고 있는 중이다.



---

### Ⅲ

---

## 온라인의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 관련 사이트 실태

---

1. 분석 개요	59
2. 분석 결과	65
3. 소결	93



## 1. 분석 개요

### 1) 분석대상 및 기간

국내 온라인의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표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성차별적 발언과 폭력 및 혐오에 가까운 글(말)이 생산되는 대표적 온라인 사이트 4개의 대표 게시판(일간 베스트저장소의 ‘일간베스트’, 개드립넷의 ‘개드립’, DC인사이드의 ‘주식갤러리’(주식갤러리와 트위터 마이너 갤러리),<sup>42)</sup> 루리웹의 ‘베스트’)를 분석했다. 분석기간은 첫째, 2016년 5월 18일 강남역 화장실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으로 촉발된 여성혐오라는 사회 분위기를 고려해, 2016년 5월 18일부터 5월 30일까지(2주간) 분석했고, 해마다 열리는 희생자 추모식을 고려해 2017년과 2018년에도 같은 기간의 동향을 살펴보았다.<sup>43)</sup> 둘째, 2018년도 상반기 이후 ‘미투’와 ‘몰카’ 사건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 등 다양한 사건들이 사회 쟁점이 되었는데, 8월 3째 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수행비서 성폭력 사건과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 촬영해 유포한 여성에 관한 첫 사법부 판결이 나온 시기로 온라인 커뮤니티의 관련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8월 13부터 8월 19일까지(7일)를 선정해 분석했다.<sup>44)</sup>

42) 2016년 강남역 살인 사건 당시 2주 동안 134건의 키워드를 추출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2018년 8월 13일부터 일주일 동안 추출할 수 있는 키워드는 10개 미만이었다. 일례로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무죄’ 판결이 있던 날인 8월 14일에도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다. 동일 게시판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할 경우 혐오의 경향성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분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디시인사이드의 특성상 한 갤러리의 성향이 수 년 동안 꾸준히 유지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모니터링 대상 갤러리를 ‘미투’, ‘몰카’ 등 여성혐오 관련 사안들에 대한 반응이 활발한 트위터(twitter)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갤러리인 ‘트위터 마이너 갤러리’로 변경했다.

43) 2016년 5월 17일 새벽 강남역 살인사건 발생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진 이후 5월 18일 강남역 10번 출구엔 살해당한 여성을 추모하는 포스트잇이 붙기 시작했다. ‘여자가라서 죽었다’ 등의 추모 포스트잇이 이어지자 디시인사이드 등에서 여성혐오 살인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졌다. 5월 19일 일간베스트 추모 화환(‘남자라 죽은 천안함 용사를 기리자’-일간베스트저장소 노무현 외 일동), 5월 20일 핑크코끼리(일간베스트 유저) 등장, 5월 21일 일간베스트 유저 동시 시위, 5월 26일 거울행진 시위(‘당신도 여성혐오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를 담은 여성혐오 범죄 반대 시위) 등이 이어지며 논란은 더욱 격화됐다. 이에 강남역 살인사건에 대한 추모가 본격 시작된 2016년 5월 18일부터 2주를 분석기간으로 설정했다. 또한 2016년 이후 매년 5월 강남역 살인 사건에 대한 추모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매해 같은 기간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44) 8월 14일은 수행비서 성폭력 혐의를 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무죄가 선고되었

데이터 수집은 사이트 간 게시판 운영의 차별성을 고려해 우선 분석기간 내, ‘성희롱’, ‘협오’, ‘폭력’, ‘강남역’, ‘미투’, ‘몰카’ 등 관련 키워드로 검색된 게시글을 추출한 후, 게시 글을 수작업으로 확인 후 해당 내용의 게시글인지 판단했다. 키워드 검색이 불가능한 사이트의 경우 해당 기간 내 모든 게시글을 확인 후 관련 내용이 담긴 게시글만 골라 분석했다.

아래 분석기간 내 분석한 게시글 수를 보면, 분석기간이었던 2017년 5월은 대통령 선거와 전임 대통령 구속 등 큰 뉴스로 인해, 강남역 살인 사건 1주기 추모와 관련한 게시글은 찾기 어려웠다. 하지만 2018년엔 연초부터 미투, 불법촬영 등의 이슈가 연속적으로 보도되었고, 5월 강남역 2주기 추모 시기 불법촬영 반대 집회가 열리면서 관련 게시글이 증가했다. 그런데 2018년 8월 분석기간 동안 쟁점적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게시글 수를 보면 일간베스트를 제외하고 전체 관련 게시글이 많이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두 분석기간 동안 일간베스트의 경우 전체 8,377개의 게시글 중 283건(3.4%), 개드립넷은 5,057중 113건(2.2%), 주식갤러리는 2,424개의 게시글 중 200건(8.3%), 루리웹은 1,677개 중 61건(3.6%)의 게시글이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협오와 관련이 있었다. 이는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협오가 명확히 드러나는 심각한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게시글 수에 비해 드러난 문제적 게시글 수가 낮을 수 있다. 하지만 4개 사이트별 그리고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과 2018년 미투와 몰카 사건 기간 동안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협오 표현에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강남역살인사건이 발생한 2016년 일간베스트는 해당 게시물이 가장 많았고, 주식갤러리는 미투와 몰카 기간 동안의 게시글이 전체 게시글 대비 가장 많았다.

---

고, 8월 16일은 홍익대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촬영해 여성들의 남성협오 커뮤니티로 알려진 위마드(WOMAD)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성에게 징역 10개월이 선고된 날로 이후 미투와 몰카 사건이 편파적으로 판결되었다는 논란이 사회적으로 거세지기 시작한 시점이기도 하다.

〈표 Ⅲ-1〉 분석기간 내 분석한 게시물 수

분석기간 분석 사이트	강남역 살인사건			미투와 몰카	합계
	2016년 5월 18~30일	2017년 5월 18일~30일	2018년 5월 18~30일	2018년 8월 13~19일	
일간베스트	142(1,183) 12.0%	2(2,565) 0.1%	5(2,999) 0.2%	134(1,630) 8.2%	283(8,377) 3.4%
개드립넷	35(1,285) 2.7%	1(1,283) 0.1%	24(1,696) 1.4%	53(793) 6.7%	113(5,057) 2.2%
주식갤러리	134(1656) 8.1%	없음 -	1(467) 0.2%	65(301) 21.6%	200(2,424) 8.3%
루리웹	30(655) 4.6%	3(26) 11.5%	1(594) 0.2%	27(402) 6.7%	61(1,677) 3.6%
합계	341(4,779) 7.1%	6(3,874) 0.2%	31(5,756) 0.5%	279(3,126) 8.9%	

주) 분석한 게시물(전체 게시물)

〈표 Ⅲ-2〉 데이터 분류 기준

1차 분류	2차 분류(무엇을/내용)		3차 분류(어떻게/방법)	
여성 대상 온라인 성희롱	단순욕설		1) 글 2) 이미지 3) 동영상 4) 글 + 이미지 5) 글 + 동영상 6) 이미지 + 동영상 7) 글+이미지 + 동영상	
	모욕			
	비하			
	증오선동			
여성 대상 온라인 성폭력	촬영물 이용 성폭력	촬영		1) 신체적 2) 언어적 3) 행위적
		유포/재유포		
		유포 협박		
	유통/소비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온라인 여성혐오	차별적 괴롭힘			
	차별표시			
	공개 멸시·모욕·위협			
	증오선동			

출처: 이수연(2014)와 홍성수(2016,26) 혐오표현의 유형(차별적 괴롭힘, 차별표시, 공개적 멸시·모욕·위협, 증오선동)을 개념을 참고해 구성함.

## 2) 코더간 신뢰도

코더들은 내용분석 변인의 정의 및 구성 개념 그리고 구체적인 코딩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고, ‘디시인사이드’와 ‘일간베스트’ 게시물 20건을 개별적으로 코딩한 후, 일치도 여부를 확인했다. 1차 코딩 결과에서 불일치를 보인 유목에 대해서는 토의를 거쳐 개념을 재정의한 뒤, 코더에게 교육을 다시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전과 다른 게시물 20건을 무작위로 표집한 뒤 2차 코딩을 실시하여 코더간 일치도를 측정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최종 분석 유목을 확정했고, 이들 분석 유목을 대상으로 코더 간 신뢰도를 테스트했다. 코더 간 신뢰도(Cohen, 1960)는 최저 .78에서 최고 1.0을 기록했다. 코딩이 끝난 뒤 각 코더들로 하여금 처음 코딩을 실시했던 게시물을 다시 코딩하도록 하여 코더 자신의 내적 일치도를 높이는 작업을 병행했다. 코더 간 신뢰도는 코헨의 카파계수(Cohen’s Kappa)를 계산함으로써 측정했다.

$$Kappa = Po - Pe / 1 - Pe$$

$Po$  = 관찰 일치

$Pe$  = 기대 일치

〈표 Ⅲ-3〉 일부 변인별 코더 간 신뢰도

변인	신뢰도
키워드 내용	0.879
게시유형 구성	0.829
게시물 내용(피해발생공간)	0.781

### 3) 분석 사이트 개요

#### (1) 일간베스트저장소<sup>45)</sup>

2010년 디시인사이드 코미디 프로그램 갤러리 사용자들이 분리되어 개설된 유머, 정치 커뮤니티로 2018년 7월 기준 웹페이지 커뮤니티 규모 순위 3위(33.6m), 월 방문자 수는 2213만 명, 하루 평균 약 73만8천명이 이용하고 있다(similarweb 기준).<sup>46)</sup> 회원가입이나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게시글 읽기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커뮤니티 참여가 용이하다. 일간베스트, 짤방, 정배, 정치, 식도락, 여행, 애니, 주식, 걸그룹·연예인, 패션·미용, 게임, 롤 등 총 12개 게시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일간베스트 게시판의 경우, 다른 게시판 게시물 중 일정 추천 수 이상의 게시물이 모인 베스트 게시판이라는 점에서 일간베스트저장소의 대표적인 게시판이다. 최근 온라인 성폭력 사건 수사를 의식해, ‘처벌을 피하는 법’이란 제목의 글들이 일간베스트 사이트와 소셜미디어에서 확산되자, 2018년 11월 21일 JTBC뉴스룸 <팩트체크>에서는 해당 게시글의 사실 여부를 가리기도 했다<sup>47)</sup>.

#### (2) 개드립넷<sup>48)</sup>

디시인사이드에서 파생된 유머게시글 커뮤니티로 2010년 7월부터 오픈된 중 소형 커뮤니티 사이트로 2018년 8월 25일 현재 국내 커뮤니티 링크 56위, 월 이용자 수 845만명(2018년 2월 615만명에서 증가 추세)이다. 총 21개의 게시판(개드립, 유저 개드립, 읽을 거리판, 큰술 게임판, 게임연재/정보 판, 익명 판, 고민 판, 게임 판, 모바일 게임 판, 컴퓨터/IT판, 창작 판, 덕후 판, 영화 판, 음악 판,

45) 홈페이지 <http://www.ilbe.com/>

46) <https://www.similarweb.com/>

47) 그 결과 성폭력 관련 동영상은 인터넷에서 공유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되며, 올렸던 게시물을 삭제해도 기술적 복구가 가능해 범죄 혐의가 성립된다.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친고죄 주장도, 성범죄의 경우 친고죄가 2013년에 폐지되었고, 휴대전화로 없애면 증거가 없어져 처벌이 안된다는 소문은 잘 못된 것으로 서버와 IP를 통해 최초 게시자는 물론 유포자까지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증거물을 없앤 사실이 드러나면 증거인멸이 추가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출처: JTBC. 2018.11.21. [팩트체크] ‘처벌 피하는 법’ 공유하는 일간베스트...확인해보니 <http://news.jtbc.joins.com/html/642/NB11731642.html>

48) 홈페이지 <https://www.dogdrip.net/>

요리 판, 정치 사회판, 젠더 이슈판, 스포츠 판, 짤방 판, 시간 때우기 판, 공지 사항 판) 중, 여성 희롱·폭력, 혐오 관련 게시물은 개드립넷의 대표 게시판인 ‘개드립’과 ‘젠더 이슈판’, ‘익명 판’ 중심으로 운영된다. ‘유저 개드립’판에서 혐오·증오·비하·경멸 관련 게시글과 댓글 주의사항 공지하여 자체 필터링 진행하고 있으나 성희롱이나 성폭력 관련 게시글에 관한 규칙이나 주의사항 부재한 상황이며, ‘익명’ 게시판은 온라인 특성인 ‘익명성’이 극대화된 게시판의 특성 때문에 성희롱과 성폭력 관련 게시글이 쉽게 발견된다.

### (3) 디시인사이드<sup>49)</sup>

2000년 (주)디지털인사이드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디시인사이드는 2009년 1월부터 현재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국내 최대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는 시기별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신조어와 은어 등을 만들어 냈다. 디시인사이드는 주제별 게시판을 ‘갤러리’라고 부르고 있는데, 주식갤러리는 말 그대로 주식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갤러이지만, 현재는 주식 관련 정보보다는 정치·사회 관련 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혐오와 비하의 글들 또한 적잖게 존재한다. 예를 들면 주식갤러리는 여성의 성기를 뜻하는 단어에 ‘혐오’, ‘매트릭스’ 등의 단어를 합성한 ‘보혐’, ‘보트릭스’, 주식용어인 상장폐지와 여성을 결합한 ‘상폐녀’ 등의 표현을 만들었고, 주식갤러리에서 만든 일련의 혐오표현들은 일간베스트, 보배드림 등의 커뮤니티에서도 종종 사용한다.

또한 디시인사이드는 일정 개수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만 하는 ‘개념글’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이는 게시물만이 아닌 댓글을 통해 반응을 유도하고 증폭하는 커뮤니티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4) 루리웹<sup>50)</sup>

콘솔 게임 커뮤니티로 시작해, 다수의 남초 커뮤니티와 마찬가지로 유머게시판과 종합게시판을 중심으로 여성혐오 발언이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강남역 살인과 넥슨의 온라인 액션게임 ‘클로저스’에서 ‘티나’ 목소리를 맡았던 김자연

---

49) 홈페이지 <https://www.dcinside.com/>

50) 홈페이지 <http://bbs.ruliweb.com/>

성우 교체(Girls Do Not Need A PRINCE 티셔츠 인증)를 비판하는 여성들을 비난했으며, 남성 유저들이 주요 고객인 게임업계 특성을 반영해 여성혐오 논쟁을 주도한다. 특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성폭력 사건 등을 두고 피해자가 꽃뱀이라고 주장하거나, 강남역 살인 사건이 여성혐오 살인이 아니라는 관점을 취한다.

## 2. 분석 결과

### 1) ‘강남역 살인사건’에 대한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표현

강남역 살인사건에 대한 4개 사이트에서 나타난 게시글 현황은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4개 사이트 모두 2016년 게시글이 가장 많았고, 2017년엔 희생자 추모 1주년 모임이 있었음에도 대통령 선거와 전임 대통령 구속 등 큰 뉴스로 인해, 관련 게시글이 급격히 줄었다. 하지만 2018년 추모 2주년에는 상반기부터 미투와 몰카에 대한 사건이 보도되면서 다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일간베스트의 경우 4개 사이트 중 2016년 142건(1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식갤러리가 134건(8.1%)으로 많았다.

〈표 Ⅲ-4〉 강남역 살인사건에 대한 사이트 분석 게시글 현황

분석 사이트	강남역 살인사건			합계
	2016년 5월 18~30일	2017년 5월 18일~30일	2018년 5월 18~30일	
일간베스트	142(1,183) 12.0%	2(2,565) 0.1%	5(2,999) 0.2%	149(6,747) 2.2%
개드립넷	35(1,285) 2.7%	1(1,283) 0.1%	24(1,696) 1.4%	60(4,264) 1.4%
주식갤러리	134(1656) 8.1%	없음 -	1(467) 0.2%	135(2,123) 6.4%
루리웹	30(655) 4.6%	3(26) 11.5%	1(594) 0.2%	34(1,275) 2.7%
합계	341(4,779) 7.1%	6(3,874) 0.2%	31(5,756) 0.5%	

주) 분석한 게시글(전체 게시글)

## (1) 일간베스트저장소의 일간베스트

분석기간 동안 일간베스트의 특징을 보면, 여성의 노출 사진 등으로 관심 및 추천을 유도하는 경향이 많았다. 혐오 게시글에 성희롱적 댓글이 달리는 등 게시글과 댓글의 방향이 복잡했고, 게시글의 내용과 상관없이 댓글 작성자 간 비방이나 공방전이 되는 경우도 나타났다. 특히 강남역 추모 시위에 참가한 여성과 시위 참가자의 이름 및 소속까지 공개하며 여성혐오를 조장하는 경우가 발견되었다.

## (2) 개드립넷의 개드립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에 대한 관심 유도 목적의 글<sup>51)</sup>과 여성 시위대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며 사건의 본질을 벗어나는 게시글<sup>52)</sup>이 동시에 나타났다. 개드립 유저들은 강남역 살인 일간베스트 커뮤니티 이용자로 의심되는 게시글 및 댓글을 배척하여 개드립넷의 일간베스트저장소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모습을 보였고, 게시글의 경우, 직접 작성하는 형태가 아니라 타 사이트 게시물을 인용해 개인 의견 피력하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익명친목게시판’에서는 공공장소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희롱 및 혐오 발언을 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그림 Ⅲ-1] 개드립넷의 익명친목 게시판<sup>53)</sup>

51) 개드립 2016년 5월 21일, ‘나도 1인 시위 가본다’ <http://www.dogdrip.net/98105403>

52) 2016년 5월 22일 ‘제목에 강남역 들어갈 때 몇몇 개드립퍼들 심정...’ <http://www.dogdrip.net/98180346>

53) <http://www.dogdrip.net/98800037>

### (3) 디시인사이드의 주식갤러리

주식갤러리 이용자의 정치 성향은 정권별, 시기별 유입 집단에 따라 변화가 잦았지만 여성, 특히 한국 여성혐오 정서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 여성이기에 살해당했다는 주장과 조현병 환자의 무차별 살인이었다는 주장이 강하게 충돌한 2016년 강남역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대표적 ‘남초’ 커뮤니티로 여성혐오표현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sup>54)</sup>

디시인사이드의 주식갤러리에서 드러난 여성희롱 및 혐오표현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의 외모에 대한 비하/멸시/차별 표현이다. 즉 강남역 살인사건 추모를 위해 나선 여성들, 즉 공격 대상으로 삼은 여성들을 ‘폐쇄지’, ‘폐오후’, ‘폐오후’, ‘폐지년’, ‘쿵쿵쿵’, ‘보도블럭 박살’ 등의 표현으로 공격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면 강남역 현장을 담은 여러 사진 중 추모를 위해 찾은 여성의 외모(몸매)를 부각한 사진을 함께 포함한다거나, 여성혐오 살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여성 일간베스트 유저들의 외모(얼굴/몸매)와 비교하고, 여성혐오 살인을 주장하는 여성들에 대해 맥락 없는 외모 공격을 하는 식이다. 실제로 여성혐오 키워드 내용 빈도분석에서 ‘신체적 공개멸시모욕’(23회, 18.7%)이 ‘언어적 차별적 괴롭힘’과 함께 ‘신체적 차별적 괴롭힘’ 이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성적 비하 표현. 주식갤러리는 ‘보혐’, ‘보트릭스’ 등 여성의 성기와 관련한 혐오표현이 시작된 곳으로, ‘보슬아치’, ‘보지년’, ‘보적보’, ‘보중жат대’ 등 성기와 관련한 욕설이나 모욕 표현 등이 많았다. 실제 여성혐오 키워드 내용 분석에서 ‘신체적 차별적 괴롭힘’(28회, 22.8%)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셋째, 강남역 살인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로 규정하며 추모에 나선 이들이나 강남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한국 사회의 여성혐오와 젠더 불평등 등을 언급하는 글에 대해 외모에 대한 비하를 통해 수치심을 안기는 동시에 인간 이하 비이성의 존재로 규정하기 위함으로 읽히는 ‘폐갈’과 ‘폐지’의 합성어인 ‘폐폐지’라는 단어의 등장 빈도가 8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밖에 비만 여성의 신체 반응을 비하한 표현인 ‘폐오후’ 등도 이와 같은 맥락의 혐오로 분석 가능했다. 또한 여성의 성기와 관련한 욕설이나 비하 표현(보빨,

54) [http://gall.dcinside.com/board/lists/?id=stock\\_new2](http://gall.dcinside.com/board/lists/?id=stock_new2)

보지, 보지년, 보적보, 보증жат대 등)을 여러 형태로 변주한 모습이 많았다.



[그림 Ⅲ-2] <디시인사이드 주식갤러리 사례 5> 역사에 남을 트윗 (2018년 5월 20일)<sup>55)</sup>

#### (4) 루리웹의 베스트

루리웹은 여타 커뮤니티 사이트(일간베스트, 개드립넷, 디시인사이드)에 비해 비교적 강남역 살인사건을 비롯한 모든 혐오표현에 대한 발언이 자제되는 분위기였다. 운영자가 직접 게시글을 올려서 강남역 살인사건에 대한 언급을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하거나, 사이트 이용자들 사이에서도 자체적으로 욕설이나 증오선동적인 표현에 대해 정화시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강남역 살인사건 게시글에서 여성혐오표현 및 언어적 공개 멸시·모욕·비하 표현을 찾을 수 있었다.

55) <https://bit.ly/2B4Hfr1>

○ 제목: “강남역 사건에 사이다 날린 여자”<sup>56)</sup> ○ 제목: “강남역 점점 가관”<sup>57)</sup>



[그림 Ⅲ-3] 루리웹 베스트의 여성혐오표현 사례

〈표 Ⅲ-5〉 강남역 살인사건에 대한 사이트별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 현황

(단위: 건(%))

	일간베스트	개드립넷	DC인사이드	루리웹	합계
성희롱	4(2.7)	5(8.3)	12(8.9)	1(2.9)	22(5.8)
성폭력	2(1.3)	-	-	-	2(0.5)
여성혐오	143(96.0)	55(91.7)	123(91.1)	33(97.1)	354(93.7)
합계	149(100.0)	60(100.0)	135(100.0)	34(100.0)	378(100.0)

$\chi^2 = 9.157, p < .1$

강남역살인 사건에 대한 사이트별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 관련 게시글 현황을 보면, 4개 사이트 중 일간베스트와 DC인사이드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 중에서도 여성혐오 게시글이 일간베스트는 143건(96%), 개드립넷은 55건(91.7%), DC인사이드 123건(91%) 그리고 루리웹은 33건(97.1%)으로 전체 게시글의 다수를 차지했다.

〈표 Ⅲ-6〉 강남역 살인사건에 대한 사이트별 게시 유형

(단위: 건(%))

	일간베스트	개드립넷	DC인사이드	루리웹	합계
게시글	94(63.1)	16(26.7)	49(36.3)	4(11.8)	163(43.1)
댓글	55(36.9)	44(73.3)	86(63.7)	30(88.2)	215(56.9)
합계	149(100.0)	60(100.0)	135(100.0)	34(100.0)	378(100.0)

$\chi^2 = 47.035, p < .000$

56) <http://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713/read/30146852?>

57) <http://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713/read/30138267?>

일간베스트의 게시글과 댓글의 비중이 63.1% 대 36.9%로 게시글 비중 압도적 인데, 이는 다른 분석대상 사이트 양상과 상반된 결과이다. 원인으로서는 분석대상 으로 선정한 일간베스트 게시판이 일정수준 이상의 추천수를 확보한 게시물이 라는 점에서 혐오 키워드가 추천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해석된다. 한편 개드립 넷의 여성혐오 용어의 게시글과 댓글의 비중 분석 결과, 총 60건 중에서 댓글이 44건(73.3%), 게시글이 16건(26.7%)으로 댓글 비중이 월등히 높다. 디시인사이드 의 경우엔 총 135건 중 댓글이 86건(63.7%), 게시글 49건(36.3%)으로 댓글 비중 이 두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일정 개수 이상의 추천을 받은 게시글인 개념글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으로, 게시물에 대해 댓글로 반응하는 과 정에서 여성혐오 용어들이 반복 또는 증폭하며 등장했다고 보인다.

일간베스트의 경우, 신체적 여성혐오(56건, 37.6%)와 언어적 여성혐오(68건, 45.6%)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디시인사이드 주식갤러리는 여성혐오 키워드가 123건(91.1%)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교차 분석 결과 다른 사이트에 비해 성희 롱 키워드도 12건(8.9%)로 다소 높았다. 게시유형이 ‘게시글’인 경우 이런 경향이 두드러졌는데, 게시글과는 상관없이 여성의 신체의 특정 부위를 강조하는 사진 을 첨부하거나 여성혐오 살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여성들(일간베스트 회원)의 신체를 부각하는 제목이나 글과 함께 게시하는 등의 모습이었다. 한편 루리웹의 경우 34건 모두 여성을 타겟으로 하고 있었으며 희롱적 표현이 1건(2.9%), 혐오 적 표현이 33건(97.1%)으로 나타났다.

〈표 Ⅲ-7〉 강남역 살인사건에 대한 사이트별 게시 세부내용

(단위: 건(%))

	일간베스트	개드립넷	DC인사이드	루리웹	합계
신체적 성희롱	4(2.7)	1(1.6)	13(9.6)	1(2.9)	19(5.0)
언어적 성희롱	-	1(1.7)	-	-	1(0.3)
행위적 성희롱	1(0.7)	2(3.3)	-	-	3(0.8)
행위적 성폭력	2(1.3)	-	-	-	2(0.5)
신체적 여성혐오	56(37.6)	19(31.7)	49(36.3)	7(20.6)	131(34.5)
언어적 여성혐오	68(45.6)	23(38.3)	41(30.4)	23(67.7)	155(41.0)
행위적 여성혐오	18(12.1)	14(23.3)	32(23.7)	3(8.8)	67(17.7)
합계	149(100.0)	60(100.0)	135(100.0)	34(100.0)	378(100.0)

$\chi^2 = 44.626, p < .0000$

〈표 Ⅲ-8〉 개드립넷의 강남역 살인사건에 대한 게시 구성별 여성혐오 세부 유형  
(단위: 건(%))

	글	글+이미지	글+동영상	합계
신체적 차별적 괴롭힘	6(12.8)	-	-	6(10.9)
언어적 차별적 괴롭힘	7(14.9)	-	-	7(12.7)
행위적 차별적 괴롭힘	2(4.3)	-	-	2(3.6)
언어적 차별표시	2(4.3)	2(33.3)	-	4(7.3)
신체적 공개털시모욕	13(27.7)	-	-	13(23.6)
언어적 공개털시모욕	8(17.0)	1(16.7)	2(100.0)	11(20.0)
행위적 공개털시모욕	7(14.9)	3(50.0)	-	10(18.2)
행위적 증오선동	2(4.3)	-	-	2(3.6)
합계	47(100.0)	6(100.0)	2(100.0)	55(100.0)

$\chi^2 = 22.069, p < .1$

개드립넷에서 확인된 키워드를 ‘신체적’ ‘언어적’ ‘행위적’ 하위 범주로 세분화하여 코딩한 결과, 총 60건 키워드 중, 여성혐오 관련 키워드가 55건, 성희롱 5건 노출, 이는 여성혐오로 대표되는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으로 검색된 게시물에서 추출한 키워드라는 점에서 여성혐오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표 Ⅲ-8>의 여성혐오 키워드와 게시물 유형을 교차 분석한 결과, 신체적 공개털시 모욕을 나타낸 문장 형태가 13건으로 최다,<sup>58)</sup> 언어적 공개털시 모욕을 나타낸 게시물<sup>59)</sup>이 8건, 행위적 공개털시 모욕을 나타낸 문장<sup>60)</sup> 형태가 7건 차지했다.

58) 해당사례: 2016년 5월 23일 ‘ㄸㄸㄸㄸ 충들 진짜 워태지였던거냐’ 등 [http://www.dogdrip.net/index.php?mid=dogdrip&sort\\_index=popular&page=26&document\\_srl=164346054](http://www.dogdrip.net/index.php?mid=dogdrip&sort_index=popular&page=26&document_srl=164346054)  
 59) 해당사례: 2018년 5월 20일 ‘페미나치들 지랄발광 떠는 거 보면 단편적으로 개준같은 기분 들었는데’, <http://www.dogdrip.net/164086024>  
 60) 해당사례: 2016년 5월 26일 ‘아 몰랑! 이거 무조건 응급실 잘못이야! 빼애애액!’, <http://www.dogdrip.net/98523355>

〈표 Ⅲ-9〉 디시인사이드의 강남역 살인사건에 대한 게시 구성별 여성혐오 세부 유형

(단위: 건(%))

	글	이미지	동영상	글+이미지	글+이미지 +동영상	합계
신체적 차별적 괴롭힘	22(22.9)	-	1(100.0)	5(22.7)	-	28(22.8)
언어적 차별적 괴롭힘	17(17.7)	-	-	6(27.3)	-	23(18.7)
행위적 차별적 괴롭힘	18(18.8)	-	-	1(4.6)	1(50.0)	20(16.3)
신체적 공개털시모욕	14(14.6)	2(100.0)	-	7(31.8)	-	23(18.7)
언어적 공개털시모욕	17(17.7)	-	-	-	-	17(13.8)
행위적 공개털시모욕	1(1.0)	-	-	-	1(50.0)	2(1.6)
행위적 증오선동	7(7.3)	-	-	3(13.6)	-	10(8.1)
합계	96(100.0)	2(100.0)	1(100.0)	22(100.0)	2(100.0)	123(100.0)

$\chi^2 = 55.500, p < .000$

디시인사이드는 여성혐오 키워드와 게시유형을 교차 분석한 결과 여성의 성기를 이용하거나 여성의 몸매 등을 비교·혐오하는 ‘신체적 차별적 괴롭힘’(28건, 22.8%/보지, 보지년, 보슬아치 등, 여성 외모 비교 동영상(강남역을 바라보는 정상인의 심정, 2016년 5월 19일 <https://bit.ly/2B0BJ8Y>)과 ‘언어적 차별적 괴롭힘’(23건, 18.7%/메갈, 메갈충, 페미나치 등), ‘신체적 공개털시모욕’(23건, 18.7%/메돼지, 족발년 등) 등이 높게 나타났다.

〈표 Ⅲ-10〉 강남역 살인사건에 대한 사이트별 키워드 유형

(단위: 건(%))

	일간베스트	개드립넷	DC인사이드	루리웹	합계
합성어	12(8.7)	4(7.0)	18(16.5)	1(3.6)	35(10.5)
중의어	2(1.5)	4(7.0)	3(2.8)	1(3.6)	10(3.0)
파괴어	2(1.5)	-	1(0.9)	1(3.6)	4(1.2)
축약어	18(13.0)	3(5.3)	13(11.9)	2(7.1)	36(10.8)
외래어	35(25.4)	25(43.9)	35(32.1)	-	95(28.6)
기호어	2(1.5)	2(3.5)	2(1.8)	-	6(1.8)
비속어	61(44.2)	12(21.1)	28(25.7)	21(75.0)	122(36.8)
의성·의태어	6(4.4)	7(12.3)	9(8.3)	2(7.1)	24(7.2)
합계	138(100.0)	57(100.0)	109(100.0)	28(100.0)	332(100.0)

$\chi^2 = 54.737, p < .000$

일간베스트의 키워드 표현형식 비중 코딩 결과, 비속어(61건, 44.2%) 남발, 외래어(25.4%), 축약어(18건, 13.0%), 합성어(12건, 8.7%) 순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여성 비하적 표현인 비속어를 혐오표현으로 선호하는 경향. 특히 최근 메갈리안과 워마드 등 남성 혐오를 지향하는 특정 커뮤니티를 표적화한 키워드들이 외래어와 합성어, 축약어의 혼종 형태(메갈충, 험마드, 워태지 등)로 나타났다.

개드립넷의 키워드 표현형식 비중 코딩 결과, 외래어 25건(43.9%), 비속어 12건(21.1%), 의성·의태어(예: 쿵광쿵광, 빼애애액, 메오후 등) 7건(12.3%), 합성어와 중의어(예: 홍콩, 암세포 등) 각각 4건(7%), 축약어 3건(5.3%), 기호어 2건(3.5%)으로 확인됐다.

한편 루리웹의 경우 다른 분석대상 사이트의 게시물에서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합성어, 외래어, 기호어 등의 표현이 많지 않았다는 것이 루리웹 사이트만의 차별화된 특징으로 보인다. 디시인사이드 주식갤러리의 키워드 유형을 분석한 결과 외래어(35건, 32.1%)와 비속어(28건, 25.7%), 합성어(18건, 16.5%)가 많았다. 메갈리안, 워마드 등과 같은 특정 커뮤니티를 표적화 하고 여기에 ‘~녀’, ‘~년’ 등의 비속어를 결합한 형태가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Ⅲ-11〉 강남역 살인사건에 대한 게시 세부내용별 키워드 유형

(단위: 건(%))

	신체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행위적 성희롱	신체적 여성혐오	언어적 여성혐오	행위적 여성혐오	합계
합성어	1(11.1)	-	-	11(9.8)	9(5.9)	14(25.9)	35(10.5)
중의어	1(11.1)	1(100.0)	1(33.3)	4(3.6)	2(1.3)	1(1.9)	10(3.0)
파괴어	-	-	-	1(0.9)	3(2.0)	-	4(1.2)
축약어	2(22.2)	-	1(33.3)	11(9.8)	7(4.6)	15(27.8)	36(10.8)
외래어	4(44.4)	-	1(33.3)	40(35.7)	37(24.2)	13(24.1)	95(28.6)
기호어	-	-	-	-	4(2.6)	2(3.7)	6(1.8)
비속어	1(11.1)	-	-	32(28.6)	85(55.6)	4(7.4)	122(36.8)
의성·의태어	-	-	-	13(11.6)	6(3.9)	5(9.3)	24(7.2)
합계	9(100.0)	1(100.0)	3(100.0)	112(100.0)	153(100.0)	54(100.0)	332(100.0)

$\chi^2 = 131.497, p < .000$

〈표 Ⅲ-12〉 ‘강남역 살인사건’에 대한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표현 사례들

게시판	키워드
일간베스트저장소의 일간베스트(일간베스트)	메갈년(메갈돼지년, 메갈뿔이논, 메갈충, 메라포밍, 메오후, 메갈대장), 김치년(혹은 김치녀), 메태(메태지년), 보지년, 꿀페미(꿀페미년), 보혐, 페미나치(페미나찌, 극페미나치년), 페미나치년(페미년), 메오후(메오후년), 뷔페미즘, 보슬아치, 보롱내, 살인충동, 보적보, 빼애액, 삼일한, 원태지
개드립넷의 개드립	메태지, 메오후, 파오후, 돼지년, 쿵광쿵광, 보도블럭 박살
디시인사이드의 주식갤러리	메태지(메팔계, 메틀러, 메페삼겹살), 보빨, 보빨당, 시체팔이(메갈시체팔이), 메오후(메오후 척살), 메갈년(메갈, 메갈버러지년, 메갈여시총), 고인능육, 쿵광쿵광, 쿵광, 쿵궁, 광광), 보지년(보지, 개보지년, 보치년, 헬보지년), 보적보, 보전개, 보중жат대, 아물랑, 오나홀, 상페여친년, 쓰레기년, 족발년, 좆양년페미
루리웹의 베스트	시발, 등신 등 단순 욕설적인

그 밖에 여성의 신체를 활용한 혐오표현의 변화로 ‘음부’를 근거로 한 표현 중심(보혐, 보롱내, 뿔이들 등)에서 비만여성 신체를 기호화한 혐오표현으로 이동(쿵광이, 쿵광쿵광, 메오후, 원태지, 메운족발 등)이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조치의 결과로, 심의제재를 염두에 둔 신조어, 은어, 축약어, 파괴어(ㅇㄱㄹㅇㅂㅂㅂㄱ, ㅇㅌㅌ, 네다보-네 다음 보지, 꾸르재프-꿀잼, 자모음 나열어 등)가 등장했다.

## 2) ‘미투’와 ‘몰카’ 사건에 대한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표현

2018년 1월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실을 폭로한 임은정 검사 사건을 시작으로 고은 시인, 이운택 극단 대표, 조민기 배우 겸 교수, 김기덕 감독의 ‘권력형 성폭력’ 사건이 연이어 언론에 나왔는데, 3월 5일에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정무비서 김지은 씨가 성폭력 피해 사실을 JTBC에서 밝히면서 성폭력 사건들이 주목을 받았다. 즉 모두 남성 권력자들로부터 성추행과 성폭력을 당한 여성의 사례들이어서 사회적으로 미투 운동은 여성의 문제로 축소되기도 했다. 그런데 남성이 피해자인 홍익대 누드모델 몰카(불법촬영) 사건이 발생한지 12일 만에 범인이 검거되자 많은 여성들은 경찰에게 “동일범죄 동일수사 동일 인권”을 촉구하며 5월부터 혜화동에서 열리는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에 참여하고 있다(전정윤, 2018년 5월 28일).<sup>61)</sup>

이에 연구는 두 번째 분석기간은 미투와 몰카에 대한 사회 논란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고, ‘미투’사건으로 대표되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무죄를 선고받은 8월 14일과, ‘몰카’사건으로 대표되는 홍대 모텔 촬영·유포 사건에 징역 10개월이 선고된 8월 16일이 포함된 8월 3째 주인 8월 13일부터 19일(7일)을 분석기간으로 잡았다. 분석기간 동안은 두 사건은 기존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 사건과 분리해서 보았다.

미투와 몰카에 대한 분석기간 동안 4개 사이트에 나타난 해당 게시글 비중을 보면 주식갤러리가 전체 301건 중 65건(21.6%)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일간베스트가 1,630건 중 134건(8.2%)으로 나타났고 개드립넷은 793건 중 53건(6.7%)으로 루리웹 402건중 27건(6.7%)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투와 몰카 사건에 대한 1차 법원 판결로 사회적 관심이 높았음에도 분석기간이 7일이었고, 미투와 몰카에 해당하는 사건을 위주로 엄격하게 선정해 분석하다 보니 체감하는 것보다 비율이 낮았다.

〈표 Ⅲ-13〉 미투와 몰카에 대한 사이트 분석 게시글 현황

분석 사이트	분석기간	미투와 몰카	
		2018년 8월 12~19일	
일간베스트		134(1,630)	8.2%
개드립넷		53(793)	6.7%
주식갤러리		65(301)	21.6%
루리웹		27(402)	6.7%
합계		279(3,126)	8.9%

주) 분석한 게시글(전체 게시글)

61) 전정윤. 처음부터 끝까지 ‘홍대 몰카범 수사’는 달랐다. 한겨레21. 2018년5월 28일,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5393.html](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5393.html)

〈표 Ⅲ-14〉 미투와 몰카 사건에 대한 사이트별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 현황

(단위: 건(%))

	성희롱	성폭력	여성혐오	합계
미투	3(10.0)	-	27(90.0)	30(100.0)
몰카	2(3.4)	8(13.6)	49(83.1)	59(100.0)
기타	73(38.4)	11(5.8)	106(55.8)	190(100.0)
합계	78(28.0)	19(6.8)	182(65.2)	279(100.0)

$\chi^2 = 38.209, p < .000$

4개 사이트에서 미투와 몰카 사건으로 집계된 게시글은 총 279건으로 여성혐오 182건(65.2%) 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성희롱 78건(28.0%), 성폭력 19건(6.8%)이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미투와 몰카 사건에 대한 여성혐오가 성희롱과 성폭력에 비해 많기는 하지만, 기타 사례가 미투와 몰카 사건에서 보다 많은 만큼, 온라인 커뮤니티의 성격에 상관없이 여성혐오가 가장 흔하게 일상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표 Ⅲ-15〉 4개 사이트의 미투와 몰카 사건 및 관련 게시 내용 현황

(단위: 건(%))

	일간베스트	개드립넷	DC인사이드	루리웹	합계
미투	8(6.0)	1(1.9)	15(23.1)	6(22.2)	30(10.8)
몰카	16(11.9)	5(9.4)	17(26.1)	21(77.8)	59(21.1)
기타	110(82.1)	47(88.7)	33(50.8)	-	190(68.1)
합계	134(100.0)	53(100.0)	65(100.0)	27(100.0)	279(100.0)

$\chi^2 = 98.137, p < .000$

일간베스트의 경우, 총 134건에서 미투나 몰카, 강남역 사건과 무관한 성희롱·성폭력 관련 키워드가 110건(82.1%)을 차지하였으며, 몰카 16건(11.9%), 미투 8건(6.0%) 순으로 나타났다. 개드립넷은 총 53건을 분석한 결과, 주요사건(강남역 살인사건·미투·몰카)에 포함되지 않는 성희롱·성폭력 관련 키워드가 47건(88.7%)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몰카 5건(9.4%)과 미투 1건(1.9%) 순으로 집계되었다. 일간베스트와 개드립넷의 경우, 미투나 몰카 관련 키워드

다 ‘기타’로 분류된 키워드가 82.1%(110건/ 134건), 88.7%(47건/53건)에 달하는 압도적 비율로 나타난 것이 눈에 띄는 결과이다.<sup>62)</sup> 미투, 몰카가 많이 노출된 다른 두 사이트와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즉 일간베스트, 개드립넷은 미투의 정치적 이슈화에 주목하지 않고 성희롱, 성폭력 관점에서 ‘불륜충’, ‘질투’ 등으로 사건을 굴절시키는 경향이 나타났다.

한편 디시인사이드 트위터 마이너 갤러리의 경우 총 65건 중 미투와 몰카 관련 키워드는 각각 15건(23.1%), 17건(26.1%)으로 나타났다. ‘기타’로 분류된 키워드가 압도적인 일간베스트와 개드립넷과는 다른 경향이다. 트위터 마이너 갤러리의 경우 ‘기타’ 분류 키워드에서도 성희롱이나 성폭력으로 분류 가능한 내용보다는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들에 대한 반발을 여성혐오표현으로 드러내는 모습이었다.

〈표 Ⅲ-16〉 4개 사이트의 미투와 몰카 사건 및 관련 게시 내용 중 피해자 특성

(단위: 건(%))

	여성	남성	아동	기타	합계
미투	27(90.0)	2(6.7)	-	1(3.3)	30(100.0)
몰카	55(93.2)	4(6.8)	-	-	59(100.0)
기타	177(93.2)	7(3.7)	3(1.6)	3(1.6)	190(100.0)
합계	259(92.8)	13(4.7)	3(1.1)	4(1.4)	279(100.0)

$\chi^2 = 4.280, p=n.s.$

전체 커뮤니티사이트 대상 분석 결과에서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는 평균 4.7%였지만 디시인사이드의 경우 6.2%으로 평균보다 다소 높았다. 이는 한국 사회의 여성혐오를 비판하고 페미니즘을 얘기하는 여성들에 대한 반발만큼 이 같은 주

62) 일간베스트에서 기타에 해당하는 경우는 ‘국제선 씹창년, 비행기 서빙년’: [https://www.ilbe.com/index.php?document\\_srl=10673816092&page=207](https://www.ilbe.com/index.php?document_srl=10673816092&page=207) ‘간호쫓무사’: [https://www.ilbe.com/index.php?document\\_srl=10673854335&page=228](https://www.ilbe.com/index.php?document_srl=10673854335&page=228) ‘보지교수’: [https://www.ilbe.com/index.php?document\\_srl=10685323905&page=213](https://www.ilbe.com/index.php?document_srl=10685323905&page=213) 등 여성의 직업과 관련된 키워드가 있으며, ‘허벌보지’: [https://www.ilbe.com/index.php?document\\_srl=10685628899&page=212](https://www.ilbe.com/index.php?document_srl=10685628899&page=212) ‘성욕처리변기’: <https://www.dogdrip.net/174383045> ‘쫓물탱크’([https://www.ilbe.com/index.php?document\\_srl=10685323905&page=213](https://www.ilbe.com/index.php?document_srl=10685323905&page=213)) 등 여성을 성희롱의 대상으로 희화화, 폄하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의·주장에 동조하는 남성들에 대한 저항이 디시인사이드 안에서 거세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여권대 여성혐오 논란에 휩싸였던 배우 A씨의 정신 건강 상태를 추정 진단한 의사 B씨의 성폭행 의혹 보도에 ‘남페미 사이언스’(남성 페미니스트는 여성을 유혹하려는 목적으로 움직이는 이들이거나 잠재적 성범죄자)라고 조롱하거나, 페미니즘 관련 서적을 집필한 남성 교수를 향해 ‘미트코인’(페미니즘의 탈을 쓴 부정한 모금 혹은 페미니즘을 언급해 호구인 여성들을 상대로 쉽게 돈을 버는 방법)한다고 비판하는 식이다.

〈표 Ⅲ-17〉 4개 사이트의 미투와 몰카 사건 및 관련 게시 세부 내용 중 키워드 유형  
(단위: 건(%))

	신체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행위적 성희롱	언어적 성폭력	행위적 성폭력	신체적 여성혐오	언어적 여성혐오	행위적 여성혐오	합계
합성어	3(13.6)	2(13.3)	9(9.5)	-	4(33.3)	7(20.0)	11(12.1)	10(27.0)	39(16.7)
중의어	10(45.5)	6(40.0)	5(23.8)	1(100.0)	-	4(11.4)	4(4.4)	7(18.9)	37(15.8)
파괴어	2(9.1)	2(13.3)	1(4.8)	-	-	-	-	-	5(2.1)
축약어	4(18.2)	2(13.3)	6(28.6)	-	3(25.0)	5(14.3)	3(3.3)	5(13.5)	28(12.0)
외래어	3(13.6)	3(20.0)	4(19.1)	-	5(41.7)	8(22.9)	29(31.9)	9(24.3)	61(26.1)
기호어	-	-	1(4.8)	-	-	-	1(1.1)	-	2(0.9)
비속어	-	-	-	-	-	4(11.4)	37(40.7)	4(10.8)	45(19.2)
의성·의태어	-	-	2(9.5)	-	-	7(20.0)	6(6.6)	2(5.4)	17(7.3)
합계	22(100.0)	15(100.0)	21(100.0)	1(100.0)	12(100.0)	35(100.0)	91(100.0)	37(100.0)	234(100.0)

$\chi^2 = 130.697, p < .000$

4개 사이트의 전체 키워드 표현 유형을 여덟 개 유형으로 분석한 결과, 외래어 61건(26.1%)으로 최다 비중, 비속어 45건(19.2%), 합성어 39건(16.7%), 중의어 37건(15.8%), 축약어 28건(12.0%), 의성·의태어 17건(7.3%), 파괴어 5건(2.1%), 기호어 2건(0.9%)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다시 성희롱, 성폭력, 여성혐오 키워드 유형으로 살펴보면, 성희롱 관련 키워드 경우 중의어가 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폭력 키워드는 외래어 5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혐오 키워드는 외래어 46건과 비속어 45건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신체적, 언어적, 행위적 표현으로 키워드를 분류한 결과, 신체적 키워드에서는 ‘중의어 표현’이 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언어적 키워드에서는 비속어가 37건, 행위적 키워드에서는 합성어가 23건으로

최다 비중을 차지했다.

① 일간베스트저장소의 일간베스트(일간베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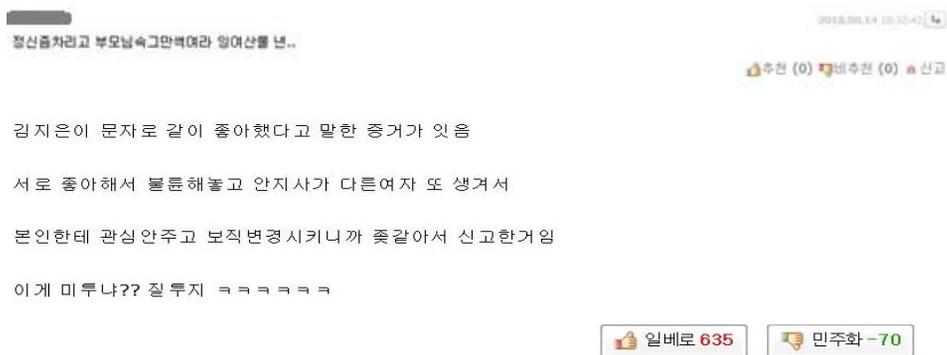
〈표 Ⅲ-18〉 일간베스트의 미투와 몰카 사건 및 관련 게시 내용 중 피해자 특성

(단위: 건(%))

	여성	남성	아동	합계
미투	8(100.0)	-	-	8(100.0)
몰카	15(93.8)	1(6.3)	-	16(100.0)
기타	105(95.5)	2(1.8)	3(2.7)	110(100.0)
합계	128(95.5)	3(2.2)	3(2.2)	134(100.0)

$\chi^2 = 2.093, p=n.s.$

일간베스트의 미투 사건 관련 키워드는 총 8건으로 모두 여성이 피해대상으로 나타났다. 몰카 사건 관련 키워드의 경우, 총 16건 중 15건(93.8%)이 여성을 피해대상으로 지목하였으며, 남성이 1건(6.3%)으로 나타났다. 기타의 경우, 총 110건 중 105건(95.5%)이 여성을 피해대상화한 키워드였으며, 남성은 2건(1.8%), 아동이 3건(2.7%)로 집계되었다. 일간베스트 사이트의 경우, 성희롱과 성폭력을 조장하는 표현을 무분별하게 남용하는 특징을 보였다.



〔그림 Ⅲ-4〕 일간베스트의 미투 관련 게시글<sup>63)</sup>

63) [https://www.ilbe.com/index.php?document\\_srl=10675936595&page=235](https://www.ilbe.com/index.php?document_srl=10675936595&page=235);  
[https://www.ilbe.com/index.php?document\\_srl=10676030879&page=234](https://www.ilbe.com/index.php?document_srl=10676030879&page=234)

마니 씨발 한사람 인생을 망쳤는데 겨우 징역10개월이 말미 되냐??

동일범죄 동일처벌 씨발년들아

<https://m.news.naver.com/read.nhn?sid1=102&oid=001&aid=0010266101&mode=LSD>



[그림 Ⅲ-5] 일간베스트의 몰카 관련 게시물<sup>64)</sup>

일간베스트는 미투 사건의 피해 여성을 쿵떡쿵떡, 잉여산물년, 질투라는 단어로 사용해 언급했으며, 몰카 관련 게시물에서는 동일범죄 동일처벌, 몰카범, 몰카충, 워태지, 페미년 등의 단어로 여성혐오를 표현했다. 분석기간 발견된 점 중, 특히 몰카 사건관련 키워드에 나타난 성폭력 표현(5건)과 일반적 성희롱·성폭력이 해당되는 기타 키워드에 나타난 성폭력(8건)의 경우, 비중은 높지 않으나 실제 범죄 유형에 해당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표 Ⅲ-19〉 일간베스트의 미투와 몰카 사건 및 관련 게시 내용 중 성희롱·성폭력 여성혐오 현황

(단위: 건(%))

	성희롱	성폭력	여성혐오	합계
미투	2(25.0)	-	6(75.0)	8(100.0)
몰카	1(6.3)	5(31.3)	10(62.5)	16(100.0)
기타	47(42.7)	8(7.3)	55(50.0)	110(100.0)
합계	50(37.3)	13(9.7)	71(53.0)	134(100.0)

$\chi^2 = 15.620, p < .01$

미투와 몰카 사건 및 기타로 분류한 키워드를 성희롱·성폭력·여성혐오 유형으로 분석한 일간베스트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미투 사건의 경우, 총 8건 중, 여성혐오 6건(75.0%), 성희롱 2건(25.0%)이 나타났다. 몰카 사건 관련 키워드의 경우,

64) [https://www.ilbe.com/index.php?document\\_srl=10674101161&page=228](https://www.ilbe.com/index.php?document_srl=10674101161&page=228)

총 16건에서 여성혐오 10건(62.5%), 성폭력 5건(31.3%), 성희롱 1건(6.3%)이 집계되었다. 미투나 몰카 사건과 무관한 키워드의 경우, 총 110건 중, 여성혐오 71건(53.0%), 성희롱 50건(37.3%), 성폭력 13건(9.7%)순으로 노출되었다.

그런데 수치를 보면, 미투나 몰카 등 주요사건 관련 키워드 보다는 해당 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키워드 노출이 일간베스트의 특징이다. 또한 미투나 몰카 사건 관련 키워드뿐 아니라 미투, 몰카 사건과 무관한 성희롱과 성폭력에 관련된 '기타'의 경우에도 '여성혐오' 유형의 키워드 비중(55건, 50%)이 높았다. 이는 단순 희롱이나 조롱 등 여성에 대한 희화화에 그치지 않고 여성을 물질화(ex:섹카)하거나 여성 비하적 발언으로 표현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Ⅲ-20〉 일간베스트의 미투와 몰카 사건 및 관련 게시 내용 중 여성혐오 유형

(단위: 건(%))

	신체차별 괴롭힘	언어차별 괴롭힘	언어차별 표시	신체공개 털시모욕	언어공개 털시모욕	행위공개 털시모욕	행위증오 선동	합계
미투	-	2(33.3)	1(16.7)	-	2(33.3)	1(16.7)	-	6(100.0)
몰카	-	2(20.0)	-	3(30.0)	3(30.0)	1(10.0)	1(10.0)	10(100.0)
기타	2(3.6)	9(16.4)	1(1.8)	25(45.5)	10(18.2)	4(7.3)	4(7.3)	55(100.0)
합계	2(2.8)	13(18.3)	2(2.8)	28(39.4)	15(21.1)	6(8.5)	5(7.0)	71(100.0)

$\chi^2 = 11.281, p=n.s.$

'몰카' '미투' '기타' 키워드 중, '여성혐오' 표현의 하위 범주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일간베스트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총 6건의 미투 사건 관련 키워드 중 언어적 차별적 괴롭힘과 언어적 공개털시모욕이 각각 2건(각각 33.3%)이며, 언어적 차별표시와 행위적 공개털시 모욕이 각각 1건(16.7%)으로 나타났다. 총 10건의 몰카사건 관련 키워드 중, 신체적 공개털시 모욕과 언어적 공개털시 모욕이 각각 3건(각각 30.0%), 언어 차별적 괴롭힘 2건(20.0%), 행위적 공개털시모욕과 행위적 증오선동이 각각 1건(각각 10.0%)노출되었다. 사건과 무관한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는 키워드 55건 중에서는 신체적 공개털시 모욕 25건(45.5%)으로 전체 비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언어적 공개털시 모욕 10건(18.2%), 언어 차별적 괴롭힘 9건(16.4%), 행위적 공개털시모욕과 행위적 증오선동이 각각 4건(7.3%/5%), 신체 차별적 괴롭힘 2건(3.6%), 언어 차별표시 1건

(1.8%) 순으로 집계되었다. 신체공개털시모욕에 해당하는 25건의 경우 ‘보적보’, ‘보롱내’, ‘보징내’ 등 여성의 특정부위에 대한 표현과 ‘오크크롤’, ‘강남성괴’ 등 동물로 표현하는 경우, ‘웁태지’, ‘메태지’, ‘보라니’ 등 동물로 표현하는 경우, ‘틀딱년’, ‘씹딱대加里년’ 등 욕설 표현 등이 있다.

〈표 Ⅲ-21〉 일간베스트의 미투와 몰카 사건 및 관련 게시 내용 중 여성혐오표현 유형  
(단위: 건(%))

	신체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행위적 성희롱	행위적 성폭력	신체적 여성혐오	언어적 여성혐오	행위적 여성혐오	합계
합성어	2(11.8)	2(18.2)	1(7.7)	3(37.5)	6(22.2)	4(13.8)	4(36.4)	22(19.0)
중의어	7(41.2)	4(36.4)	4(30.8)	-	4(14.8)	4(13.8)	2(18.2)	25(21.6)
파괴어	2(11.8)	1(9.1)	1(7.7)	-	-	-	-	4(3.5)
축약어	3(17.7)	2(18.2)	3(23.1)	3(37.5)	5(18.5)	1(3.5)	2(18.2)	19(16.4)
외래어	3(17.7)	2(18.2)	2(15.4)	2(25.0)	6(22.2)	8(27.6)	-	23(19.8)
기호어	-	-	1(7.7)	-	-	-	-	1(0.9)
비속어	-	-	-	-	2(7.4)	11(37.9)	1(9.1)	14(12.1)
의성·의태어	-	-	1(7.7)	-	4(14.8)	1(3.5)	2(18.2)	8(6.9)
합계	17(100.0)	11(100.0)	13(100.0)	8(100.0)	27(100.0)	29(100.0)	11(100.0)	116(100.0)

$\chi^2 = 67.646, p < .01$

일간 베스트에서 사용되는 성관련 키워드 표현을 8가지 유형(합성어, 중의어, 파괴어, 축약어, 외래어, 기호어, 비속어, 의성·의태어)으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8가지 키워드 유형의 빈도수는 중의어 25건(21.6%), 외래어 23건(19.8%), 합성어 22건(19.0%), 축약어 19건(16.4%), 비속어 14건(12.1%), 의성·의태어 8건(6.9%), 파괴어 4건(3.6%), 기호어 1건(0.8%)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다시 내용 측면의 9가지 하위범주(신체적 성희롱·언어적 성희롱·행위적 성희롱·신체적 성폭력·언어적 성폭력·행위적 성폭력·신체적 여성혐오·언어적 여성혐오·행위적 여성혐오)로 구분한 결과, 합성어의 경우 총 22건 중에서 신체적 여성혐오에 해당하는 키워드가 6건(22.2%)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의어의 경우 총 25건 중, 신체적 성희롱 관련 키워드가 7건(41.2%)으로 최다 노출되었다. 일간베스트의 ‘중

의어'에 해당하는 대표 사례를 보면, '재기', '밀크탱크', '잔치국수', '전복', '살주사', '하프백마', '강약중강약', '복숭아', '빗살무늬토기' 등이 있는데, 중의어나 합성어, 축약어의 과다 비중은 직접적 표현(비속어 or 외래어)에 비해 심의나 처벌 기준에서 벗어나기 위한 특정 커뮤니티 사이트에서의 진화된 대책(자구책)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김치녀', '상폐녀' 등 특정 키워드에 편중되던 기존의 표현 방법에서 벗어나 키워드 유형과 사례를 다양하게 변형시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 ② 개드립넷의 개드립

〈표 Ⅲ-22〉 개드립넷의 미투와 몰카 사건 및 관련 게시 내용 중 피해자 특성

(단위: 건(%))

	여성	남성	기타	합계
미투	-	-	1(100.0)	1(100.0)
몰카	4(80.0)	1(20.0)	-	5(100.0)
기타	41(87.2)	3(6.4)	3(6.4)	47(100.0)
합계	45(84.9)	4(7.5)	4(7.5)	53(100.0)

$$\chi^2 = 13.868, p < .01$$

개드립넷의 경우, 미투 사건 관련 키워드는 총 1건으로 기타로 집계되었으며, 몰카 사건 관련 키워드의 경우, 총 5건 중, 여성 4건(80.0%), 남성 1건(20.0%)으로 나타났다. 기타의 경우, 총 47건 중, 41건(87.2%)이 여성을 피해 대상화한 키워드였으며, 남성과 기타가 각각 3건(6.4%)로 나타났다. 총 53건의 키워드 중, 84.9%에 해당하는 45건에서 여성이 피해대상으로 지목되었다.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성폭력 관련 표현(키워드 및 이미지, 동영상 등)에 해당하는 '기타'가 총 53건 중 41건으로 최다 비중. 해당 사례로 '조개구이', '손브라', '요분질'이 있는데, 남성을 대상으로 한 표현도 기타 3건, 몰카 1건이 노출되었다. 또한 기타에는 여성을 대상화하고 있지만, 피해 대상이 명확하게 노출되지 않았다.

〈표 Ⅲ-23〉 개드립넷의 미투와 몰카 사건 및 관련 게시 내용 중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 현황

(단위: 건(%))

	성희롱	성폭력	여성혐오	합계
미투	-	-	1(100.0)	1(100.0)
몰카	-	3(60.0)	2(40.0)	5(100.0)
기타	24(51.1)	3(6.4)	20(42.5)	47(100.0)
합계	24(45.3)	6(11.3)	23(43.4)	53(100.0)

$\chi^2 = 15.415, p < .01$

미투와 몰카 사건 및 기타로 분류한 키워드를 성희롱·성폭력·여성혐오 유형으로 분석한 개드립넷은 미투 사건의 경우, 여성혐오 1건(100.0%)이 유일하게 나타났으며, 몰카 사건 관련 키워드는 총 5건 중, 성폭력 3건(60.0%), 여성혐오 2건(40.0%)이 집계되었다. 미투나 몰카 사건과 무관한 총 47건의 키워드에서는 성희롱 24건(51.1%), 여성혐오 20건(42.5%), 성폭력 3건(6.4%) 순으로 나열되었다. 기타 유형에 해당되는 성희롱 키워드가 총 53건 중, 24건(45.3%)건으로 최다 비중이었으며, 해당 사례로는 ‘섯다’, ‘떡각’, ‘벗방’, ‘질싸’ 등이 있으며, 미투나 몰카 사건에 해당되는 키워드 비중(6건)이 낮았다. 오히려 ‘동일범죄 동일처벌’, ‘시선강간’, ‘몰카충’, ‘몸캠’ 등 게시글이 나타났고, 기타 유형의 키워드 중 성희롱 24건(45.3%)과 여성혐오 23건(43.4%)의 비중 차이 없었다.

〈표 Ⅲ-24〉 개드립넷의 미투와 몰카 사건 및 관련 게시 내용 중 여성혐오 유형

(단위: 건(%))

	신체차별 괴롭힘	행위차별 괴롭힘	언어차별 표시	신체공개 털시모욕	언어공개 털시모욕	행위공개 털시모욕	행위증오 선동	합계
미투	-	-	-	-	-	1(100.0)	-	1(100.0)
몰카	-	-	-	1(50.0)	1(50.0)	-	-	2(100.0)
기타	1(5.0)	1(5.0)	4(20.0)	4(20.0)	1(5.0)	7(35.0)	2(10.0)	20(100.0)
합계	1(4.4)	1(4.4)	4(17.4)	5(21.7)	2(8.7)	8(34.8)	2(8.7)	23(100.0)

$\chi^2 = 8.424, p = n.s.$

‘몰카’, ‘미투’, ‘기타’, 키워드 중 ‘여성혐오’ 표현의 하위 범주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개드립넷 결과는 다음과 같다. 1건으로 집계된 미투 사건 관련 키워드는 행위적 공개털시 모욕에 해당되며, 총 2건의 몰카 사건 관련 키워드는 각각 신체적 공개털시 모욕과 언어적 공개털시 모욕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건과 무관한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는 20개의 키워드는 행위적 공개털시 모욕이 7건(35.0%)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언어적 차별표시와 신체적 공개털시 모욕이 각각 4건(20.0%), 행위적 증오선동이 2건(10.0%), 신체적 차별적 괴롭힘과 행위적 차별적 괴롭힘, 언어적 공개털시 모욕이 각각 1건(5.0%) 순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공개털시모욕에 해당하는 키워드 사례로 ‘몰카충’, ‘쿵꽝이’, ‘걸레장인’, ‘매돼지’ 등이 나타났고, 신체적, 언어적, 행위적 구분으로 살펴보면, 행위 관련 키워드가 총 23건 중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개드립넷의 경우 키워드 표현 범위 중 신체 6건, 언어 6건, 행위 11건으로 신체적, 언어적 표현보다 행위적 표현이 더 높게 나타났다. 행위적 표현에 해당되는 키워드로 ‘조리돌림’, ‘동일범죄 동일처벌’, ‘성욕처리변기’ 등 키워드가 나타났다.

그 밖에 개드립넷에서는 상대적으로 비속어 사용이 낮았는데, 대신 합성어, 외래어, 중의어 비중이 높았다(예시: ‘국자이크’, ‘트페미’, ‘꿀페미’, ‘빨통’). 그 밖에 ‘ㄱㅏㅓ’ 같은 파괴어나 의성의태어(‘하학하학’, ‘쿵꽝이’)등의 비표준적 키워드 형태가 나타났다.

### ③ 디시인사이드의 트위터 마이너 갤러리<sup>65)</sup>

디시인사이드라는 커뮤니티의 특성상 시기별 어떤 성향의 이용자들이 유입되는가에 따라 갤러리(게시판)의 성향도 변화한다. 예를 들면 디시인사이드 주식갤러리가 2017년을 대선을 기점으로 유력 정치인과 정당, 그리고 정당 내 계파에 대한 찬반양론 등의 의견을 개진하는 게시물로 채워지고 있어서, 2016년 강남역 살인 사건 당시 2주 동안 134건의 키워드를 추출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2018년 8월 13일부터 일주일 동안 미투와 몰카에 대해 추출할 수 있는 키워드는 10개 미만이었다. 때문에 디시인사이드의 특성상 한 갤러리의 성향이 수 년 동안 꾸준하

65) 마이너 갤러리는 디시인사이드 운영자가 아닌 일반 개인이 개설한 갤러리를 의미한다. 마이너 갤러리도 개설 신청 후 운영자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게 유지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모니터링 대상 갤러리를 ‘미투’, ‘몰카’ 등 여성혐오 관련 사안들에 대한 반응이 활발한 트위터(twitter)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갤러리인 트위터 마이너 갤러리로 변경했다.

트위터 마이너 갤러리는 2017년 3월 개설된 갤러리로 개설 초기만 해도 소셜 미디어인 트위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었다. 하지만 디시인사이드 전반의 반(反) 소셜 미디어 정서와 여성혐오 정서가 결합해 현재는 사실상 트위터에서 활동하는 페미니스트와 관련 이슈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글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즉 트위터에서 활동하는 페미니스트와 관련 이슈들을 소재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주된 활동인 트위터 마이너 갤러리답게 트위터에서 활동하는 페미니스트들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과정에서 워마드, 래디컬 페미니스트, 여성 중심 커뮤니티(쪽빵카페 등) 회원 등에 대한 비판이 다수 관찰됐다.

특히 ‘미투’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에 대해 분노하거나 ‘몰카’에 대해 불안을 표시하는 여성의 목소리를 보도하는 언론과 일련의 사안들을 여성혐오 범죄로 규정하는 정당과 정치인, 행정부 수장, 페미니즘 이슈에 목소리를 내는 웹툰/일러스트 작가는 물론 해당 인물을 트위터에서 팔로우하는 동료 작가, 페미니즘 관련 서적을 집필한 학자와 페미니스트들에게 비판 받은 유명인에 대해 부정적 언급을 한 의사 등에 대한 비판이 모니터 대상 게시물 65건 중 11건(16.9%) 확인됐다. 대중에게 영향력이 큰 집단이나 인물들이 여성혐오를 비롯한 페미니즘 관련 사안에 발언을 하는 데 대한 경계와 반발이 디시인사이드 트위터 마이너 갤러리 이용자들 사이에 일정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표 Ⅲ-25〉 미투와 몰카 사건 기간 중 여성 희롱 및 혐오 키워드들

각도기, 그루트, 꿀빠니즘, 젠더권력, 미트코인, 빼액(빼애액), 흥자, 히토미, kibun(기분), 가불기, 개돼지, 개지랄, 페미년(랜팸, 워런, 워세대, 트메월, 트팸년, 페미나치, 페미년, 페미민국, 페미종특, 페밍아웃), 꽃뱀년(꽃뱀운동, 익명 미투사전), 남페미 사이언스, 뇌내망상, 망상딸(주작질), 맘충, 메갈당(뽀락치), 메갈화(메석희), 멧돼지, 방구석여포년, 병신갑, 보그병신체, 씨발년, 씹병신(이워병), 아몰랑(우동사리 들은년), 유사인간, 지랄, 펜스를

그 밖에도 디시인사이드 트위터 마이너 갤러리에서는 다양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신조어(예: 가불기, 그루트, 미트코인, 히토미, 각도기, 방구석 여포 등)와 기존 단어들을 조합하고 변주하는 방식(예: 랜팸, 워런, 워세대,

트메워, 트팸넌, 페미나치, 페미년, 메섹희 등)의 키워드 사용이 많았다. 또한 트위터 마이너 갤러리 이용자들이 비판하는 주 대상인 워마드 회원들이 만들어 낸 키워드(예: 홍자(‘홍내 자지’의 줄임말로 명예 남성과 유사하게 사용되는 단어)를 사용해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을 여성들이 비판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페미니스트 여성들이 이성교제를 하는 모습을 비판·조롱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페미니즘의 ‘페’만 꺼내도... 저녁 밥상 대화하다 ‘욱’<sup>66)</sup>



[그림 Ⅲ-6] <디시인사이드 트위터 마이너 갤러리> 게시글(2018년 8월 17일)

반드시 여성혐오를 목적으로 하는 키워드가 아닌 키워드(예: 히토미(일본의 성인만화 웹사이트), 그루트(마블 코믹스에 등장하는 캐릭터로, 고소 가능성이 있는 심한 욕설 등을 직접 쓰는 대신 ‘아이 엠 그루트’ 등의 표현으로 갈음), 각도기(모욕/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할지 여부를 확인하라는 의미) 등)를 페미니스트와 페미니즘을 비판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Ⅲ-26> 트위터 마이너 갤러리의 미투와 몰카 사건 및 관련 게시 내용 중 피해자 특성 (단위: 건(%))

	여성	남성	합계
미투	14(93.3)	1(6.7)	15(100.0)
몰카	16(94.1)	1(5.9)	17(100.0)
기타	31(93.9)	2(6.1)	33(100.0)
합계	61(93.9)	4(6.2)	65(100.0)

$\chi^2 = 0.010, p=n.s.$

66) <https://bit.ly/2NJ4IVS>

분석대상이었던 총 65건의 미투, 몰카, 기타 사건 관련 키워드 분석에서 여성이 피해 대상인 경우가 61건(93.9%)으로 집계됐다. ‘미투’ 관련 키워드는 총 15건으로 이중 14건(93.3%)에서 여성이 피해 대상으로 나타났다. ‘몰카’ 관련 키워드는 총 17건이었는데 이 중 16건(94.1%)에서 여성이 피해 대상으로 확인됐다. 분석기간 동안 발생한 H대 누드모델 불법 촬영 피의자(여성) 징역형 선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간음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1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미투) 등 사법 판결에 반발하는 여성들을 조롱하는 키워드(유사인간, 지랄, 빼액 등)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분석된다. 남성을 피해 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사례는 총 4건(6.2%)으로 ‘미투’와 ‘몰카’에서 각각 1건, ‘기타’에서 2건으로 집계됐다. ‘미투’의 경우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됐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남성이나 ‘미투’를 비판한 남성 연예인 관련 기사들을 갈무리해 공유하며 남성이 피해자라는 데 공감하는 내용이었다. ‘몰카’는 위마드의 서울 소재 대학 남성 대상 몰카(불법촬영) 유포 예고 게시글과 관련해 남성이 피해자인 사건에 대한 내용이었다. 남성이 피해 대상으로 나타난 두 건의 ‘기타’ 사건 게시글과 댓글에선 페미니즘 관련 서적을 집필한 학자(남성)와 페미니스트들과 대립한 유명인에 대해 부정적 언급을 한 의사(남성)의 성폭력 의혹을 조롱하는 내용이었다.

〈표 Ⅲ-27〉 트위터 마이너 갤러리의 미투와 몰카 사건 및 관련 게시 내용 중 성희롱과 여성혐오 현황

(단위: 건(%))

	성희롱	여성혐오	합계
미투	-	15(100.0)	15(100.0)
몰카	1(5.9)	16(94.1)	17(100.0)
기타	2(6.1)	31(93.9)	33(100.0)
합계	3(4.6)	62(95.4)	65(100.0)

$\chi^2 = 15.620, p < .01$

트위터 마이너 갤러리에선 성폭력, 성희롱, 여성혐오 키워드 중 여성혐오로 분류할 수 있는 키워드가 분석대상 게시물 총 65건 중 62건(95.4%)에서 등장할 만큼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성희롱 키워드는 3건(4.6%)이었으며 성폭력으로 분류

할 만한 키워드는 0건이었다. 이는 여성혐오 사건을 비롯한 트위터 상의 페미니즘 논쟁, 페미니스트들에 대한 반응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트위터 마이너 갤러리의 특성에서 비롯한 것으로 분석된다.

〈표 Ⅲ-28〉 트위터 마이너 갤러리의 미투와 몰카 사건 및 관련 게시 내용 중 여성혐오 유형

(단위: 건(%))

	신체차별 괴롭힘	언어차별 괴롭힘	행위차별 괴롭힘	행위차별 표시	언어공개 멸시모욕	행위공개 멸시모욕	행위중요 선동	합계
미투	-	4(26.7)	6(40.0)	-	1(6.7)	2(13.3)	2(13.3)	15(100.0)
몰카	-	7(43.8)	2(12.5)	1(6.3)	5(31.3)	-	1(6.3)	16(100.0)
기타	1(3.2)	11(35.5)	5(16.1)	-	12(38.7)	1(3.2)	1(3.2)	31(100.0)
합계	1(1.6)	22(35.5)	13(21.0)	1(1.6)	18(29.0)	3(4.8)	4(6.5)	62(100.0)

$\chi^2 = 16.388, p=n.s.$

‘미투’, ‘몰카’, ‘기타’ 키워드 중 ‘여성혐오’ 표현의 하위 범주를 세분화 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총 15건의 ‘미투’ 관련 키워드 중 ‘행위적 차별적 괴롭힘’(6건, 40%)에 해당하는 키워드가 가장 많았다. 고백만으로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거나 익명으로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데 대한 반발(‘익명 미투시전’)을 드러내거나, 미투 고발에 나선 피해자와 피해자를 돕는 활동을 하는 이들이 소송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거나 소송 사실이 알려진 후 대중들이 이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행위 등을 조롱(‘미트코인’)할 때 ‘행위적 차별적 괴롭힘’에 해당하는 키워드가 주로 등장했다.

총 16건의 ‘몰카’ 관련 키워드에선 ‘언어적 차별적 괴롭힘’(7건, 48.8%)에 해당하는 키워드가 가장 많았는데,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와 혐오 등에 대한 미러링(상대방의 행위를 따라하며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 방식의 대응을 표방하는 워마드와 과거부터 페미니스트라는 낙인찍기에 사용된 단어들(워런(년), 워세대, 메갈당, 씨발년 등)이 많았다. ‘몰카’와 관련해선 ‘언어적 공개적 멸시 모욕’(5건, 31.3%, 유사인간, 맘충, 멧돼지)에 해당하는 키워드는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언어적 공개적 멸시 모욕’에 해당하는 키워드는 주로 H대 누드모델 불법 촬영 피의자 징역형 선고에 반발하는 여성들이나 몰카 범죄에 대한 대응을 주장하는 여성들의 지적 수준과 외모 등을 조롱하는 과정에서 주로 등장했다.

〈표 Ⅲ-29〉 트위터 마이너 갤러리의 미투와 몰카 사건 및 관련 게시 내용 중, 성희롱과 여성혐오표현 언어

(단위: 건(%))

	언어적 성희롱	행위적 성희롱	신체적 여성혐오	언어적 여성혐오	행위적 여성혐오	합계
합성어	-	-	-	4(10.5)	1(6.3)	5(8.8)
중의어	-	-	-	-	2(12.5)	2(3.5)
축약어	-	-	-	-	3(18.8)	3(5.3)
외래어	1(100.0)	1(100.0)	-	18(47.4)	7(43.8)	27(47.4)
기호어	-	-	-	1(2.6)	-	1(1.8)
비속어	-	-	-	12(31.6)	3(18.8)	15(26.3)
의성·의태어	-	-	1(100.0)	3(7.9)	-	4(7.0)
합계	1(100.0)	1(100.0)	1(100.0)	38(100.0)	16(100.0)	57(100.0)

$\chi^2 = 30.675, p < .1$

디시인사이드 트위터 마이너 갤러리에선 이번 조사를 위해 분류한 8개의 키워드 유형 중 7개 유형(합성어, 중의어, 축약어, 외래어, 기호어, 비속어, 의성·의태어)의 키워드 유형 분류가 가능했다. 7개 키워드 유형의 빈도수는 외래어 27건(47.4%), 비속어 15건(26.3%), 합성어 5건(8.8%), 의성·의태어 4건(7%), 축약어 3건(5.3%), 중의어 2건(3.5%), 기호어 1건(1.8%)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선 키워드 내용을 성희롱, 성폭력, 여성혐오로 분류하고 이를 9개 범주로 분류했으나, 트위터 마이너 갤러리에선 5개 범주(언어적 성희롱, 행위적 성희롱, 신체적 여성혐오, 언어적 여성혐오, 행위적 여성혐오)에 해당하는 키워드만이 등장했다. 그 결과 외래어의 경우 총 27건 중 언어적 여성혐오에 해당하는 키워드가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비속어 역시 총 15건 중 언어적 여성혐오에 해당하는 키워드가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위마드와 메갈리아 등 외래어와 결합한 페미니스트 커뮤니티와 여성을 비하하는 의미의 ‘~년’이라는 표현을 결합시킨 키워드(랜팸(래디컬 페미니스트), 워련(위마드+년), 워세대(위마드+연세대), 트메웁(트위터+메갈리아+위마드), 페미나치(페미니스트+나치), 페미민국(페미니스트+대한민국), 페밍아웃(페미니스트+커밍아웃), 트웁년(트위터+페미니스트+~년), 페미년(페미니스트+~년) 사용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④ 루리웹의 베스트

미투와 몰카에 대해 총 27건의 게시글이 발견되었으며 그 중 여성을 피해자로 특정한 게시글이 25건(92.6%)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남성은 2건(7.4%)이었다. 사건을 기준으로 구분하면, 미투에 대한 게시글은 6건이었는데 그 중 여성을 피해자로 특정한 게시글이 5건(83.3%), 남성이 1건(16.7%)이었다. 몰카에 대한 게시글은 21건이었으며 여성 20건(95.2%), 남성 1건(4.8%)이었다.

〈표 Ⅲ-30〉 루리웹 베스트의 미투와 몰카 사건 및 관련 게시 내용 중 피해자 특성

(단위: 건(%))

	여성	남성	합계
미투	5(83.3)	1(16.7)	6(100.0)
몰카	20(95.2)	1(4.8)	21(100.0)
합계	25(92.6)	2(7.4)	27(100.0)

$\chi^2 = 0.964, p=n.s.$

루리웹의 경우, 미투 관련 게시물 한 건을 제외하고는 모든 게시물이 여성혐오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투 관련 게시물 5건, 몰카 관련 게시물 21건이 그에 해당했다. 한편 미투 관련 게시물 한 건은 여성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이었다.

그 밖에 루리웹은 <JTBC> 손석희 앵커를 조롱하는 게시글 및 댓글이 등장했고, 페미니스트 등 여성에 대한 직접적인 혐오보다는 오히려 남성에 대한 동정이나 언론사 혹은 미투에 대해 ‘무고한’ 희생자를 낳게 한 사회적 분위기에 대한 비아냥의 맥락 속에서 혐오적 표현이 발생하였다. 몰카와 관련해서는 특정집단이나 개인, 혹은 불특정 다수(여성 일반)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적 발언이라기보다는 남성과 여성 간의 형평성 문제를 비교적 이성적으로 제기하는 게시글과 댓글들이 대다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미투운동과 관련된 게시글 및 댓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페미니스트 집단에 대한 혐오표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388396) 101.235\*\*\*\* 이제 그 분물은 여자라서 장역 나왔다 라고 배려해 거길 차경인가 ~답글 18.08.13 11:37

(5001168) 119.221\*\*\*\* 지하실에서 물려 여자 다리찍어 혼자 보면서 일하는 연태도 물커업으로 처벌받고, 저렇게 비공개된 화상에서 성기노출은 시간 적은 후 인터넷에 올려 조리물침하는 사람도 물커업으로 처벌받음. 같은 물커업인데 이번 총대물커녀만 혐량이 채겨 나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과연 저 두 물커업의 죄질이 정말로 같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기를 권장. ~답글 18.08.13 11:57

(1262) 911.201\*\*\*\*  대가리에 든게 부알밖에 없으니 ♀ A년물 18.08.13 13:17

(25536) 137.196\*\*\*\* 이번 사건이 과연 누구 덕에 이렇게 큰 이슈가 될올까? 하긴 그런 머리가 돌아가면 꼬미니즘 한담시고 자현적으로 발광 하진 않겠지. ~답글 18.08.13 13:51

(25536) 137.188\*\*\*\* 여초겨울에 사진 물려서 온갖 조롱은 다 해대고 권파수사라는 어림없는 태 쓰는 수준만도 못한 이유로 시위해대고 진짜 이게 과도한 혐량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용인은 바로 너희 같은 끝번년들이 이제껏 해오던 몰약질의 결과물이다. ~답글 18.08.13 13:56

(4892917) 124.53\*\*\*\* 윤영지 잡히면 2차가해한것들 전부 처벌하자 ~답글 18.08.13 20:59

(54231) 112.30\*\*\*\*  ??? : 죄를 지어도 여성은 보호받아야 되잖!! 기물어진 윤종장 이혼 할라못? ~답글 18.08.13 21:12

[그림 Ⅲ-7] 루리웹의 미투와 몰카 관련 여성혐오표현들

### 3. 소결

3장은 성차별적 발언과 폭력 및 혐오에 가까운 글(말)이 생산되는 온라인 커뮤니티 4곳을 선정해 해당 사이트 내 활동이 가장 활발한 대표 게시판의 게시글 내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 실태를 조사했다. 구체적으로 선정된 게시판은 일간베스트저장소의 ‘일간베스트’(일간베스트), 개드립넷의 ‘개드립’, DC인사이드의 ‘주식갤러리’(주식갤러리와 트위터 마이너 갤러리) 그리고 루리웹의 ‘베스트’이며, 분석기간은 첫째, 강남역 화장실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을 중심으로, 2016년, 2017년, 2018년 5월 18일부터 5월 30일까지(2주간) 분석했고, 둘째는 2018년도 ‘미투’사건으로 대표되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무죄를 선고받은 8월 14일과, ‘몰카’ 사건으로 대표되는 홍대 모텔 촬영·유포 사건에 징역 10개월이 선고된 8월 16일이 포함된 8월 13일부터 19일까지(7일) 분석했다.

데이터 수집은 사이트 간 게시판 운영의 차별성을 고려해 우선 분석기간 내, ‘성희롱’, ‘혐오’, ‘폭력’, ‘강남역’, ‘미투’, ‘몰카’ 등 관련 키워드로 검색된 게시글을 추출했는데, 키워드 검색이 불가능한 사이트의 경우 해당 기간 내 모든 게시글을 확인 후 관련 내용이 담긴 게시글만 골라 분석했다. 그 결과 일간베스트는 전체 게시글 8,377건 중 283건, 개드립넷은 5,957건 중 113건, 주식갤러리는 2,424건 중 200건, 루리웹은 1,677건 중 61건을 분석했다. 사이트별 게시판에 드러난 실태는 다음과 같다.

우선 강남역 살인사건 기간 4개 게시판에 나타난 특징은 첫째, 게시글의 피해자 특성은 여성이 절대적으로 많았으며, 일간베스트의 경우 신체적 여성혐오(56건, 37.6%)와 언어적 여성혐오(68건, 45.6%)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디시인사이드 주식갤러리는 여성혐오 키워드가 123건(91.1%)으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성희롱 키워드도 12건(8.9%)으로 다른 사이트보다 높았다. 또한 게시글과는 상관없이 여성 신체의 특정 부위를 강조하는 사진을 첨부하거나 여성혐오 살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여성들(일간베스트 회원)의 신체를 부각하는 제목이나 글과 함께 게시하는 등의 모습이었다. 한편 루리웹의 경우 34건 모두 여성을 타깃으로 하고 있었으며, 희롱적 표현이 1건(2.9%), 혐오적 표현이 33건(97.1%)으로 나타났다.

게시글에 나타난 여성혐오 유형은 주로 글이며, 글과 이미지가 다음으로 많았다. 특히 여성의 신체를 공개적, 언어적 멸시 모욕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분석 단계에서 게시글 내 여성 희롱과 혐오표현 언어를 찾아보았다. 이 언어들

합성어, 중의어, 파괴어, 축약어, 외래어, 기호어와 비속어 그리고 의성·의태어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는데, 4개 게시판 모두 비속어가 가장 많았다. 예를 들면 메갈리안, 워마드 등과 같은 특정 커뮤니티를 표적화하고 여기에 ‘~녀’, ‘~년’ 등의 비속어를 결합한 형태가 많았는데, 일간베스트의 경우 메갈년을 뜻하는 유사 비속어를 변형시켜 메갈돼지년, 메갈뿔이논, 메갈충, 메라포밍, 메오후, 메갈대장 등으로 표현했다. 특히 여성의 신체를 혐오표현어로 만드는 경우도 발견되는데, 주식갤러리의 경우는 메돼지(메팔개), 보빨, 시체팔이(메갈시체팔이), 메오후(메오후 적살), 메갈년(메갈, 메갈버러지년, 메갈여시충), 고인능육, 쿵쾅쿵쾅, 쿵쾅, 쿵쿵, 쾅쾅), 보지년(보지, 개보지년, 보치년, 헬보지년), 보적보, 보전개, 보중жат대, 아몰랑, 오나홀 같은 용어들이 자주 등장했다. 일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조치의 결과로, 심의제재 염두에 둔 신조어, 은어, 축약어, 파괴어 남발하는데 예를 들면 ㅇ기리ㅇ비비비기, ㅇ트츠, 네다보-네 다음 보지, 꾸르재프-꿀잼, 자모음 나열어 하고 있다.

두 번째 분석기간인 8월 13일부터 19일간 분석된 4개 게시판의 특징을 보면, 일간베스트의 경우, 총 134건에서 미투나 몰카, 강남역 사건과 무관한 성희롱·성폭력 관련 키워드가 110건(82.1%)을 차지하였으며, 몰카 16건(11.9%), 미투 8건(6.0%) 순으로 나타났다. 개드립넷은 총 53건을 분석한 결과, 주요사건(강남역 살인사건·미투·몰카)에 포함되지 않는 성희롱·성폭력 관련 키워드가 47건(88.7%)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몰카 5건(9.4%)과 미투 1건(1.9%) 순으로 집계되었다. 일간베스트와 개드립넷의 경우, 미투나 몰카 관련 키워드보다 ‘기타’로 분류된 키워드가 82.1%(110건/ 134건), 88.7%(47건/53건)에 달하는 압도적 비율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이 두 사이트는 미투의 정치적 이슈화에 주목하기보다, 여성을 대상으로 성희롱과 폭력적 관점에서 게시글 내용을 담았다. 예컨대 성폭력으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를 고발한 김지은 씨를 ‘불륜충’, ‘질투’ 등으로 표현하거나, 홍대 몰카범 수사 사건이 편파적이었다고 지지하는 사람들을 페미니즘, 페미니스트라고 공격하며, 여성혐오를 심각하게 드러냈다. 혐오표현에 있어서도 공개 멸시 모욕이 최다 비중을 차지했는데, 언어적 표현이 98건으로 행위적 43건, 신체적 41건에 관한 것보다 높았다. 강남역 살인사건 기간 분석과 마찬가지로 게시글 내 성희롱과 여성혐오는 언어를 통해 쉽고 빠르게 재생산되는데, 신체공개멸시모욕에 해당하는 단어들, 예를 들면 일간베스트의 경우 ‘보

적보’, ‘보롱내’, ‘보징내’ 등 특정부위에 대한 표현과 ‘오크크롤’, ‘강남성괴’ 등 괴물로 표현하는 경우, ‘웁퇴지’, ‘메퇴지’, ‘보라니’ 등 동물로 표현하는 경우, ‘뜰딱년’, ‘씹빡대加里년’ 등 욕설 표현 등이 쉽게 발견됐다. 이는 분석대상 사이트들이 여성혐오(남초) 사이트라는 성격을 감안하더라도, 온라인 공간 내 여성혐오가 얼마나 적대적이고 노골적이며 적극적인지 발견할 수 있었다. 나아가 극단적 여성혐오는 온라인 공간에서 그치지 않고, 성폭력, 성범죄로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

## IV

---

# 온라인의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표현 피해자 및 피해구제 실태

---

1. 피해 경로 및 유형	100
2. 피해자의 대응방식	102
3. 2차 피해와 2차 가해	105
4. 피해자에 대한 지원 현황 및 문제점	106
5. 소결	109



4장은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표현에 대한 정성 분석을 위해, 최근까지 진행된 정책보고서 자료를 참고한 후, 2018년 6월부터 10월까지 동안 피해자 3명,<sup>67)</sup> 활동가 2명, 상담사 2명, 학자 5명 그리고 언론인 1명 등 총 13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1대1, 포커스 그룹 인터뷰)과 이메일로 인터뷰를 실시했다. 피해자 및 피해 구제 실태를 위해 질문은 피해 경로 및 유형, 피해자의 대응 방식을 위주로 문의했고, 그 결과 피해 상담 및 수사 과정에서 겪는 2차 피해와 2차 가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장에서는 피해자 개인의 사례 소개를 피하는 대신, 실태 면접을 통해 드러난 피해자들의 피해 경로와 유형, 대응방식과 지원 현황 및 문제점을 발견했다. 학자 B~E, 언론인의 경우 정책 제언을 중점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했으나, 실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4장과 7장 결론에서 모두 인용하였다.

〈표 IV-1〉 심층면접 대상자 속성

	연령대	특징
피해자 A	20대	온라인 성폭력 피해 경험, 적극적 대처
피해자 B	20대	온라인 성희롱 피해 경험, 적극적 대처
피해자 C	30대	온라인 여성혐오 및 희롱 피해자의 지인, 적극적 대처
활동가	20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
상담사	20대	사단법인 한국 성폭력 상담사
상담사	30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상담사
활동가	20대	디지털 성폭력 아웃 활동가
학자 A	40대	온라인 여성혐오 및 희롱 관련 연구 전문가
학자 B	40대	법학자
학자 C	40대	언론학자
학자 D	40대	언론학자
학자 E	40대	언론법학자
언론인	50대	디지털 성폭력 취재 전문가

67) 피해자 인터뷰의 경우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별 심층인터뷰로 진행했으며 외부자와의 접촉에 대한 어려움으로 섭외가 쉽지 않았다. 또한 인터뷰에서 피해 경험을 기억하는 것에 대한 고통을 고려해, 본 보고서에서 피해자를 인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피해 내용은 기술하지 않았다.

## 1. 피해 경로 및 유형

온라인 내 젠더 혐오 문화는 흔히 발견 할 수 있는 현상으로, 최근에는 2016년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행동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성폭력을 암시하는 말을 하거나, 개인정보를 추적하는 이른바 신상 털기를 통해 위협하는 행위가 쉽게 발견된다. 이는 특정인을 공격하기 보다, 여성과 남성이라는 젠더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혐오표현의 성격이 강하다. 온라인 성희롱의 경우, 이미 만연해 있는 온라인 문화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 피해자들이 상담센터를 찾는 경우는 드물다. 실제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여성혐오, 희롱과 폭력 그리고 위협적 행위가 사회 문제로 주목받으면서, 사이버성폭력 대응 및 상담 지원을 해주는 단체와 활동가들이 등장했고, 2018년 5월 여성가족부 산하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지원센터는 영상물에 의한 협박과 삭제하는 작업을 지원하는데, 현재 5명의 상근 상담사들이 피해 전화를 접수한 후 사례를 확인하고 피해 내용에 따라 지원을 하고 있다. 온라인 성범죄 피해자들의 초기 20~30대 여성이 많았으나, 최근 10대와 40~50대 여성들도 늘고 있다.

한편 온라인 성폭력의 경우, 최근 피해 지원 문의 및 접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촬영으로 인한 성폭력, 촬영물이 유포되면서 생긴 성폭력 사례가 많지만, 연인끼리 주고받은 사적인 사진들이나, 비디오 채팅, 화상 대화 데이트 등이 시간을 두고 유포되는 경우가 있다. 때문에 본인이 언제 촬영된 동영상인지 기억할 수 없거나, 피해자인지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하지만 보통의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들의 피해 경우는 대부분 사이트/모바일 앱에서 동영상/사진을 접한 주변인(남편, 아내, 남자친구, 여자 친구, 직장 동료, 학교 친구, 가족 등)들에 의해 피해 사실을 알게 되는데, 피해 경로를 보면 교제를 하는 중에 상대의 강요에 의해 촬영한 경우, 교제 중 촬영에 동의했으나 헤어진 후 상대의 동의 없이 온라인 사이트에 업로드하는 경우(비동의유포 성적촬영물), 숙박업체나 공공장소(공공 화장실, 기업의 화장실, 가해자 집, 차안, 사무실, 강의실, 택시 안 등)에서 제3자에 의해 몰래 촬영된 경우,<sup>68)</sup> 어린 대상자와 돈독한 관계를 만든 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

68) 공공장소에서 불법도촬된 경우, 모르는 사람이 많고(89.9%), 아는 사리일 경우 연인 사

온라인 성폭력을 한 그루밍(grooming) 등 온라인 채팅에서도 쉽게 일어나고 있어 그 형태와 경로는 다양하다. 또한 온라인에서 성폭력 및 강간을 모의하고, 실제 강간을 시도한 사례가 있을 만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성폭력 및 혐오 표현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라는 공간을 구분해 발생하지 않는다.

게임 중 채팅을 하면서 발생하는 온라인 성희롱과 혐오는 특히 젊은 층에서 일상 문화처럼 발견되기도 하는데, 유저가 많은 특정 사이트에서는 모욕, 명예훼손으로 밖에 처벌할 수밖에 없는 온라인 성희롱과 혐오 처벌에 대한 사각지대가 무엇인지 그 정보를 공유하기도 한다. 나아가 법적 감시망을 피해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지 업로더, 스트리머, BJ들끼리 공유하기도 하는데, 실제 온라인 성희롱/혐오에 대한 법적 처벌의 수준도 미약하지만, 방학 동안 정학을 시키는 학교의 미온적 태도들이 피해자로 하여금 무력함과 회의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특히 과거엔 특정인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성폭력이 일반적이었다면, 최근에는 불특정 다수를 한 온라인 성폭력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즉 몰래 촬영하고, 합성하며 해킹하고 동시에 많은 곳에 유통하는 일이 쉬워지면서 피해자는 스스로가 성폭력의 대상이 되었는지조차 인지하기 쉽지 않으며, 피해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도가 1대1이 아니라, 1대 다수 나아가 사회라는 디지털 매체 환경에 대한 어두운 면이라고 볼 수 있다.

〈표 IV-2〉 온라인 성폭력 피해 유형

온라인 성폭력 피해 대상과 경로	발견 유형
특정인(연예인, 유명인 등), 불특정 다수 대상 → 피해자 인지 못한 상태에서 녹화/촬영 → 피해자 동의 없이 유포	무차별적 대상화,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낙인 피해, 괴롭힘(bullying), 합성, 몰카/도촬, 그루밍, 해킹
피해자 동의로 촬영 → 피해자 동의 없이 유포	비동의유포 성적촬영물
피해자 동의 없이 강제 촬영 → 피해자 동의 없이 유포	성폭력, 데이트 폭력

사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오프라인 성폭력의 경우 그 처벌이 강하다는 인식을 대부분 하고 있으면서도, 온라인상에서의 성희롱과 폭력적 행위를 하는 경

이가 가장 많았다(43.68%).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2017). 반성폭력 이슈 리포트 11호. 35-36쪽

우는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예컨대 온라인 성폭력은 단순히 공간의 확장이 아니라, 공간이 확장되면서 피해와 가해의 유형 구분도 모호해지고, 희롱과 혐오 그리고 폭력에 대한 가해자의 의도 및 피해 입증을 위한 범행 시기, 방법, 피해 범위와 정도를 밝혀내기 어렵다는 생각이 만연해 있어 오프라인에 비해 쉽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결국“온라인”이라는 기술적, 문화적 특수성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문제적 사진 및 동영상 그리고 개인 정보는 일단 유포되고 나면 삭제를 하더라도, 언제라도 변형된 기술을 통해 다시 업로드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용자들은 지금까지 경험해 알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피해를 인지해도 적극 대응하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게다가 최근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의 연령에 상관없이 벌어지며, 성인 동영상 사이트에 접속한 적이 한 번도 없어도 발생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을 혐오하며 희롱하는 표현들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이 결국 오프라인에서도 직·간접적인 행동으로 표출하고 있어 한 번 피해를 경험한 사람들은 상대(특히 남성)에 대한 불신과 공포감을 갖게 되는 경향이 있다.

## 2. 피해자의 대응방식

온라인 성폭력의 경우 피해자가 스스로 혹은 주변인에 의해 피해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데, 상황을 인지하고 난 후, 일반적으로 이성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주변의 반응과 시선에 대해 심리적으로 충격과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다. 즉 소셜 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피해자의 동영상을 두고 피해자(주로 여성) 여성이 의도했거나, 부주의했으며, 혹은 원인을 제공할 만한 행동을 했다는 식으로 피해자를 비난하는 반응이 많아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부터 피해자의 심리적 불안감은 상당히 심각하다. 특히 남성보다는 여성의 몸이 쉽게 소비되고 있어, 피해 동영상이 재유포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그리고 실제 협박을 당하는 사례도 있어 피해자의 심리적 상태는 이성적 상태를 유지하기 어렵다.

〈표 IV-3〉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의 대응 단계 및 특징

피해자 대응 단계	특징
온라인 성폭력 피해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 혹은 주변인에 의해 주로 사건 발견</li> <li>- 소셜 미디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피해자(주로 여성)에 대한 비난과 호기심이 집중<sup>69)</sup></li> <li>- 동영상 재유포 및 협박에 대한 불안 및 피해 증가</li> <li>- 피해자의 심리적 불안감 증가</li> </ul>
↓	
온라인 성폭력 상담 센터 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료 전화/방문 상담 시도(법적 대응 및 삭제 요청 관련 상담)</li> <li>- 경찰서 사이버수사대 전화/방문 상담</li> <li>- 미성년자의 경우 주변의 부정적 시선과 '낙인'이 두려워, 보호자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음, 때문에 가족 상담 비율이 낮은 편</li> </ul>
↓	
동영상 제공 업체에 동영상 삭제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기관들(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권위원회, 시민단체 등)에 신고 및 삭제 요청</li> <li>- 해당 사이트 삭제 명령 결정이 지연되거나, 영구 삭제되었는지 확인 불가</li> </ul>
↓	
사실 디지털 동영상 삭제 업체 도움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 동영상을 삭제하기 위해, 고액의 사실업체 서비스를 찾게 됨.</li> <li>- 일시적 삭제는 가능하나, 영구 삭제가 불가능한 상황, 즉 다양한 사이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업로드 되거나, 삭제 후에도 영상일부 변경해 다시 올릴 수 있음</li> <li>- 결국 피해자가 지불해야하는 금전적 비용이 계속 증가함</li> </ul>
↓	
피해자의 심리 상태 악화, 피해자 자살시도 혹은 사망으로 수사 종결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들은 전화 혹은 방문을 통해 무료 상담을 시도하는데 주로 법적 대응 방법과 피해 동영상을 어떻게 삭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의를 한다. 일부는 해당 경찰서의 사이버수사대에 전화 및 방문해 상담을 하게 되는데, 미성년자의 경우, 주변 친구들과 부모가 알게 되는 것을 두려워해 무료 상담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가족과 적극적으로 상담을 하는 비율은 낮은 편이다. 특히 청소년 또래 간 문화에서는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라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오프라인에서의 괴롭힘이 심각해지고, 사회 낙인으로 이어

69) 피해자를 두고 여러 명이 비난하기 시작하는 온라인 행위로 ‘조리돌림’이라 부르는데,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 주변인들이 가해자인 남성보다는 피해자를 비난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여성이 원인을 제공했다거나, 의도했다는 식의 ‘꽃뱀’프레임이 드러난다.

지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자가 연령이 낮을수록 처벌을 위한 수사 과정에서 배려해야 하는 점이 많아진다.

피해 사실은 대부분 피해자들이 먼저 발견해 해당 기관에 신고하며, 삭제 명령 권한을 가진 기관에 요청하게 되는데, 수사 기관을 포함해 삭제 권한을 가진 기관에서는 접수된 사건을 확인 후 심의 및 조사해야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기대하는 것만큼 신속하게 답변을 해주기 어렵다. 또한 접수되는 사건이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처리 결과 및 답변이 지연되는데 그 동안 문제 동영상 이미 많은 사이트에 유통되기 때문에 피해자는 기관의 사건 처리 방식에 대부분 불만을 가지고 있다. 특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삭제 명령을 받은 동영상 무엇이 무엇인지, 영구 삭제가 될 수 있도록 동영상의 내용과 특징을 기록해 사후 처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보는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결국 고액의 사설 업체(일명 ‘디지털 장의사’) 서비스를 찾게 된다.

피해자들 중에는 사설업체에 영상을 삭제 요청할 경우, 일시적으로는 삭제가 가능하나 삭제 비용을 평생 지불하지 않는 한 동영상이 영구적으로 삭제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경우 피해자의 심리 상태는 회복이 불가능 할 정도로 악화되어, 피해 사실을 제대로 드러내지도 못하고 극단적 결정을 하는 사례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 결국 동영상 삭제는 피해자 개인뿐만 사회에서도 공개될 경우 사생활이 담긴 민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처리하도록 방치할 것이 아니라, 공적 기구 주도권을 가지고 모니터와 감시, 삭제 및 처벌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온라인 성폭력과 달리 온라인 여성혐오나 희롱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법적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불특정 다수 즉 여성 혹은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게시물이나 댓글로 인해 성적 모욕과 수치심을 느끼게 될 경우, 사이트 방문을 중단하거나 게시물 작성자에게 유사한 방식으로 대응하는 사례가 일반적이었다. 물론 소셜 미디어에서 심각한 혐오표현이 오가면서, 오프라인 만남을 시도하기도 하는데,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 법적 시도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 같은 보복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성희롱·여성혐오에 대한 피해를 입증하기 쉽지 않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 3. 2차 피해와 2차 가해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들은 대부분 피해를 인지하자마자 상담 센터를 먼저 찾게 되는데, 상담사, 변호사, 수사관, 공무원 등을 만나는 과정에서 대부분 2차 피해를 경험했다고 한다. 예컨대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훈계하거나, 냉소적 혹은 원인 제공자라는 시선과 언행으로 마음에 상처를 가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가 피해 당사자의 입장에서 얼마나 상처가 되며, 심각한 일인지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여성에 대한 남성들의 보수적 시각이 피해 여성들을 접촉하는 과정에서도 무의식적으로 드러나고 있어, 남성들은 의도와 다르게 2차 가해를 하게 되며 여성들은 2차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여성 피해자들의 경우 상담과 신고를 하기 위해 피해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기본권과 프라이버시를 존중받지 못하고, ‘왜 그 남자를 만났나’, ‘왜 바로 도움을 구하지 않았나’, ‘왜 그런 남자를 만났나’, ‘왜 거부(저항)하지 않았나’, ‘어쨌든 동의한 거 아니었나’, ‘(상대에게) 바라는 것이 있지 않았나’, ‘평소 행실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문제가 될 줄 몰랐나’ 같은 말을 듣는다는 것이다. 즉 피해자의 입장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려는 노력보다는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했거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한 것을 비난하는 말과 태도를 쉽게 보인다는 것이다. 피해자 대부분은 이러한 2차 피해 경험을 심각한 문제로 꼽았는데, 온라인 성폭력의 경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겪은 고통과 충격에 공감해줄 수 있는 전문가의 진정성 있는 태도가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해결하기 위해 절실히 보인다.

온라인 성폭력의 경우, 가해자를 밝혀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실제 피해자의 경우 자신의 동영상과 개인 정보를 접한 익명의 사람들로부터 2차 성희롱 및 성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는 피해자가 엄청난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 일로, 즉각 삭제되지 않은 피해자의 정보는 다수의 가해자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2차 가해로 확산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지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피해자 주변 인물인의 부주의로 의도하지 않았지만 2차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피해자는 주변인들이 사건을 알게 되는 것보다 2차 피해 과정을 극복하는 것이 더욱 힘들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처는 상대를 불신하게

되고, 건전한 이성교제를 방해하기도 한다. 또한 사회 문제를 남성과 여성의 대결구도로 보는 시각이 굳어지면서, 불쾌한 언행으로 상대를 무시하는 것이 또래 문화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면서 일상적 교우/직장 동료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

온라인 성희롱과 여성혐오의 경우는 피해자가 인간적 모욕감과 정신적 충격을 겪는 것에 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다. 오히려 최근 온라인에서 극단적 말(글)과 사진(동영상)을 업로드하거나, 댓글을 올리는 사례가 더 많아지고 있는데, 면대 면을 하지 않는 익명이 가능한 온라인이라는 공간에서 ‘감정배설’을 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되는 것은 우려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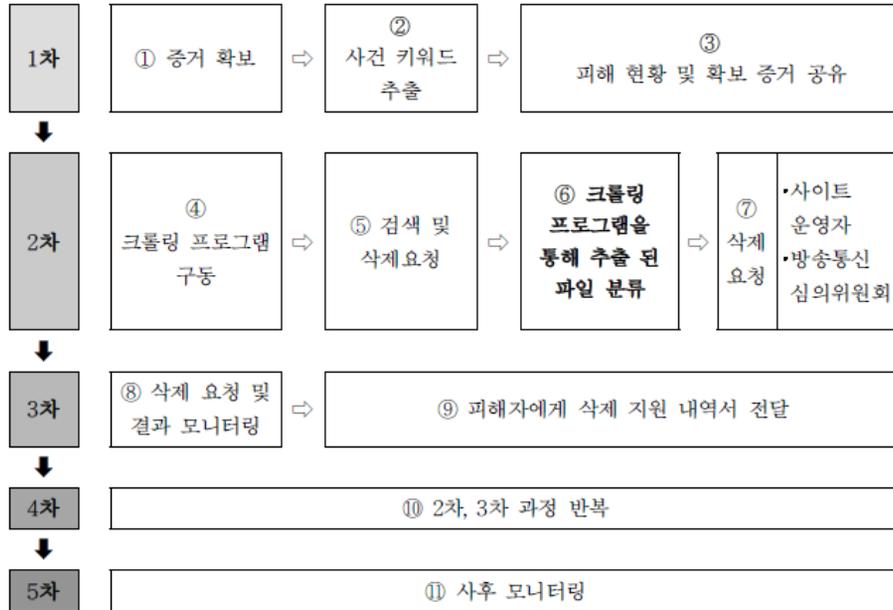
#### 4. 피해자에 대한 지원 현황 및 문제점

현 온라인 성폭력 피해 지원 센터들의 경우, 피해자가 우선 전화로 상담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동영상 삭제 지원 및 수사 지원, 피해자 심리 치료 지원에 관한 안내 및 기초 지원을 주요 업무로 삼고 있다. 예컨대 센터에서 직접 동영상을 삭제 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관련 기관의 수사 및 지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데,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사실 정보를 외부로부터 제공 받을 수 있게 된 환경이 최근에 와서야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과거엔 피해자들이 체감하기엔, 기관의 도움과 대응이 아주 미비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처럼 불특정 다수를 하는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그리고 여성혐오 현상이 심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엔 이런 사례가 동영상 유통 사이트나 여성/남성 혐오 온라인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즐겨 찾는 포털 사이트나 동영상 사이트에까지 확산되고 있어서 피해 사례도 복잡하고,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때문에 제한된 전문 인력으로 많은 일은 해야 하는 기관의 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법과 제도적 처벌 방식 및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라 사회적 논의부터 인식을 개선해야 하는 일까지 포함해야 할 일이 많다.

한편 현행 피해자 지원 단체들의 피해지원 체계를 살펴보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의 사건 지원 프로세스는 사건 접수 후 피해자 상담을 거쳐 법률·수사지원, 삭제 지원, 심리치료 지원 및 지지상담을 통해 사건 지원을 하는데, 삭제

지원 프로세스는 11개의 과정을 통해 5차에 걸쳐 시행된다.<sup>7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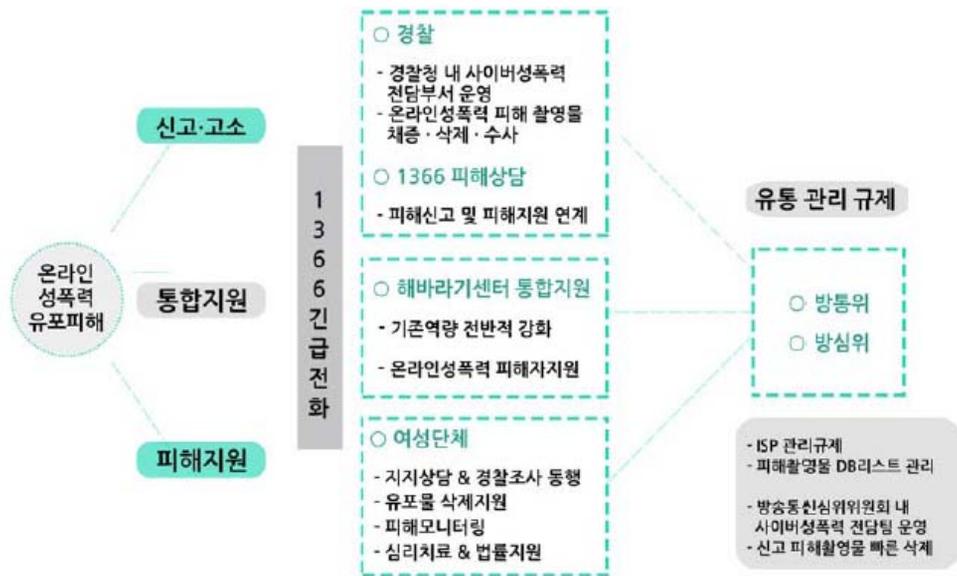
출처: 한국여성변호사회(2018, 76페이지)

[그림 IV-1]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의 삭제지원 프로세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공조를 시작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설치 후 100일 동안의 실적을 보니, 총 1천40명의 피해자가 사건을 신고했고, 센터가 지원한 사건 전체 7천994건 중 불법 촬영물 삭제는 5천956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피해자 대부분(737명·70.9%)은 불법촬영, 유포, 유포 협박, 사이버 괴롭힘 등 여러 유형의 피해를 중복으로 겪고 있었으며, 피해건수 2천358건 중 유포피해가 998건(42.3%)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촬영이 795건(33.7%)이었다. 유포피해자 한 명당 많게는 1천 건까지 유포되기도 했으며, 불법촬영자의 74%(591건)는 전 배우자, 전 연인 등 친밀한 관계이거나 학교나 회사 등에서 ‘아는 사이’였다. 피해자 1천40명 중 여성이 총 916명으로 88.1%를 차지하였으며, 남성은 124명이었다. 현재 지원센터는 1개월 주기로 삭제 지원 결과를 피해자들에게 발송하고 있

70) 한국여성변호사회(2018)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지원 방안 연구

다. 최근 인식 대선을 위해 공익 광고를 제작하고, 일선 경찰서에 집중 단속기간을 통해 적극 수사하도록 하는 등 성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년 8월 12일).<sup>71)</sup>



출처: 한국여성변호사회(2018, 78p)

### [그림 IV-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지원 경로

현재 수사 기관의 경우, 사건 접수 단계에서 여성 경찰을 배치하고 있는데, 결정권이 낮은 지위의 여성 경찰들이 상징적으로 존재할 뿐, 실질적인 수사 단계에서는 여성 피해자에 대한 편견을 가진 남성 경찰들과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젠더 공감보다는 오해가 쌓이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피해자 지원 현황을 통해 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그리고 여성혐오에 대한 사회 이해의 정도를 피해자와 지원 기관들이 서로 공유해야 한다. 이는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그리고 여성혐오에 대한 현실적 개념 정의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

71) 연합뉴스. 2018년 8월 12일. 디지털성범죄 지원센터 100일...피해자 1천명 신고, <https://www.yna.co.kr/view/AKR20180810113300005>

도,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젠더 감수성을 공유해야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피해자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2차 가해를 하게 되는 경우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적 기관을 불신하는 피해자들의 인식도 개선할 수 있다.

둘째,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들과 이들과 상담을 하며 성폭력 사례를 모니터해야 하는 상담사들의 정신 치료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여성을 혐오하고 희롱하며 폭력까지 행하는 이미지와 글을 매일 접해야 하는 상담사의 경우 실제 업무에 대한 정신적 고통이 일반 상담업무에 비해 심각하다고 하는 지적을 진지하게 고려해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최근 진행된 온라인 성희롱, 성폭력 및 여성혐오 관련 연구가 정책에 얼마나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를 감시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회 관심이 주목될 때만 문제적 상황에 대해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양성 평등 및 차별금지가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장기적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넷째 불법 동영상 유통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시급하다. 수사기관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에서 불법 동영상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적극적으로 감시해 단속해야 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역시 강력한 제재 명령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해비 업로더(heavy uploader)들이 다양한 사이트를 옮겨 다니면서, 불법 동영상을 가지고 수익을 내는 사건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개선도 필요하지만 강력한 처벌과 단속을 즉각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마련해주는 개정법도 논의되어야 한다.

다섯째 청소년들이 올바른 젠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성인들의 성 상품화, 대상화, 폭력화하는 문화를 반성하고 사회가 나서서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5. 소결

표현의 자유는 공간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주어진 신성한 자유 권한이다. 하지만 나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면, 자유는 일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최근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 행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주목받으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그 합의하는 방식이 논란이 되

고 있다. 왜냐하면 기존의 법을 적용하기엔 현실의 문제는 너무 다양하고 곳곳에 존재할 만큼 만연해 있다. 이에 4장은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표현에 대한 정성 분석을 위해, 최근까지 진행된 정책보고서 자료를 참고한 후, 2018년 6월부터 10월까지 동안 온라인 성희롱과 성폭력, 여성혐오표현을 경험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 3명, 피해자 상담과 지원 및 관련 분야 전문가 5명과 심층면접(1대1, 포커스 그룹 인터뷰)을 실시했다. 그 결과 피해 경로 및 유형, 피해자의 대응 방식, 2차 피해와 2차 가해,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 현황 및 문제점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피해 경로 및 유형을 보면 온라인 성폭력의 경우 촬영으로 인한 성폭력, 촬영물이 유포되면서 생긴 성폭력 사례가 많지만, 연인끼리 주고받은 사적인 사진들이나, 비디오 채팅, 화상 대화 데이트 등이 시간을 두고 유포되는 경우가 있다. 때문에 본인이 언제 촬영된 동영상인지 기억할 수 없거나, 피해자인지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하지만 보통의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들의 피해 경우는 대부분 사이트/모바일 앱에서 동영상/사진을 접한 주변인들에 의해 피해 사실을 알게 되는데, 피해 경로를 보면 교제를 하는 중에 상대의 강요에 의해 촬영한 경우, 교제 중 촬영에 동의했으나 헤어진 후 상대의 동의 없이 온라인 사이트에 업로드 하는 경우, 숙박업체나 공공장소에서 제3자에 의해 몰래 촬영된 경우, 어린 대상자와 돈독한 관계를 만든 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온라인 성폭력을 한 그루밍 등 온라인 채팅에서도 쉽게 일어나고 있어 그 형태와 경로는 다양하다. 또한 온라인에서 성폭력 및 강간을 모의하고, 실제 강간을 시도한 사례가 있을 만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성폭력 및 혐오표현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라는 공간을 구분해 발생하지 않는다.

둘째, 피해자 대응 방식을 보면, 우선 피해자가 상황을 인지하고 난 후, 일반적으로 이성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주변의 반응과 시선에 대해 심리적으로 충격과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다. 특히 남성보다는 여성의 몸이 쉽게 소비되고 있어, 피해 동영상이 재유포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그리고 실제 협박을 당하는 사례도 있어 피해자의 심리적 상태는 이성적 상태를 유지하기 어렵다. 하지만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들은 전화 혹은 방문을 통해 무료 상담을 시도하는데 주로 법적 대응 방법과 피해 동영상을 어떻게 삭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의를 한다. 피해 사실은 대부분 피해자들이 먼저 발견해 해당 기관에 신고하며, 삭제 명령

권한을 가진 기관에 요청하게 되는데, 수사 기관을 포함해 삭제 권한을 가진 기관에서는 접수된 사건을 확인 후 심의 및 조사해야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기대하는 것만큼 신속하게 답변을 해주기 어렵다. 또한 접수되는 사건이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처리 결과 및 답변이 지연되는데 그 동안 문제 동영상 이미 많은 사이트에 유통되기 때문에 피해자는 기관의 사건 처리 방식에 대부분 불만을 가지고 있다. 특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삭제 명령을 받은 동영상이 무엇인지, 영구 삭제가 될 수 있도록 동영상의 내용과 특징을 기록해 사후 처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보는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결국 고액의 사설 업체 서비스를 찾게 된다.

온라인 성폭력과 달리 온라인 여성혐오나 희롱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법적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불특정 다수 즉 여성 혹은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게시글이나 댓글로 인해 성적 모욕과 수치심을 느끼게 될 경우, 사이트 방문을 중단하거나 게시글 작성자에게 유사한 방식으로 대응하는 사례가 일반적이었다. 물론 소셜 미디어에서 심각한 혐오표현이 오가면서, 오프라인 만남을 시도하기도 하는데,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 법적 시도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 같은 보복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성희롱·여성혐오에 대한 피해를 입증하기 쉽지 않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들은 대부분 피해를 인지하자마자 상담 센터를 먼저 찾게 되는데, 상담사, 변호사, 수사관, 공무원 등을 만나는 과정에서 대부분 2차 피해를 경험하며, 피해사실을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도 2차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결국 최근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 현상은 동영상 유통 사이트, 여성/남성 혐오 온라인 커뮤니티 그리고 모든 세대가 즐겨 찾는 포털 사이트나 동영상 사이트에까지 발견되고 있는데, 현재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늘어나는 사건들을 대응할 수 있는 젠더 공감력이 높은 전문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며, 피해자들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정신과 치료에 대한 예산도 필요하다. 하지만 관련 연구가 어떻게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지, 불법 동영상 유통 플랫폼의 강력한 처벌은 가능한지, 해비 업로더들은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실질적인 논의들이 가장 시급하다.



---

---

# V

---

---

##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표현에 관한 여성 인식

1. 조사 설계	115
2. 응답자 특성	116
3. 조사 결과 분석	117
4. 소결	171



## 1. 조사 설계

본 장에서는 온라인에서의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표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40대 여성 6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온라인에서 성희롱·성폭력을 직접 경험했거나 직접 경험하지 못했더라도 목격한 적이 있는 여성으로 했으며, 20대, 30대, 40대 각각 200명씩 연령별로 할당하여 표집했다. 조사는 조사전문기관인 (주)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해 표준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조사로 2018년 10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진행했다.

온라인조사에 앞서 설문에서 언급한 온라인이 무엇이며, 온라인에서의 경험이 무엇인지를 조사 참여자에게 설명했다. 또 이 설문에서 말하는 온라인 성희롱, 성폭력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설명을 제시하여 좀 더 정확한 응답을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온라인이란 PC에서 접속한 인터넷과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기기에서 접속한 인터넷을 모두 포함한다.
- ‘온라인에서의 경험’이란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등으로 인터넷이나 통신망에 연결하여 포털사이트, 커뮤니티, SNS, 메신저, 채팅, 게임, 이메일 등을 이용한 경험을 말한다.
- 온라인 성희롱이란 온라인상에서 대화, 메일, 게시글 등을 통해 공격적인 성적 메시지로 성차에 기반 한 모욕적인 발언, 성적 언급과 농담 등을 통해 불쾌감, 수치심, 혹은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한다.
- 온라인 성폭력이란 상대가 원치 않는 성적 언어나 정보(의학적 내용 포함), 음란한 영상(포르노 포함)을 전달하거나, 상대의 신체 또는 성적 관심이나 행위에 대한 언급, 상대의 성적 행위나 신체 노출 요구, 성적 욕설, 성추행 위협, 성관계나 성매매를 제안하여 정신적, 물리적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표 V-1〉 조사 설계

조사대상	온라인에서 성희롱·성폭력을 직접 경험했거나 목격한 적 있는 여성
유효표본	600명(20대 200명, 30대 200명, 40대 200명)
조사방법	표준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조사
표본추출	판단 표본추출
조사기간	2018년 10월 4일 ~ 10월 8일(5일간)
조사기관	(주)코리아리서치센터

## 2. 응답자 특성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할당표집을 했기 때문에, 20대, 30대, 40대가 각각 200명씩 참여했고 학력별로는 대재 이상이 89.0%, 고졸 이하가 11.0%였다. 직업별로는 사무직/전문직/기술전문직/경영관리직이 가장 많은 56.5%였고, 주부가 20.0%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또 결혼한 사람이 46.2%, 결혼 안한 사람이 52.0%였다. 조사 참여자 중 온라인 성폭력과 성희롱을 직접 경험한 사람은 226명으로 조사 참여자의 37.7%였다.

〈표 V-2〉 응답자 특성

유형별	구분	명	응답자 비율(%)
연령별	20대	200	33.3
	30대	200	33.3
	40대	200	33.3
학력별	고졸 이하	66	11.0
	대재 이상	534	89.0
직업별	자영/판매업	22	3.7
	서비스직/노무직/기능직	32	5.3
	사무직/전문직/기술전문직/경영관리직	339	56.5

유형별	구분	명	응답자 비율(%)
	전업주부	120	20.0
	학생	44	7.3
	무직/퇴직/기타	43	7.2
혼인상태별	결혼	277	46.2
	미혼	312	52.0
	기타	11	1.8
자녀유무별	자녀 없음	380	63.3
	자녀 있음	220	36.7

### 3. 조사 결과 분석

#### 1) 온라인에서의 성평등 정도에 대한 인식

먼저, 온라인에서 얼마나 성평등이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 여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6개의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했다.

분석 결과, “오프라인 세상보다 온라인 세상에서 양성평등의식이 정착되어 있다”는 의견에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55.2%(‘전혀 그렇지 않다’ 16.2% + ‘별로 그렇지 않다’ 39.0%)로, ‘그렇다’는 응답 16.7%(‘매우 그렇다’ 1.3% + ‘다소 그렇다’ 15.3%)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오프라인 세상보다 온라인 세상에서 남녀 간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진다” 의견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59.0%(‘전혀 그렇지 않다’ 20.2% + ‘별로 그렇지 않다’ 38.8%)로 ‘그렇다’는 응답 16.8%(‘매우 그렇다’ 2.0% + ‘다소 그렇다’ 14.8%)에 비해 크게 높았다. “오프라인 세상보다 온라인 세상에서 여성이 고립/배제되고 있다”는 의견에 ‘그렇지 않다’는 응답 역시 55.7%(‘전혀 그렇지 않다’ 12.0% + ‘별로 그렇지 않다’ 43.7%)로 ‘그렇다’는 응답 14.3%(‘매우 그렇다’ 2.5% + ‘다소 그렇다’ 11.8%)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 “오프라인 세상보다 온라인 세상에서 여성의 자율성이 존중된다”는 의견에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48.2%(‘전혀 그렇지 않다’ 13.3% + ‘별로 그렇지 않다’ 34.8%), “오프라인 세상보다 온라인 세상이 더 권위적인 분위기이다”는 의견에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49.5%(‘전혀 그렇지 않다’ 11.2% + ‘별로 그렇지 않다’

38.3%)로 조사 참여자의 반수가량이 동의했다.

다만, “오프라인 세상보다 온라인 세상에서 성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그렇다’(36.2%)와 ‘그렇지 않다’(30.2%)는 응답이 비슷하게 나왔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20-40대 여성 응답자들의 반수 이상은 오프라인 세상보다 온라인 세상에서 양성평등의식이 정착되어 있지 않으며, 남녀 간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여성이 고립되어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조사 참여자의 반수 가량은 오프라인 세상보다 온라인 세상이 권위적이며, 오프라인 세상보다 온라인 세상에서 여성의 자율성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3〉 온라인에서의 성평등 정도에 대한 인식

문1. 선생님께서는 다음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계 명, %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합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1. 여성의 자율성 존중	600 100.0	80 13.3	209 34.8	165 27.5	135 22.5	11 1.8	289 48.2	165 27.5	146 24.3
2. 양성평등 의식 정착	600 100.0	97 16.2	234 39.0	169 28.2	92 15.3	8 1.3	331 55.2	169 28.2	100 16.7
3. 남녀 간 의사소통	600 100.0	121 20.2	233 38.8	145 24.2	89 14.8	12 2.0	354 59.0	145 24.2	101 16.8
4. 성에 대한 차별	600 100.0	31 5.2	150 25.0	202 33.7	180 30.0	37 6.2	181 30.2	202 33.7	217 36.2
5. 권위적인 분위기	600 100.0	67 11.2	230 38.3	169 28.2	112 18.7	22 3.7	297 49.5	169 28.2	134 22.3
6. 여성이 고립/배제	600 100.0	72 12.0	262 43.7	180 30.0	71 11.8	15 2.5	334 55.7	180 30.0	86 14.3

주: 1. 오프라인 세상보다 온라인 세상에서 여성의 자율성이 존중된다, 2. 오프라인 세상보다 온라인 세상에서 양성평등의식이 정착되어 있다, 3. 오프라인 세상보다 온라인 세상에서 남녀 간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진다, 4. 오프라인 세상보다 온라인 세상에서 성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 5. 오프라인 세상보다 온라인 세상이 더 권위적인 분위기이다, 6. 오프라인 세상보다 온라인 세상에서 여성이 고립/배제되고 있다.

이어 5점 척도로 응답한 내용에 대해 평균 분석을 실시해본 결과, “오프라인 세상보다 온라인 세상에서 성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와 “오프라인 세상보다 온라인 세상에서 여성의 자율성이 존중된다”는 문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응답에서 평균값이 2.5 이하로 나타나 온라인 세상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의 경우 “오프라인 세상보다 온라인 세상이 성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와 “오프라인 세상보다 온라인 세상이 더 권위적인 분위기이다”를 제외하고는 모두 2.5보다 낮아, 20대 여성들은 온라인 세상이 오프라인 세상보다 여성의 자율성을 존중받지 못하고, 양성평등의식이 정착되어 있지 않으며, 남녀 간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여성이 고립/배제되어 있다고 인식했다. 특히 남녀 간의 의사소통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이 높아 평균이 2.09로 가장 낮았다. 이러한 경향은 30대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 30대에서도 남녀 간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진다는데 동의한 비율이 2.3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40대 여성의 경우는 20대·30대와 달리 오프라인 세상보다 온라인 세상에서 남녀 간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진다는데 동의하는 비율이 2.80으로 평균점보다 높았다. 온라인을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20대와 30대가 오프라인 세상보다 온라인 세상에서 남녀 간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4〉 응답자의 연령대와 온라인에서의 성평등 정도에 대한 인식과의 평균 분석

구분	명	여성의 자율성 존중	양성평등 의식 정착	남녀 간 의사소통	성에 대한 차별	권위적인 분위기	여성이 고립/배제
20대	200	2.55	2.38	2.09	3.09	2.66	2.40
30대	200	2.59	2.40	2.31	3.15	2.73	2.56
40대	200	2.81	2.63	2.80	2.98	2.58	2.52
전체	600	2.68	2.47	2.40	3.07	2.65	2.49

## 2)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인식

### (1) 직접 경험자들의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실태

본 설문조사에서는 온라인 성희롱과 성폭력을 직접 경험한 사람과 직접 경험

하지는 않았지만, 온라인에서 목격한 사람을 조사 참여자로 선정했는데, 조사 참여자 600명 중 37.7%에 해당하는 226명이 온라인에서 성희롱과 성폭력을 직접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에서는 조사 참여자의 32.5%가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을 직접 경험했다고 응답했고, 30대에서는 조사 참여자의 38.0%, 40대에서는 조사 참여자의 42.5%가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을 직접 경험한 것으로 분석됐다. 설문조사를 온라인 성희롱과 성폭력을 직접 또는 간접 경험한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했기 때문에 전체 여성 중에서 온라인 성희롱과 성폭력을 직접 경험한 비율보다는 높게 나타났다는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10명 중 대략 4명 정도가 직접 경험이 있다는 결과는 온라인 성희롱과 성폭력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다.

〈표 V-5〉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직접 경험자와 간접 경험자

	명	%
직접 경험한 적이 있다	167	27.8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목격한 적이 있다	374	62.3
직접 경험한 적 있으며 목격한 적도 있다	59	9.8
<b>합계</b>	<b>600</b>	<b>100.0</b>

〈표 V-6〉 응답자의 연령대와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직간접 경험에 대한 교차분석

구분	명 %	직접 경험한 적이 있다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목격한 적이 있다	직접 경험한 적 있으며 목격한 적도 있다
20대	200	48	135	17
	100.0	24.0	67.5	8.5
30대	200	60	124	16
	100.0	30.0	62.0	8.0
40대	200	59	115	26
	100.0	29.5	57.5	13.0

① 직접 경험자의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경험의 유형

온라인에서 성희롱·성폭력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 분석해보니, 가장 많이 경험한 것은 온라인에서 원치 않는 음란물(글, 영상, 음향파일 등)을 전송받은 것으로, 직접 경험자의 87.6%(‘드물게 경험했다’ 34.5% + ‘가끔 경험했다’ 33.2% + ‘자주 경험했다’ 16.8% + ‘항상 경험했다’ 3.1%)였다. 직접 경험자 10명 중 9명 가량이 원치 않는 음란물을 전송받은 경험이 있다는 것이다.

또 직접 경험자 2명 중 1명이 경험한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은 “온라인에서 성적 욕설이 담긴 메시지(메일, 댓글, 카톡 등)를 받은 적이 있다”(61.5%: ‘드물게 경험했다’ 30.1% + ‘가끔 경험했다’ 20.4% + ‘자주 경험했다’ 8.4% + ‘항상 경험했다’ 2.7%)와 “온라인에서 나의 외모를 대상으로 한 불쾌한 메시지(메일, 댓글, 카톡 등)를 받은 적이 있다”(54.0%: ‘드물게 경험했다’ 26.1% + ‘가끔 경험했다’ 19.5% + ‘자주 경험했다’ 6.6% + ‘항상 경험했다’ 1.8%), “온라인에서 사적 만남을 강요받은 적이 있다”(50.9%: ‘드물게 경험했다’ 21.7% + ‘가끔 경험했다’ 19.9% + ‘자주 경험했다’ 7.5% + ‘항상 경험했다’ 1.8%)였다. 성적 욕설과 외모를 대상으로 한 불쾌한 메시지, 사적 만남 강요 역시 온라인에서 매우 자주 일어나는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경험인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특정 신체 부위 노출을 요구받은 적이 있다”(37.2%), “특정 신체 사진을 보내라는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36.3%), “성관계 제안을 받은 적이 있다”(33.6%), “성매매 제안을 받은 적이 있다”(33.6%), “내 사진이나 영상이 무단 유포된 적이 있다”(22.6%), “나의 성적 행위가 찍힌 사진이나 영상이 무단 유포된 적이 있다”(13.3%)는 경험도 10명 중 1-3명 이상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의 수준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V-7〉 직접 경험자의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유형별 경험 여부

문2. 지난 1년 동안 온라인에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선생님 본인이 직접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각 항목별로 선택해 주십시오.								
	합계 명, %	경험한 적이 없다	드물게 경험했다	가끔 경험했다	자주 경험했다	항상 경험했다	종합	
							경험한 적 없다	경험했다
1. 불쾌한 메시지	226 100.0	104 46.0	59 26.1	44 19.5	15 6.6	4 1.8	104 46.0	122 54.0

문2. 지난 1년 동안 온라인에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선생님 본인이 직접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각 항목별로 선택해 주십시오.								
	합계 명, %	경험한 적이 없다	드물게 경험 했다	가끔 경험 했다	자주 경험 했다	항상 경험 했다	종합	
							경험한 적 없다	경험 했다
2. 성적 욕설 메시지	226 100.0	87 38.5	68 30.1	46 20.4	19 8.4	6 2.7	87 38.5	139 61.5
3. 원치 않는 음란물	226 100.0	28 12.4	78 34.5	75 33.2	38 16.8	7 3.1	28 12.4	198 87.6
4. 원치 않는 성적 대화	226 100.0	86 38.1	64 28.3	48 21.2	20 8.8	8 3.5	86 38.1	140 61.9
5. 사적 만남 강요	226 100.0	111 49.1	49 21.7	45 19.9	17 7.5	4 1.8	111 49.1	115 50.9
6. 특정 신체 부위 노출	226 100.0	142 62.8	33 14.6	30 13.3	16 7.1	5 2.2	142 62.8	84 37.2
7. 특정 신체 사진 전송	226 100.0	144 63.7	38 16.8	24 10.6	16 7.1	4 1.8	144 63.7	82 36.3
8. 내 사진 무단 유포	226 100.0	175 77.4	27 11.9	13 5.8	7 3.1	4 1.8	175 77.4	51 22.6
9. 내 성적 행위 유포	226 100.0	196 86.7	13 5.8	9 4.0	5 2.2	3 1.3	196 86.7	30 13.3
10. 성관계 제안	226 100.0	150 66.4	35 15.5	28 12.4	10 4.4	3 1.3	150 66.4	76 33.6
11. 성매매 제안	226 100.0	150 66.4	41 18.1	16 7.1	15 6.6	4 1.8	150 66.4	76 33.6

주: 1. 온라인에서 나의 외모를 대상으로 한 불쾌한 메시지(메일, 댓글, 카톡 등)를 받은 적이 있다, 2. 온라인에서 성적인 욕설이 담긴 메시지(메일, 댓글, 카톡 등)를 받은 적이 있다, 3. 온라인에서 원치 않는 음란물(글, 영상, 음향파일 등)을 전송받은 적이 있다, 4. 온라인에서 원치 않는 성적 대화(채팅)를 요구받은 적이 있다, 5. 온라인에서 사적 만남을 강요받은 적이 있다, 6. 온라인에서 특정 신체 부위 노출을 요구받은 적이 있다, 7. 온라인에서 특정 신체 사진을 보내라는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 8. 온라인에서 내 사진이나 영상이 무단 유포된 적이 있다, 9. 온라인에서 나의 성적 행위가 찍힌 사진이나 영상이 무단 유포된 적이 있다, 10. 온라인에서 성관계 제안을 받은 적이 있다, 11. 온라인에서 성매매(조건만남) 제안을 받은 적이 있다.

연령별로 분석해보면, 20대가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을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에서는 “온라인에서 원치 않는 음란물(글, 영상, 음향파일 등)을 전송받은 적이 있다”가 89.2%, “온라인에서 원치 않는 성적 대화(채팅)를 요구받은 적이 있다”(67.7%), “온라인에서 나의 외모를 대상으로 한 불쾌한 메시지(메일, 댓글, 카톡 등)를 받은 적이 있다”(66.2%), “온라인에서 성적인 욕설이 담긴 메시지(메일, 댓글, 카톡 등)를 받은 적이 있다”(64.6%), “온라인에서 사적 만남을 강요받은 적이 있다”(58.5%), “온라인에서 특정 신체 사진을 보내라는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50.8%)로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경험자의 반수 이상이 이런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온라인에서 특정 신체 부위 노출을 요구받은 적이 있다”(49.2%), “온라인에서 내 사진이나 영상이 무단 유포된 적이 있다”(35.4%), “온라인에서 나의 성적 행위가 찍힌 사진이나 영상이 무단 유포된 적이 있다”(15.4%)는 비율도 10명 중 2~5명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온라인에서 성관계 제안을 받은 적이 있다”가 46.2%, “온라인에서 성매매(조건만남) 제안을 받은 적이 있다”가 43.1%로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성희롱과 성폭력의 수준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0대 여성은 20대 여성보다 온라인 성희롱과 성폭력 경험의 비율이 약간 낮게 나타나긴 했지만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며, “온라인에서 원치 않는 음란물(글, 영상, 음향파일 등)을 전송받은 적이 있다”(89.5%), “온라인에서 성적인 욕설이 담긴 메시지(메일, 댓글, 카톡 등)를 받은 적이 있다”(65.8%), “온라인에서 원치 않는 성적 대화(채팅)를 요구받은 적이 있다”(61.8%)가 높게 나왔다. 또 “온라인에서 성관계 제안을 받은 적이 있다”와 “온라인에서 성매매(조건만남) 제안을 받은 적이 있다”가 각각 35.5%, 36.8%로 10명 중 3~4명이 이런 경험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40대에서는 20대와 30대보다 유형별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경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모든 유형의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경험을 응답자 10명 중 1명~8명 이상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8〉 직접 경험자의 연령대와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경험 유형에 대한 교차분석

구분	불쾌한 메시지	성적 욕설 메시지	원치 않는 음란물	원치 않는 성적 대화	사적 만남 강요	특정 신체 부위 노출	특정 신체 사진 전송	내 사진 무단 유포	내 성적 행위 유포	성관계 제안	성매매 제안
20대	43	42	58	44	38	32	33	23	10	30	28
	66.2	64.6	89.2	67.7	58.5	49.2	50.8	35.4	15.4	46.2	43.1
30대	39	50	68	47	39	32	28	12	10	27	28
	51.3	65.8	89.5	61.8	51.3	42.1	36.8	15.8	13.2	35.5	36.8
40대	40	47	72	49	38	20	21	16	10	19	20
	47.1	55.3	84.7	57.6	44.7	23.5	24.7	18.8	11.8	22.4	23.5
전체	122	139	198	140	115	84	82	51	30	76	76
	54.0	61.5	87.6	61.9	50.9	37.2	36.3	22.6	13.3	33.6	33.6

② 직접 경험자의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의 가해자

직접 경험자들(226명)에게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의 가해자가 누구인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온라인에서 처음 만난 사람(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는 응답이 53.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직장상사나 동료”(46.5%), “일회성으로 만난 상대”(33.2%), “친구(선후배 포함)”(26.1%), “오프라인에서 만난 적은 없고 온라인에서 지속적으로 연결된 사람”(24.8%), “연인(전 연인 또는 현재 연인)”(19.9%), “가족(배우자, 남매 등)”(11.1%) 순으로 나타났다.

〈표 V-9〉 직접 경험자가 응답한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의 유형

문 2-1. 선생님 본인이 직접 경험하신 성희롱·성폭력의 가해자는 누구입니까?			
	합계 명, %	그렇다	아니다
1. 연인(전 연인 또는 현재 연인)	226 100.0	45 19.9	181 80.1
2. 가족(배우자, 남매 등)	226 100.0	25 11.1	201 88.9

문 2-1. 선생님 본인이 직접 경험하신 성희롱·성폭력의 가해자는 누구입니까?			
	합계 명, %	그렇다	아니다
3. 직장상사나 동료	226 100.0	105 46.5	121 53.5
4. 친구(선후배 포함)	226 100.0	59 26.1	167 73.9
5. 일회성으로 만난 상대	226 100.0	75 33.2	151 66.8
6. 오프라인에서 만난 적은 없고 온라인에서 지속적으로 연결된 사람	226 100.0	56 24.8	170 75.2
7. 온라인에서 처음 만난 사람(전혀 모르는 사람)	226 100.0	121 53.5	105 46.5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20대와 30대에서는 비슷한 경향이 나타나 성희롱·성폭력의 ‘가해자’로 “온라인에서 처음 만난 사람(전혀 모르는 사람)”(각각 66.2%, 55.3%)이 다소 많았고, “직장상사나 동료”(각각 47.7%, 47.4%), “일회성으로 만난 상대”(각각 35.4%, 36.8%) 순으로 높게 나왔다. 40대에서는 20대와 30대와는 다소 다르게 “직장상사나 동료”(44.7%)와 “온라인에서 처음 만난 사람(전혀 모르는 사람)”(42.4%)이 비슷하게 나타났고, “일회성으로 만난 상대”와 “친구(선후배 포함)”가 각각 28.2%인 것으로 분석됐다.

〈표 V-10〉 직접 경험자의 연령대와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의 유형과의 교차분석

구분	연인 (전 연인 또는 현재 연인)	가족 (배우자, 남매 등)	직장상사나 동료	친구 (선후배 포함)	일회성으로 만난 상대	오프라인 에서 만난 적은 없고 온라인에서 지속적으로 연결된 사람	온라인에서 처음 만난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
20대	18	6	31	21	23	19	43
	27.7	9.2	47.7	32.3	35.4	29.2	66.2
30대	11	7	36	14	28	21	42
	14.5	9.2	47.4	18.4	36.8	27.6	55.3

구분	연인 (전 연인 또는 현재 연인)	가족 (배우자, 남매 등)	직장상사나 동료	친구 (선후배 포함)	일회성으로 만난 상대	오프라인 에서 만난 적이 없고 온라인에서 지속적으로 연결된 사람	온라인에서 처음 만난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
40대	16	12	38	24	24	16	36
	18.8	14.1	44.7	28.2	28.2	18.8	42.4
전체	45	25	105	59	75	56	121
	19.9	11.1	46.5	26.1	33.2	24.8	53.5

## (2) 간접 경험자가 목격한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의 유형

지난 1년 동안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을 목격한 응답자(433명)를 대상으로 이들이 목격한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의 유형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외모를 대상으로 한 불쾌한 메시지(메일, 댓글, 카톡 등)를 목격한 적이 있다”(94.2%), “원치 않는 음란물(글, 영상, 음향파일 등)을 목격한 적이 있다”(93.5%), “성적인 욕설이 담긴 메시지(메일, 댓글, 카톡 등)를 목격한 적이 있다”(90.8%)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 10명 중 9명 이상이 목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해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었다.

〈표 V-11〉 간접 경험자들이 목격한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의 유형

문3. 지난 1년 동안 온라인에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선생님이 직접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각 항목별로 선택해 주십시오.								
	합계 명, %	목격한 적이 없다	드물게 목격 했다	가끔 목격 했다	자주 목격 했다	항상 목격 했다	종합	
							목격한 적 없다	목격 했다
1. 불쾌한 메시지	433 100.0	25 5.8	99 22.9	148 34.2	123 28.4	38 8.8	25 5.8	408 94.2
2. 성적 욕설 메시지	433 100.0	40 9.2	95 21.9	147 33.9	117 27.0	34 7.9	40 9.2	393 90.8
3. 원치 않는 음란물	433 100.0	28 6.5	125 28.9	127 29.3	125 28.9	28 6.5	28 6.5	405 93.5

문3. 지난 1년 동안 온라인에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선생님이 직접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각 항목별로 선택해 주십시오.

	합계 명, %	목격한 적이 없다	드물게 목격했다	가끔 목격했다	자주 목격했다	항상 목격했다	종합	
							목격한 적이 없다	목격했다
4. 성적 대화	433 100.0	145 33.5	136 31.4	98 22.6	43 9.9	11 2.5	145 33.5	288 66.5
5. 사적 만남 강요	433 100.0	201 46.4	114 26.3	86 19.9	23 5.3	9 2.1	201 46.4	232 53.6
6. 특정 신체 부위 노출	433 100.0	148 34.2	128 29.6	106 24.5	36 8.3	15 3.5	148 34.2	285 65.8
7. 특정 신체 사진 전송	433 100.0	253 58.4	91 21.0	60 13.9	22 5.1	7 1.6	253 58.4	180 41.6
8. 타인 사진 무단 유포	433 100.0	113 26.1	152 35.1	112 25.9	42 9.7	14 3.2	113 26.1	320 73.9
9. 타인 성적 행위 유포	433 100.0	161 37.2	135 31.2	88 20.3	40 9.2	9 2.1	161 37.2	272 62.8
10. 성관계 제안	433 100.0	263 60.7	98 22.6	47 10.9	18 4.2	7 1.6	263 60.7	170 39.3
11. 성매매 제안	433 100.0	243 56.1	119 27.5	41 9.5	26 6.0	4 0.9	243 56.1	190 43.9

주: 1. 온라인에서 외모를 대상으로 한 불쾌한 메시지(메일, 댓글, 카톡 등)를 목격한 적이 있다, 2. 온라인에서 성적인 욕설이 담긴 메시지(메일, 댓글, 카톡 등)를 목격한 적이 있다, 3. 온라인에서 원치 않는 음란물(글, 영상, 음향파일 등)을 목격한 적이 있다, 4. 온라인에서 성적 대화(채팅)를 목격한 적이 있다, 5. 온라인에서 사적 만남을 강요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 6. 온라인에서 특정 신체 부위 노출을 목격한 적이 있다, 7. 온라인에서 특정 신체 사진을 보내라는 메시지(메일, 댓글, 카톡 등)를 목격한 적이 있다, 8.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의 사진이나 영상이 무단 유포된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 9.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의 성적 행위가 찍힌 사진이나 영상이 무단 유포된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 10. 온라인에서 성관계 제안을 목격한 적이 있다, 11. 온라인에서 성매매(조건만남) 제안을 목격한 적이 있다.

또 “다른 사람의 사진이나 영상이 무단 유포된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73.9%), “성적 대화(채팅)를 목격한 적이 있다”(66.5%), “특정 신체 부위 노출을 목격한 적이 있다”(65.8%), “다른 사람의 성적 행위가 찍힌 사진이나 영상이 무단 유포된

것을 목격한 적 있다”(62.8%)는 여성도 응답자 10명 중 6-7명이나 됐다. 이와 함께 “사적 만남을 강요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53.6%), “성매매(조건만남) 제안을 목격한 적이 있다”(43.9%), “특정 신체 사진을 보내라는 메시지를 목격한 적이 있다”(41.6%), “성관계 제안을 목격한 적이 있다”(39.3%)는 여성도 응답자 10명 중 3-5명이나 목격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을 ‘목격했다’는 응답은 20대에서는 “온라인에서 원치 않는 음란물(글, 영상, 음향파일 등)을 목격한 적이 있다”(96.7%), “온라인에서 외모를 대상으로 한 불쾌한 메시지(메일, 댓글, 카톡 등)를 목격한 적이 있다”(96.1%) “온라인에서 성적인 욕설이 담긴 메시지(메일, 댓글, 카톡 등)를 목격한 적이 있다”(95.4%)는 응답이 95% 이상 나왔으며,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의 사진이나 영상이 무단 유포된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80.9%로 나타났고, “온라인에서 성적 대화(채팅)를 목격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71.1%나 됐다. “특정 신체 부위 노출을 목격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68.4%,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의 성적 행위가 찍힌 사진이나 영상이 무단 유포된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67.8%로 70%에 가까웠다. 그 밖에도 “온라인에서 사적 만남을 강요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59.2%)거나 “온라인에서 성매매(조건만남) 제안을 목격한 적이 있다”(51.3%), “온라인에서 성관계 제안을 목격한 적이 있다”(45.4%)는 비율도 절반 가까이 됐다. 30대에서도 20대와 비슷한 경향이 나타났으며, “온라인에서 외모를 대상으로 한 불쾌한 메시지(메일, 댓글, 카톡 등)를 목격한 적이 있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97.9%). 40대에서는 유형별 목격의 빈도가 다소 낮아지기는 했으나 목격한 성희롱·성폭력 유형의 순위는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 V-12〉 간접 경험자들의 연령대와 목격한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의 유형과의 교차분석

구분	불쾌한 메시지	성적 욕설 메시지	원치 않는 음란물	성적 대화	사적 만남 강요	특정 신체 부위 노출	특정 신체 사진 전송	타인 사진 무단 유포	타인 성적 행위 유포	성관계 제안	성매매 제안
20대	146	145	147	108	90	104	67	123	103	69	78
	96.1	95.4	96.7	71.1	59.2	68.4	44.1	80.9	67.8	45.4	51.3
30대	137	131	129	88	78	101	67	101	89	57	58
	97.9	93.6	92.1	62.9	55.7	72.1	47.9	72.1	63.6	40.7	41.4

구분	불쾌한 메시지	성적 욕설 메시지	원치 않는 음란물	성적 대화	사적 만남 강요	특정 신체 부위 노출	특정 신체 사진 전송	타인 사진 무단 유포	타인 성적 행위 유포	성관계 제안	성매매 제안
40대	125 88.7	117 83.0	129 91.5	92 65.2	64 45.4	80 56.7	46 32.6	96 68.1	80 56.7	44 31.2	54 38.3
전체	408 94.2	393 90.8	405 93.5	288 66.5	232 53.6	285 65.8	180 41.6	320 73.9	272 62.8	170 39.3	190 43.9

### (3)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경험 및 목격 시 대응 방법

온라인 성희롱과 성폭력을 직접 경험했거나 목격했을 때 어떻게 대응했는지 질문한 결과,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가 24.5%로 10명 중 2-3명은 아무 대응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서비스(사이트, 어플)의 아이디를 새로 만들거나 아예 한동안 이용하지 않기”(38.5%), “해당 서비스(사이트, 어플)에서 완전히 탈퇴하기”(38.0%), “해당 서비스(사이트, 어플) 신고센터에 신고하기”(33.5%) 등이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했거나 목격한 후 가장 많이 취한 대응 방법이었다. 이어 “상대방에게 항의하고 사과를 요구했다”(19.2%), “사설업체에 문의하거나 영상물 등의 삭제를 의뢰했다”(9.2%), “경찰(온라인 사이버 수사대 포함)에 신고했다”(9.0%), “여성가족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상담·접수했다”(5.7%), “시민단체에 도움을 요청했다”(4.3%) 순으로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3〉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경험 및 목격 시 대응 방법

문4. 선생님께서 직접 경험하시거나 목격하셨을 때 어떻게 대응하셨습니다까? 각 항목별로 선택해 주십시오.			
	합계 명, %	없다	있다
1. 상대방에게 항의하고 사과를 요구했다	600 100.0	485 80.8	115 19.2
2. 여성가족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상담·접수했다	600 100.0	566 94.3	34 5.7
3. 시민단체에 도움을 요청했다	600 100.0	574 95.7	26 4.3

문4. 선생님께서 직접 경험하시거나 목격하셨을 때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각 항목별로 선택해 주십시오.			
	합계 명, %	없다	있다
4. 사설업체에 문의하거나 영상물 등의 삭제를 의뢰했다	600 100.0	545 90.8	55 9.2
5. 해당 서비스(사이트, 어플)의 아이디를 새로 만들거나 아예 한동안 이용하지 않았다	600 100.0	369 61.5	231 38.5
6. 해당 서비스(사이트, 어플)에서 완전히 탈퇴했다	600 100.0	372 62.0	228 38.0
7. 해당 서비스(사이트, 어플) 신고센터에 신고했다	600 100.0	399 66.5	201 33.5
8. 경찰(온라인 사이버 수사대 포함)에 신고했다	600 100.0	546 91.0	54 9.0
9.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	600 100.0	453 75.5	147 24.5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했거나 목격했을 시 대응 방법으로 20대에서는 “상대방에게 항의하고 사과를 요구했다”(22.5%)는 비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으며, “해당 서비스(사이트, 어플) 신고센터에 신고했다”(39.5%), “해당 서비스(사이트, 어플)에서 완전히 탈퇴했다”(35.5%), “해당 서비스(사이트, 어플)의 아이디를 새로 만들거나 아예 한동안 이용하지 않았다”(35.0%)는 응답이 많았다. “경찰(온라인 사이버 수사대 포함)에 신고했다”는 비율은 9.5%였다. 30대에서도 20대와 비슷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0대는 20대와 30대보다 온라인 성폭력과 성희롱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표 V-14〉 응답자의 연령대와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경험·목적 시 대응 방법과의 교차분석

구분	상대방에게 항의, 사과 요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상담·접수	시민 단체에 도움 요청	사실 업체에 문의, 영상물 등의 삭제 의뢰	해당 서비스 아이디 새로 만들거나 이용안함	해당 서비스에서 완전히 탈퇴	해당 서비스 신고 센터에 신고	경찰 (온라인 사이버 수사대 포함)에 신고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음
20대	45	12	8	16	70	71	79	19	46
	22.5	6.0	4.0	8.0	35.0	35.5	39.5	9.5	23.0
30대	39	14	13	15	79	74	70	18	49
	19.5	7.0	6.5	7.5	39.5	37.0	35.0	9.0	24.5
40대	31	8	5	24	82	83	52	17	52
	15.5	4.0	2.5	12.0	41.0	41.5	26.0	8.5	26.0
전체	115	34	26	55	231	228	201	54	147
	19.2	5.7	4.3	9.2	38.5	38.0	33.5	9.0	24.5

① 해당 서비스 신고센터 신고 시 가해자 처벌 여부

해당 서비스 신고센터에 신고했다면(201명), 피해를 준 상대방은 처벌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어떠한 조치나 처벌도 받지 않았다’는 응답이 22.4%, ‘처벌을 받았다(게시글 삭제, 서비스 이용 차단, 사이트 폐쇄 등)’가 15.9%,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61.7%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또 플랫폼 사업자가 신고자에게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알려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

〈표 V-15〉 해당 서비스 신고센터 신고 시 가해자 처벌 여부

문4-7-1. 해당 서비스 신고센터에 신고를 하셨다면, 피해를 준 상대방은 처벌을 받았습니까?		
	명	%
처벌을 받았다(게시글 삭제, 서비스 이용 차단, 사이트 폐쇄 등)	32	15.9
어떠한 조치나 처벌도 받지 않았다	45	22.4
잘 모르겠다	124	61.7
<b>합계</b>	<b>201</b>	<b>100.0</b>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해당 서비스 신고센터 신고 시 가해자 처벌 여부로 40대에서는 “처벌을 받았다”(21.2%)는 응답이 20대(15.2%)와 30대(12.9%)보다 높았으며, “어떠한 조치나 처벌도 받지 않았다”는 응답은 30대(24.3%)와 40대(25.0%)가 20대(19.0%)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V-16〉 응답자의 연령대와 해당 서비스 신고센터 신고 시 가해자 처벌 여부와의 교차분석

구분	명 %	처벌을 받았다	어떠한 조치나 처벌도 받지 않았다	잘 모르겠다
20대	79	12	15	52
	100.0	15.2	19.0	65.8
30대	70	9	17	44
	100.0	12.9	24.3	62.9
40대	52	11	13	28
	100.0	21.2	25.0	53.8

## ② 경찰 신고 시 가해자 처벌 여부

경찰에 신고했다면(54명), 피해를 준 상대방은 처벌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는 응답이 44.4%, ‘처벌을 받았다’는 응답이 11.1%,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44.4%로 나타났다. 표본 수가 적어서 해석하기 어렵지만, 신고자에게 결과를 통보해줄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신고한 여성 54명의 사건 중 6건만이 처벌을 받았고, 24건은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아, 온라인 성희롱과 성폭력에 대해 관대한 처벌을 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표 V-17〉 경찰 신고 시 가해자 처벌 여부

문4-8-1. 경찰에 신고를 하셨다면, 피해를 준 상대방은 처벌을 받았습니까?		
	명	%
처벌 받았다	6	11.1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24	44.4
잘 모르겠다	24	44.4
<b>합계</b>	<b>54</b>	<b>100.0</b>

또 경찰에 신고했는데(54명), 피해를 준 상대방이 처벌을 받지 않은 사건의 피해자들(24명)에게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조사한 결과,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54.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는 관련 법이 없어서’(33.3%), ‘상대방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어서’(8.3%), ‘잘 모르겠다’(4.2%) 순으로 나타났다. 증거 제시의 의무를 피해 여성들에게 준 것은 아닌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으며, 피해를 본 여성들이 증거를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주는 홍보물 확산과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V-18〉 경찰 신고 시 가해자가 처벌 받지 않은 이유

문4-8-2. 피해를 준 상대방이 처벌을 받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명	%
상대방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어서	2	8.3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해서	13	54.2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는 관련 법이 없어서	8	33.3
잘 모르겠다	1	4.2
<b>합계</b>	<b>24</b>	<b>100.0</b>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경찰 신고 시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은 이유로 20대에서는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해서”(63.6%)가, 30대에서는 “상대방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어서”(16.7%),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는 관련 법이 없어서”(50.0%)가, 40대에서는 “잘 모르겠다”(14.3%)가 높게 나왔다.

〈표 V-19〉 응답자의 연령대와 경찰 신고 시 가해자가 처벌 받지 않은 이유와의 교차분석

구분	명 %	상대방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어서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해서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는 관련법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
20대	11	0	7	4	0
	100.0	0.0	63.6	36.4	0.0
30대	6	1	2	3	0
	100.	16.7	33.3	50.0	0.0
40대	7	1	4	1	1
	100.0	14.3	57.1	14.3	14.3

### ③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은 이유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은 피해자(147명)에게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조사한 결과, ‘신고를 해도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31.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대처 방법을 잘 몰라서’(24.5%), ‘신고나 처벌 절차가 번거로워서’(17.0%),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10.2%), ‘다른 사람이 알게 될까봐 걱정되어서’(6.1%) ‘상대방의 보복이 두려워서’(4.8%) 순으로 분석됐다.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은 이유로 20대에서는 “대처 방법을 잘 몰라서”(32.6%)가, 30대와 40대에서는 “신고를 해도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32.7%)라는 응답의 비중이 높았다.

피해 여성들이 경찰이나 사법부, 플랫폼이 처벌해줄 것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며, 신고 절차를 좀 더 쉽고 간편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점과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의 피해를 봤거나 목격했을 때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확인시켜준다.

〈표 V-20〉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은 이유

문4-9-1.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명	%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15	10.2
대처 방법을 잘 몰라서	36	24.5
도움 받을 곳이 없어서	0	0.0
신고나 처벌 절차가 번거로워서	25	17.0
상대방의 보복이 두려워서	7	4.8
다른 사람이 알게 될까봐 걱정되어서	9	6.1
신고를 해도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46	31.3
기타	9	6.1
<b>합계</b>	<b>147</b>	<b>100.0</b>

〈표 V-21〉 응답자의 연령대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은 이유와의 교차분석

구분	명 %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대처 방법을 잘 몰라서	도움 받을 곳이 없어서	신고나 처벌 절차가 번거로워서	상대방의 보복이 두려워서	다른 사람이 알게 될까봐 걱정되어서	신고를 해도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기타
20대	46	5	15	0	7	2	2	13	2
	100.0	10.9	32.6	0.0	15.2	4.3	4.3	28.3	4.3
30대	49	3	12	0	9	2	3	16	4
	100.0	6.1	24.5	0.0	18.4	4.1	6.1	32.7	8.2
40대	52	7	9	0	9	3	4	17	3
	100.0	13.5	17.3	0.0	17.3	5.8	7.7	32.7	5.8

#### (4)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경험 및 목격 후 정서적 변화

온라인에서 성희롱·성폭력을 직접 경험했거나 목격한 후 어떤 정서적 변화가 있었는지 물어보았다. 분석 결과, 온라인에서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했거나 목격

한 후에 느낀 감정이나 생각으로 “화가 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응답이 49.3%(‘매우 그렇다’ 15.2% + ‘다소 그렇다’ 34.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불안하고 우울했다”는 감정은 41.5%(‘매우 그렇다’ 7.3% + ‘다소 그렇다’ 34.2%), “온라인 공간에 접속하는 것이 두려워졌다” 28.2%(‘매우 그렇다’ 5.2% + ‘다소 그렇다’ 23.0%), “사람들이 무서워서 밖에 나가는 게 두려워졌다” 15.7%(‘매우 그렇다’ 3.0% + ‘다소 그렇다’ 12.7%), “내가 하찮게 느껴지고 내 잘못이라고 자책했다” 14.0%(‘매우 그렇다’ 0.8% + ‘다소 그렇다’ 13.2%), “자살·자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9.2%(‘매우 그렇다’ 1.2% + ‘다소 그렇다’ 8.0%)로 분석됐다.

〈표 V-22〉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경험 및 목격 후 정서적 변화

문5. 온라인에서 선생님이 성희롱·성폭력을 직접 경험하시거나 목격하신 후 다음과 같은 감정이나 생각이 들었습니까?									
	합계 명, %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합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1. 내가 하찮게 느껴지고 내 잘못이라고 자책했다	600 100.0	219 36.5	171 28.5	126 21.0	79 13.2	5 0.8	390 65.0	126 21.0	84 14.0
2. 불안하고 우울했다	600 100.0	103 17.2	111 18.5	137 22.8	205 34.2	44 7.3	214 35.7	137 22.8	249 41.5
3. 화가 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600 100.0	54 9.0	102 17.0	148 24.7	205 34.2	91 15.2	156 26.0	148 24.7	296 49.3
4. 자살·자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600 100.0	270 45.0	182 30.3	93 15.5	48 8.0	7 1.2	452 75.3	93 15.5	55 9.2
5. 온라인 공간에 접속하는 것이 두려워졌다	600 100.0	110 18.3	156 26.0	165 27.5	138 23.0	31 5.2	266 44.3	165 27.5	169 28.2
6. 사람들이 무서워서 밖에 나가는 게 두려워졌다	600 100.0	177 29.5	207 34.5	122 20.3	76 12.7	18 3.0	384 64.0	122 20.3	94 15.7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경험 및 목격 후 정서적 변화에 대한 평균 분석한 결과, “화가 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응답의 평균값이 3.30으로 가장 높

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불안하고 우울했다”(2.96), “온라인 공간에 접속하는 것이 두려워졌다”(2.71), “사람들이 무서워서 밖에 나가는 게 두려워졌다”(2.25), “내가 하찮게 느껴지고 내 잘못이라고 자책했다”(2.13), “자살·자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1.90) 순으로 나타났다.

〈표 V-23〉 응답자의 연령대와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경험 및 목격 후 정서적 변화와의 평균 분석

구분	명	내가 하찮게 느껴지고 내 잘못이라고 자책했다	불안하고 우울했다	화가 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자살·자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온라인 공간에 접속하는 것이 두려워졌다	사람들이 무서워서 밖에 나가는 게 두려워졌다
20대	200	1.96	2.89	3.40	1.79	2.44	2.05
30대	200	2.12	2.90	3.21	1.80	2.69	2.29
40대	200	2.33	3.10	3.28	2.11	2.99	2.42
전체	600	2.13	2.96	3.30	1.90	2.71	2.25

연령별로 “화가 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3.40)는 20대에서, “내가 하찮게 느껴지고 내 잘못이라고 자책했다”(2.33), “불안하고 우울했다”(3.10), “자살·자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2.11), “온라인 공간에 접속하는 것이 두려워졌다”(2.99), “사람들이 무서워서 밖에 나가는 게 두려워졌다”(2.42)는 40대에서 높게 나왔다.

이러한 결과는 온라인 성희롱과 성폭력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뒤 여성들이 매우 위축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책하거나 자살하고 싶다는 비율도 10명 중 1명 내지 2명으로 나타나 온라인 성희롱과 성폭력에 대한 좀 더 확실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 (5) 성희롱·성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현재 우리사회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의 성희롱·성폭력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각각 조사한 결과, 우리사회 오프라인에서의 성희롱·성폭력 정도가 ‘심각하다’는 응답은 86.8%(‘매우 심각하다’ 30.5% + ‘다소 심각하다’ 56.3%)로 ‘심각

하지 않다’는 응답 1.8%(‘전혀 심각하지 않다’ 0.2% + ‘별로 심각하지 않다’ 1.7%)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온라인에서의 성희롱·성폭력 정도 역시 ‘심각하다’는 응답이 90.3%(‘매우 심각하다’ 41.7% + ‘다소 심각하다’ 48.7%)로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 2.0%(‘전혀 심각하지 않다’ 0.0% + ‘별로 심각하지 않다’ 2.0%)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V-24〉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성희롱·성폭력 심각성에 대한 인식

	합계 명, %	전혀 심각 하지 않다	별로 심각 하지 않다	보통 이다	다소 심각 하다	매우 심각 하다	종합		
							심각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심각 하다
							1. 오프라인 세상에서의 성희롱· 성폭력의 심각성	600 100.0	1 0.2
2. 온라인 세상에서의 성희롱· 성폭력의 심각성	600 100.0	0 0.0	12 2.0	46 7.7	292 48.7	250 41.7	12 2.0	46 7.7	542 90.3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의 심각성을 평균 분석해보니, “현재 온라인에서의 성희롱·성폭력이 심각하다”의 평균값(4.30)이, “현재 우리사회 오프라인에서의 성희롱·성폭력이 심각하다”의 평균값(4.15)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현재 온라인”(4.42), “현재 우리사회 오프라인”(4.30))가, 혼인상태별로는 미혼여성(“현재 온라인”(4.38), “현재 우리사회 오프라인”(4.26))이 온라인 성희롱과 성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더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표 V-25〉 응답자의 연령대와 성희롱·성폭력 심각성 인식과의 평균 분석

구분	명	오프라인 세상에서의 성희롱·성폭력의 심각성	온라인 세상에서의 성희롱·성폭력의 심각성
20대	200	4.30	4.42
30대	200	4.15	4.32
40대	200	4.01	4.17

구분	명	오프라인 세상에서의 성희롱·성폭력의 심각성	온라인 세상에서의 성희롱·성폭력의 심각성
결혼	277	4.04	4.21
미혼	312	4.26	4.38
기타	11	4.09	4.27
전체	600	4.15	4.30

### (6) 온라인 성폭력 유형에 대한 인식

어떤 행위가 온라인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온라인 성폭력의 유형을 제시하고 성폭력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조사 참여자들에게 물어 보았다. 그 결과 “온라인에서 음담패설이나 성적인 언사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에 ‘성폭력이다’는 응답은 85.0%(‘매우 심한 성폭력’ 26.5% + ‘다소 심한 성폭력’ 58.5%)로 ‘성폭력 아니다’는 응답 1.8%(‘전혀 성폭력 아님’ 0.5% + ‘별로 성폭력 아님’ 1.3%)에 비해 매우 높았다.

또 “상대방이 싫어할 줄 알면서도 온라인으로 음란물(글, 영상, 음향파일)을 보내는 행위”에 ‘성폭력이다’는 응답은 90.8%(‘매우 심한 성폭력’ 50.5% + ‘다소 심한 성폭력’ 40.3%), “여성 또는 남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하는 행위”에 ‘성폭력이다’는 응답은 83.0%(‘매우 심한 성폭력’ 33.2% + ‘다소 심한 성폭력’ 49.8%), “인터넷 개인방송(아프리카TV, 유튜브 등)에서 여성BJ에게 선정적인 질문을 계속하는 행위”에 ‘성폭력이다’는 응답은 87.0%(‘매우 심한 성폭력’ 44.2% + ‘다소 심한 성폭력’ 42.8%)로 나타났다.

이어 “특정인 또는 불특정다수에게 성적인 글이나 사진, 영상물을 전송하는 행위”에 ‘성폭력이다’는 응답은 89.0%(‘매우 심한 성폭력’ 47.7% + ‘다소 심한 성폭력’ 41.3%)였으며, “온라인을 이용하여 특정인에게 원치 않는 접근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행위”에 ‘성폭력이다’는 응답은 85.2%(‘매우 심한 성폭력’ 36.5% + ‘다소 심한 성폭력’ 48.7%)였고, “누군가의 얼굴사진에 신체가 노출된 타인의 사진을 합성하거나 조작하여 온라인에 유포하는 행위”에 ‘성폭력이다’라는 응답은 91.7%(‘매우 심한 성폭력’ 64.5% + ‘다소 심한 성폭력’ 27.2%)였다.

가장 동의 정도가 높았던 온라인 성폭력 유형들은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동영상을 온라인에 유통시키는 행위”(94.3%: ‘매우 심한 성폭력’ 82.5% + ‘다소 심한 성폭력’ 11.8%) “성행위 동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94.3%:

‘매우 심한 성폭력’ 82.2% + ‘다소 심한 성폭력’ 12.2%), “동의하에 촬영한 성적인 촬영물을 동의 없이 온라인에 유포하는 행위”(94.0%: ‘매우 심한 성폭력’ 77.8% + ‘다소 심한 성폭력’ 16.2%)였다.

〈표 V-26〉 온라인 성폭력 유형에 대한 인식

문8. 선생님께서는 다음의 행위가 온라인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항목별로 선택해 주십시오.	합계 명, %	전혀 성폭력 아님	별로 성폭력 아님	반반 이다	다소 심한 성폭력	매우 심한 성폭력	종합		
							성폭력 아니다	반반	성폭력 이다
1. 성적인 언사로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	600 100.0	3 0.5	8 1.3	79 13.2	351 58.5	159 26.5	11 1.8	79 13.2	510 85.0
2. 음란물을 보내는 행위	600 100.0	1 0.2	9 1.5	45 7.5	242 40.3	303 50.5	10 1.7	45 7.5	545 90.8
3.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하는 행위	600 100.0	0 0.0	12 2.0	90 15.0	299 49.8	199 33.2	12 2.0	90 15.0	498 83.0
4. 여성BJ에게 선정적 질문을 하는 행위	600 100.0	3 0.5	11 1.8	64 10.7	257 42.8	265 44.2	14 2.3	64 10.7	522 87.0
5. 성적인 글, 사진, 영상물을 전송하는 행위	600 100.0	3 0.5	6 1.0	57 9.5	248 41.3	286 47.7	9 1.5	57 9.5	534 89.0
6. 원치 않는 접근을 시도하는 행위	600 100.0	0 0.0	14 2.3	75 12.5	292 48.7	219 36.5	14 2.3	75 12.5	511 85.2
7. 타인 사진을 합성, 조작하여 유포하는 행위	600 100.0	0 0.0	9 1.5	41 6.8	163 27.2	387 64.5	9 1.5	41 6.8	550 91.7
8.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유통시키는 행위	600 100.0	2 0.3	6 1.0	26 4.3	71 11.8	495 82.5	8 1.3	26 4.3	566 94.3
9. 성행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600 100.0	1 0.2	7 1.2	26 4.3	73 12.2	493 82.2	8 1.3	26 4.3	566 94.3
10.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	600 100.0	0 0.0	5 0.8	31 5.2	97 16.2	467 77.8	5 0.8	31 5.2	564 94.0

주: 1. 온라인에서 음담패설이나 성적인 언사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 2. 상대방이 싫어할 줄 알면서도 온라인으로 음란물(글, 영상, 음향파일)을 보내는 행위, 3. 여성 또는 남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하는 행위, 4. 인터넷 개인방송(아프리카TV, 유튜브 등)에서 여성BJ에게 선정적인 질문을 계속하는 행위, 5. 특정인 또는 불특정다수에게 성적인 글이나 사진, 영상물을 전송하는 행위, 6. 온라인을 이용하여 특정인에게 원치 않는 접근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행위, 7. 누군가의 얼굴사진에 신체가 노출된 타인의 사진을 합성하거나 조작하여 온라인에 유포하는 행위, 8.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동영상을 온라인에 유통시키는 행위, 9. 성행위 동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10. 동의하에 촬영한 성적인 촬영물을 동의 없이 온라인에 유포하는 행위.

평균 분석 결과,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동영상을 온라인에 유통시키는 행위”(4.75)와 “성행위 동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4.75)의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동의하에 촬영한 성적인 촬영물을 동의 없이 온라인에 유포하는 행위”(4.71), “누군가의 얼굴사진에 신체가 노출된 타인의 사진을 합성하거나 조작하여 온라인에 유포하는 행위”(4.55), “상대방이 싫어할 줄 알면서도 온라인으로 음란물을 보내는 행위”(4.39),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성적인 글이나 사진, 영상물을 전송하는 행위”(4.35),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여성BJ에게 선정적인 질문을 계속하는 행위”(4.28), “온라인을 이용하여 특정인에게 원치 않는 접근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행위”(4.19), “여성 또는 남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하는 행위”(4.14), “온라인에서 음담패설이나 성적인 언사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4.09) 순으로 나타났다. 모두 2.5 이상의 평균값을 넘어 4점대의 평균값을 보이므로 조사 참여자들은 조사에서 제시된 온라인의 행위들이 모두 온라인 성폭력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령별로 20대에서는 “온라인에서 음담패설이나 성적인 언사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4.19),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여성BJ에게 선정적인 질문을 계속하는 행위”(4.34), “특정인 또는 불특정다수에게 성적인 글이나 사진, 영상물을 전송하는 행위”(4.41), “온라인을 이용하여 특정인에게 원치 않는 접근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행위”(4.28), “누군가의 얼굴사진에 신체가 노출된 타인의 사진을 합성하거나 조작하여 온라인에 유포하는 행위”(4.60),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동영상을 온라인에 유통시키는 행위”(4.83), “성행위 동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4.79), “동의하에 촬영한 성적인 촬영물을 동의 없이 온라인에 유포하는 행위”(4.76)가, 40대에서는 “상대방이 싫어할 줄 알면서도 온라인으로 음란물을 보내는 행위”(4.43), “여성 또는 남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하는 행위”(4.21)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왔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통해 볼 때, 이런 성폭력 유형들은 성폭력을 정의하거나 법제화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V-27〉 응답자의 연령대와 온라인 성폭력 유형에 대한 인식과의 평균 분석

구분	명	성적인 언사로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	음란물들을 보내는 행위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하는 행위	여성 BJ에게 선정적 질문을 하는 행위	성적인 글, 사진, 영상물을 전송하는 행위	원치 않는 접근을 시도하는 행위	타인 사진을 합성, 조작하여 유포하는 행위	몰래 촬영한 동영상 유통 시키는 행위	성행위 동영상을 유포 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촬영물들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
20대	200	4.19	4.41	4.09	4.34	4.41	4.28	4.60	4.83	4.79	4.76
30대	200	4.03	4.36	4.13	4.22	4.34	4.10	4.52	4.71	4.75	4.68
40대	200	4.06	4.43	4.21	4.29	4.30	4.21	4.52	4.72	4.71	4.68
전체	600	4.09	4.39	4.14	4.28	4.35	4.19	4.55	4.75	4.75	4.71

### (7) 온라인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인식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와 목격자들이 온라인 성폭력 가해자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성폭력 가해자 유형별로 가해자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해보았다. 분석 결과, “사진이나 동영상의 최초 유포자”가 가해자라는 응답은 97.0%, “해당 동영상을 본 후에 유포 시킨 사람”이 가해자라는 응답이 95.8%로 응답자 대부분이 이들을 가해자라고 생각했다. 또 “해당 사진이나 동영상이 유통되는 플랫폼 운영자”가 가해자라는 응답도 88.8%에 달해, 참여자 10명 중 8-9명은 플랫폼 운영자가 가해자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해당 동영상이나 사진을 본 사람”도 가해자라는 응답이 57.0%로 과반수를 넘었다.

응답자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 연령별로 20대에서는 “사진이나 동영상의 최초 유포자”가 가해자라는 응답이 99.5%, “해당 동영상을 본 후에 유포 시킨 사람”이 가해자라는 응답도 99.0%에 달해 거의 모든 20대 여성 참여자들은 이들을 가해자라고 보았다. 20대에서는 특히 “해당 동영상이나 사진을 본 사람”이 가해자(64.0%)라는 응답이, 30대에서는 “해당 사진이나 동영상이 유통되는 플랫폼 운영자”가 가해자(91.0%)라는 응답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로 보면, 미혼인 사람이 “사진이나 동영상의 최초 유포자”(99.4%), “해당 동영상을 본 후에 유포 시킨 사람”(98.4%), “해당 사진이나 동영상이 유통되는 플랫폼 운영자”(91.0%)를 가해자라고 본 비율이 결혼한 사람들의 응답률보다 높았다.

〈표 V-28〉 온라인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인식

문9. 다음의 행위자가 온라인 성폭력 가해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각 항목별로 선택해 주십시오.			
	합계 명, %	가해자가 아니다	가해자 이다
1. 사진이나 동영상의 최초 유포자	600 100.0	18 3.0	582 97.0
2. 해당 동영상이나 사진을 본 사람	600 100.0	258 43.0	342 57.0
3. 해당 동영상을 본 후에 유포 시킨 사람	600 100.0	25 4.2	575 95.8
4. 해당 사진이나 동영상이 유통되는 플랫폼 운영자	600 100.0	67 11.2	533 88.8

〈표 V-29〉 응답자 속성과 온라인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인식과의 교차분석

구분	사진이나 동영상의 최초 유포자	해당 동영상이나 사진을 본 사람	해당 동영상을 본 후에 유포 시킨 사람	해당 사진이나 동영상이 유통되는 플랫폼 운영자
20대	199	128	198	178
	99.5	64.0	99.0	89.0
30대	195	109	191	182
	97.5	54.5	95.5	91.0
40대	188	105	186	173
	94.0	52.5	93.0	86.5
결혼	262	141	260	239
	94.6	50.9	93.9	86.3
미혼	310	194	307	284
	99.4	62.2	98.4	91.0
기타	10	7	8	10
	90.9	63.6	72.7	90.9
자녀 없음	376	224	369	343
	98.9	58.9	97.1	90.3
자녀 있음	206	118	206	190
	93.6	53.6	93.6	86.4
전체	582	342	575	533
	97.0	57.0	95.8	88.8

이런 결과를 토대로 볼 때 동의 없이 유포된 사진이나 동영상의 최초 및 재유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플랫폼 운영자의 처벌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동의 없이 유포된 타인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다운받아 보는 등의 적극적 시청 행위자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동의 없이 유포된 타인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는 행위 역시 잘못된 행위라는 인식을 사회적으로 확산할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8)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식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응답자 10명 중 7-8명이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는 가해자보다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77.7%)는데 동의했다. 반면,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사건발생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피해자의 책임도 있다”(16.3%), “온라인에 유포된 여성사진은 그 사진(영상)을 찍은 여성의 잘못이다”(13.5%), “온라인에서 성희롱·성폭력을 당한 여성은 그럴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5.3%), “온라인에서의 성적 농담에 과민 반응하는 여성에게 문제가 있다”(4.3%)는 데에 동의한 비율은 응답자 10명 중 1-2명 미만이였다.

〈표 V-30〉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식

문10. 선생님께서는 다음 진술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계 명, %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합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1. 사진을 찍은 여성의 잘못	600 100.0	239 39.8	154 25.7	126 21.0	68 11.3	13 2.2	393 65.5	126 21.0	81 13.5
2. 여성이 그럴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	600 100.0	336 56.0	171 28.5	61 10.2	29 4.8	3 0.5	507 84.5	61 10.2	32 5.3
3. 성적 농담에 과민 반응하는 여성에게 문제가	600 100.0	346 57.7	165 27.5	63 10.5	18 3.0	8 1.3	511 85.2	63 10.5	26 4.3
4.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피해자 책임	600 100.0	247 41.2	146 24.3	109 18.2	82 13.7	16 2.7	393 65.5	109 18.2	98 16.3

문10. 선생님께서는 다음 진술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계 명, %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합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5. 가해자보다 부당한 대우	600 100.0	27 4.5	39 6.5	68 11.3	246 41.0	220 36.7	66 11.0	68 11.3	466 77.7

주: 1. 온라인에 유포된 여성사진은 그 사진(영상)을 찍은 여성의 잘못이다, 2. 온라인에서 성희롱·성폭력을 당한 여성은 그럴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3. 온라인에서의 성적 농담에 과민 반응하는 여성에게 문제가 있다, 4.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사건발생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피해자의 책임도 있다, 5.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는 가해자보다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식을 평균 분석한 결과에서도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는 가해자보다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의 평균값이 3.99로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 분석해보니 20대에서 특히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는 가해자보다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4.03)는 응답의 평균이 높았다.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인식이 높은 반면, ‘피해자의 책임’, ‘여성의 잘못’, ‘여성의 그럴만한 행동’, ‘과민 반응하는 여성이 문제’ 등과 같이 여성 피해자 자체를 문제로 보는 인식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런 결과를 볼 때 여성들이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의 문제를 피해자 책임 프레임에서 벗어나 사회적 범죄행위임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가해자보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강하게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V-31〉 응답자 속성과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식과의 평균 분석

구분	명	사진을 찍은 여성의 잘못	여성이 그럴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	성적 농담에 과민 반응하는 여성이 문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피해자 책임	가해자보다 부당한 대우
20대	200	1.82	1.43	1.45	1.77	4.03
30대	200	2.09	1.67	1.62	2.09	3.98
40대	200	2.40	1.86	1.82	2.51	3.96

구분	명	사진을 찍은 여성의 잘못	여성이 그럴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	성적 농담에 과민 반응하는 여성이 문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피해자 책임	가해자보다 부당한 대우
결혼	277	2.28	1.79	1.74	2.38	3.84
미혼	312	1.93	1.53	1.53	1.90	4.12
기타	11	2.45	1.64	1.64	2.00	4.09
전체	600	2.10	1.65	1.63	2.12	3.99

### (9) 온라인 이용시 정서적 두려움에 대한 인식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의 피해를 보거나 목격한 경험을 가진 조사 참여자들이 온라인 세상에 대한 정서적 두려움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파악하기 위해 질문해보았다. 분석 결과, “내 개인적인 정보가 온라인에 유포될까봐 두렵다”는 응답이 79.2%로 나타나 10명 중 8명은 개인 정보 유포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어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SNS에 방문해 내 일상을 엿보거나 감시할까 두렵다”는 응답도 62.2%나 됐다. 또 “내 신체 일부가 찍힌 사진이나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될까봐 두렵다”(55.7%), “온라인에서 원치 않는 음란물(글, 영상 및 음향파일)을 받을까봐 두렵다”(54.7%), “나에 대한 유언비어나 일방적인 비난이 온라인에 유포될까봐 두렵다”(53.3%), “내 사진에 음란한 이미지가 합성되어 온라인에 유포될까봐 두렵다”(52.2%), “온라인에서 나의 외모나 신체를 대상으로 한 불쾌한 메시지를 받을까봐 두렵다”(50.8%)는 진술문에 대해서도 과반수 이상이 다소 또는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나의 성적 행위가 찍힌 사진이나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될까봐 두렵다”(47.8%), “온라인에서 성적인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받을까봐 두렵다”(46.2%)는 의견도 50%에 가까운 응답률을 나타냈다.

〈표 V-32〉 온라인 이용 시 정서적 두려움에 대한 인식

문11. 선생님께서는 온라인을 이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감정이나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까?									
	합계 명, %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합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내 개인적인 정보가 온라인에 유포될까봐 두렵다	600 100.0	6 1.0	37 6.2	82 13.7	286 47.7	189 31.5	43 7.2	82 13.7	475 79.2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SNS에 방문해 내 일상을 엿보거나 감시할까 두렵다	600 100.0	14 2.3	64 10.7	149 24.8	263 43.8	110 18.3	78 13.0	149 24.8	373 62.2
내 개인적인 정보가 온라인에 유포될까봐 두렵다	600 100.0	6 1.0	37 6.2	82 13.7	286 47.7	189 31.5	43 7.2	82 13.7	475 79.2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SNS에 방문해 내 일상을 엿보거나 감시할까 두렵다	600 100.0	14 2.3	64 10.7	149 24.8	263 43.8	110 18.3	78 13.0	149 24.8	373 62.2
나에 대한 유언비어나 일방적인 비난이 온라인에 유포될까봐 두렵다	600 100.0	23 3.8	85 14.2	172 28.7	221 36.8	99 16.5	108 18.0	172 28.7	320 53.3
내 사진에 음란한 이미지가 합성되어 온라인에 유포될까봐 두렵다	600 100.0	42 7.0	96 16.0	149 24.8	192 32.0	121 20.2	138 23.0	149 24.8	313 52.2
온라인에서 성적인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받을까봐 두렵다	600 100.0	35 5.8	106 17.7	182 30.3	195 32.5	82 13.7	141 23.5	182 30.3	277 46.2
온라인에서 나의 외모나 신체를 대상으로 한 불쾌한 메시지를 받을까봐 두렵다	600 100.0	37 6.2	96 16.0	162 27.0	211 35.2	94 15.7	133 22.2	162 27.0	305 50.8
온라인에서 원치 않는 음란물(글, 영상 및 음향파일)을 받을까봐 두렵다	600 100.0	26 4.3	87 14.5	159 26.5	233 38.8	95 15.8	113 18.8	159 26.5	328 54.7
내 신체 일부가 찍힌 사진이나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될까봐 두렵다	600 100.0	52 8.7	88 14.7	126 21.0	163 27.2	171 28.5	140 23.3	126 21.0	334 55.7
나의 성적 행위가 찍힌 사진이나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될까봐 두렵다	600 100.0	88 14.7	96 16.0	129 21.5	140 23.3	147 24.5	184 30.7	129 21.5	287 47.8

또 이에 대한 평균 분석을 한 결과, “내 개인적인 정보가 온라인에 유포될까봐 두렵다”의 평균값은 4.03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SNS에 방문해 내 일상을 엿보거나 감시할까 두렵다”(3.65), “내 신체 일부가 찍힌 사진이나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될까봐 두렵다”(3.52), “나에 대한 유언비어나 일방적인 비난이 온라인에 유포될까봐 두렵다”(3.48), “온라인에서 원치 않는 음란물(글, 영상 및 음향파일)을 받을까봐 두렵다”(3.47), “내 사진에 음란한 이미지가 합성되어 온라인에 유포될까봐 두렵다”(3.42), “온라인에서 나의 외모나 신체를 대상으로 한 불쾌한 메시지를 받을까봐 두렵다”(3.38), “온라인에서 성적인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받을까봐 두렵다”(3.31), “나의 성적 행위가 찍힌 사진이나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될까봐 두렵다”(3.27) 모두 3.0보다 높은 평균값을 나타냈다.

연령별로 4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온라인에서 원치 않는 음란물(글, 영상 및 음향파일)을 받을까봐 두렵다”(3.50)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 “내 개인적인 정보가 온라인에 유포될까봐 두렵다”(4.09),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SNS에 방문해 내 일상을 엿보거나 감시할까 두렵다”(3.69), “나에 대한 유언비어나 일방적인 비난이 온라인에 유포될까봐 두렵다”(3.55), “내 사진에 음란한 이미지가 합성되어 온라인에 유포될까봐 두렵다”(3.55), “온라인에서 성적인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받을까봐 두렵다”(3.34), “온라인에서 나의 외모나 신체를 대상으로 한 불쾌한 메시지를 받을까봐 두렵다”(3.48), “내 신체 일부가 찍힌 사진이나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될까봐 두렵다”(3.70), “나의 성적 행위가 찍힌 사진이나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될까봐 두렵다”(3.39)는 20대에서 다른 연령대보다 높게 나왔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온라인 성희롱과 성폭력의 피해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여성들은 정서적 두려움을 안고 온라인 세상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여성들의 정서적 두려움이 온라인 세상에서 여성들을 위축시키고 자유로운 활동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유추하게 해준다.

〈표 V-33〉 응답자 속성과 온라인 이용 시 정서적 두려움에 대한 인식과의 평균 분석

구분	명	1. 내 개인 정보 유포	2. 내 일상 엿보거나 감시	3. 유언 비어나 비난 유포	4. 음란 이미지 합성 유포	5. 성적 욕설 메시지	6. 불쾌한 메시지	7. 원치 않는 음란물	8. 내 신체 일부 유포	9. 내 성적 행위 유포
20대	200	4.09	3.69	3.55	3.55	3.34	3.48	3.46	3.70	3.39
30대	200	4.01	3.67	3.48	3.37	3.32	3.40	3.47	3.55	3.31
40대	200	3.99	3.61	3.42	3.36	3.26	3.28	3.50	3.32	3.11
전체	600	4.03	3.65	3.48	3.42	3.31	3.38	3.47	3.52	3.27

주: 1. 내 개인적인 정보가 온라인에 유포될까봐 두렵다, 2.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SNS에 방문해 내 일상을 엿보거나 감시할까 두렵다, 3. 나에게 대한 유언비어나 일방적인 비난이 온라인에 유포될까봐 두렵다, 4. 내 사진에 음란한 이미지가 합성되어 온라인에 유포될까봐 두렵다, 5. 온라인에서 성적인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받을까봐 두렵다, 6. 온라인에서 나의 외모나 신체를 대상으로 한 불쾌한 메시지를 받을까봐 두렵다, 7. 온라인에서 원치 않는 음란물(글, 영상 및 음향파일)을 받을까봐 두렵다, 8. 내 신체 일부가 찍힌 사진이나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될까봐 두렵다, 9. 나의 성적 행위가 찍힌 사진이나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될까봐 두렵다.

### (10) 온라인에서의 행위적 위축 정도

온라인에서의 성희롱과 성폭력의 피해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여성들이 온라인 세상에서 활동하는데 위축되지는 않았는지 또는 그런 피해를 다시 보지 않기 위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몇 가지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 질문해 보았다. 분석 결과, 가장 많이 한 행동은 “온라인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만 친구로 추가하고, 신뢰할 수 없거나 의심이 되는 특정 계정을 차단”한 것으로 91.5%(‘드물게 그런 적이 있다’ 11.3% + ‘가끔 그런 적이 있다’ 25.2% + ‘자주 그런 적이 있다’ 29.5% + ‘항상 그런 적이 있다’ 25.5%)가 그런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 “내 사진이 잘못 사용될까봐 SNS 계정의 공개설정 범위를 확인하고 재설정했다”(82.7%), “원치 않는 메시지나 동영상을 받은 온라인상의 아이디나 이메일을 삭제 또는 변경했다”(79.0%), “나에 대한 신상정보가 검색되는지 확인했다”(70.2%)와 같이 자기 정보를 관리하는 행동을 보인 응답자들이 많아, 현명한 자기 관리 태도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응답자 10명 중 8-9명은 “온라인에서 누군가 나를 엿보거나 감시할까봐

내 일상에 관한 게시물을 올리지 않는다”(87.3%: ‘드물게 그런 적이 있다’ 17.8% + ‘가끔 그런 적이 있다’ 22.3% + ‘자주 그런 적이 있다’ 30.0% + ‘항상 그런 적이 있다’ 17.2%) 행동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온라인 세상에서 위축되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여성이라는 이유로 범죄 피해를 당하거나 여성혐오자들의 공격을 받을까봐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글을 쓰기 어려웠다”(61.2%), “여성혐오표현을 보게 될까봐 SNS를 자주 사용하지 않았다”(56.0%), “비난이나 차별을 당할까봐 여성이라는 것을 온라인에서 밝히지 않거나 활동하던 온라인 공간을 떠났다”(48.7%)와 같이 온라인 세상에서 매우 위축된 여성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아가 “온라인에 유포된 내 사진이나 영상을 본 사람이 있을까봐 외출을 자제했다”는 응답도 29.3%나 나와 응답자 10명 중 3명이나 됐다. 온라인 세상뿐 아니라 오프라인 세상에서도 위축되고 자유가 억압된 여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표 V-34〉 온라인에서의 행위적 위축 정도

문12. 선생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합계 명, %	그런 적이 없다	드물게 그런 적이 있다	가끔 그런 적이 있다	자주 그런 적이 있다	항상 그런 적이 있다	종합	
							없다	있다
1. 내 신상정보를 검색했다	600 100.0	179 29.8	139 23.2	197 32.8	73 12.2	12 2.0	179 29.8	421 70.2
2. SNS 공개설정 범위를 확인했다	600 100.0	104 17.3	104 17.3	160 26.7	150 25.0	82 13.7	104 17.3	496 82.7
3. 내 일상 게시물 올리지 않았다	600 100.0	76 12.7	107 17.8	134 22.3	180 30.0	103 17.2	76 12.7	524 87.3
4. 신뢰할 수 없는 특정 계정을 차단했다	600 100.0	51 8.5	68 11.3	151 25.2	177 29.5	153 25.5	51 8.5	549 91.5
5. 아이디, 이메일을 삭제 또는 변경했다	600 100.0	126 21.0	108 18.0	146 24.3	118 19.7	102 17.0	126 21.0	474 79.0
6. 외출을 자제했다	600 100.0	424 70.7	62 10.3	65 10.8	42 7.0	7 1.2	424 70.7	176 29.3

문12. 선생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합계 명, %	그런 적이 없다	드물게 그런 적이 있다	가끔 그런 적이 있다	자주 그런 적이 있다	항상 그런 적이 있다	종합	
							없다	있다
7. 활동하던 온라인 공간을 떠났다	600 100.0	308 51.3	101 16.8	103 17.2	63 10.5	25 4.2	308 51.3	292 48.7
8. 자유롭게 글을 쓰기 어려웠다	600 100.0	233 38.8	124 20.7	128 21.3	86 14.3	29 4.8	233 38.8	367 61.2
9. SNS를 자주 사용하지 않았다	600 100.0	264 44.0	108 18.0	118 19.7	79 13.2	31 5.2	264 44.0	336 56.0

주: 1. 온라인에서 나에 대한 신상정보가 검색되는지 확인했다, 2. 내 사진이 잘못 사용될까봐 SNS 계정의 공개설정 범위를 확인하고 재설정했다, 3. 온라인에서 누군가 나를 엿보거나 감시할까봐 내 일상에 관한 게시물을 올리지 않았다, 4. 온라인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만 친구로 추가하고, 신뢰할 수 없거나 의심이 되는 특정 계정을 차단했다, 5. 원치 않는 메시지나 동영상을 받은 온라인상의 아이디나 이메일을 삭제 또는 변경했다, 6. 온라인에 유포된 내 사진이나 영상을 본 사람이 있을까봐 외출을 자제했다, 7. 비난이나 차별을 당할까봐 여성이라는 것을 온라인에서 밝히지 않거나 아예 활동하던 온라인 공간을 떠났다, 8. 여성이라는 이유로 범죄 피해를 당하거나 여성혐오자들의 공격을 받을까봐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글을 쓰기 어려웠다, 9. 여성혐오표현을 보게 될까봐 SNS를 자주 사용하지 않았다.

응답자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 온라인에서의 행위적 자제에 대해 연령별로 20대에서는 “온라인에서 나에 대한 신상정보가 검색되는지 확인했다”(78.5%), “내 사진이 잘못 사용될까봐 SNS 계정의 공개설정 범위를 확인하고 재설정했다”(87.5%), “온라인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만 친구로 추가하고, 신뢰할 수 없거나 의심이 되는 특정 계정을 차단했다”(92.5%)가, 30대에서는 “온라인에 유포된 내 사진이나 영상을 본 사람이 있을까봐 외출을 자제했다”(32.0%), “비난이나 차별을 당할까봐 여성이라는 것을 온라인에서 밝히지 않거나 아예 활동하던 온라인 공간을 떠났다”(52.5%), “여성이라는 이유로 범죄 피해를 당하거나 여성혐오자들의 공격을 받을까봐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글을 쓰기 어려웠다”(61.5%), “여성혐오표현을 보게 될까봐 SNS를 자주 사용하지 않았다”(60.0%)가, 40대에서는 “온라인에서 누군가 나를 엿보거나 감시할까봐 내 일상에 관한 게시물을 올리지 않았다”(88.5%), “원치 않는 메시지나 동영상을 받은 온라인상의 아이디나 이메일을 삭제 또는 변경했다”(80.0%)가 다른 연령대보다 높게 나왔다.

〈표 V-35〉 응답자 속성과 온라인에서의 행위적 위축 정도에 대한 교차분석

구분	내 신상 정보를 검색했다	SNS 공개설정 범위를 확인했다	내 일상 게시물 올리지 않았다	신뢰할 수 없는 특정 계정을 차단했다	아이디, 이메일을 삭제 또는 변경했다	외출을 자제했다	활동하던 온라인 공간을 떠났다	자유롭게 글을 쓰기 어려웠다	SNS를 자주 사용하지 않았다
20대	157	175	175	185	155	52	98	122	100
	78.5	87.5	87.5	92.5	77.5	26.0	49.0	61.0	50.0
30대	143	166	172	182	159	64	105	123	120
	71.5	83.0	86.0	91.0	79.5	32.0	52.5	61.5	60.0
40대	121	155	177	182	160	60	89	122	116
	60.5	77.5	88.5	91.0	80.0	30.0	44.5	61.0	58.0
고졸 이하	39	47	50	61	49	18	24	32	31
	59.1	71.2	75.8	92.4	74.2	27.3	36.4	48.5	47.0
대재 이상	382	449	474	488	425	158	268	335	305
	71.5	84.1	88.8	91.4	79.6	29.6	50.2	62.7	57.1
전체	421	496	524	549	474	176	292	367	336
	70.2	82.7	87.3	91.5	79.0	29.3	48.7	61.2	56.0

학력별로 고졸 이하에서는 “온라인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만 친구로 추가하고, 신뢰할 수 없거나 의심이 되는 특정 계정을 차단했다”(92.4%)가, 대재 이상에서는 “온라인에서 나에 대한 신상정보가 검색되는지 확인했다”(71.5%), “내 사진이 잘못 사용될까봐 SNS 계정의 공개설정 범위를 확인하고 재설정했다”(84.1%), “온라인에서 누군가 나를 엿보거나 감시할까봐 내 일상에 관한 게시물을 올리지 않았다”(88.8%), “원치 않는 메시지나 동영상을 받은 온라인상의 아이디나 이메일을 삭제 또는 변경했다”(79.6%), “온라인에 유포된 내 사진이나 영상을 본 사람이 있을까봐 외출을 자제했다”(29.6%), “비난이나 차별을 당할까봐 여성이라는 것을 온라인에서 밝히지 않거나 아예 활동하던 온라인 공간을 떠났다”(50.2%), “여성이라는 이유로 범죄 피해를 당하거나 여성혐오자들의 공격을 받을까봐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글을 쓰기 어려웠다”(62.7%), “여성혐오표현을 보게 될까봐 SNS를 자주 사용하지 않았다”(57.1%)가 높게 나왔다.

### (11)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의 발생 원인에 대한 인식

온라인에서 성희롱·성폭력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응답자들의 90.3%는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이라고 답했다. 그 다음으로 “성평등 인식이 약하기 때문에”(79.3%),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분위기 때문에”(77.0%), “여성의 신체 노출 사진이나 영상이 온라인에 공유되기 때문에”(77.0%),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낮기 때문에”(75.8%)라는 응답이 70% 이상 나왔다.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에 여성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기 때문에”라는 응답은 44.3%, “여성이 자신의 사진이나 영상을 무심코 업로드하기 때문에”라는 답변은 26.2%였다.

〈표 V-36〉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발생 원인에 대한 인식

문13. 선생님께서는 온라인에서 성희롱·성폭력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합계 명, %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합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1. 성적 대상으로 보는 분위기 때문에	600 100.0	7 1.2	33 5.5	98 16.3	311 51.8	151 25.2	40 6.7	98 16.3	462 77.0
2. 성평등 인식이 약하기 때문에	600 100.0	9 1.5	37 6.2	78 13.0	272 45.3	204 34.0	46 7.7	78 13.0	476 79.3
3. 신체 노출 사진, 영상이 공유되기 때문에	600 100.0	7 1.2	40 6.7	91 15.2	256 42.7	206 34.3	47 7.8	91 15.2	462 77.0
4. 자신의 사진, 영상을 무심 코 업로드 하기 때문에	600 100.0	128 21.3	195 32.5	120 20.0	116 19.3	41 6.8	323 53.8	120 20.0	157 26.2
5. 여성이 적극적으로 대처 하지 않기 때문에	600 100.0	84 14.0	102 17.0	148 24.7	195 32.5	71 11.8	186 31.0	148 24.7	266 44.3
6. 사회적 관심이 낮기 때문에	600 100.0	13 2.2	39 6.5	93 15.5	284 47.3	171 28.5	52 8.7	93 15.5	455 75.8
7.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600 100.0	8 1.3	16 2.7	34 5.7	115 19.2	427 71.2	24 4.0	34 5.7	542 90.3

주: 1.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분위기 때문에, 2. 성평등 인식이 약하기 때문에, 3. 여성의 신체 노출 사진이나 영상이 온라인에 공유되기 때문에, 4. 여성이 자신의 사진이나 영상을 무심코 업로드하기 때문에, 5.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에 여성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기 때문에, 6.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낮기 때문에, 7.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발생 원인에 대해 평균 분석한 결과,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의 평균값이 4.56으로 매우 높았다. 그 다음으로 “성평등 인식이 약하기 때문에”(4.04), “여성의 신체 노출 사진이나 영상이 온라인에 공유되기 때문에”(4.02),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분위기 때문에”(3.94),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낮기 때문에”(3.94)라는 응답의 평균값은 4점대로 나타났다.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에 여성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기 때문에”는 3.11, “여성이 자신의 사진이나 영상을 무심코 업로드하기 때문에”는 2.58로 이들 응답 역시 5점 척도의 평균인 2.5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20대에서는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4.62)가, 30대에서는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분위기 때문에”(3.96), “성평등 인식이 약하기 때문에”(4.07), “여성의 신체 노출 사진이나 영상이 온라인에 공유되기 때문에”(4.06),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낮기 때문에”(4.02)가, 40대에서는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분위기 때문에”(3.96), “여성이 자신의 사진이나 영상을 무심코 업로드하기 때문에”(2.92),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에 여성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기 때문에”(3.36)가 다른 연령대의 평균값보다 높았다.

이러한 응답 결과를 통해 볼 때,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성평등 의식을 확산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여성의 신체 노출 사진이나 영상이 온라인에 공유되지 않도록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적 규제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공적 규제의 강화가 필요하며,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분위기를 바꾸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교육, 미디어, 정부 정책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V-37〉 응답자 속성과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발생 원인에 대한 인식과의 평균 분석

구분	명	성적 대상으로 보는 분위기 때문에	성평등 인식이 약하기 때문에	신체 노출 사진, 영상이 공유되기 때문에	자신의 사진, 영상을 무심코 업로드 하기 때문에	여성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관심이 낮기 때문에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20대	200	3.92	4.00	4.00	2.17	2.77	3.91	4.62
30대	200	3.96	4.07	4.06	2.65	3.22	4.02	4.61
40대	200	3.96	4.06	4.02	2.92	3.36	3.88	4.46
전체	600	3.94	4.04	4.02	2.58	3.11	3.94	4.56

### (12)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해결 방안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질문한 결과, “사법적 제재가 강화되어야 한다”가 90.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했을 때 즉각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회적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응답도 89.2%나 됐으며, “온라인 시민의식 형성을 위한 교육이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답변도 88.5%였다.

“특정 단어나 음란물, 스팸 등을 차단하는 기술을 포털 등 플랫폼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제해야 한다”(88.3%)거나, “미디어가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을 감시하는 보도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86.0%)는 등 플랫폼 운영자와 미디어 기업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요구하는 의견도 85% 이상의 응답자가 동의했다.

또 10명 중 7명은 “여성들이 연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71.5%)는데 동의하고 있어, 여성 스스로의 적극적 대응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온라인에서 자기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여성 스스로가 조심해야 한다”(47.2%)는 자기 정보 관리의 중요성에 동의하는 의견도 과반수 정도 됐다. 또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여성 스스로가 피해야 한다”에 동의한 비율은 39.5%였다.

〈표 V-38〉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해결 방안에 대한 인식

문14. 선생님께서는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해결을 위한 다음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계 명, %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합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1. 여성 스스로가 조심	600 100.0	63 10.5	85 14.2	169 28.2	214 35.7	69 11.5	148 24.7	169 28.2	283 47.2
2. 발생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스스로 피해야	600 100.0	90 15.0	131 21.8	142 23.7	179 29.8	58 9.7	221 36.8	142 23.7	237 39.5
3. 연대하여 적극적 대응	600 100.0	8 1.3	34 5.7	129 21.5	237 39.5	192 32.0	42 7.0	129 21.5	429 71.5
4. 미디어가 감시하는 보도를 지속적으로	600 100.0	3 0.5	19 3.2	62 10.3	204 34.0	312 52.0	22 3.7	62 10.3	516 86.0
5. 교육이나 가이드라인 마련	600 100.0	1 0.2	12 2.0	56 9.3	202 33.7	329 54.8	13 2.2	56 9.3	531 88.5
6. 사법적 제재 강화	600 100.0	2 0.3	12 2.0	41 6.8	91 15.2	454 75.7	14 2.3	41 6.8	545 90.8
7. 사회적 시스템 마련	600 100.0	4 0.7	9 1.5	52 8.7	127 21.2	408 68.0	13 2.2	52 8.7	535 89.2
8. 포털 등 플랫폼에서 규제	600 100.0	3 0.5	11 1.8	56 9.3	190 31.7	340 56.7	14 2.3	56 9.3	530 88.3

주: 1. 온라인에서 자기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여성 스스로가 조심해야 한다, 2.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여성 스스로가 피해야 한다, 3. 여성들이 연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4. 미디어가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을 감시하는 보도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5. 온라인 시민의식 형성을 위한 교육이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 6.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사법적 제재가 강화되어야 한다, 7.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했을 때 즉각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회적 시스템(상담, 수사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8. 특정 단어나 음란물, 스팸 등을 차단하는 기술을 포털 등 플랫폼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제해야 한다.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해결 방안을 평균 분석한 결과, “사법적 제재가 강화되어야 한다”의 평균값이 4.64로 매우 높았다.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했을 때 즉각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회적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응답의 평균도 4.54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정 단어나 음란물, 스팸 등을 차단하는 기술을 포털 등 플랫폼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제해야 한다” 4.42, “온라인 시민의식 형성을 위한 교육이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 4.41, “미디어가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을 감시하는 보도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4.34였다. 또 “여성들이 연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3.95, “온라인에서 자기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여성 스스로가 조심해야 한다” 3.24,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여성 스스로가 피해야 한다” 2.97로 분석됐다.

연령별로 30대에서는 “미디어가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을 감시하는 보도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4.39), “온라인 시민의식 형성을 위한 교육이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4.47),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했을 때 즉각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회적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4.60)가, 40대에서는 “온라인에서 자기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여성 스스로가 조심해야 한다”(3.76),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여성 스스로가 피해야 한다”(3.53)가 다른 연령대보다 높게 나왔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볼 때, 온라인 성희롱과 성폭력에 대한 사법적 제재를 강화하고,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 및 온라인 시민의식 형성을 위한 교육 방안을 적극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플랫폼 사업자에게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의 예방을 위한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미디어가 사회적 감시자로서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을 감시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도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V-39〉 응답자 속성과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해결 방안에 대한 인식과의 평균 분석

구분	명	여성 스스로가 조심	발생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스스로 피해야	연대하여 적극적 대응	미디어가 감시하는 보도를 지속적으로	교육이나 가이드라인 마련	사법적 제재 강화	사회적 시스템 마련	포털 등 플랫폼에서 규제
20대	200	2.68	2.42	3.86	4.35	4.39	4.61	4.51	4.42
30대	200	3.28	2.97	3.99	4.39	4.47	4.64	4.60	4.47
40대	200	3.76	3.53	4.01	4.28	4.38	4.66	4.51	4.38
전체	600	3.24	2.97	3.95	4.34	4.41	4.64	4.54	4.42

### 3) 온라인에서의 여성혐오표현에 대한 인식

#### (1) 온라인에서 여성혐오표현 경험 여부

온라인에서 여성에 대한 혐오표현을 보거나 들은 경험이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를 조사한 결과, ‘경험했다’는 응답은 97.0%로 거의 대부분이 여성혐오표현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항상 ‘항상 경험했다’는 응답이 12.2%나 됐으며, ‘자주 경험했다’가 26.8%, ‘가끔 경험했다’ 30.5%로 여성혐오표현에 노출된 빈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V-40〉 온라인에서 여성혐오표현 경험 여부

문15. 선생님께서는 온라인에서 여성에 대한 혐오표현을 보거나 들은 경험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합계 명, %	보거나 들은 적이 없다	드물게 경험했다	가끔 경험했다	자주 경험했다	항상 경험했다	종합	
							경험한 적 없다	경험했다
여성혐오표현 경험 여부	600	18	165	183	161	73	18	582
	100.0	3.0	27.5	30.5	26.8	12.2	3.0	97.0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20대, 30대, 40대가 온라인에서 여성혐오표현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각각 99.0%, 97.0%, 95.0%로 나타나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혐오표현 노출 경험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V-41〉 응답자의 연령대와 온라인에서 여성혐오표현 경험 여부 교차분석

구분	명 %	경험한 적 없다	경험했다
20대	200	2	198
	100.0	1.0	99.0
30대	200	6	194
	100.0	3.0	97.0
40대	200	10	190
	100.0	5.0	95.0

## (2) 온라인에서 여성혐오표현 노출 후 정서적 상태

조사 참여자들에게 온라인에서 여성혐오표현을 보거나 들었을 때(582명),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물어보았다. 분석 결과, 온라인에서 여성혐오표현에 노출된 후 “문제가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했다”는 응답이 92.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거북하고 불편했다”는 응답도 88.3%, “모욕적이었다” 역시 82.8%로 매우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어 온라인에서 여성혐오표현에 노출된 후 정서적 상태에 대한 평균 분석을 실시한 결과, “문제가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했다”의 평균값이 4.53으로 가장 높았고, “거북하고 불편했다”가 4.42, “모욕적이었다”가 4.20으로, 5점 척도에서 4점 이상의 평균값을 보였다. 이러한 응답 경향은 20대와 30대, 40대 모두 비슷했다.

〈표 V-42〉 온라인에서 여성혐오표현 노출 후 정서적 상태

문15-1. 온라인에서 여성혐오표현을 보거나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합계 명, %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합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1. 별 느낌이 없었다	582 100.0	256 44.0	199 34.2	81 13.9	42 7.2	4 0.7	455 78.2	81 13.9	46 7.9
2. 재미있었다	582 100.0	461 79.2	74 12.7	25 4.3	19 3.3	3 0.5	535 91.9	25 4.3	22 3.8
3. 거북하고 불편했다	582 100.0	9 1.5	12 2.1	47 8.1	173 29.7	341 58.6	21 3.6	47 8.1	514 88.3
4. 모욕적이었다	582 100.0	6 1.0	20 3.4	74 12.7	233 40.0	249 42.8	26 4.5	74 12.7	482 82.8
5. 공감되는 말이었다	582 100.0	346 59.5	115 19.8	59 10.1	44 7.6	18 3.1	461 79.2	59 10.1	62 10.7
6. 문제가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했다	582 100.0	7 1.2	7 1.2	30 5.2	165 28.4	373 64.1	14 2.4	30 5.2	538 92.4

〈표 V-43〉 응답자 연령대와 온라인에서 여성혐오표현 노출 후 정서적 상태와의  
평균 분석

구분	명	별 느낌이 없었다	재미있었다	거북하고 불편했다	모욕적이었다	공감되는 말이었다	문제가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했다
20대	198	1.76	1.27	4.39	4.15	1.64	4.55
30대	194	1.88	1.42	4.39	4.21	1.75	4.49
40대	190	1.96	1.31	4.48	4.25	1.87	4.55
전체	582	1.86	1.33	4.42	4.20	1.75	4.53

### (3) 온라인에서 여성혐오표현 노출 후 취한 행동

온라인에서 여성혐오표현을 보거나 들은 후(582명),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질문했다. 분석 결과, 온라인에서 여성혐오표현을 보거나 들었을 때 한 행위로 “무

시하였다”가 8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웬만하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옳지 않다고 생각하여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었다”(53.8%), “사이트 관리자에게 신고하였다”(38.3%), “반대한다는 내용을 올렸다”(30.2%) 등 응답자 10명 중 3명-5명은 적극적인 행동을 취한 것으로 나타나 혐오표현의 수준이 높은 경우 그에 맞는 행동을 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경찰,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공공기관에 신고하였다”는 응답이 5.8%로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여성들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온라인에서 여성혐오표현을 보거나 들었을 때 한 행위로 20대 여성들이 다른 연령대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취했음을 알 수 있었다. “옳지 않다고 생각하여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었다” 63.6%, “사이트 관리자에게 신고하였다” 46.5%, “반대한다는 내용을 올렸다” 34.3%, “경찰,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공공기관에 신고하였다” 7.1%로 적극적 행동을 취했다는 응답률이 30대나 40대보다 높았다.

〈표 V-44〉 온라인에서 여성혐오표현 노출 후 취한 행동

문15-2. 온라인에서 여성혐오표현을 보거나 들었을 때, 다음의 행위를 한 적이 있습니까?			
	합계 명, %	없다	있다
1. 재미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었다	582 100.0	559 96.0	23 4.0
2.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여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었다	582 100.0	554 95.2	28 4.8
3. 옳지 않다고 생각하여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었다	582 100.0	269 46.2	313 53.8
4. 동의한다는 내용을 올렸다	582 100.0	554 95.2	28 4.8
5. 무시하였다	582 100.0	91 15.6	491 84.4
6. 반대한다는 내용을 올렸다	582 100.0	406 69.8	176 30.2
7. 사이트 관리자에게 신고하였다	582 100.0	359 61.7	223 38.3
8. 경찰,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공공기관에 신고하였다	582 100.0	548 94.2	34 5.8

〈표 V-45〉 응답자의 연령대와 온라인에서 여성혐오표현 노출 후 취한 행동과의 교차분석

구분	재미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었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여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었다	옳지 않다고 생각하여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었다	동의 한다는 내용을 올렸다	무시 하였다	반대 한다는 내용을 올렸다	사이트 관리자 에게 신고 하였다	경찰, 여성 가족부, 국가인권 위원회 등 공공 기관에 신고 하였다
20대	3 1.5	10 5.1	126 63.6	7 3.5	175 88.4	68 34.3	92 46.5	14 7.1
30대	13 6.7	8 4.1	101 52.1	10 5.2	159 82.0	58 29.9	77 39.7	11 5.7
40대	7 3.7	10 5.3	86 45.3	11 5.8	157 82.6	50 26.3	54 28.4	9 4.7
전체	23 4.0	28 4.8	313 53.8	28 4.8	491 84.4	176 30.2	223 38.3	34 5.8

#### (4) 온라인에서 여성혐오표현 노출 후 변화

다음으로 온라인에서 여성혐오표현을 보거나 들은 후(582명)에 일어난 변화에 대해 질문했다. 분석 결과, “경험한 상황과 비슷한 상황을 피하려고 노력했다”는 응답이 57.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그곳에 다시 방문하지 않았다”(50.3%),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글을 쓰기 어려워졌다”(42.1%), “일상생활에서 불안을 느끼게 되었다”(21.5%), “자존감이 떨어졌다”(19.2%), “스트레스, 우울 증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하였다”(17.0%) 순으로 나타났다.

〈표 V-46〉 온라인에서 여성혐오표현 노출 후 나타난 변화

문15-3. 온라인에서 여성혐오표현을 보거나 들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합계 명, %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합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1. 그곳에 다시 방문하지 않았다	582 100.0	21 3.6	114 19.6	154 26.5	209 35.9	84 14.4	135 23.2	154 26.5	293 50.3
2. 경험한 상황과 비슷한 상황을 피하려고 노력했다	582 100.0	23 4.0	74 12.7	148 25.4	263 45.2	74 12.7	97 16.7	148 25.4	337 57.9
3.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글을 쓰기 어려워졌다	582 100.0	51 8.8	108 18.6	178 30.6	192 33.0	53 9.1	159 27.3	178 30.6	245 42.1
4. 자존감이 떨어졌다	582 100.0	136 23.4	176 30.2	158 27.1	92 15.8	20 3.4	312 53.6	158 27.1	112 19.2
5. 스트레스,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582 100.0	158 27.1	167 28.7	158 27.1	83 14.3	16 2.7	325 55.8	158 27.1	99 17.0
6. 일상생활에서 불안을 느끼게 되었다	582 100.0	150 25.8	154 26.5	153 26.3	113 19.4	12 2.1	304 52.2	153 26.3	125 21.5

평균 분석을 실시한 결과, “경험한 상황과 비슷한 상황을 피하려고 노력했다”의 평균값이 3.50으로 가장 높았고, “그곳에 다시 방문하지 않았다”(3.38),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글을 쓰기 어려워졌다”(3.15), “자존감이 떨어졌다”(2.46), “일상생활에서 불안을 느끼게 되었다”(2.46), “스트레스,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하였다”(2.37) 순으로 분석됐다.

연령별로 6개 항목 “그곳에 다시 방문하지 않았다”(3.62), “경험한 상황과 비슷한 상황을 피하려고 노력했다”(3.70),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글을 쓰기 어려워졌다”(3.32), “자존감이 떨어졌다”(2.71), “스트레스,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하였다”(2.49), “일상생활에서 불안을 느끼게 되었다”(2.56) 모두 40대에서 높게 나왔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볼 때 여성혐오표현을 접한 후 여성들이 온라인 세상에서 위축되고 정서적으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47〉 응답자 연령대와 온라인에서 여성혐오표현 노출 후 나타난 변화와의 평균 분석

구분	명	그곳에 다시 방문하지 않았다	경험한 상황과 비슷한 상황을 피하려고 노력했다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글을 쓰기 어려워졌다	자존감이 떨어졌다	스트레스,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일상 생활에서 불안을 느끼게 되었다
20대	198	3.18	3.34	3.04	2.30	2.26	2.39
30대	194	3.36	3.46	3.10	2.38	2.36	2.42
40대	190	3.62	3.70	3.32	2.71	2.49	2.56
전체	582	3.38	3.50	3.15	2.46	2.37	2.46

### (5) 여성혐오표현에 대한 인지도

20-40대 여성이 여성혐오표현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여성혐오표현 사이트 분석 결과 나타난 10개의 여성혐오표현을 물어봤다. 분석 결과, 응답자의 92.7%가 “김치녀”이 여성혐오표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메갈녀” 80.7%, “메택지” 62.0%, “꼴페미” 61.0%, “보험” 54.5%, “보적보” 53.2%, “보롱내” 50.8%, “꼴뱅이” 48.8%, “메콩광” 48.2%로 이러한 여성혐오표현을 응답자의 10명 중 4명 이상이 알고 있었다.

〈표 V-48〉 여성혐오표현에 대한 인지도

문16. 선생님께서는 다음 표현이 여성혐오표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하는 것을 선택해 주십시오. 무슨 뜻인지 모르시면 모른다는에 응답해 주세요.

	합계 명, %	여성혐오표현이 아니다	여성혐오표현이다	모른다
1. 메갈녀	600 100.0	28 4.7	484 80.7	88 14.7
2. 메콩광	600 100.0	33 5.5	289 48.2	278 46.3
3. 메택지	600 100.0	32 5.3	372 62.0	196 32.7

문16. 선생님께서는 다음 표현이 여성혐오표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하는 것을 선택해 주십시오. 무슨 뜻인지 모르시면 모른다는에 응답해 주세요.

	합계 명, %	여성혐오표현이 아니다	여성혐오표현이다	모른다
4. 자박꿈	600 100.0	12 2.0	178 29.7	410 68.3
5. 보름내	600 100.0	10 1.7	305 50.8	285 47.5
6. 꼴페미	600 100.0	34 5.7	366 61.0	200 33.3
7. 김치년	600 100.0	22 3.7	556 92.7	22 3.7
8. 보험	600 100.0	28 4.7	327 54.5	245 40.8
9. 보적보	600 100.0	12 2.0	319 53.2	269 44.8
10. 골뱅이	600 100.0	25 4.2	293 48.8	282 47.0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10개 여성혐오표현 모두 온라인을 많이 사용하는 20대가 30대와 40대보다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49〉 응답자의 연령대와 여성혐오표현에 대한 인지도와의 교차분석

구분	메갈년	메콩랑	메태지	자박꿈	보름내	꼴페미	김치년	보험	보적보	골뱅이
20대	169	120	142	69	131	145	190	133	145	126
	84.5	60.0	71.0	34.5	65.5	72.5	95.0	66.5	72.5	63.0
30대	160	108	131	62	11.	126	185	117	113	106
	80.0	54.0	65.5	31.0	55.0	63.0	92.5	58.5	56.5	53.0
40대	155	61	99	47	64	95	181	77	61	61
	77.5	30.5	49.5	23.5	32.0	47.5	90.5	38.5	30.5	30.5
전체	484	289	372	178	305	366	556	327	319	293
	80.7	48.2	62.0	29.7	50.8	61.0	92.7	54.5	53.2	48.8

### (6) 여성혐오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우리 사회에서 여성혐오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오프라인 세상과 온라인 세상을 나눠서 질문해보았다. 오프라인 세상에서의 여성혐오 문제가 ‘심각하다’는 응답은 89.5%(‘매우 심각하다’ 44.2% + ‘다소 심각하다’ 45.3%)로 응답자 10명 중 9명이 심각하다고 생각했다. 또 온라인에서의 여성혐오 문제가 ‘심각하다’는 응답도 93.2%(‘매우 심각하다’ 53.7% + ‘다소 심각하다’ 39.5%)로 나타나 오프라인 세상에서의 여성혐오가 심각하다는 응답률보다 높았다.

〈표 V-50〉 여성혐오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합계 명, %	전혀 심각 하지 않다	별로 심각 하지 않다	보통 이다	다소 심각 하다	매우 심각 하다	종합		
							심각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심각 하다
문17. 현재 우리사회 오프라인에서의 여성혐오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18. 현재 온라인에서의 여성혐오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현재 우리사회 오프라인	600 100.0	0 0.0	8 1.3	55 9.2	272 45.3	265 44.2	8 1.3	55 9.2	537 89.5
2. 현재 온라인	600 100.0	0 0.0	5 0.8	36 6.0	237 39.5	322 53.7	5 0.8	36 6.0	559 93.2

평균 분석을 실시한 결과, “현재 온라인에서의 여성혐오 문제가 심각하다”의 평균값은 4.46으로 “현재 우리사회 오프라인에서의 여성혐오 문제가 심각하다”의 평균값 4.32 보다 높게 나왔다. 연령별로는 20대(“현재 온라인”(4.54), “현재 우리사회 오프라인”(4.41))에서, 혼인상태별로는 미혼(“현재 온라인”(4.56), “현재 우리사회 오프라인”(4.42))에서 심각하다는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표 V-51〉 응답자의 연령대와 여성혐오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의 평균 분석

구분	명	현재 우리사회 오프라인	현재 온라인
20대	200	4.41	4.54
30대	200	4.38	4.53
40대	200	4.18	4.32
결혼	277	4.22	4.35
미혼	312	4.42	4.56
기타	11	4.09	4.36
전체	600	4.32	4.46

### (7) 여성혐오에 대한 인식

여성혐오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5개의 진술문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 질문했다. 분석 결과, “여성혐오는 우리사회에 실제로 존재하는 현상이다”는 의견에 ‘그렇다’는 응답이 89.7%(‘매우 그렇다’ 46.7% + ‘다소 그렇다’ 43.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 “여성혐오는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구조적 문제이다”에 동의하는 비율이 74.2%(‘매우 그렇다’ 32.0% + ‘다소 그렇다’ 42.2%)로 나타났다.

이어 “여성혐오는 사회 전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일부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의 문제이다”(53.8%), “여성혐오는 사회현상을 반영하기보다는 일부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전략적으로 만들어낸 용어이다”(41.0%), “여성혐오는 별 실체가 없는 허상을 미디어가 확대·재생산하고 있는 현상이다”(34.2%) 순으로 동의하는 응답자가 많았다.

〈표 V-52〉 여성혐오에 대한 인식

문19. 선생님께서는 여성혐오와 관련된 다음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계 명, %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합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1. 우리사회에 실제 존재하는 현상	600 100.0	4 0.7	11 1.8	47 7.8	258 43.0	280 46.7	15 2.5	47 7.8	538 89.7
2. 일부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의 문제	600 100.0	83 13.8	100 16.7	94 15.7	238 39.7	85 14.2	183 30.5	94 15.7	323 53.8
3. 전략적으로 만들어낸 용어	600 100.0	95 15.8	147 24.5	112 18.7	180 30.0	66 11.0	242 40.3	112 18.7	246 41.0
4. 허상을 미디어가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현상	600 100.0	126 21.0	144 24.0	125 20.8	137 22.8	68 11.3	270 45.0	125 20.8	205 34.2
5. 사회구조적 문제	600 100.0	8 1.3	32 5.3	115 19.2	253 42.2	192 32.0	40 6.7	115 19.2	445 74.2

주: 1. 여성혐오는 우리사회에 실제로 존재하는 현상이다, 2. 여성혐오는 사회 전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일부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의 문제이다, 3. 여성혐오는 사회현상을 반영하기보다는 일부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전략적으로 만들어낸 용어이다, 4. 여성혐오는 별 실체가 없는 허상을 미디어가 확대·재생산하고 있는 현상이다, 5. 여성혐오는 개인의 문제라기 보다는 사회구조적 문제이다.

평균 분석을 실시한 결과, “여성혐오는 우리사회에 실제로 존재하는 현상이다”의 평균값이 4.33으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여성혐오는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구조적 문제이다”(3.98), “여성혐오는 사회 전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일부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의 문제이다”(3.24), “여성혐오는 사회현상을 반영하기 보다는 일부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전략적으로 만들어낸 용어이다”(2.96), “여성혐오는 별 실체가 없는 허상을 미디어가 확대·재생산하고 있는 현상이다”(2.80)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분석해보니 40대가 20대·30대와 달리 “여성혐오는 사회 전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일부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의 문제이다”(3.42), “여성혐오는 사회현상을 반영하기보다는 일부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전략적으로 만들어낸 용어이다”(3.15)라는데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다.

〈표 V-53〉 응답자의 연령대와 여성혐오에 대한 인식과의 평균 분석

구분	명	우리사회에 실제 존재하는 현상	일부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의 문제	전략적으로 만들어낸 용어	허상을 미디어가 확대·재생산 하고 있는 현상	사회구조적 문제
20대	200	4.39	3.00	2.70	2.62	4.01
30대	200	4.39	3.29	3.04	2.86	3.98
40대	200	4.22	3.42	3.15	2.92	3.97
전체	600	4.33	3.24	2.96	2.80	3.98

#### 4)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한 인식

조사 참여자들이 언론(신문, 방송뉴스, 인터넷 뉴스 등) 보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보도와 온라인 여성혐오표현에 대한 보도에 대해 질문해보았다.

분석 결과, 언론(신문, 방송뉴스, 인터넷 뉴스 등)과 관련된 의견으로 “언론은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선정적으로 보도하고 있다”는데 동의하는 비율이 60.3%인 반면, “언론은 여성의 시각을 반영하여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보도하고 있다”는데 동의하는 비율이 29.8%, “언론은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공정하게 보도하고 있다”는데 동의하는 비율은 19.3%로 낮았다.

또 여성혐오 문제에 대한 보도에 있어서도 “언론은 온라인상의 여성혐오 문제를 선정적으로 보도하고 있다”는데 동의하는 비율이 60.2%인 반면, “언론은 여성의 시각을 반영하여 온라인상의 여성혐오 문제를 보도하고 있다” 29.3%, “언론은 온라인상의 여성혐오 문제를 공정하게 보도하고 있다” 15.0%에 그쳤다.

〈표 V-54〉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한 인식

문20. 선생님께서는 언론(신문, 방송뉴스, 인터넷 뉴스 등)과 관련된 다음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계 명, %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합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1. 여성 시각을 반영하여 성희롱·성폭력 보도	600 100.0	52 8.7	171 28.5	198 33.0	154 25.7	25 4.2	223 37.2	198 33.0	179 29.8
2. 여성 시각을 반영하여 여성혐오 문제 보도	600 100.0	51 8.5	174 29.0	199 33.2	152 25.3	24 4.0	225 37.5	199 33.2	176 29.3
3.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선정적으로 보도	600 100.0	14 2.3	62 10.3	162 27.0	261 43.5	101 16.8	76 12.7	162 27.0	362 60.3
4. 여성혐오 문제를 선정적으로 보도	600 100.0	15 2.5	70 11.7	154 25.7	265 44.2	96 16.0	85 14.2	154 25.7	361 60.2
5.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공정하게 보도	600 100.0	75 12.5	222 37.0	187 31.2	93 15.5	23 3.8	297 49.5	187 31.2	116 19.3
6. 여성혐오 문제를 공정하게 보도	600 100.0	80 13.3	220 36.7	210 35.0	73 12.2	17 2.8	300 50.0	210 35.0	90 15.0

주: 1. 언론은 여성의 시각을 반영하여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보도하고 있다, 2. 언론은 여성의 시각을 반영하여 온라인상의 여성혐오 문제를 보도하고 있다, 3. 언론은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선정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4. 언론은 온라인상의 여성혐오 문제를 선정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5. 언론은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공정하게 보도하고 있다, 6. 언론은 온라인상의 여성혐오 문제를 공정하게 보도하고 있다.

평균 분석을 한 결과, “언론은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선정적으로 보도하고 있다”의 평균값이 3.62, “언론은 여성의 시각을 반영하여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보도하고 있다” 2.88, “언론은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공정하게 보도하고 있다” 2.61로 분석됐다. 또 “언론은 온라인상의 여성혐오 문제를 선정적으로 보도하고 있다”의 평균값은 3.60이나 됐으나, “언론은 여성의 시각을 반영하여 온라인상의 여성혐오 문제를 보도하고 있다”는 2.87, “언론은 온라인상의 여성혐오 문제를 공정하게 보도하고 있다”는 2.55였다.

〈표 V-55〉 응답자의 연령대와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한 인식과의 평균 분석

구분	명	여성 시각을 반영하여 성희롱·성폭력 보도	여성 시각을 반영하여 여성혐오 문제 보도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선정적으로 보도	여성혐오 문제를 선정적으로 보도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공정하게 보도	여성혐오 문제를 공정하게 보도
20대	200	2.67	2.63	3.41	3.39	2.38	2.42
30대	200	2.90	2.93	3.73	3.70	2.70	2.54
40대	200	3.08	3.07	3.74	3.70	2.76	2.68
전체	600	2.88	2.87	3.62	3.60	2.61	2.55

연령별로 분석해보니, 20대에서 30대나 40대보다 언론에 대해 부정적 응답이 많았다. “언론은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선정적으로 보도하고 있다”는데 동의한 비율(3.41)과 “언론은 온라인상의 여성혐오 문제를 선정적으로 보도하고 있다”는데 동의한 비율(3.39)이 다른 연령대의 응답률보다 높았고 “언론은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공정하게 보도하고 있다”는데 동의한 비율(2.38)과 언론은 온라인상의 여성혐오 문제를 공정하게 보도하고 있다”는데 동의한 비율(2.42)이 다른 연령대의 응답률보다 낮았다.

#### 4. 소결

온라인에서의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표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40대 여성 6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온라인에서 성희롱·성폭력을 직접 경험했거나 직접 경험하지 못했더라도 목격한 적이 있는 여성으로 했으며, 20대, 30대, 40대 각각 200명씩 연령별로 할당하여 표집했다.

분석 결과, 20-40대 여성 응답자들의 반수 이상은 오프라인 세상보다 온라인 세상에서 양성평등의식이 정착되어 있지 않고, 남녀 간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여성이 고립되어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또 조사 참여자 반수 가량은 오프라인 세상보다 온라인 세상이 권위적이며, 오프라인 세상보다 온라인 세상에서 여성의 자율성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사회

적 지위와 무관하게 누구나 자유롭게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공론장으로 기대됐던 인터넷에서조차 성평등적이지 못한 세상이 구축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특히 조사에 참여한 20-40대 여성들 대부분은 온라인에서의 성희롱·성폭력·여성혐오표현이 심각한 상태이며, 오프라인 사회보다 온라인에서 더 심각하다고 응답해 온라인에서의 성희롱·성폭력·여성혐오표현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조사가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을 경험 또는 목격한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했음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여성 참여자 10명 중 대략 4명 정도가 온라인 성희롱과 성폭력을 직접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는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이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직접 경험한 여성들이 가장 많이 겪은 일은 온라인에서 원치 않는 음란물(글, 영상, 음향파일 등)을 전송받은 것으로 10명 중 9명가량이 원치 않는 음란물을 전송받은 경험을 갖고 있었다. 또 직접 경험한 여성 2명 중 1명은 온라인에서 성적인 욕설이 담긴 메시지(메일, 댓글, 카톡 등)와 자신의 외모를 대상으로 한 불쾌한 메시지(메일, 댓글, 카톡 등)를 받은 적이 있었고, 온라인에서 사적 만남을 강요받은 적이 있었다. ‘성적 욕설’과 ‘외모를 대상으로 한 불쾌한 메시지’, ‘사적 만남 강요’ 모두 온라인에서 매우 자주 일어나는 성희롱·성폭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게다가 직접 경험한 여성 10명 중 3-4명은 특정 신체 부위 노출 강요, 특정 신체 사진 전송 요구, 성관계 제안, 성매매 제안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의 수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 ‘사진이나 영상의 무단 유포’, ‘성적 행위 사진이나 영상의 무단 유포’와 같은 명실상부한 범죄 행위의 피해자가 된 여성도 직접 경험자 10명 중 1-2명 이상으로 온라인 성폭력의 수준이 심각했다. 특히 20대가 이러한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을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 경험자들에게 온라인 성희롱과 성폭력을 가한 사람은 ‘온라인에서 처음 만난 사람(전혀 모르는 사람)’이 53.5%였고, 오프라인에서 만난 적은 없고 온라인에서 지속적으로 연결된 사람이 24.8%인 것으로 보아, 온라인에서는 개인의 신상을 드러내지 않고 성희롱·성폭력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성 대상 성희롱·성폭력이 오프라인보다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해볼 수 있다. 오프라인 세상과 마찬가지로, 직장상사나 동료(46.5%), 일회성으로 만난 상대(33.2%), 친구(선후배 포함)(26.1%), 연인(전 연인 또는 현재 연인)(19.9%), 가족

(배우자, 남매 등)”(11.1%) 등의 가해자도 상당수였다.

한편, 지난 1년 동안 온라인에서 성희롱·성폭력을 목격한 20-40대 여성(433명, 이후 간접 경험자로 표현)들의 응답 결과는 성희롱·성폭력이 온라인 세상에 만연해 있음을 확인시켜주었다. 간접 경험자 10명 중 9명 이상이 외모를 대상으로 한 불쾌한 메시지(메일, 댓글, 카톡 등), 원치 않는 음란물(글, 영상, 음향파일 등), 성적인 욕설이 담긴 메시지(메일, 댓글, 카톡 등)를 온라인에서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타인의 사진·영상의 무단 유포, 성적 대화(채팅), 특정 신체 부위 노출, 타인의 성적 행위 사진·영상 무단 유포도 간접 경험 여성 10명 중 6-7명 이상이 목격했다고 응답했다. 이와 함께 과반수 이상은 사적 만남 강요를, 10명 중 4명은 성매매(조건만남) 제안, 특정 신체 사진 전송 요구, 성관계 제안을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온라인 성희롱과 성폭력을 직접 경험했거나 목격했을 때 조사 참여 여성 10명 중 2-3명(24.5%)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으며, 가장 큰 이유로 ‘신고할 해도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였다. 여성들이 경찰의 수사 및 법적 처벌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했거나 목격한 후 가장 많이 취한 대응방법은 해당 서비스의 아이디를 새로 만들기(38.5%)와 탈퇴하기(38.0%) 같은 소극적 방법이었다. 그래도 10명 중 4명(38.0%)은 해당 서비스 신고센터에 신고하는 적극성을 보였다. 또 상대방에게 항의하고 사과를 요구하거나(19.2%), 사설업체에 영상물 삭제 의뢰(9.2%), 경찰에 신고(9.0%), 여성가족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상담·접수(5.7%), 시민단체에 도움 요청(4.3%)과 같이 적극적으로 대응한 여성들도 있었다.

조사 참여자들은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인식(77.7%)이 높은 반면, ‘피해자의 책임’(16.3%), ‘여성의 잘못’(13.5%), ‘여성의 그럴만한 행동’(5.3%), ‘과민 반응하는 여성이 문제’(4.3%) 등과 같이 여성 피해자 자체를 문제로 보는 인식에는 동의하지 않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런 결과를 통해 볼 때 여성들이 피해자 책임 프레임에서 벗어나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의 문제가 사회적 범죄행위임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가해자보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강하게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성희롱과 성폭력의 피해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여성들은 정서적 두려움을 안고 온라인 세상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조사 결과에

서 확인할 수 있었다.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경험 후 ‘나의 개인적인 정보가 온라인에 유포될까봐 두렵다’(79.2%),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SNS에 방문해 내 일상을 엿보거나 감시할까 두렵다’(62.2%), ‘내 신체 일부가 찍힌 사진이나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될까봐 두렵다’(55.7%), ‘온라인에서 원치 않는 음란물(글, 영상 및 음향파일)을 받을까봐 두렵다’(54.7%), ‘나에 대한 유언비어나 일방적인 비난이 온라인에 유포될까봐 두렵다’(53.3%), ‘내 사진에 음란한 이미지가 합성되어 온라인에 유포될까봐 두렵다’(52.2%), ‘온라인에서 나의 외모나 신체를 대상으로 한 불쾌한 메시지를 받을까봐 두렵다’(50.8%), ‘나의 성적 행위가 찍힌 사진이나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될까봐 두렵다’(47.8%), ‘온라인에서 성적인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받을까봐 두렵다’(46.2%) 등 다양한 정서적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8-9명은 온라인에서 누군가 자신을 엿보거나 감시할까봐 자신의 일상에 관한 게시물을 올리지 않았고(87.3%), 여성이라는 이유로 범죄 피해를 당하거나 여성혐오자들의 공격을 받을까봐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글을 쓰기 어려웠으며(61.2%), 여성혐오표현을 보게 될까봐 SNS를 자주 사용하지 않기(56.0%)도 했다. 또 조사에 참여한 여성들의 과반수는 비난이나 차별을 당할까봐 여성이라는 것을 온라인에서 밝히지 않거나 활동하던 온라인 공간을 떠났으며(48.7%), 10명 중 3명(29.3%)은 온라인에 유포된 자신의 사진이나 영상을 본 사람이 있을까봐 외출을 자제했다고 답했다. 온라인 세상뿐 아니라 오프라인 세상에서도 위축되고 자유가 억압된 여성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여성혐오표현은 20-40대 여성 참여자의 거의 대부분(97.0%)이 온라인에서 접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항상 경험했다’는 응답이 12.2%나 됐으며, ‘자주 경험했다’가 26.8%, ‘가끔 경험했다’ 30.5%로 온라인에서 여성혐오표현을 접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온라인에서 여성혐오표현에 노출된 여성 참여자(582명) 10명 중 8-9명은 ‘거북하고 불편’했으며(88.3%), ‘모욕적이었다’(82.8%)고 답했다. 또 “경험한 상황과 비슷한 상황을 피하려고 노력했다”(57.9%), “그곳에 다시 방문하지 않았다”(50.3%),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글을 쓰기 어려워졌다”(42.1%), “일상생활에서 불안을 느끼게 되었다”(21.5%), “자존감이 떨어졌다”(19.2%), “스트레스,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하였다”(17.0%)와 같이 여성혐오표현을 접한 후 여성들은 온라인 세상에서 위축되고 정서적으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온라인에서 여성혐오표현을 보거나 들었을 때 응답자 10명 중 8-9명(84.4%)은

‘무시했다’고 답했다. 웬만하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이트 관리자에게 신고했다”(38.3%), “반대한다는 내용을 올렸다”(30.2%) 등 응답자 10명 중 3명은 적극적인 행동을 취한 것으로 나타나 혐오표현의 수준이 높은 경우 그에 맞는 행동을 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법적·제도적 대책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의 직·간접경험자들이 경찰에 신고한 여성 54명 중 6건만이 처벌을 받았고, 24건은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sup>72)</sup> 또 여성 참여자들은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인식(77.7%)이 높았으며, 조사 참여자의 90.3%가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의 원인을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따라서 여성 참여자들 대부분은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사법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90.8%)고 보았다.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여성 참여자의 88.3%가 특정 단어나 음란물, 스팸 등을 차단하는 기술을 플랫폼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이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에 좀 더 적극적인 대처를 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여성 참여자 10명 중 9명(89.2%)은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했을 때 즉각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회적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신속한 지원 시스템은 온라인 성희롱과 성폭력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온라인상의 전송물을 삭제하는 서비스부터 법적 대응을 도와주는 일은 물론,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온라인 성폭력을 경험하기 이전처럼 자유로운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까지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여성 참여자들의 86.0%는 미디어가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을 감시하는 보도를 지속적으로 한다면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불행하게도 현재 언론은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여성혐오표현 관련 보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언론이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선정적으로 보도’한다는 데 동의한 비율은 60%를 넘었지만, ‘여성의 시

72) 잘 모르겠다 24건

각을 반영하여 보도'(29.8%), '공정하게 보도'(19.3%)한다는 데 동의하는 비율은 30%도 안 됐다. 온라인에서의 여성혐오 문제에 대한 보도에서도 언론이 '선정적으로 보도'한다는 데 동의한 비율이 60.2%인 반면, '여성의 시각을 반영하여 보도'(29.3%), '공정하게 보도'(15.0%)에 동의한 비율은 30%에도 못 미쳤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볼 때 언론 등 미디어가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여성혐오표현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하며, 올바른 보도를 위한 보도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기자들이 공유하여,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여성혐오표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 VI

---

#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여성혐오 표현관련 판례 및 심의사례

1. 온라인 성폭력 관련 판례분석	179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사례분석	192
3. 국가인권위원회 시정권고 사례분석	201
4. 소결	207



## 1. 온라인 성폭력 관련 판례분석

### 1) 온라인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실태

지난 10년 동안(2007년-2016년) 주요 성범죄 실태를 보면, 강간이나 강제추행의 발생비율은 큰 변동이 없지만 단일 사이트는 물론이고 웹하드, SNS, 각종 커뮤니티를 통한 디지털 성폭력범죄가 증가추세를 보였다. 그중 가장 급격한 증가를 보인 범죄유형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대검찰청 통계(2016)에 따르면 2006년 전체 성폭력범죄에서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3.6%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에는 전체 성폭력범죄에서 24.9%를 차지하였다(서승희, 2017).<sup>73)</sup> 발생 건수도 2012년 2,412건에서 2016년 5,170건으로 두 배 넘게 증가하였다(표 4 참조).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2012년만 해도 성폭속범죄 중에서 음란물 유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점차 감소하고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가 증가추세를 보여 2016년에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Ⅶ-1〉 연도별 디지털 성폭력범죄 발생 추이

(단위: 건)

성폭력범죄 최종별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성폭속 범죄	음화등반포(판매, 임대, 전시, 제조)	166	60	7	7	22	
	음란물유포(정보통신망법)	5,708	6,525	3,717	3,419	2,412	
	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처벌법)	2,412	4,841	6,635	7,615	5,170	
	통신매체이용음란(성폭력처벌법)	914	1,411	1,250	1,130	1,109	
	음란물제작배포등(청소년성보호법)	1,446	2,508	634	644	831	
불법 콘텐츠 범죄	음란사이트	1,613	1,452				
	성폭력	602	482				
	사이버음란물	일반음란물			3,633	3,523	2,515
		아동음란물			721	721	1,262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5,684	6,320	8,880	15,043	14,908	
사이버스토킹	976	847	363	134	56		

출처: 김현아 외(2018), 12쪽에서 재인용

73)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중에서 ‘비동의유포 성적촬영물’의 피해도 심각하다. 이것은 연인이 이별 후에 복수 목적으로 유포하는 성적촬영물인 ‘리벤지포르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개인의 성관계 동영상을 온라인 공간에 유포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성범죄에 해당한다.

2011년 1월 1일부터 2016년 4월 30일까지 신고된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판례를 분석한 연구(김현아, 2016)를 토대로 피해자 특성, 피해장소, 범행횟수, 처벌현황 등을 중심으로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의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99%가 여성으로 나타나 피해자의 거의 대부분이 여성이었고, 남녀 피해자가 동시에 있었던 사안은 피고인이 모텔에서 투숙하는 투숙객들의 성관계나 옷을 갈아입는 장면 등을 촬영하여 남성이 여성과 함께 피해자가 된 사안이었다. 피해자의 연령은 20세 이상 30세 미만인 33.76%이고,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는 서로 모르는 사이가 거의 대부분(89.01%)이었으며, 아는 사이는 연인(43.68%), 직장동료(19.54%)가 절반 이상이었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발생장소를 살펴보면, 지하철 54.73%, 노상 10.8%, 버스택시 안 4.64%, 집 숙소 3.29%, 공중화장실 2.81% 순으로 나타났다. 가해자 1인이 범한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범행횟수는 1회 46.17%, 2회 11.69%, 3회 5.84%, 4회 5.06%, 5회 이상이 31.23% 순으로, 1회가 거의 절반을 차지했지만 5회 이상이 약 3분의 1을 차지하였다.

처벌현황을 보면,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1심 양형의 경우 벌금형은 71.97%, 집행유예는 14.67%, 선고유예는 7.46%, 징역형은 5.32%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촬영자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촬영 후 유포까지 한 경우에 대한 1심에서의 처벌은 선고유예 5건(7.35%), 벌금형 19건(28.79%), 징역형 18건(27.27%), 집행유예 24건(36.36%)으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에 그치고 있었다. 벌금형도 대부분 5백만원 이하로 선고되었다. 피고인이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촬영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유포하는 행위는 그 피해의 심각성, 피해 확산의 신속성, 위험성이라는 측면에서 불법성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음에도, 단순 촬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포된 경우에도 미약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현아 외, 2018, 15-17쪽에서 재인용). 이상의 통계에 기초하면,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으로 20세 이상 30세 미만 여성의 비중이 높으며, 서로 모르는 사이에 발생하는 경우가 주류를 이루었고, 피해 발생장소는 지하철과 노상이 거의 대부분이었다.

## 2)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관련 대법원 판례분석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 관련 판례 중에서도 최근 국내에서 피해 건수가 급증하고 성폭력처벌법상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를 다룬 대법원 판례에 주목하고, 성

폭력처벌법을 적용한 주요 판례에 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판례분석의 목적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관한 판결 논리와 판결의 함의를 분석하여 사법부의 판결 성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2010년대 초반부터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가 증가 추세를 보이는 점을 감안하여, 2010년 4월 15일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정 이후의 주요 대법원 판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온라인 성폭력과 관련된 판례로 범위를 국한하여 대한민국법원 종합법률정보, 로앤비에서 판례를 수집하여 모두 6개의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내용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를 중심으로 한 성폭력범죄 관련 입법해석(개념, 보호법익), 성폭력범죄의 성립요건, 판단기준 등이다.

#### (1)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6668 판결

성폭력처벌법 제정 이전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를 규정했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제14조의 2 제1항의 ‘그 촬영물’에 타인의 승낙을 받아 촬영한 영상물도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루었다. 동 법에서는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심<sup>74)</sup>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린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하반신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하였다’는 성폭력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와 같은 촬영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그 촬영 당시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분관계, 피해자의 고소 경위, 피해자의 진술번복 내용 등 판사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배척하고 그 범죄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기초하면, 피해자 의사에 반한 촬영의 판단기준은 촬영 당시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분관계, 피해자의 고소 경위, 피해자의 진술번복 내용 등이다.

대법원은 그와 같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의 구성요건 해석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이전의 대법원<sup>75)</sup> 판결을 인용하면서,

74) 울산지방법원 2010. 5. 7. 선고 2009노818 판결.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를 정한 성폭력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제14조의2 제1항 규정의 문언과 그 입법 취지 및 연혁, 보호법의 등에 비추어, 위 규정에서 말하는 ‘그 촬영물’이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영상물을 의미하고, 타인의 승낙을 받아 촬영한 영상물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원심이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앞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하반신을 촬영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그 촬영한 사진을 반포하였다 하더라도 성폭력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이 규정하는 ‘그 촬영물을 반포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이것은 피해자 의사에 반한 촬영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그 촬영물의 반포가 성폭력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상의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몰래카메라일 경우에만 반포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동 판결은 피해자 의사에 반한 촬영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촬영 당시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분관계, 피해자의 고소 경위, 피해자의 진술번복 내용 등임을 분명히 해주었다는 점에서 판결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서의 ‘촬영물’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영상물로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촬영한 영상물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함으로써, 범죄에 해당하는 촬영행위의 판단요소로 피해자의 동의 여부가 중요한 판단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판결의 함의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을 반포한 행위는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상의 촬영물을 반포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피해자 동의를 받고 촬영한 영상물의 반포행위는 반포행위 그 자체에 대한 동의 여

---

75)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973 판결;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캠코더로 촬영해 두었던 피해자와의 성행위 장면이 담긴 영상물을 반포한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수원지방법원 2009. 7. 14. 선고 2009노962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례이다.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의 문언과 그 입법 취지 및 연혁, 보호법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촬영물’이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영상물을 의미하고, 타인의 승낙을 받아 촬영한 영상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기초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캠코더로 촬영해 두었던 피해자와의 성행위 장면이 담긴 영상물을 반포한 행위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부에 상관없이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로 하급심<sup>76)</sup>에서도 성폭력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제14조의2 제1항의 ‘그 촬영물을 반포’하는 행위란 일명 몰래카메라에 의해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하는 행위, 즉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성적 촬영물을 반포하는 행위일 것임을 요한다고 보고, 타인의 승낙을 받아 찍은 촬영물을 사후에 그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경우까지 위 법률조항에 의해 처벌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결하였다.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307조의 증거재판주의에 기초하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 판단에 의한다는 동 법 제308조의 자유심증주의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는 무죄의 판결에 관한 동 법 제325조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피해자 의사에 반한 촬영이 입증되어야만 촬영물의 반포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해석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반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의 정도나 확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성폭력처벌법의 보호법익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판결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는데, 형법법규의 목적론적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다.

## (2)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279 판결

본 판결에서는 인터넷 화상채팅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전송받은 피해자의 신체 부위 영상을 휴대전화의 카메라로 촬영한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전문 개정 이전, 이하 구 성폭력처벌특례법) 제13조 제1항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가 성립하는지를 다루었다.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여, 14세)와 화상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유방, 음부 등 신체 부위를 보여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스스로 자신의 신체 부위를 화상카메라에 비추었고 카메라 렌즈를 통과한 화상의 정보가 디지털화되어 피고인의 컴퓨터에

76) 수원지방법원 2009. 7. 14. 선고 2009노962 판결.

전송되었다. 피고인은 수신된 정보가 영상으로 변환된 것을 휴대전화 내장 카메라로 촬영하여 동영상 파일로 저장하였다. 피고인은 구 성폭력처벌특례법 제13조 제1항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기소되었으며, 원심<sup>77)</sup>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구 성폭력처벌특례법 제13조 제1항은“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원심은 먼저 구 성폭력처벌특례법 제13조 제1항의 “촬영”의 사전적 통상적 의미는 “사람, 사물, 풍경 따위를 사진이나 영화로 찍음”이라고 보아야 하고, 동 법에서 촬영대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해석하였다. 그러므로 위 규정의 처벌 대상은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직접’ 촬영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즉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만 처벌대상이고, 자신의 신체를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은 처벌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스스로 자신의 신체 부위를 화상 카메라에 비추었고 카메라 렌즈를 통과한 상의 정보가 디지털화되어 피고인의 컴퓨터에 전송되었으며, 피고인은 수신된 정보가 영상으로 변환된 것을 휴대전화 내장 카메라를 통해 동영상 파일로 저장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촬영한 대상은 피해자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일 뿐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는 아니므로, 구 성폭력처벌특례법 제13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검사가 주장하는 형벌법규의 목적론적 해석도 해당 법률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 내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도 위 규정의 “다른 사람의 신체”에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보고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검사가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입법목적을 고려하면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도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

---

7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 4. 2. 선고 2012노371 판결.

는 행위에 포함해야야 한다는 이유로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구 성폭력처벌특별법 제13조 제1항의 해석과 입법 취지, 관련 법리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정당하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카메라에 담긴 영상도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의 촬영을 위 조항의 처벌대상에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입법에 대한 확대해석과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고,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즉 구 성폭력처벌법의 처벌대상은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직접 촬영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의 촬영은 처벌대상이 아니므로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해석한 것이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영상물을 재촬영하면 구 성폭력처벌특별법의 처벌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동 판결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촬영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로 한정하고 그 범위에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으로써, 촬영대상의 범위를 분명히 해주었다는 점에서 함의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동 판결은 구 성폭력처벌법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촬영대상이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시일 뿐, 범죄의 주체를 촬영자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다.

### (3)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8619 판결

본 판결에서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구 성폭력처벌특별법<sup>78)</sup> 제13조 제1항의 보호법익과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다루었다.

대법원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 성폭력처벌특별법 제13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78)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본 규정의 보호법익을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라고 본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은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sup>79)</sup>고 설명하였다. 즉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의 판단기준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 여부와 피해자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자 의도와 촬영 경위, 촬영장소와 각도, 촬영거리 등의 판단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 상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원심<sup>80)</sup>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등 부위를 3회에 걸쳐 촬영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등 부위는 구 성폭력처벌특례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구 성폭력처벌특례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결하였다.

동 판결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일반인 관점을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또 피해자 옷차림과 노출정도와 같은 사진의 수위 뿐 아니라 촬영자 의도와 촬영 경위, 촬영장소와 각도, 촬영거리 등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구체적, 개별적, 상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상당히 상세한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함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79)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80) 광주지방법원 2013. 7. 3. 선고 2013노373 판결.

(4)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6172 판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판결은 피고인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검은색 치마를 입고 갈색 스타킹을 신은 채 걸어가는 여성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촬영한 동영상을 다운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밴드 게시판에 동영상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던 사건과 관련하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가 반드시 촬영물을 촬영한 자와 동일인이어야 하는지를 다루었다.

대법원은 우선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행위 뿐 아니라 촬영물의 반포, 제공행위까지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입법 취지에 대해,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를 감안하여, 죄책이나 비난 가능성이 촬영행위 못지않게 크다고 할 수 있는 촬영물의 시중 유포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도 촬영자와 동일하게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즉 유포행위에 대해서도 촬영행위와 동일한 처벌을 하려는 것이 입법 취지라는 것이다. 하지만 신속하고도 광범위한 확산력을 가진 온라인 공간의 특성으로 인해 촬영물 유포로 인한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포행위에 대한 처벌의 강도를 더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한계를 엿볼 수 있다.

대법원은 그런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는 반드시 촬영물을 촬영한 자와 동일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행위의 대상이 되는 촬영물은 누가 촬영한 것인지를 묻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였다. 이것은 촬영물을 유포한 자가 비록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고 해도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가 성립하여 성폭력처벌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위 조항을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가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하는 행위”만을 처벌하는 것이라고 축소 해석할 경우,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가 이를 직접 유통하지 않

고 제3자를 통해 유통하는 경우에는 그 촬영물의 유통행위를 규제할 수 없게 되어 앞서 본 입법목적은 달성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심각한 처벌의 공백을 초래하게 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sup>81)</sup>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다.<sup>82)</sup> 즉 촬영행위와 유포행위를 동일하게 처벌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따라, 유포행위자가 촬영행위자와 동일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며, 다운로드 받은 피해 촬영물을 다시 유포하는 재유포 행위도 동 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판결을 통해 보호할 수 있는 법익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이라고 할 수 있다. 판결의 함의는 우선‘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연한 자’와 같이 입법에서 촬영자와 유통자를 병렬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촬영행위와 유통행위가 각각 성폭력처벌법상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가 성립된다는 점을 명백히 해주었다는 점이다. 즉 촬영물의 촬영자와 유포자(유통행위의 주체)가 같지 않아도 각각 처벌할 수 있다는 것으로, 촬영물의 유포자 처벌에서 촬영자가 누구인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촬영물을 직접 촬영해서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촬영만 하거나 유포만 한 행위자에 비해 가중 처벌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 성폭력처벌법으로 재유포자를 처벌할 근거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주었다는 점에서 판결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 (5)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1656 판결

본 판결에서는 첫째,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처벌 대상이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직접’ 촬영하는 경우에 한정되는지, 둘째,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위 조항의 ‘다른 사람의 신체’에 포함하는 해석이 허용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 법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촬영물’의 의미(=‘다른 사람’을 촬영대상자로 하여 그 신체를 촬

81) 춘천지방법원 2016. 4. 20. 선고 2015노24 판결.

82) 하급심(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 12. 10. 선고 2014고단930 판결)에서 피고인이 남 피부병 환자로서 평소에 남 앞에 잘 나서지 못하는 등 소극적으로 지내다가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 점은 성폭력범죄의 가해자 입장만 고려하고 피해자가 받게 되는 피해의 성격이나 정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 판결의 한계로 지적된다.

영한 촬영물) 및 자의에 의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위 조항의 촬영물에 포함하는 해석이 허용되는지를 다루었다.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남성인 피고인이 마치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전화 채팅프로그램을 통하여 피해자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해서 자위행위 영상을 휴대전화 화면으로 계속 캡처하여 이를 저장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모두 64편의 동영상을 저장하였고,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18편의 동영상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하고 있었다. 원심<sup>83)</sup>은 피고인인 캡처해서 저장한 동영상 64편과 다운로드했던 동영상 18편, 총 82편의 동영상에 대해 각 동영상에 출연하는 피해자들이 피고인 또는 성명 불상의 사람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들 스스로 촬영한 동영상을 피고인, 성명 불상의 사람이 전송받아 이를 저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고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촬영’ 또는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의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한다고 주장되었던 일부 동영상에 대해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에 대해서도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대법원은 우선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하며,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전의 대법원 판결<sup>84)</sup>을 인용함으로써 범죄와 형벌을 정한 형벌법규 해석의 엄격성을 강조하였다.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촬영대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라고 보아야 함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이 규정의 처벌 대상은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직접’ 촬영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도 위 조항의 ‘다른 사람의 신체’에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죄형법정주

83) 대전지법 2017. 12. 6. 선고 2017노1867 판결.

84)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등 참조.

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sup>85)</sup>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의 촬영물은 ‘다른 사람’을 촬영대상자로 하여 그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뜻하는 것임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자의에 의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까지 위 조항에서 정한 촬영물에 포함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라는 대법원 판결<sup>86)</sup>을 인용하였다.

이에 기초한 대법원의 입법해석을 보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대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이어야 하고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직접 촬영한 행위만 동 규정의 처벌대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동 법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의 촬영물은 다른 사람을 촬영대상자로 하여 그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로 해석해야 하므로, 본 사건에서 문제가 되었던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 영상은 피고인이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고 자의에 의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이므로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동 판결을 다시 정리하면, 첫째, 동 법 제14조 제1항의 처벌대상은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직접 촬영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둘째,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위 조항의 ‘다른 사람의 신체’에 포함하는 해석은 허용되지 않으며, 셋째 동 법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촬영물은 다른 사람을 촬영대상자로 하여 그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므로 자의에 의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위 조항의 촬영물에 포함하는 해석이 허용되지 않는다.

동 판결의 함의는 촬영대상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로 하여 직접 촬영 주체가 되어 촬영한 행위가 성폭력처벌법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백히 해주었다는 점이다. 또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신체를 스스로 촬영한 촬영물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성립범위를 정해주었다는 점에서도 판결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85)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279 판결 참조.

86)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16953 판결 참조.

(6)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1481판결

본 판결에서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이 그 사진 중 한 장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행위가 ‘제공’<sup>87)</sup>에 해당하는지를 다루었다. 즉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이를 피해자 본인에게 전송하는 행위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적용대상인지가 문제가 되었다.

대법원은 먼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반포’와 별도로 열거된 ‘제공’의 의미에 대해 ‘반포’에 이르지 아니하는 무상 교부행위로서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의미<sup>88)</sup>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동 법에서 촬영행위뿐 만 아니라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연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를 감안하여, 죄책이나 비난가능성이 촬영행위 못지않게 크다고 할 수 있는 촬영물의 유포행위를 한 자를 촬영자와 동일하게 처벌하기 위해서<sup>89)</sup>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처벌이 촬영물의 유포행위를 방지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촬영대상이 된 피해자 본인은 성폭력처벌법에서 말하는 ‘제공’의 상대방인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촬영의 대상이 된 피해자 본인에게 해당 촬영물을 교부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공’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었다.

본 판결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면서도 그 사진 중 한 장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sup>90)</sup>을 수긍한 사례이다. 반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이미지를 다시 촬영하거나

87) 2012년 12월 18일 개정에서 ‘제공’ 행위가 추가되었다.

88)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 참조.

89)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6172 판결 등 참조.

90) 대전지방법원 2018. 1. 10. 선고 2017노2202 판결.

이를 편집 및 유포하는 행위는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보호법의 측면에서 촬영행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법원이 간과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의 함의를 찾는다면, 먼저 촬영대상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신체를 촬영한 것을 광범위하게 유포함으로써 받게 되는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유포행위도 촬영행위와 더불어 명백히 성폭력범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한 번 더 강조하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가 성립하는 행위인 ‘제공’의 의미와 범위를 분명히 해주었다는 점에서 판결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첫째, 제공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반포 의사가 없어야 하며, 무상으로 교부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촬영물 ‘제공’의 상대방은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들’이어야 하고, 촬영대상이 되었던 피해자는 상대방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특정한 1인’에 촬영대상자가 포함되지 않음을 명백히 하였다.

##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사례분석

### 1)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여성혐오표현 심의동향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이하 방통심의위)는 통신심의 중 개인 성행위 영상과 관련한 중점심의를 집행하고 있다. 특히 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관련자의 얼굴이 노출된 성행위 동영상이나 다운로드 링크 등을 통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정보에 대하여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김현아 외, 2018).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방통심의위가 삭제, 이용해지, 접속차단의 방식으로 시정요구한 불법 및 유해정보 중에서 성매매·음란정보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4년의 경우 49,737건, 2015년에는 50,695건, 2016년에는 81,898건이었다.<sup>91)</sup> 그리고 2018년 1월부터 6개월 동안 성매매·음란정보에 대한 시정요구 건수가 44,408건으로 나타나서,<sup>92)</sup>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특히 남녀의 성기 또는 성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의 음란정보에 대

91) 방송통신심의위원회(2017). 『제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백서』, 295쪽.

9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8 상반기 통신심의·의결 결과발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보도자료. 2018.7.30.

한 시정요구는 2016년 21,624건, 2017년 28,623건으로, 32.4%의 증감률을 보였다.<sup>93)</sup>

방통심의위는 음란정보 외에도 당사자 또는 관련자의 얼굴이 노출된 성행위 동영상이나 다운로드 링크 등을 통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정보에 대하여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 2015년 12월 심의 규정 개정에 따라 심의 신청자격이 제3자에게까지 확대되었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사이트 관리자에게 자율규제 요청을 통해 게시물 삭제 등 피해를 줄이려고 하고 있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7). 권리침해 관련 주요 위반 유형 중 초상권 침해정보의 경우, 개인 성행위영상 건에 대해 꾸준히 신고가 늘고 있으며, 2016년부터 실시한 개인 성행위정보 중점 모니터링에 따라 2016년에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많은 7,556건을 시정요구 조치했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7). 개인 성행위정보 심의·시정요구 건수는 2012년 1,130건에서 2016년 7,356건으로 7배 가까이 증가했다. 방통심의위는 신고 된 개인성행위정보 영상물을 삭제하거나 게시된 해외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을 시행하고 있다. 영상물 삭제는 2012년 330건에서 2016년 10건으로 줄어든 반면, 해외 사이트 접속차단은 2012년 714건에서 2016년 7,315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는 ‘비동의유포 성적촬영물’가 주로 해외 사이트에서 유통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sup>94)</sup>

〈표 VI-2〉 개인 성행위 관련 시정요구 및 중점 모니터링 현황

연도	개인 성행위	개인 성행위 중점모니터링(시정요구)
2016년	7,325 건	4,389 건

이와 별도로 방통심의위는 여러 유해정보 유형 중 과도한 욕설 등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여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내용이나 사회적 약자 또는 부모, 스승 등에 대한 패륜적 욕설 등에 대해 심의를 통해 시정요구하고 있다. 특히 개인 인터넷방송 플랫폼에서 초등학교 BJ가 과도한 욕설을 콘셉트로 방송을 하는 등

93) 방통심의위, 2017년 불법·유해정보 84,872건 삭제·차단조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보도 자료. 2018.2.17.

94)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324>.

인터넷방송 BJ 진입에 특별한 연령 제한이나 요건이 없어 문제가 되었다. 2015년도에 유해정보팀이 신설되면서 심의 내부역량 강화와 함께 욕설 등 폭력·잔혹·혐오성 유해 게시물에 대해 1,091건의 시정요구를 하였으며, 특히 3월에는 개인 인터넷방송을 중점 모니터링 하여 17건의 시정요구를 하였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7).

온라인 모욕 관련 심의사례를 보면, 온라인 공간 내 익명성을 근거로 하는 무차별적인 욕설의 현황이 심각하다. 인터넷상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인종, 지역, 직업 등에 대한 인신공격성 욕설, 차별, 비하적인 내용을 넘어서 혐오 및 증오의 감정을 드러내는 내용들을 집중 심의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규제된 모욕 표현들은 블로그에 등록된 “씹장할 망할 후레 무뇌 씨발놈에 창놈새끼가”, “뒤에 있는 개년새끼 말좀 걸지마” 그리고 디씨엔사이드 사이트에서 “베트남 중국 조선족 필리핀 동남아 모든 국가 씨발”, “체류자 개좆같은 새끼들 다 말려 죽일 수만 있다면”, “애미갈보 인권 단체년들도 다 처죽이고 싶다”등 단순한 모욕으로 간주하기 어려운 심각한 표현들이 넘쳐나고 있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1).

## 2) 심의사례 분석

방통심의위의 통신심의 중에서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여성혐오표현은 유해정보심의와 권리침해심의로 나누어 심의되고 있다. 유해정보심의를 불법정보에 해당되지 않지만 청소년을 비롯하여 사회적으로도 유해성이 과도한 정보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다. 여성에 대한 차별이나 비하 등의 혐오표현, 과도한 욕설이나 저속한 언어 사용 등으로 혐오감을 주는 게시물 등도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 이외에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기노출·성적 행위를 노골적으로 표현하거나 성매매를 유인하는 정보 등에 대해서도 시정요구를 한다. 2015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차별 비하 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을 보면 심의와 시정요구가 증가 추세에 있음을 엿볼 수 있다.<sup>95)</sup> 이와 별도로 권리침해와 관련한 시정요구는 모욕 등 명예훼손 정보,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사진, 영상 등을 게재하여 초상권을 침해하는 정보로 이 중 초상권을 침해하는 정보의 대부분은 온라인 성폭력에

---

95)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국 정보문화보호팀이 제공한 자료(2018. 8. 23)를 토대로 함

해당하는 지극히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으로, 인터넷의 특성상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로 인한 피해가 회복 불가능하다.

〈표 VI-3〉 방통심의위의 통신심의 중 차별 비하 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6.12.)	2018년7월
심의	1,184건	3,022건	1,356건	1,041건
시정요구	891건	2,455건	1,166건	913건

주) \* 성별, 장애, 인종, 특정 지역 등 차별·비하 정보는 심의시스템 분류 체계상 구분되지 않음  
 \*\* 2017년 6월 12일 이후 2018년 1월까지 위원 선임이 지연되어 약 7개월간의 업무 공백기간이 있었음

본 연구를 위한 구체적인 통신심의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방통심의위에서 매년 발간하고 있는 통신심의사례집의 최근 5년(2013~2017년) 동안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하지만 사례집 특성상 실제 통신심의 전수를 정리한 것이 아니고, 위반유형별 대표 사례를 소개하여 이해를 돕는 데에 그치기 때문에 분석대상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또 불법·유해정보라는 심의대상 정보의 속성상, 사회적 피해 및 개인 신상 정보 보호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례집에서는 심의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사례수집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방통심의위 통신심의국 정보문화보호팀에 공식적으로 자료 요청을 했으며, 이를 통해 2018년도 상반기의 온라인 여성혐오표현에 해당하는 심의사례를 수집하였다.

분석대상 심의사례에 대해서는 문제내용, 심의근거, 세부조항, 심의결과의 분석유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심의사례 분석결과는 2013~2017년 통신심의사례집의 온라인 성폭력 관련 심의사례와 온라인 여성혐오표현 관련 심의사례, 그리고 2018년 온라인 여성혐오표현 관련 심의사례 순으로 구성된다.

### (1) 2013~2017년 통신심의사례집 분석

2013~2017년 통신심의사례집에서 온라인 성폭력 관련 심의사례는 다음의 <표 VI-4>와 같다.<sup>96)</sup>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온라인 성폭력은 온라인에서 특정된 피해자가 등장한 성관계 동영상이 타인에 의해 유포된 경우가 해당한다.

이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한 것으로 통신심의위의 적극적인 시정요구가 진행된다. 해당 사례의 심의에서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심의규정」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가 심의근거로 적용되고 있으며, 심의결과는 ‘접속차단’으로 결정된 것을 볼 수 있다.

<표 VI-4> 2013~2017 통신심의사례집 온라인 성폭력 관련 심의사례

문제 내용	심의근거	세부조항	심의결과
국내 사이트의 게시판에 신고인의 실명 등이 포함된 제목으로 신고인이 등장하는 성행위 동영상을 게시함.	성폭력 처벌법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촬영)	접속차단
	심의규정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국내 사이트에 신고인의 얼굴이 노출된 동영상 제공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게 됨.	성폭력 처벌법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접속차단
	정보통신 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등)	
	심의규정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한편 해당 통신심의사례집에서 추출한 온라인 여성혐오표현 관련 심의사례는 <표 VI-5> 와 같다. 분석 사례에서 지적된 문제 내용은 일반 사이트에 특정인이 아닌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저속한 욕설 등의 표현으로 차별과 비하의 표현을 게시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신고인의 얼굴이 노출된 사진과 함께 ‘XX년’, ‘○○년’, ‘떡에 환장한 사람같이’ 등의 욕설, 모욕적 표현이 포함된 악성 댓글을 게시한 것과 같이 신고인이 특정된 경우가 있으며, 그 외에는 ‘난 스트레스 해소할 때 개쌍디언 찢저죽이는 상상하면서 푼다’, ‘교양 없고 미개한 개쌍디언’, ‘위안부는 매춘부다, 즉 창녀다’, ‘몸을 팔아 돈을 벌었다’, ‘무능한 무직자+못생긴 조선인들’,

96)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매년 발간하고 있는 <통신심의사례집>에는 통신심의 대상이 되는 표현물의 특성 상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공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전수 제공되지 않으며, 표현물 및 피해의 유형을 파악할 수 있는 정도의 사례만이 제공되고 있다.

‘여자를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설명이 됨’, ‘여자라는 상품을 구입하는 것임’, ‘애를 낳아준다는 김치녀라는 상품을 구입하는 것임’, ‘때론 불량 상품 구매로 환불도 못하고’ 등의 표현과 같이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표현은 ‘김치녀’나 ‘김여사’와 같이 성차별적 표현으로, 여성을 폄하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 성차별적 혐오이거나 더 나아가 여성을 폭력 및 성적 대상화 또는 성상품화하는 것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을 폭력 및 성적대상화 하는 표현은 여성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력성을 드러내는 표현과 그릇된 성관념을 조장하는 내용이 많았다. 또한 익명의 온라인 커뮤니티의 특성으로 인하여 이러한 표현물 게시글의 댓글을 통해서 사회의 상식과 개념에 어긋나는 여성에 대한 성적 표현에 동조하고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관찰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해서는 「심의규정」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를 적용되었고, 심의결과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표 VI-5〉 2013~2017 통신심의사례집 온라인 여성혐오표현 관련 심의사례

문제 내용	심의근거	세부조항	심의결과
국내 사이트의 게시판에 ‘○○○친구 포스 좀 보소, ㄷㄷㄷ’라는 제목의 게시물로, 신고인의 얼굴이 노출된 사진과 함께 ‘XX년’, ‘○○sus’, ‘떡에 환장한 사람같이’ 등의 욕설, 모욕적 표현이 포함된 악성 댓글을 게재함.	심의규정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삭제
국내 사이트의 게시판에 ‘난 스트레스 해소할 때 개쌍디언 찢저죽이는 상상하면서 푼다’의 제목으로 ‘교양 없고 미개한 개쌍디언’ 등의 표현의 내용이 게시됨.	심의규정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삭제
국내 사이트의 게시판에 ‘위안부는 창녀다’의 제목으로 ‘위안부는 매춘부다, 즉 창녀다’, ‘몸을 팔아 돈을 벌었다’, ‘무능한 무직자+못생긴 조선인들’ 등의 표현의 내용이 게시됨.	심의규정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삭제
일반사이트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여자를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설명이 됨’의 제목으로 ‘여자라는 상품을 구입하는 것임’, ‘애를 낳아준다는 김치녀라는 상품을 구입하는 것임’, ‘때론 불량 상품 구매로 환불도 못하고’ 등의 표현으로 성별, 지역, 장애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을 제공함.	심의규정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삭제

## (2) 2018년 통신심의사례분석

통신심의사례집의 사례 보안을 위하여 방통심의위 정보문화보호팀에서 제공한 온라인 여성혐오표현의 심의사례는 <표 VI-6> 과 같다. 앞선 통신심의사례집의 온라인 여성혐오표현과 같이,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여성에 대해 저속하고 음란한 욕설로 차별 및 비하하는 표현의 게시물이 주류를 이룬다.

분석 사례에서 문제되었던 내용은 “이 지랄한다 하..사비김치년은 삼일한이 답이다”, “해운대가서 여친이랑 밥먹는데 씨발 정액반이 껌젓 씹치년들이 골목에서 담배피고지랄이내 열굴도 존나 정액냄새나는 창녀새끼들이 제발 레미콘에 깔려 뒤지세요 정액반이 김치년들아 ㅋㅋ”, “다른나라 같았으면 지금 한국년들은 전부 맞아뒤졌다 개걸레갈보창녀들 전세계가 너희를 증오한다 씨발것들아”, “존나 삼일한쳐서 무릎꿇히고 개 강간치고싶다”, “삼일한 시전 합법인정! 꼴리는 년 불시 강간인정!”, “이국주 또 방송에서 성희롱한거보니 진짜 여자는 지속적으로 패고 강간해서 위협을 가해줘야 정신차리는 듯”, “무능한 한국년은 남자 성욕반이를 위해 태어났기 때문 전 세계에서 한국산 창녀가 제일 많은 이유도 이것 이런 씨발년들이 무슨 여성인권이고 페미니즘이나 여성부 폐지시키자”, “김치년 삼일한 실천해야 함 동물은 적당히 매를 대야 알아 듣는다”, “삼일한으로 예초를 해주어야 고분고분해진다”, “돈받고 보지팔다 유명한 걸리면 ‘내 기분 나뻐서 강간이야 너고소’하고”, “씨발 개갈보 같은 년이 이래서 대한민국보지들은 삼일한 시켜야 되 애미뒤진년들”, “80년대만 해도 삼일한 당하고 쫓겨날까봐 전전궁궁하던 게 김치녀들이었는데 세상 많이 좆같아졌다”, “맘충 이유: 개씨발 좆같은 병신 호로잡년이 남편믿고 존나깁치는데 남편없으면 개털만도 못한 년이 지랄발광하는 꼬라지 좆극혐. 배때지 칼빵이 약이다”, “쳐녀막이 없는 쌍년들은 분수에 맞게 확실하게 죽여 버려야 된다 쳐녀막이 없다는 것은 더러운 년이라는 뜻이다” 등과 같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음란하고 저속한 욕설 표현이 대부분이었다.

2018년 통신심의사례를 통해 살펴본 온라인상의 여성혐오표현은 이전 2013~2017년의 사례에서 살펴본 사례와 마찬가지로 여성의 능력을 폄하하고 특정 신체부위를 희화화하는 표현이 나타났으며,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력 및 성적 대상화하여 폄하 및 혐오하는 표현의 강도는 이전보다 더욱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여성을 폭력 및 성적대상화하고 더 나아가 성상품화하는 표현은 대부분 음란하고 저속한 욕설로 이루어져 있어 혐오의 정도가 더

강했다. 또한 해당 표현들이 특정 사건이나 이슈에 대한 의견 표현이 아닌 단지 혐오를 위한 혐오표현이어서, 사회적으로 여성에 대한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온라인 공간의 여성 이용자가 특성상 불가항력적으로 이런 여성혐오표현에 노출되는 경우 성적 모멸감 내지 굴욕감을 들게 할 것이다. 온라인 공간이 가지고 있는 개인 표현의 자유를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풍속에 지나치게 어긋나고 이에 대한 피해가 명백하고 분명하다면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데에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여성혐오표현에 해당하는 게시물은 「심의규정」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를 적용하였으며, 심의결과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표 VI-6〉 2018년 온라인 여성혐오표현 관련 심의사례

문제 내용	심의근거	세부조항	심의결과
<김치년들의개좨같은말.real> 제목의 게시글로, “평소에는 남녀평등, 겉만 페미니즘 원더우먼처럼 치장하고 다니다가 지가불리하거나 거절당하면 개씩은 표정으로 ‘남자가 되가지고’ 이 지랄한다 하..ㅂㅂ김치년은 삼일한 이 답이다” 등의 내용이 게시되어 있음.	심의규정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 등)	삭제
<한국년 씹치년들은 다 죽어야함 정액받이 개보지들아> 제목의 게시글로, “해운대가서 여친이랑 밥먹는데 씨발 정액받이 껌찢 씹치년들이 골목에서 담배피고지랄이내 열골도 존나 정액냄새나는 창녀새끼들이 제발 레미콘에 깔려 뒤지세요 정액받이 김치년들아 ㅋㅋ” 등의 내용이 게시되어 있음.	심의규정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 등)	삭제
<한국놈들 개병신새끼들 아니었으면 한국년들은 이미 전부 학살당했을텐데> 제목의 게시글로, “한국놈들 같은 노예유전자 100%물빵 호구쓰레기들 덕분에 그 유전자 물려받은 개쓰레기 한국년 한국놈들이 살아있는거겠지 다른나라 같았으면 지금 한국년들은 전부 맞아뒤졌다 개걸레갈보창년들 전세계가 너희를 증오한다 씨발것들아” 등의 내용이 게시되어 있음.	심의규정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 등)	삭제
<진짜 김치년들> 제목의 게시글로, “존나 삼일한쳐서 무릎꿇히고 개 강간치고싶다” 등의 내용이 게시되어 있음.	심의규정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 등)	삭제
<남자들이 행복해지는 세상을 만들자~!> 제목의 게시글로, “삼일한 시전 합법인정! 꼴리는 년 볼시 강간인정!” 등의 내용이 게시되어 있음.	심의규정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 등)	삭제

문제 내용	심의근거	세부조항	심의결과
<이국주 또 방송에서 성희롱한거보니 진짜 여자는 지속적으로 패고 강간해서 위협을 가해줘야 정신차리는듯> 제목의 게시글로, “안그럼 정신을 못차려 남자들이 일귀 놓은 이나라 아니 이 세상 보지년을 미쳐날뛰게 냅두면 하루아침에 망하는거 순식간” 등의 내용이 게시되어 있음.	심의규정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 등)	삭제
<한국년 보지구년이 세계에서 제일 작은 이유> 제목의 게시글로, “무능한 한국년은 남자 성욕반이를 위해 태어났기 때문 전 세계에서 한국산 창녀가 제일 많은 이유도 이것 이런 씨발년들이 무슨 여성인권이고 페미니즘이나 여성부 폐지시키자” 등의 내용이 게시되어 있음.	심의규정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 등)	삭제
<김치년 삼일한 실천해야 함 동물은 적당히 매를 대야 알아듣는다> 제목의 게시글로, “정의로운자” 등의 내용이 게시되어 있음.	심의규정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 등)	삭제
<여자들의 허영심은 마치 잡초와 같아서> 제목의 게시글로, “삼일한으로 예초를 해주어야 고분고분해진다” 등의 내용이 게시되어 있음.	심의규정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 등)	삭제
<창녀 시발새끼들이 아주 지랄을 하는구만> 제목의 게시글로, “돈받고 보지팔다 유명한 걸리면 ‘내 기분 나빴어 강간이야 너고소’ 하고 돈똥고 돈안주면 언론에 제보 ㅇㅇ 유명한 운지 ㅋㅋ 창녀는 신원보호 철통 개골 ㅇㅇ 어떤 방법이든 개이득 ㅋㅋ 김치년은 3일한이 아니라 3광속의 속도로 패아됨 ㄹㅇ” 등의 내용이 게시되어 있음.	심의규정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 등)	삭제
<개미친메갈년이 쳐다본다고 크하네ㅋㅋㅋ> 제목의 게시글로, “요즘하도 매장 물건 훔쳐가는 도둑새끼들 많아서 주의 깊게 조심한다고 본거고 눈깔 몇번 굴리지도 않고 잠깐 쳐다봤는데 이 미친년이 지가 눈깔 오지게 쳐 굴리길래 수상해서 쳐다 봤더니 외쳐다보냐고 육갑만갑 엠병지릴이네 씨발 개갈보 같은 년이 이래서 개한민국 보지들은 삼일한 시켜야 되 애미뒤진년들” 등의 내용을 게시하고 있음.	심의규정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 등)	삭제
<원래 김치녀도 삼일한이 당연했었는데> 제목의 게시글로, “80년대만 해도 삼일한 당하고 쫓겨날까봐 전전긍궁 하던 게 김치녀들이었는데 세상 많이 좇갈아졌다” 등의 내용이 게시되어 있음.	심의규정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 등)	삭제
<잡아 죽여야 될 사회의 암적인 존재> 제목의 게시글로, “맘충 이유: 개새발 좇같은 병신 호로잡년이 남편믿고 존나깎치는데 남편없으면 개털만도 못한 년이 지랄발광하는 꼬라지 좇극혐. 배때지 칼빵이 약이다” 등의 내용이 게시되어 있음.	심의규정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 등)	삭제

문제 내용	심의근거	세부조항	심의결과
<처녀와 처녀막 없는 년들을 동급으로 대하니까 세상이 망하는거다> 제목의 게시글로, “처녀막이 없는 쌍년들은 분수에 맞게 확실하게 죽여 버려야 된다 처녀막이 없다는 것은 더러운 년이라는 뜻이다 이슬람이었으면 돌 맞아 뒤졌다 살려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는데 존나 나댄다 걸레년들이 더 나댄다 처녀막 없는 걸레 창년들아 조만간 니들이 돌 맞아 뒤질 날이 온다 세상에 정의가 사라졌지만 조만간 정화작업이 시작되고 처녀막 없는 년들은 전부 뒤질 것이다 요새 자궁경부암이 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줄 아냐 처녀막 없는 걸레년들 때문이다” 등의 내용이 게시되어 있음.	심의규정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삭제

### 3. 국가인권위원회 시정권고 사례분석

#### 1)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시정권고 조치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해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는 동법 제1조에서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 관련 정책 개선 업무 및 조사·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권 관련 법령·정책 관행의 조사·연구 및 개선의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하며, 국제인권조약 가입과 조약의 이행에 관한 권고와 의견을 표명한다. 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급·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이를 조사하고 구제하는데 특히, 공공기관 종사자, 사용자 등이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희롱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조사와 구제를 담당한다.

앞선 논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법 제2조 제3호는 차별행위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동 호의 라목은 성희롱을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 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

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동 법에서 규정하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건은 인권위원회에 진정건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인권위원회의 홈페이지,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모바일 웹이나 직접 방문으로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접수된 진정 건은 조사국으로 전달되며, 이때 관계자가 사인이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에 정한 긴급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진정으로 접수된 성희롱 사건은 조사본부에 이송된 이후 담당 조사관이 조사를 진행한다. 먼저 진정인·피해자·피진정인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진술서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이 있는 장소·시설·자료 등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한다. 행위당사자의 진술서만으로는 사안을 판단하기 어렵거나 인권침해·차별행위가 있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피진정인에 대하여 직접 출석조사를 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 해당 조사 이후에는 인권위원회의 본격적인 심의·의결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와 별도로, 인권위원회는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차별행위라고 볼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면 상임위원회 등 소관 소위원회의 의결로 직권조사를 할 수도 있다.

인권위원회는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전원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 내용을 심의하여 권고, 기각, 각하, 합의권고, 이송 등의 결정을 내린다. 소위원회에서는 조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심의·의결을 한다. 먼저 소위원회는 심의·의결과정에서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고, 성희롱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경우 피진정인 등에게 필요한 구제조치 및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를 권고할 수 있고,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또한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진정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진정사건을 기각하고, 법제3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할 경우는 각하한다. 소위원회에서 전원위원회 회부를 결정한 사건은 인권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위원회에 회부하여 결정한다. 전

원위원회는 진정사건 이외에도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에 관한 기본 정책,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규칙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등 주요안건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심의·의결 후, 진정인에게 사건처리결과통지서를 송부하도록 되어있다.

〈표 VII-7〉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 피해 조치

구분	국가인권위원회법
소관기관	국가인권위원회
행위자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
상대방	불특정
행위 요건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
방법	성적 언어 등
피해	<input type="checkbox"/>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input type="checkbox"/>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이익을 주는 행위
조치수단	<input type="checkbox"/> 행위자에게 특별인권교육, 손해배상 등 시정 권고 <input type="checkbox"/> 소속기관의 장에게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인사 조치, 재발방지 대책 마련, 손해배상 등 권고 <input type="checkbox"/> 당사자 간 조정 또는 합의

## 2) 온라인 성희롱 시정권고 결정례분석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 성립요건은 성희롱 행위자의 범위, 성희롱 피해자의 범위, 업무 등 관련성이다. 먼저 성희롱 행위자는 동법에서 성희롱의 주체를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근로자’로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다. 한편 성희롱 피해자는 특별히 적시하고 있는 바가 없는 관계로 행위자의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 있는 사람 등 누구나 해당된다. 성희롱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모두 성적 언동이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이루어질 것, 즉 지위 또는 업무 관련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성희롱 행위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거나 업무와 관련된 일련의 만남과 이어지는 술자리도 업무 관련성을 갖는다고 본다.

성희롱은 행위자의 성적 의도 또는 고의, 성적 언동 등의 사실인정, 합리적인 여성의 일반적인 관점에 의해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는 행위인지 여부로 판단할 수 있다. 성희롱 유형은 육체적 행위, 언어적 행위, 시각적

행위로 분류되며,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일체가 해당된다. 다음의 성희롱 사례는 2015년 인권위원회가 발간한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시정권고 사례집 제7집」에 있는 성희롱 결정례 중에서 본 연구목적에 해당하는 온라인 성범죄 사례를 추출하여 유형별로 분석한 것이다.

### (1) 내부 전산망을 통한 직원 성희롱 표현

#### □ 사건요지

진정인, 피해자, 피진정인은 모두 법원 공무원으로 피진정인은 법원 내부전산망에 올린 댓글에 댓글을 달면서, 진정인의 처인 피해자가 “못 생겼다, 시궁창 냄새가 난다, 억울하면 감정을 해보자” 등 외모를 비하하거나 굴욕감을 주는 글을 게시하였다.

#### □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주는 성적언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피진정인은 진정인과 댓글을 통해 논쟁을 벌이다 논쟁의 직접 당사자도 아닌 피해자를 거론하며 여성인 피해자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몸에서 시궁창 냄새가 난다”고 하고 이에 대해 공개검증을 하자고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대해 악의적인 표현을 하였으며, 이러한 댓글 내용이 법원 공무원 전체가 접근 가능한 내부 전산망을 통해 공개되었다. 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성적언동이라 할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이 정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2)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한 성희롱 표현

#### □ 사건요지

음악학원의 원장인 피진정인은 진정인(뮤지컬 배우 지망생)을 직접 가르치겠다고 하고 수업을 하면서 진정인에게 사적인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하였고 마치 진정인의 남자친구인 듯한 언동을 하다가, 강제로 키스를 하거나 성기를 만지라고 강요하는 등의 위력을 행사했다. 또, 진정인에게 “이빠 어떻게, 나

반했어, 근데 ○○ 조야. 그래서 앞으로 좋아할 거야. 내맘대루 막, 내꺼, 너 응큼  
 해, 아주 남자들 몇 녹였어 / 그래 넌 예뻐, 너 더 이빠지면 데꾸 도망갈지도 몰  
 라 / <입술모양 키스 이모티콘>, 시럿 둘이 / 니 남친 생기기전까지 남친하기로  
 했잖아 / 조심히 다녀와. ♥뽀뽀, <뽀뽀 이모티콘> / 고마왕♥뒤풀이는 둘이서!  
 ㅋㅋ”와 같이 진정인을 성적인 교제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듯한 메시지를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으로 송부하였다.

□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피진정인이 카카오톡 메시지로 진정인을 성적인 교제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듯  
 한 메시지를 남긴 부분은, 피진정인이 평소 제자들과 허물없이 지내는 관계로서  
 제자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한 언동이라는 피진정인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그  
 내용상 사제관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수준의 성적 함의를 담고 있다  
 고 보이고, 비록 진정인이 이러한 피진정인의 언동에 대하여 명백한 거부의를 사를  
 표시하지는 않았으나, 늦은 나이에 뮤지컬 배우를 지망하는 진정인에 대하여 피  
 진정인이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하면 진정인이 이에 대항하여 거부의를 사를 표  
 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할 것이다. 또한,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위 인정 사실  
 과 같은 추행을 한 부분(피진정인은 이러한 추행이 있었음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후 진정인과의 통화에서 이와 같은 추행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발언을 한  
 녹취록 등을 볼 때 이는 사실로 인정된다)은, 진정인에게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  
 을 불러일으키는 성적 언동임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3)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한 성희롱 표현

□ 사건요지

피진정인은 해외 출장 중, 출장업무가 끝난 후 팀원인 진정인에게 카카오톡 메  
 시지를 보내, 진정인에게 “안아서 업고 다니겠다”, “여(자)친(구)하라”고 집요하  
 게 요구하는가 하면, “(와이프는) 가족일뿐이야, 근친상간”, “정신적이든 육체적  
 이든 함께 즐기자”고 하는 등 성희롱을 하였다.

□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주는 성적언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진정인이 보낸 문자 메시지는 진정인으로 하여금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야기할 만한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보았다. 한편,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생각해볼게요”라는 발언을 하여 이를 피진정인이 속마음을 표현한 것을 어느 정도 받아들인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하나, 당시 대화 내용을 보면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제안에 대해 완곡하고 일관된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을 뿐, “생각해볼게요”라는 발언을 한 것을 발견할 수 없어 이에 대한 피진정인의 변명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4) 원하지 않는 음란 기사 전송을 통한 성희롱

□ 사건요지

피진정인 2는 피해자 1과 함께 근무하던 중 에일리 누드사진 유출 기사를 처음 보고 직원들에게 “에일리 누드사진 유출기사가 떴네.”라는 말을 했고, 이 때 피해자 1이 잠시 피진정인 2의 컴퓨터 모니터를 쳐다보았으며, 이후 같은 날 피해자 1과 단 둘이 있을 때 다시 기사를 검색하다가 혼잣말로 “내가 좋아하는 에일리가 가수생활을 계속 할 수 있을까?”라고 하자, 피해자 1이 옆으로 와서 기사를 함께 보았다. 피해자 1이 텔런트 이진우의 사진을 책상 유리 밑에 넣어두는 등 연예인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여, 피해자 1에게 “에일리 사진 보내줄까?”라고 가볍게 이야기하였고, 피해자 1은 아무 반응 없이 자리로 돌아갔다.

□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피진정인 2가 피해자 1에게 “(에일리 누드) 사진 원본 있는데, 보내줄까?”라는 말을 한 것은, 비록 이에 대해 피진정인 2는 피해자 1이 연예인을 좋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에일리의 사진을 보내주겠다는 의미로 물은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으나, 당시 에일리의 누드 사진이 유출되었다는 기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진정인 2가 “사진을 보내줄까?”라고 물은 것은 누드사진을 보내주겠다는 말로 인식되기 충분하고, 이는 합리적인 여성의 관점에서 볼 때 이성의 직장 동료에게 할 수 있는 대화로 매우 부적절할 뿐 아니라,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야기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이 온라인 성희롱 결정례는 성희롱 표현이 발생된 온라인 공간의 유형에 따라 내부 전산망을 통한 직원 성희롱 표현,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한 성희롱 표현, 원하지 않는 음란 기사 전송을 통한 성희롱 표현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또 성희롱 판단여부 논의에서, 피해자인 여성에게 외모를 평가하거나 “몸에서 시궁창 냄새가 난다”는 식의 비하표현, “이빠 어떻게, 나 반했어, 근데 ○○ 조아. 그래서 앞으로 좋아할 거야. 내맘대루 막, 내꺼, 너 응큼해, 아주 남자들 몇 녹였어”, “안아서 업고 다니겠다, 여(자)친(구)하라” 등의 여성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고 굴욕감을 주는 표현, 원하지 않는 누드사진 전송을 하여 성적 혐오감을 들게 하는 행위는 모두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결정되었다. 분석을 통해 나타난 인권위원회의 성희롱 판단 기준은 합리적인 여성의 일반적인 관점에 의해서 해당 사건의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는 정도이다. 그리고 인권위에서 다루고 있는 성희롱 유형은 육체적 행위, 언어적 행위, 시각적 행위로 분류되며,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이 그 대상이 되고 있다.

#### 4. 소결

지난 10년 동안의 주요 성범죄 실태를 보면, 강간이나 강제추행의 발생비율은 큰 변동이 없지만 단일 사이트는 물론이고 웹하드, SNS, 각종 커뮤니티를 통한 디지털 성폭력범죄가 증가추세를 보였다. 그중 가장 급격한 증가를 보인 범죄유형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이다. 특히 2010년대 초반부터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그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현상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성폭력 관련 판례로 범위를 국한하고 2010년 4월 15일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정 이후 동 법에서 적시하고 있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를 적용한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성폭력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상의 ‘그 촬영물’에 타인의 승낙을 받아 촬영한 영상물도 포함되는지와 ‘그 의사에 반하여’의 구성요건을 다룬 사건에서, 대법원(2010)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피해자 의사에 반한 촬영인지’의 구성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촬영 당시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분관계, 피해자의 고소 경위, 피해자의 진술 반복 내용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성폭력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제14조의2 제1항 규정의 문언과 그 입법 취지 및 연혁, 보호법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촬영물’이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영상물을 의미하고, 타인의 승낙을 받아 촬영한 영상물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또 피해자 의사에 반한 촬영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촬영물의 반포가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것은 몰래카메라일 경우에만 반포죄가 성립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 판결의 함의는 피해자 의사에 반한 촬영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해주었고,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서의 ‘촬영물’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영상물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촬영한 영상물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범죄에 해당하는 촬영행위의 판단요소로 피해자의 동의 여부가 중요한 판단요소임을 알 수 있게 해주었다 점에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동 판결에서는 피해자 동의를 받고 촬영한 영상물의 반포행위는 반포 자체에 대한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렇게 피해자 의사에 반한 촬영이 입증되어야만 촬영물의 반포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해석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반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의 정도나 확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의 보호법익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인터넷 화상채팅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전송받은 피해자의 신체 부위 영상을 휴대전화의 카메라로 촬영한 행위가 문제가 되었던 사건에서, 대법원(2013)은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의 촬영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즉 구 성폭력처벌법의 처벌대상은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직접 촬영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의 촬영은 처벌대상이 아니므로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촬영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로 한정하고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은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으로써, 촬영대상의 범위를 분명히 해주었다는 점에서 판결의 함의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이에 기초하면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영상물의 재촬영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 판결

의 한계로 지적된다.

카메라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다른 사건에서, 대법원(2014)은 구 성폭력처벌특별법 제 13조 제1항의 보호법익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아니할 자유라고 해석하였다. 그리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인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며,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 여부와 피해자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자 의도와 촬영 경위, 촬영장소와 각도, 촬영거리 등의 판단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 상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동 판결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일반인 관점을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며, 사진의 수위뿐 아니라 촬영자 의도와 촬영 경위 등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구체적, 개별적, 상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상세한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함의를 찾을 수 있다.

자신이 촬영하지 않은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 상영한 사안에서, 대법원(2016)은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행위 뿐 아니라 촬영물의 반포, 제 공행위까지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입법 취지에 대해서 ‘죄책이나 비난 가능성이 촬영행위 못지않게 크다고 할 수 있는 촬영물의 시중 유포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도 촬영자와 동일하게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즉 유포행위를 촬영행위와 동일하게 처벌을 하기 위한 것이 입법 취지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취지를 고려할 때, 촬영물을 유포한 자가 비록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 해도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가 성립하여 성폭력처벌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해석하였다. 즉 유포자가 촬영행위자와 동일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며, 다운로드 받은 피해 촬영물을 다시 유포하는 재유포 행위도 동 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판결의 함의는 입법에서 촬영자와 유포자를 병렬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촬영행위와 유포행위가 각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가 성립된다는 점과 성폭력처벌법으로 재유포자를 처벌할 근거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주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성폭력처벌법 처벌 대상이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촬영하는 경우에 한정되는지,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이 ‘다른 사람의 신체’에 포함되는지,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촬영

물에 포함되는지를 다른 사건에서, 대법원(2018)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처벌대상은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직접 촬영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은 ‘다른 사람의 신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또 동 법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촬영물은 다른 사람을 촬영대상자로 하여 그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므로, 자의에 의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동 판결의 함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가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신체를 스스로 촬영한 촬영물은 동 법 처벌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성립범위를 정해주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또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이를 피해자 본인에게 전송하는 행위가 성폭력처벌법상의 ‘제공’에 해당하는지를 다른 사건에서 대법원(2018)은 촬영대상이 된 피해자 본인은 ‘제공’의 상대방인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였다. 촬영의 대상이 된 피해자 본인에게 해당 촬영물을 교부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공’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제공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반포 의사가 없고 무상으로 교부해야 하며, 촬영물 ‘제공’의 상대방은 촬영대상자를 제외한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들’이어야 한다. 판결의 함의는 무엇보다도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인 ‘제공’의 의미와 범위를 분명히 해주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중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여성혐오표현에 관한 심의는 유해정보심의와 모욕 등 명예훼손, 초상권 등의 권리침해심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여성에 대한 차별이나 비하 등의 혐오표현, 과도한 욕설이나 저속한 언어 사용 등으로 혐오감을 주는 게시물 등에 대해서는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 또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기노출·성적 행위를 노골적으로 표현하거나 성매매를 유인하는 정보 등에 대해서도 심의를 통해 시정요구를 한다. 이와 별도로 권리침해와 관련한 시정요구 대상에는 모욕 등 명예훼손 정보,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사진, 영상 등을 게재하여 초상권을 침해하는 정보가 있는데, 대부분 온라인 성폭력에 해당하는 지극히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으로 인

터넷의 특성상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로 인한 피해가 회복 불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2013~2017년 통신심의사례집에서 일부 온라인 성폭력 관련 심의사례를 분석한 결과, 제재조치를 받은 온라인 성폭력은 온라인에서 특정된 피해자가 등장한 성관계 동영상이 타인에 의해 유포된 경우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한 것으로 통신심의위의 적극적인 시정요구가 진행된다. 또 혐오표현 심의에서 지적된 사례의 내용은 일반 사이트에 특정인이 아닌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저속한 욕설 등의 표현으로 차별과 비하의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런 표현은 ‘김치녀’나 ‘김여사’와 같이 성차별적 표현의 하나로 여성을 폄하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 성차별적 혐오이거나 더 나아가 여성을 폭력 및 성적 대상화 또는 성상품화하는 것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익명의 온라인 커뮤니티의 특성으로 인하여 이러한 표현물 게시글의 댓글을 통해서 사회의 상식과 개념에 어긋나는 여성에 대한 성적 표현에 동조하고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관찰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해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에 관한 제8조를 적용하였으며, 심의결과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2018년 통신심의사례를 통해 살펴본 온라인상의 여성혐오표현은 여성의 능력을 폄하하고 특정 신체 부위를 희화화하는 표현이었으며,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력 및 성적 대상화하여 폄하 및 혐오하는 표현의 강도는 이전보다 더욱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성을 폭력 및 성적 대상화하고 더 나아가 성상품화하는 표현은 대부분 음란하고 저속한 욕설로 이루어져 있어 혐오의 정도가 더 강했다. 온라인 공간의 특성상 여성 이용자가 불가항력적으로 이런 여성혐오표현에 노출되는 경우 성적 모멸감 내지 굴욕감을 들게 하는 효과를 줄 수 있다.

한편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결정례 사례를 분석한 결과, 온라인 성범죄의 유형은 내부 전산망을 통한 직원 성희롱 표현,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한 성희롱 표현, 원하지 않는 음란 기사 전송을 통한 성희롱 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권위의 성희롱 판단 기준은 합리적인 여성의 일반적인 관점에 의해서 해당 사건의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는 정도이었다.



---

## VII

---

# 결론

1. 온라인 성폭력·성폭력 및 여성혐오표현 관련 실태와 문제점	215
2. 형법학자가 본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표현 규제 개선안	230
3.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표현 개선안	251



## 1. 온라인 성폭력·성폭력 및 여성혐오표현 관련 실태와 문제점

### 1) 관련 입법 및 판례의 실태와 그 한계

#### (1) 현행법의 실태와 문제점

현재 남녀고용평등법, 인권위법, 양성평등기본법 등 입법상의 정의와 대법원의 해석을 종합해 볼 때, 성희롱의 법적 개념은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이거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이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정의된다. 즉 성희롱은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주는 행위와 성적 요구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와 같이 두 가지 행위 유형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성희롱 개념 정의조항을 두고 있는 현행법의 특징을 비교하면, 남녀고용평등법이나 인권위법은 성적 언동이나 요구에 불응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국한하고 있는데 비해, 양성평등기본법은 성적 언동이나 요구에 응하는 것에 대한 혜택을 주겠다는 의사표시 행위도 포함하고 있는 차이를 보인다. 현행법에서 성희롱의 법적 개념은 주로 업무, 고용 등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만을 중심으로 정의되고 있는 것이 그 한계이다. 이와 같은 입법상의 한계는 인권위법과 양성평등기본법의 정의조항에서 업무, 고용 등의 관계 이외의 '그 밖의 관계에서'가 어떤 관계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지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것과 연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온라인 성폭력은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기기를 사용한 젠더 폭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온라인 성폭력의 개념을 넓게 보면, 온라인상에 유포된 불법 도촬물, 비동의유포 성적 촬영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게임 내 성폭력, 사진 성적 합성 외에도 사이버스토킹, 성적 사이버불링, 단톡방 내 성희롱까지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에 관한 현행 법률 체계를 보면, 기본법인 형법에 성폭력에 관한 범죄규정 및 처벌조항에 관한 간략한 규정만 두고, 가중적 구성요건과 기타 사회적으로 중요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은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개인의 성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온라인 성폭력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과 같은 법을 적용하여 규제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성폭력처벌법은 성폭력범죄에 대해 중한 형벌을 예정하고 있는 특별법으로서,

최근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과 관련한 성폭력범죄의 증가추세를 반영하여 성범죄 및 성적 프라이버시,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관한 조항(제14조)을 두고 있다.

온라인 성폭력 관련 주요 입법인 성폭력처벌법의 한계를 보면, 첫째, 카메라 등 이용촬영에 관한 제14조 제1항에서는 불법촬영과 불법유포를 함께 규정하면서 불법유포의 객체를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불법촬영물로 제한하고 있다. 이것은 촬영의 주체가 본인이 되어 자신의 신체를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 신체를 직접 촬영하지 않고 촬영대상이 이미지인 촬영물, 그리고 가공이나 합성에 의한 영상물인 경우, 불법촬영과 불법유포로 포섭할 수 없다는 것이 그 한계이다. 특히 최근 지인의 사진과 음란물을 합성한 사진이나 동영상 제작해서 SNS에 유포하는 행위가 명백한 성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입법의 한계로 지적된다. 심지어 이와 같은 디지털 합성 사진이나 동영상을 통해 지인의 신상정보까지 공개되는 경우가 있어서, 개인의 사생활침해 또는 초상권 침해라는 또 다른 법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둘째,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보호법익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합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하는 강제추행죄와 범죄의 성격과 보호법익의 침해 내용 면에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처벌강도가 더 약하다는 점이다.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각각 3년 이상의 징역형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의 벌금형인데 비해, 성폭력처벌법의 불법촬영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셋째, 성폭력처벌법은 처벌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와 촬영물의 반포, 제공 등의 행위에 대해 동일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어, 법정형에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촬영물의 반포 등의 행위가 주는 피해의 정도가 아주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입법에서 반포행위가 주는 피해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공간에서의 촬영물의 유통은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 뿐 아니라 초상권, 사생활침해라는 새로운 형태의 인격권 침해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피해의 심각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넷째, 동 법 제14조 제3항에서는 동의를 받지 않은 촬영물을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영리 목적 없이 정보통신

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 등 그 파급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여성혐오표현이란 성별에 기하여 역사적으로 차별을 받아온 여성집단에 대한 부정적 편견에 기반한 적대적 표현행위이다. 합리적인 근거 없이 성별에 기인한 차별과 증오를 유발하는 표현이라는 점에서 부당한 표현에 해당하며, 표현의 정도가 심하면 위법한 표현으로 규제할 수 있다. 특히 인터넷환경에서 유통되는 여성혐오표현은 빠르게 널리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혐오표현의 개념에 관한 법적 정의가 불명확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규제수단이 부재하다는 점이 문제점이다. 즉 현행법상 온라인에서의 여성혐오표현을 규제하는 별도의 형법상의 처벌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여성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규제가 가능하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표현으로 접근하면 형사규제가 가능하다. 형사규제로는 형법상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 있다. 즉 여성 개인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을 하거나 여성 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판단되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가능하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여성이란 집단을 대상으로 한 혐오표현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어렵다. 따라서 온라인상의 여성혐오표현 규제는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법적 규제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한편 국내에서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표현에 관한 규제는 크게 두 가지 맥락에서 이루어진다. 첫째, 불법·음란 콘텐츠의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다. 둘째, 온라인 이용에 있어 개인에게 가해진 폭력을 처벌하는 것이다. 이 중 불법·음란 콘텐츠 규제는 공적 차원에서 이를 차단하는 행정적 규제가 가능한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포털사이트 같은 인터넷 서비스 운영자의 자율규제 차원에서도 가능하다. 하지만 불법·음란 콘텐츠 규제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에 불응할 경우 직접 적용 가능한 관련 법률상의 처벌규정이 없다는 점과 시정요구를 받고도 불응하는 기간, 그 후 다시 삭제 등의 명령을 하는 기간 등 불필요하게 시간이 낭비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피해자 보호수단의 한계라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이외에 인권위법에 국가인권위원회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인 성희롱 피해를 진정 받는다.

현재 성폭력처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법사위 심사로 회부되어 특례법 개정이 논의 중이며, 청와대에서는 초소형 카메라 내지 변형 카메라가 공중 화장실 등에 설치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하고, 변형 카메라 제조·수입·판매 등 사전 규제가 전무한 상황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 변형 카메라 수입·판매업 등록제 도입 관련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법무부는 디지털 성범죄를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뒤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하는 경우에도 징역형으로만 처벌할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해킹, 바이러스 유포와 같은 사이버 테러형 범죄, 통신/게임 사기, 불법사이트 운영, 개인정보 침해, 불법복제 등 경제와 관련된 범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표현에 대한 여성가족부 차원의 피해자 지원은 기존 성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 안에서 받을 수 있다.

## (2) 판결의 성향 및 그 한계<sup>97)</sup>

대법원은 성희롱 개념을“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 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판례상의 성희롱 성립요건은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성희롱 성립요건으로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 기준을 적용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

97) 일부 내용은 이건호 교수(한림대)와 이인영 교수(홍익대)의 자문에 기초하였음.

한데, 일정한 행위가 범죄 또는 사회적 일탈행위인가에 대한 판단은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입장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이 많기 때문에 법률적 문제에 대한 판단기준을 평균적인 일반인을 기준으로 하는 대법원의 입장이 불합리하다고는 볼 수 없다. 다만 성희롱과 같은 경우에 그것이 성희롱이라고 느껴질 것인가의 판단기준은 남성 또는 여성피해자와 같은 사회적 지위에 있는 남성들 또는 여성들의 객관적이고 평균적인 판단이나 입장을 그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구체화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을 수 있다.

2010년대 초반부터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의 증가추세를 감안하여, 2010년 4월 15일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정 이후 동 법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를 적용한 대법원 판결성향을 분석하였다. 2010년 대법원 판결에 기초하면,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피해자 의사에 반한 촬영인지’의 구성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은 촬영 당시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분관계, 피해자의 고소 경위, 피해자의 진술번복 내용 등이다. 그리고 성폭력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제14조의2 제1항 규정의 문언과 그 입법 취지 및 연혁, 보호법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촬영물’이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영상물을 의미하고, 타인의 승낙을 받아 촬영한 영상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 피해자 의사에 반한 촬영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그 촬영물의 반포가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해당한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 동의를 받고 촬영한 영상물의 반포행위는 반포행위 그 자체에 대한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입법해석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반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의 정도나 확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피해자 동의를 받고 촬영한 영상물의 반포행위에 대한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성립여부 판단에서, 반포행위 그 자체에 대한 동의 여부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판결의 한계를 엿볼 수 있다.

2013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의 촬영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즉 구 성폭력처벌법의 처벌대상은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직접 촬영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의 촬영은 처벌대상이 아니므로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해석한 것이다. 카

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촬영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로 한정하고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은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으로써, 촬영대상의 범위를 분명히 해주었다는 점에서 함의를 찾을 수 있다. 다만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가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영상물에 한해서만 성립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입법해석은 다른 사람의 신체 이외의 것을 대상으로 한 불법 성폭력 촬영물이 범람하고 있는 사회적 현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2014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구 성폭력처벌특별법 제13조 제1항의 보호법익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아니할 자유라고 해석하였다. 그리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인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며,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 여부와 피해자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자 의도와 촬영 경위, 촬영장소와 각도, 촬영거리 등의 판단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 상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동 판결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인지를 판단하는 상세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과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일반인 관점을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2016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행위 뿐 아니라 촬영물의 반포, 제공행위까지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입법 취지에 대해, 죄책이나 비난 가능성이 촬영행위 못지않게 크다고 할 수 있는 촬영물의 시중 유포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도 촬영자와 동일하게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즉 유포행위에 대해서도 촬영행위와 동일한 처벌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 것이다. 그리고 이런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촬영물을 유포한 자가 비록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 해도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가 성립하여 성폭력처벌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해석하였다. 이것은 유포자가 촬영행위자와 동일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며, 다운로드 받은 피해 촬영물을 다시 유포하는 재유포 행위도 동 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판결의 함의는 우선 입법에서 촬영자와 유통자를 병렬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촬영행위와 유통행위가 각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가 성립된다는 점과 성폭력처벌법으로 재유포자를 처벌할 근거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주었다는 점에서 찾

을 수 있다.

2018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처벌대상은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직접 촬영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은 ‘다른 사람의 신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또 동 법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촬영물도 다른 사람을 촬영대상자로 하여 그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므로, 자의에 의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동 판결의 함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가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신체를 스스로 촬영한 촬영물은 동 법 처벌대상에서 제외 시킴으로써,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성립범위를 정해주었다는 점이다.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행위가 성폭력처벌법상의 ‘제공’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2018년 판결에서 대법원은 촬영대상이 된 피해자 본인은 ‘제공’의 상대방인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였다. 이 판결에 기초하면 촬영대상인 피해자 본인에게 해당 촬영물을 교부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공’행위로 볼 수 없다. 판결의 함의는 무엇보다도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인 ‘제공’의 의미와 범위를 분명히 해주었다는 점이다. 즉 제공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반포 의사가 없고 무상으로 교부해야 하며, 촬영물 ‘제공’의 상대방은 촬영대상자를 제외한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들’이어야 한다.

## 2) 사이트 현황 및 문제점

성차별적 발언과 폭력 및 혐오에 가까운 글(말)이 생산되는 온라인 커뮤니티 4 곳을 선정해 해당 사이트 내 활동이 가장 활발한 대표 게시판의 게시글에서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 실태를 조사했다. 구체적으로 선정된 게시판은 일간베스트저장소의 ‘일간베스트’, ‘개드립넷’의 ‘개드립’, DC인사이드의 ‘주식갤러리’(주식갤러리와 트위터 마이너 갤러리) 그리고 루리웹의 ‘베스트’이며, 분석기간은 첫 번째는 강남역 화장실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을 중심으로, 2016·2017·2018년 5월 18일부터 5월 30일까지(2주) 분석했고, 두 번째는 2018년도의 ‘미투’사건으로 대

표되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무죄를 선고받은 8월 14일과, ‘몰카’ 사건으로 대표되는 홍대 모텔 촬영·유포 사건에 징역 10개월이 선고된 8월 16일이 포함된 8월 13일부터 19일까지(7일) 분석했다.

데이터 수집은 사이트 간 게시판 운영의 차별성을 고려해 우선 분석기간 내, ‘성희롱’, ‘협오’, ‘폭력’, ‘강남역’, ‘미투’, ‘몰카’ 등 관련 키워드로 검색된 게시글을 추출했는데, 키워드 검색이 불가능한 사이트의 경우 해당 기간 내 모든 게시글을 확인 후 관련 내용이 담긴 게시글만 골라 분석했다. 그 결과 두 분석기간 동안 일간베스트의 경우 전체 8,377개의 게시글 중 283건(3.4%), 개드립넷은 5,057중 113건(2.2%), 주식갤러리는 2,424개의 게시글 중 200건(8.3%), 루리웹은 1,677개 중 61건(3.6%)의 게시글이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협오와 관련이 있었다. 이는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협오가 명확히 드러나는 심각한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게시글 수에 비해 드러난 문제적 게시글 수가 낮을 수 있다. 하지만 4개 사이트별로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과 2018년 미투와 몰카 사건 기간 동안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협오표현에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강남역살인사건이 발생한 2016년 일간베스트는 해당 게시물이 가장 많았고, 주식갤러리는 미투와 몰카 기간 동안의 게시글이 전체 게시글 대비 가장 많았다. 사이트별 게시판에 드러난 실태는 다음과 같다.

우선 강남역 살인사건 기간 4개 게시판에 나타난 특징은 첫째 게시글의 피해자 특성은 여성이 절대적으로 많았으며, 일간베스트의 경우 신체적 여성협오(56건, 37.6%)와 언어적 여성협오(68건, 45.6%)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디시인사이드 주식갤러리는 여성협오 키워드가 123건(91.1%)으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성희롱 키워드도 12건(8.9%)으로 다른 사이트보다 높았다. 또한 게시글과는 상관없이 여성 신체의 특정 부위를 강조하는 사진을 첨부하거나 여성협오 살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여성들(일간베스트 회원)의 신체를 부각하는 제목이나 글과 함께 게시하는 등의 모습이었다. 한편 루리웹의 경우 34건 모두 여성을 타깃으로 하고 있었으며, 희롱적 표현이 1건(2.9%), 협오적 표현이 33건(97.1%)으로 나타났다.

게시글에 나타난 여성협오 유형은 주로 글이며, 글과 이미지가 다음으로 많았다. 특히 여성의 신체를 공개적이며 언어적으로 멸시 및 모욕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분석 단계에서 게시글 내 여성 희롱과 협오 표현 언어를 찾아보았다. 이 언어들은 합성어, 중의어, 파괴어, 축약어, 외래어, 기호어와 비속어 그리고 의성·

의태어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는데, 4개 게시판 모두 비속어가 가장 많았다. 예를 들면 메갈리안, 위마드 등과 같은 특정 커뮤니티를 표적화 하고 여기에 ‘~녀’, ‘~년’ 등의 비속어를 결합한 형태가 많았는데, 일간베스트의 경우 메갈년을 뜻하는 유사 비속어를 변형시켜 메갈돼지년, 메갈봇이논, 메갈충, 메라포밍, 메오후, 메갈대장 등으로 표현했다. 특히 여성의 신체를 혐오 표현어로 만드는 경우도 발견되는데, 주식갤러리의 경우는 메돼지(메팔계), 보빨, 시체팔이(메갈시체팔이), 메오후(메오후 척살), 메갈년 (메갈, 메갈버러지년, 메갈여시충), 고인능육, 쿵쾅 쿵쾅, 쿵쾅, 쿵쾅, 쿵쾅), 보지년(보지, 개보지년, 보치년, 헬보지년), 보적보, 보전깨, 보중жат대, 아몰랑, 오나홀 같은 용어들이 자주 등장했다. 일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조치의 결과로, 심의제재를 염두에 둔 신조어, 은어, 축약어, 파괴어 남발하기도 했다.

두 번째 분석기간인 8월 13일부터 19일간 분석된 4개 게시판의 특징을 보면, 일간베스트의 경우에 총 134건에서 미투나 몰카, 강남역 사건과 무관한 성희롱·성폭력 관련 키워드가 110건(82.1%)을 차지하였으며, 몰카 16건(11.9%), 미투 8건(6.0%) 순으로 나타났다. 개드립넷은 총 53건을 분석한 결과, 주요사건(강남역 살인사건·미투·몰카)에 포함되지 않는 성희롱·성폭력 관련 키워드가 47건(88.7%)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몰카 5건(9.4%)와 미투 1건(1.9%) 순으로 집계되었다. 일간베스트와 개드립넷의 경우, 미투나 몰카 관련 키워드보다 ‘기타’로 분류된 키워드가 82.1%(110건/134건), 88.7%(47건/53건)에 달하는 압도적 비율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이 두 사이트는 미투의 정치적 이슈화에 주목하기보다, 여성을 대상으로 성희롱과 폭력적 관점에서 게시글 내용을 담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성폭력으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를 고발한 김지은 씨를 ‘불륜충’, ‘질투’ 등으로 표현하거나, 홍대 몰카범 수사 사건이 편파적이었다고 지지하는 사람들을 페미니즘, 페미니스트라고 공격하며, 여성혐오를 심각하게 드러냈다. 혐오 표현에 있어서도 공개 멸시 모욕이 최다 비중을 차지했는데, 언어적 표현이 98건으로 행위적 43건, 신체적 41건에 관한 것보다 높았다. 강남역 살인사건 기간 분석과 마찬가지로 게시글 내 성희롱과 여성 혐오는 언어를 통해 쉽고 빠르게 재생산되는데, 신체공개멸시모욕에 해당하는 단어들, 예를 들면 일간베스트의 경우 ‘보적보’, ‘보름내’, ‘보징내’ 등 특정부위에 대한 표현과 ‘오크크롤’, ‘강남성괴’ 등 괴물로 표현하는 경우, ‘웁돼지’, ‘메돼지’, ‘보라니’ 등 동물로 표현하

는 경우, ‘툼딱년’, ‘씹빡대가리년’ 등 욕설 표현 등이 쉽게 발견됐다. 이는 분석대상 사이트들이 여성혐오(남초) 사이트라는 성격을 감안하더라도, 온라인 공간 내 여성 혐오가 얼마나 적대적이고 노골적이며 적극적인지 발견할 수 있었다. 나아가 극단적 여성혐오는 온라인 공간에서 그치지 않고, 성폭력, 성범죄로 발전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은 4장의 피해자 심층인터뷰를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었다. 최근 온라인 성폭력 사건 수사를 의식해, ‘처벌을 피하는 법’이란 제목의 글들이 일간베스트 사이트와 소셜미디어에서 확산되자, 2018년 11월 21일 JTBC뉴스룸 <팩트체크>에서는 해당 게시글의 사실여부를 가리기도 했다.

### 3) 여성 인식의 실태와 이를 통해 본 문제점

#### (1)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의 실태

본 설문조사에서는 온라인 성희롱과 성폭력을 직접 경험한 사람과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온라인에서 목격한 사람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는데, 조사대상자 600명 중 37.7%에 해당하는 226명이 온라인에서 성희롱과 성폭력을 직접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를 온라인 성희롱과 성폭력을 직접 또는 간접 경험한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했기 때문에 전체 여성 중에서 온라인 성희롱과 성폭력을 직접 경험한 비율보다는 높게 나타났다는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10명 중 대략 4명 정도가 직접 경험이 있다는 결과는 온라인 성희롱과 성폭력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다. 특히 20대(32.5%), 30대(38.0%), 40대(42.5%)가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을 직접 경험한 것으로 분석됐다.

온라인에서 성희롱·성폭력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 분석해보니, 가장 많이 경험한 것은 온라인에서 원치 않는 음란물(글, 영상, 음향파일 등)을 전송받은 것으로, 직접 경험자 10명 중 9명가량(87.6%)이 원치 않는 음란물을 전송받은 경험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또 직접 경험자 10명 중 6명(61.5%)이 성적인 욕설이 담긴 메시지(메일, 댓글, 카톡 등)를 받은 적이 있었고, 자신의 외모를 대상으로 한 불쾌한 메시지(메일, 댓글, 카톡 등)를 받은 경험과 사적 만남을 강요받은 경험도 직접 경험자 2명 중 1명이 한 것으로 나타나, 성적 욕설과 외모를 대상으로 한 불쾌한 메시지, 사적 만남 강요 역시 온라인에서 매우 자주 일어나는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경험인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특정 신체 부

위 노출 요구’(37.2%), ‘특정 신체 사진 전송 요구’(36.3%), ‘성관계 제안’(33.6%), ‘성매매 제안’(33.6%), ‘자신의 사진이나 영상 무단 유포’(22.6%), ‘본인의 성적 행위가 찍힌 사진이나 영상 무단 유포’(13.3%)의 경험도 10명 중 1-3명 이상이 겪은 것으로 나타나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의 수준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온라인 성폭력을 가장 많이 경험한 것은 연령별로 봤을 때 20대 여성들이었다. 20대의 경우 ‘성관계 제안’받은 경험이 46.2%, ‘성매매(조건만남) 제안’을 받은 경험도 43.1%나 되어,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성희롱과 성폭력의 수준이 매우 심각했다. 30대·40대 여성에서도 20대 여성보다 약간 낮게 수치였지만, 온라인에서의 성희롱과 성폭력 경험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직접 경험자들이 경험한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의 가해자는 ‘온라인에서 처음 만난 사람(전혀 모르는 사람)’이 과반수(53.5%)였다. 그 다음으로 직장상사나 동료(46.5%), 일회성으로 만난 상대(33.2%), 친구(선후배 포함)(26.1%), 오프라인에서 만난 적은 없고 온라인에서 지속적으로 연결된 사람(24.8%), 연인(전 연인 또는 현재 연인)(19.9%), 가족(배우자, 남매 등)(11.1%)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1년 동안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을 목격한 응답자(433명, 이후 간접 경험자로 표현)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간접 경험자 10명 중 9명이 외모를 대상으로 한 불쾌한 메시지(메일, 댓글, 카톡 등)(94.2%), 원치 않는 음란물(글, 영상, 음향파일 등)(93.5%), 성적인 욕설이 담긴 메시지(메일, 댓글, 카톡 등)(90.8%)를 목격한 것으로 나타나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었다.

또 타인의 사진·영상의 무단 유포(73.9%), 성적 대화(채팅)(66.5%), 특정 신체 부위 노출(65.8%), 타인의 성적 행위 사진·영상 무단 유포(62.8%)도 간접 경험자 10명 중 6-7명이나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사적 만남 강요(53.6%), 성매매(조건만남) 제안(43.9%), 특정 신체 사진 전송 요구(41.6%), 성관계 제안(39.3%)도 간접 경험자 10명 중 3-5명이나 목격한 것으로 분석됐다.

온라인 성희롱과 성폭력을 직접 경험했거나 목격했을 때 어떻게 대응했는지 질문한 결과,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가 24%로 10명 중 2-3명은 아무 대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서비스(사이트, 어플)의 아이디를 새로 만들거나 아예 한동안 이용하지 않기”(38.5%), “해당 서비스(사이트, 어플)에서 완전히 탈퇴하기”(38.0%), “해당 서비스(사이트, 어플) 신고센터에 신고하기”(33.5%) 등

이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했거나 목격한 후 가장 많이 취한 대응 방법이었다. 이어 “상대방에게 항의하고 사과를 요구했다”(19.2%), “사설업체에 문의하거나 영상물 등의 삭제를 의뢰했다”(9.2%), “경찰(온라인 사이버 수사대 포함)에 신고했다”(9.0%), “여성가족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상담·접수했다”(5.7%), “시민단체에 도움을 요청했다”(4.3%) 순으로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참여자 10명 중 9명은 온라인에서의 성희롱과 성폭력이 심각하다고 인식했다. 조사 참여자들이 온라인에서의 성희롱·성폭력이 심각하다는 데 동의하는 비율(90.3%)은 오프라인 사회에서의 성희롱·성폭력이 심각하다는 데 동의하는 비율(86.8%) 못지않게 높았다.

또 조사 참여자들은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인식(77.7%)이 높은 반면, ‘피해자의 책임’(16.3%), ‘여성의 잘못’(13.5%), ‘여성의 그럴만한 행동’(5.3%), ‘과민 반응하는 여성이 문제’(4.3%) 등과 같이 여성 피해자 자체를 문제로 보는 인식에는 동의하지 않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런 결과를 볼 때 여성들이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의 문제를 피해자 책임 프레임에서 벗어나 사회적 범죄행위임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가해자보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강하게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성희롱과 성폭력의 피해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여성들은 정서적 두려움을 안고 온라인 세상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조사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경험 후 “내 개인적인 정보가 온라인에 유포될까봐 두렵다”(79.2%),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SNS에 방문해 내 일상을 엿보거나 감시할까 두렵다”(62.2%), “내 신체 일부가 찍힌 사진이나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될까봐 두렵다”(55.7%), “온라인에서 원치 않는 음란물(글, 영상 및 음향파일)을 받을까봐 두렵다”(54.7%), “나에 대한 유언비어나 일방적인 비난이 온라인에 유포될까봐 두렵다”(53.3%), “내 사진에 음란한 이미지가 합성되어 온라인에 유포될까봐 두렵다”(52.2%), “온라인에서 나의 외모나 신체를 대상으로 한 불쾌한 메시지를 받을까봐 두렵다”(50.8%), “나의 성적 행위가 찍힌 사진이나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될까봐 두렵다”(47.8%), “온라인에서 성적인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받을까봐 두렵다”(46.2%) 등 다양한 정서적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 10명 중 8-9명은 온라인에서 누군가 자신을 엿보거나 감시할까봐

자신의 일상에 관한 게시물을 올리지 않았고(87.3%), 여성이라는 이유로 범죄 피해를 당하거나 여성혐오자들의 공격을 받을까봐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글을 쓰기 어려웠으며(61.2%), 여성혐오표현을 보게 될까봐 SNS를 자주 사용하지 않지(56.0%)도 했다. 비난이나 차별을 당할까봐 여성이라는 것을 온라인에서 밝히지 않거나 활동하던 온라인 공간을 떠났다(48.7%)는 여성들도 과반수나 됐으며, 온라인에 유포된 자신의 사진이나 영상을 본 사람이 있을까봐 외출을 자제했다는 응답도 응답자 10명 중 3명(29.3%)이나 됐다. 온라인 세상뿐 아니라 오프라인 세상에서도 위축되고 자유가 억압된 여성들의 모습을 확인시켜준다.

## (2) 온라인 여성혐오표현의 실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거의 대부분(97.0%)이 온라인에서 여성혐오표현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항상 ‘항상 경험했다’는 응답이 12.2%나 됐으며, ‘자주 경험했다’가 26.8%, ‘가끔 경험했다’ 30.5%로 여성혐오표현에 노출된 빈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온라인에서 여성혐오표현에 노출된 응답자(582명) 10명 8-9명은 ‘거북하고 불편’했으며(88.3%), ‘모욕적이었다’(82.8%)고 답했다. 또 “경험한 상황과 비슷한 상황을 피하려고 노력했다”(57.9%), “그곳에 다시 방문하지 않았다”(50.3%),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글을 쓰기 어려워졌다”(42.1%), “일상생활에서 불안을 느끼게 되었다”(21.5%), “자존감이 떨어졌다”(19.2%), “스트레스,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하였다”(17.0%)와 같이 여성혐오표현을 접한 후 여성들이 온라인 세상에서 위축되고 정서적으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온라인에서 여성혐오표현을 보거나 들었을 때 응답자 10명 중 8-9명(84.4%)은 “무시했다”고 답했다. 웬만하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옳지 않다고 생각하여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었다”(53.8%), “사이트 관리자에게 신고하였다”(38.3%), “반대한다는 내용을 올렸다”(30.2%) 등 응답자 10명 중 3명-5명은 적극적인 행동을 취한 것으로 나타나 혐오표현의 수준이 높은 경우 그에 맞는 행동을 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조사 참여자들은 오프라인 세상에서의 여성혐오 문제가 ‘심각하다’는데 89.5%가 동의했는데, 그보다 많은 93.2%가 온라인에서의 여성혐오 문제가 ‘심각하다’는데 동의했다. 오프라인 세상에서의 여성혐오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

다. 이와 함께 조사 참여자들은 ‘여성혐오는 우리 사회에 실제로 존재하는 현상’ 이라는데 89.7%가 동의했으며, ‘여성혐오는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구조적 문제’라는데 동의한 비율도 74.2%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볼 때, 여성혐오 현상에 대한 정책적이고 제도적인 대책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3)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표현의 문제점

온라인의 발전·확산은 수많은 이용자에게 기존 매체와 다른 다양한 형태의 편의와 혜택을 제공해 왔으나 온라인 공간의 확장으로 인한 역기능 또한 매우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온라인이 공론의 장으로서 주목받으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오히려 다양한 형태의 성희롱·성폭력 그리고 여성혐오표현 등 타인의 개인적 법익에 대한 침해행위가 급증하고 있으며, 발생률이나 피해 사례 등을 볼 때 매우 심각하지만, 오프라인과 달리 지금까지 소홀하게 다루어져 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며, 설문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온라인에서의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 문제를 오프라인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했지만,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간 차이가 크지 않으며, 둘 다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즉, 현재 우리 사회에서 진행 중인 주요 이슈 중 하나는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 문제라 할 수 있다. 서지현 검사의 미투(#Me too) 선언에 이어 H대 누드모델 불법촬영 사건, 유명 유튜버의 비공개 촬영회에서 합의 되지 않은 촬영에 성추행과 사진유출 사건, 그리고 걸그룹 멤버에 대한 비동의유포 성적촬영물 협박 등 성폭력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오프라인에서의 성폭력이 온라인 성폭력으로 연결 지어지는 만큼 온라인 성희롱·성폭력과 여성혐오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표현의 경험으로 인한 여성의 행위적 자제는 온라인에서의 의사표현을 망설이게 하여 온라인에 참여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로 인해 여성의 역할이나 의견은 고립/배제된다. 이는 소통의 장으로서의 온라인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피해를 본 여성의 행위적 자제는 남녀 간 의사소통을 어렵게 하며, 의사소통을 원만하게 해주는 공정하고 평등한 온라인의 역할을 훼손한다.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보다는 소극적인 대

처나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는 신고해도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과 자신이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 무시하거나 무대응보다는 적극적으로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적극적인 대처를 하거나, 공공기관이나 시민단체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지만, 경찰이나 공공기관, 시민단체 대한 불신과 정보의 부족,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약한 처벌이 원인으로 사법적 제재 강화, 전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 마련, 온라인 시민의식 형성을 위한 교육·가이드라인 마련, 음란물·스팸 등 플랫폼에서 의무적 사용 규제, 미디어의 지속적인 감시 보도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 온라인 성폭력은 처벌이 쉽지 않으며, 제재 기준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피해 정도를 계량화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유포자나 플랫폼 운영자가 가해자라는 인식은 매우 높았지만, 보기만 한 사람들에 대한 가해자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단순 시청·저장도 가해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는 온라인이라는 특성상 개인 및 집단에 의해 발생하는 일도 많으며, 직접촬영, 시청, 다운로드, 업로드, 댓글 등 무수한 가해자가 존재하며, 가해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또한 가해자가 성폭력임을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크기 때문에 가해자 인식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여성혐오표현은 포털사이트, 온라인 동영상서비스,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SNS 등에서 지속적,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표현이 다양화, 극화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여성혐오표현에 대한 인지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그것이 혐오표현인지 또는 문제가 되는 표현인지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 혐오표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이전에 자신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그 사실을 알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등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게 된다. 여성혐오표현이 온라인상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된다면 여성에 대한 특정한 속성과 차별, 멸시를 정당화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현재 온라인상에서의 여성혐오표현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하며,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2. 형법학자가 본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표현 규제 개선안

### 1) 온라인 성폭력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sup>98)</sup>

#### (1) 온라인 성폭력의 개념, 의의 및 성질

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한 온라인 성폭력은 따라서 법적 기준에 의할 때 심각한 인격침해, 권리침해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들로 한정 지을 필요가 존재한다. 특히 형사법적인 제재의 대상으로서 온라인 성폭력은 어떠한 행위가 거기 해당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더 엄격하고 한정적인 기준과 요건설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법학적(또는 형법적) 사고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며 국가와 정부의 권한행사(권력작용, 행정기관의 처분, 정부의 명령발포, 국회의 입법, 사법적 판단)의 한계인 헌법규범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헌법 제10조와 제37조 규정은 모든 행정, 입법, 사법이 구속되는 기준과 한계를 설정한다는 의미를 지녔고 동시에 국민(시민)의 기본권과 그리고 국가에 포함된 모든 행위주체(정부, 행정기관, 사적 주체)의 행위들이 모든 상황에서 서로 모순되거나 충돌될 수 있음을 상징하고 이를 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의 간섭이나 제재를 통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간섭은 더 엄격한 제한과 구속 하에 놓인다는 점(헌법 제12조, 제13조)을 도외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형사법적 견해에 의하면 형사법은 사회질서 및 권리보호(사회질서 유지, 법익보호)의 최후 수단이라는 원칙의 구속(한계)하에 놓여있다. 즉 권리침해나 사회질서의 혼란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형사법적 제재를 가동 또는 개입시키는 것은 안 된다는 구속이다. 이러한 한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를 통해서 심각한 법익침해라는 상황이 발생하는가의 판단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법익침해란 단순히 개인의 권리침해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법익이란 개념은 이미 현행 형법의 규정들에서 개별적인 처벌 규정들을 구분하는 기준이며, 입법자가 개별 처벌 규정들을 입법한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법익이란 개념의 의미는 “일정한 사회공동체 및 그 구성원들이 평화롭고 조화롭게 생활하며 유지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생활재 또는 기능적

---

98) 이근호 교수(한림대)의 자문 원고임.

복합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온라인 성폭력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단순히 일반적인 윤리기준(현대 페미니즘적 의미에서)의 위반이라는 점으로는 형사제재부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말해준다. 또한 그 성폭력의 침해 정도가 경미하다면 그것은 형사제재의 부과가 더 신중하게 이루어질 것을 요청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형사제재의 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온라인 성폭력은 구체적인 피해자(들)가 존재하며 그 피해정도가 심각하거나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것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설정하게 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온라인 성폭력 행위는 형사제재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다른 법적 제재나 사회적 제재의 대상으로 고려하여 대응 방안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기준에서 본다면 형사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온라인 성폭력 행위는 구체적인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성적 의미의 공격, 가해행위(성적 의미의 명예훼손, 모욕), 당사자의 동의 없는 신체사진 등의 게시, 전파, 열람 등 행위, 성범죄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게시, 전파, 열람 등 행위, 음란동영상의 게시, 전파, 열람행위, 미성년자의 음란동영상의 제작, 판매, 게시, 열람 및 소지 등 행위이며 이에서 파생되는 법률위반 행위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인적 위법행위 또는 범죄행위에서 벗어나는 온라인 성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사업자, 관리자 또는 게시자들의 감독 또는 관리책임에 속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위 사업자 및 감독자, 관리책임자는 위에 열거된 형사제재 대상 행위 유형들에 대한 게재, 전파, 열람 등 금지, 삭제, 폐쇄 및 권리·권한 박탈 등과 함께 기타 온라인 성폭력 행위들을 적극적으로 방지하며 그에 따른 피해 및 손해발생 등을 제거, 방지하고 그 피해자 등에 대한 손해 및 피해의 구제 등을 실시할 책임 등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형사법적 제재의 한계사례에 해당하는 또 다른 예는 특정인 또는 특정대상으로 한정하기 어려운 성차별적 혐오표현에 대한 범죄화 또는 형사제재의 부과라고 생각된다. 여성에 대한 혐오표현을 게시한 경우에 대해 형사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인터넷, SNS,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전기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여성에 대한 혐오표현을 전파, 발송, 게시하는 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헌법상의 평등원칙을 고려한다면 이에 상응하여 남성

에 대한 혐오표현을 처벌하는 방안도 강구하여야 한다. 더욱이 이에 더하여 특정한 집단, 기업, 인종, 연령 등에 대한 혐오표현을 규제해야만 할 필요성도 나타나게 된다. 이런 방법으로 규제의 영역을 넓히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문제와 함께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충돌 또는 상충의 문제도 같이 제기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도 형사제재 이외의 방안을 통해서 대응하거나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 (2) 온라인 성폭력에 대한 형사제재를 통한 대응 방안

### ① 온라인 성폭력행위에 대한 형법적 대응여부의 문제

현재 사회적으로 성 평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서 사회문화 전반에 퍼져있는 성차별적 행위들이 다시 한 번 사회적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전까지는 흔히 감내되거나 무시되어 온 성차별행위들을 형사법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직장 내외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이다. 이러한 성희롱은 정보통신망의 발달로 인해 온라인상으로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된다.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들은 형법상 강제추행이나 강간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위반죄들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형법상의 성폭력 범죄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행위의 보호법익은 대부분은 개인의 인격권에 대한 침해로서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로 이해하는 것이 통설이다. 그에 대해서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와 제14조의 구성요건은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고 보고 있다. 직장 내 성희롱을 형법적 문제로 다루게 되는 경우에 법원의 입장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대응 수단이 마련되어 있다. 이런 법제도적 대응에 대해서도 그 제재의 수준이 낮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동법 제13조와 제14조의 구성요건에 의할 때 그 처벌이 약하다는 기준은 현재의 입법상태에서 볼 때 그렇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대법원판결에 나타나듯이 우리 입법자도 위 규정들의 입법 목적이나 보호법익을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로 보기

보다는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보는 입장에 더 가까웠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정보통신망의 발달에 따른 위법행위의 형태들이 급속도로 변화하는 상황을 입법이 쫓아가지 못함으로써 범죄행위나 일탈 행위에 대한 처벌의 불비가 나타남으로써 초래된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다. 성폭력 등에 대한 법률들을 제정함에 있어 그 보호법익을 개인의 인격권이나 성적자기결정권으로 보는 것이 현대적인 흐름에 더 적합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그에 따라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다양한 법익침해행위들을 처벌할 수 있는 위법행위 유형들을 다양화하고 그에 다른 적절한 형사제재의 종류와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온라인 성폭력에 대한 제재가 상대적으로 약하며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형사제재 이외에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을 마련하는 방법도 해결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다른 한편 이런 비판의 이면에는 위 법률에 대한 대법원의 관점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대법원의 판결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판단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목적이나 보호법익을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고 있는데,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 보호라는 점보다는 특히 ‘개인인격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는 인식이 더 중요하게 부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대법원의 이런 시각과 결합하여 판단해볼 때 동법 제13조와 제14조의 규정만으로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온라인 성폭력에 대처하기는 힘들다고 생각된다. 현재 나타나는 개인인격권에 대한 다양한 침해들에 대응하기 위한 보다 다양한 구성요건들을 구체적인 법규로 입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개인인격권의 침해행위는 그 침해가 급속도로 나타나며 단기간에 광범위하게 확대되는 특징을 가진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면 형사사법기관에 의존하기보다는 정보통신망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을 가진 기관의 신속한 대응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인다. 법원은 일반적인 법률적 문제들을 다루기 때문에 정보통신망이 가진 특성이나 경제·문화적 중요성과 특수성을 판단하기에는 곤란함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관리·감독기관의 삭제·명령 등의 결정에 법관이나 법률가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법도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 ② 온라인 성폭력 행위 유형별 형법적 대응 방안

### 가. 디지털 이미지 성폭력에 대한 형사제재

비동의유포 성적촬영물을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성계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이미지를 업로드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sup>99)</sup> 이러한 행위는 온라인 성폭력 범죄들 가운데 그 불법성이 상당히 크고 중대한 행위라는 점에 많은 학자가 동의할 것이다. 음란물에 대해서는 형법상의 음란물 반포 등 죄를 통해서 처벌하는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그러한 영상을 제작, 상영, 전파, 유포하는 행위들을 처벌하고 있다. 즉 「성폭력범죄처벌등법」 제14조에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조 제1항). 그리고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비동의유포 성적촬영물은 일반적인 포르노그래피와 달리 피해자가 그러한 이미지 제작에 동의했었다는 점 등에서 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면 피해자가 직접 촬영한 경우에는 위 제14조의 영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위 규정의 처벌 대상 행위는 가해자가 촬영주체가 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제14조의 각 규정은 전혀 적용될 수 없게 된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이와 별도의 법규정을 통해서 범죄행위 유형으로 “사후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영상물을 보관, 배포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도록 분리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

99)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78722&PAGE\\_CD=N0002 &CMPT\\_CD=M0112](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78722&PAGE_CD=N0002 &CMPT_CD=M0112)

그리고 제14조 제1항 등에서 예시하고 있는 처벌 대상 행위가 피해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모든 유형의 행위들을 포함하지 못함으로써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즉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가 아니라 특정한 사람들만 보는 행위는 처벌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가해자가 위의 영상을 협박이나 강요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영리의 목적”이라는 요건이 결여되어 형법상의 협박죄나 강요죄로 처벌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제재수단이 없게 된다.

이런 규정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인터넷이나 SNS 등의 전기통신망에 올리는 행위도 규제하여야 한다. 또한 처벌되는 행위인 전시·상영행위의 ‘공공연히(공연성)’이라는 요건을 배제하거나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른바 디지털이미지이용 성폭력(비동의유포 성적촬영물)은 공공연히 성적인 내용을 확대 재생산하려는 일반적인 포르노와 달리 성적인 표현이 극단적이지 않다는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를 처벌하는 데 곤란함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제14조가 규정한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수준이 아닌 영상은 처벌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제14조의 영상 이외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이미지의 촬영, 배포, 전시, 상영 등도 형사제재대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수준이 아닌 영상의 경우에 당해 영상 또는 이미지를 인터넷 등 전기통신망 등에서 제거하라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요구가 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는 행위를 처벌하는 형식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위 법률 제14조에 의한 처벌에서 흠결이 발생하는 또 하나의 이유로는 위 법률의 목적을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인식하고 적용하려는 태도가 입법목적 내에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 또는 인격권침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하는 것이 제14조를 개정·강화하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형법적으로 규제될 온라인 성폭력으로는 이러한 디지털 이미지를 상영, 전파, 전시함으로써 이를 범죄적인 목적에 악용하는 행위이다.<sup>100)</sup> 아동성폭력범죄의

100)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10121668749657?did=ns&dtype=2&dtypecode=340>

시도로서 또는 상대방의 명예를 위협함으로써 부당한 목적을 성취하려는 목적으로 이를 아동·청소년이나 기타 피해자 등에게 상영·전시·전파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청소년이나 피해자들에게 잘못된 인식이나 의식을 전달하는 행위 등이 그것이다. 이런 행위 유형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함에도 현행 법률은 일반적인 음란물배포가 아닌 이런 디지털 이미지의 상영·전시·전파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처벌 규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당해 이미지 또는 영상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음란한 영상 또는 음란한 신체 이미지임을 인식하고도 이러한 영상 등을 아동·청소년에게 상영, 전시, 전파, 배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또한 “당해 이미지 또는 영상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음란한 영상 또는 음란한 신체 이미지임을 인식하고도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상영, 전시, 전파, 배포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전자의 경우 청소년 보호의 목적 및 성범죄 피해 예방의 목적이 있으므로 성폭력 범죄의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 나. 신중 온라인 이미지 성폭력행위에 대한 형법적 제재

정보통신망의 발달과 함께 컴퓨터 그래픽 기술의 발달은 기존의 형법 규정으로는 처벌하기 힘든 성폭력 행위들을 등장하게 만들고 있다. 심심치 않게 마스크를 통해서 접할 수 있는 행위들 등 대표적인 것이 연예인의 얼굴 등을 기존의 포르노그래피 등장인물과 합성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행위는 기존의 형법상 음란물배포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으나 위 법규정은 사회적 법익에 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일탈행위가 갖는 유해성을 정확하게 파악한 대응책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따라서 개인적 인격권 침해에 대한 형사제재로서는 형벌의 정도가 낮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와 제14조 규정으로 적절하게 대응하기도 힘든 것이 사실이다.

결국 이런 유형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와 제14조 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는 온라인 성폭력 행위라고 판단되며 따라서 입법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즉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 포함된 이미지 또는 영상에 특정인 또는 제3자로 인식할 수 있

는 이미지나 영상을 결합하여 정보통신망 등에 게시, 전파, 전시, 상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성요건으로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인인격권에 대한 침해가 동의에 위하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점 및 그 급속한 확산력으로 피해의 정도가 중대하므로 처벌의 정도가 가중될 필요가 있다.

#### 다. 성차별적 혐오표현

“미투”운동이 확산되면서 남성과 여성 간의 세력 대결과 같은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종래 여성에 대한 혐오표현이 온라인 성폭력의 대표적인 행태였던 것에 비해서 이제는 남성에 대한 혐오표현도 온라인상에서의 일탈행위로써 증가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성차별적 혐오표현은 그 표현 수단이나 혐오표현의 중대성이나 유해성의 정도에서 극단적인 표현들도 등장하고 있다. 특히 몇몇 온라인상의 극우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들을 통해서 극단적인 혐오표현의 등장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성차별적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그것이 특정 개인이나 단체 등을 피해 객체로 하는 경우에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제307조)나 모욕죄(제311조)의 적용을 통한 처벌이 가능하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성차별적 혐오표현을 함으로써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동규정은 사실 적시를 통해 이러한 행위를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거짓인 사실 적시를 통해 이러한 행위를 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률은 제74조에서 정보통신망에서 성차별적 혐오표현을 함으로써 동법 제44조의 7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에서 성차별적 혐오표현을 함으로써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률은 이 각각의 행위들을 한 자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차별적 혐오표현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

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이에 대해서 혐오표현의 대상이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은 일반적이고 불명확한 대상을 상대로 한 성차별적 혐오표현이 형사법적 제재의 대상이 되는가 여부는 특정 인종, 지역, 국가, 직역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와 그 결론을 같이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성차별적 혐오표현과 상기한 바의 대상에 대한 혐오표현이 그 범죄 성립이나 그 불법성에서 특별한 차이나 특성이 있다고 생각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혐오표현을 통해서 특정의 범익침해나 위태화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일반적인 형법적 원리에 따라 형사제재가 부과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범익침해나 범익위태화의 대상인 특정 범익의 소지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한정된 범위로의 특정이 곤란한 경우라면 형사제재의 대상으로 확정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된다. 즉 이때에는 형법의 최후수단으로써의 성격이 강조되어야 하며 형법적 투입은 다른 법적 대응 수단이나 사회적 대응 수단에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런 성차별적 혐오표현에 적절한 대응 수단은 방송통신망을 관리하는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행정기관을 통한 법제도적 대응이 형사법적 대응에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면 정보통신망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을 통해서 혐오표현적 말, 영상, 이미지 등 콘텐츠가 업로드된 인터넷망이나 SNS 등의 정보통신 사업자를 대상으로 그 관리감독의 책임을 부담시키는 방법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사업자의 관리·감독의 부실 여부를 규명하고 그 고의·과실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시키고 그에 따른 법률 효과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잠재적인 피해자 및 피해대상이 있을 경우를 예상하여 혐오표현을 정보통신망에서 제거·배제시킬 수 있는 즉각적이며 임시적인 대응 조치를 법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업자에게 일정한 극단적 혐오표현에 대한 자율적 배제 권한 및 조사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사회적 및 기업적 차원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법규정을 도입하는 것 등이다.

## 2) 온라인 성폭력 촬영물 규제강화방안<sup>101)</sup>

### (1) 성폭력 촬영물 유포행위에 대한 처벌강도

#### ①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규정

2012년 개정 전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 성폭력처벌법)상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만을 처벌하였으나,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를 감안하여, 죄책이나 비난 가능성이 촬영행위 못지않게 크다고 할 수 있는 촬영물의 시중 유포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도 촬영자와 동일하게 처벌하기 위해서 개정하였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문언 자체가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라고 함으로써 촬영행위와 반포 등 유통행위를 모두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 촬영물을 영리의 목적이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조를 적용할 수 있다.<sup>102)</sup>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

101) 이인영 교수(홍익대)의 자문 원고임.

10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 6의3.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

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70조 제1항).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74조 제1항 2호).

## ② 다른 법률상의 유포행위와의 법정형 비교

성폭력 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 형법과의 법정형 비교에서 성폭력 촬영물 유포행위의 법정형은 유사범죄의 법정형과 단순히 비교하면 경하게 처벌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영리의 목적의 경우에만 제3항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영리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며 영리의 목적이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그 파급효과나 피해자의 불이익 결과가 심히 중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영리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독일 형법<sup>103)</sup>이나 스위스 형법<sup>104)</sup>의 경우에도 타인을 권한 없이 타인의 사생

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103) 독일 형법 제201조a(사진촬영을 통한 초인격적 사생활영역의 침해) ① 주거 또는 엇봄으로부터 특별히 보호된 공간에 있는 타인을 권한 없이 사진촬영을 하거나 전송하고, 이로 인하여 초인격적 사생활영역을 침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제1항에 의해서 촬영된 사진을 사용하거나 제3자의 접근을 가능하게 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한다. ③ 주거 또는 엇봄으로부터 특별히 보호된 공간에 있는 타인을 권한 없이 촬영한 사진을 그 정을 알면서 제3자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초인격적 사생활영역을 침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이나 벌금형에 처한다.

104) 스위스 형법 제179quater조 타인의 비밀영역에 속하는 사실 또는 아무나 마음대로 접근할 수 없는 타인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사실을 그자의 승낙 없이 녹화장치를 사용하여 관찰하거나 또는 영상녹화 매체에 녹화한 자, 자신이 인지하게 된 사실이 제1문에 정한 가법적인 행위를 통하여 습득된 것이라는 정을 알고 있거나 또는 이를 가정하여야 하는 사실을 평가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알도록 한 자, 제1문에 정한 가법적인 행위를 통하여 제작된 것이라는 정을 알고 있거나 또는 이를 가정하여야 하는 녹화물을 보관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접근 가능하도록 한 자는 고소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에 처한다.

촬영역을 사진촬영하거나 전송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이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은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사실을 말하고 성폭력 촬영물에 국한하고 있지 않다.

### ③ 처벌강도 강화 제언

성폭력처벌법상의 법정형 적정성 판단에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유형과의 처벌의 강도를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보호법익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이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 판결). 판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나체나 속옷만 입은 상태가 되게 하여 스스로를 촬영하게 하거나,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거나 자위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들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들의 신체를 이용하여 그 성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서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한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7733 판결).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게 하는 것이므로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해 촬영을 하는 경우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상의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지만, 범죄의 성격과 보호법익의 침해 내용면에서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 유형으로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각각 3년 이상의 징역형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조의 경우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성폭력 촬영물 유포죄가 성적 자유와 초상권 권리보호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를 침해하는 범죄로 정의한다면 성적 자유를 침해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추행에 준하는 행위로서 그 처벌의 정도도 추행의 법정형에 준하여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 (2) 인터넷 유포행위와 이에 대한 제재

### ① 현행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촬영행위뿐만 아니라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를 감안하여, 죄책이나 비난 가능성이 촬영행위 못지않게 크다고 할 수 있는 촬영물의 유포행위를 한 자를 촬영자와 동일하게 처벌하기 위해서이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6172 판결).

성폭력 촬영물의 유포행위의 방식은 제14조 제1항과 2항의 경우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의 경우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경우 처벌하고 있다.

### ② 대법원의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컴퓨터로 재생한 후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 판례의 태도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이미지를 다시 촬영하거나 이를 편집 및 유포하는 행위는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보호법의 측면에서 촬영 행위와 크게 다르지 아니함에도 촬영이라는 법문을 좁게 해석함에 따라 법적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의 대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라고 보아야 함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위 규정의 처벌 대상은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직접’ 촬영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sup>105)</sup> 따

---

105)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1656 판결.

라서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 및 자의에 의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은 제14조 제1항의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1656 판결의 사실관계는 ①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1 기재의 64편의 동영상은 남성인 피고인이 마치 피고인이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전화 채팅프로그램을 통하여 피해자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그러한 자위행위 영상을 휴대전화의 화면을 계속적으로 캡처하여 이를 저장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저장한 동영상인 사실, ②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67 내지 84 기재의 18편의 동영상은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다운로드하여 소지하고 있던 동영상인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총 82편의 동영상은 각 동영상에 출연하는 피해자들이 피고인 또는 성명불상의 사람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스스로 촬영한 동영상을 피고인, 성명불상의 사람이 전송받아 이를 저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촬영' 또는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각 항의 위반으로 인한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촬영' 및 '촬영물'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은 무죄라는 취지의 판결이다.

판례는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한 촬영물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도3443 판결의 사실관계는 피고인이 갑과 성관계하면서 합의하여 촬영한 동영상 파일 중 일부 장면 등을 찍은 사진 3장을 지인 명의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갑의 처 을의 휴대전화로 발송함으로써, 촬영 당시 갑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갑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을에게 제공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컴퓨터로 재생한 후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더라도, 이는 갑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촬영물은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촬영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은 무죄라는 취지의 판결이다.

판례는 피고인이 수신된 정보가 영상으로 변환된 것을 휴대전화 내장 카메라를 통해 동영상 파일로 저장한 것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279 판결의 사실관계는 피고인이 피해자 갑(여, 14세)과 인터넷 화상채팅 등을 하면서 카메라 기능이 내재되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갑의 유방, 음부 등 신체 부위를 갑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고 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대법원은 피해자 갑이 스스로 자신의 신체 부위를 화상카메라에 비추었고 카메라 렌즈를 통과한 상의 정보가 디지털화되어 피고인의 컴퓨터에 전송되었으며, 피고인은 수신된 정보가 영상으로 변환된 것을 휴대전화 내장 카메라를 통해 동영상 파일로 저장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촬영한 대상은 갑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일 뿐 갑의 신체 그 자체는 아니라고 할 것이며,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도 위 규정의 '다른 사람의 신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은 무죄라는 취지의 판결이다.

### ③ 개선방안

#### 가. 재편집물, 재촬영물 등의 포함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컴퓨터로 재상한 후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경우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되지 않는 흠결이 있다.

그 해결방안으로 '촬영,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는 것' 이외에 '촬영한 이미지 및 영상을 편집하는 행위' 또는 '재촬영한 촬영물', '2차적 촬영물', '재촬영물'도 적용범위에 포함하자는 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불법으로 생성된 개인 정보의 편집행위나 편집물 반포 등 행위로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도 직접 촬영한 경우와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타인의 신체 촬영물을 재촬영한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는 경우도 신체촬영물과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점에서 동일하고 피해자가 받은 불이익도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제안 취지이다.<sup>106)</sup>

나. 제3자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 포함

촬영물을 공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제3자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도 유포행위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보통신망법상의 사이버음란물 유포죄에서 유포행위 유형을 링크를 거는 방법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초고속화하고 있는 인터넷의 사용환경에서 링크는 다른 문서나 웹페이지를 단순히 연결하여 주는 기능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링크된 웹페이지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이트 운영자의 행위자가 불특정 다수인이 이러한 링크를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음란한 부호 등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할 의도로 행위 하였다면, 음란한 영상이 위치하고 있는 웹사이트 주소를 전시하는 행위는 전체로 보아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하는 구성요건을 실질적으로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

판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음란한 부호 등이 공연히 전시되어 있는 다른 웹사이트를 링크의 수법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한 경우 사이버음란물죄의 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인정하였다.<sup>107)</sup>

106) ① 2017. 9.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 제9334호)의 내용은 “촬영,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으로 한정되어 있는 현행법 제14조의 행위 양태를 기술의 발전에 따른 편집가능성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몰래카메라 범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이다.② 2018. 10. 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제16019호)은 “제14조 제1항과 제3항 중 촬영물을 각각 촬영물(촬영물을 재촬영한 촬영물을 포함한다)로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③ 2018. 10. 1. 국회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 제15812호)에 의하면 “2차적 촬영물”의 개념을 도입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 촬영물을 촬영, 편집,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제작한 촬영물을 반포하는 행위도 처벌한다. ④ 2018. 9. 1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 법안 내용은 거울 등 다른 물체에 반사된 신체 이미지 또는 모니터 등에 표시되는 신체 이미지를 다시 촬영하여 이를 반포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카메라 등을 이용한 재촬영 및 반포 행위도 처벌한다.

107) 피고인이 1998. 5. 8.경부터 1998. 6. 23.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서비스업체인 아이뉴스(Inews)상에 개설한 인터넷 신문인 ‘팬티신문’에, 다른 공동피고인들이 개설하여 수십 개의 음란소설을 게재한 홈페이지에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링크사이트를 만들고, 이를 통해 위의 음란사진과 음란소설을 게재하고 있는 사이트에 바로 접속되도록 하여 위 ‘팬티신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이를 컴퓨터 화면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 및 문언을 공연히 전시하였다는 것이다. 인터넷 서비스 개설자인 피고인에게 음란물을 공연히 傳示한 행위의

위 사례에서 음란한 부호 등으로 링크를 해 놓는 행위자의 의사 내용, 그 행위자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성격 및 사용된 링크기술의 구체적인 방식, 음란한 부호 등이 담겨져 있는 다른 웹사이트의 성격 및 다른 웹사이트 등이 음란한 부호 등을 실제로 전시한 방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다른 웹사이트 운영자의 실행행위를 방조하는 정도를 넘어, 이미 음란한 부호 등이 불특정·다수인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다른 웹사이트를 링크의 수법으로 사실상 지배·이용함으로써 그 실질에 있어서 음란한 부호 등을 직접 전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되고, 이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이 이러한 링크를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음란한 부호 등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다면, 그러한 행위는 전체로 보아 음란한 부호 등을 공연히 전시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sup>108)</sup>

### (3) 정보통신제공자의 제재 강화

#### ① 유포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자신이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항의 위반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6172 판결의 사실관계는 피고인이 자신이 촬영하지 않은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 상영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 조항에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는 반드시 그 촬영물을 촬영한 자와 동일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행위의 대상이 되는 촬영물은 누가 촬영한 것인지 묻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조항에서 그 유통행위의 주체가 촬영자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신이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

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인정하였다(대법원 2003. 7. 8. 2001도1335 판결).

- 108) 동일한 취지의 판례로서 PC방 운영자가 자신의 PC방 컴퓨터의 바탕화면 중앙에 음란한 영상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바로 가기 아이콘을 설치하고 접속에 필요한 성인인증까지 미리 받아둠으로써, PC방을 이용하는 불특정·다수인이 아무런 제한 없이 위 웹사이트의 음란한 영상을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조성한 경우,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하는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8266 판결).

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항의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 ② 정보통신망제공자의 책임 강화

### 가. 민사책임

현재 정보통신서비스 운영자나 관리자의 관리부실로 인하여 여전히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음란물 게시 등의 불법행위가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가상공간에서 유통하는 불법정보를 저장하고 송신하는 문지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방치한 경우 이용자가 게시한 불법정보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제32조 제2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없으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하여 법률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제44조의 2 제6항).

판례는 전자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게재되었음에도 이를 삭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전자게시판 관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판례는 전기통신사업자가 피해자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조치 요구에 따라 그러한 글들이 공개게시판에 게재된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6개월가량이나 이를 삭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여 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였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전기통신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에게 전자게시판 관리의무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였다.<sup>109)</sup>

109)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다36801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37210 판결은 타인을 비방하고 중상 모략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며 불법적인 노조활동을 선동하거나 교사하는 등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과 건전한 미풍양속을 해할 염려가 많은 상스럽고 저질스러운 표현을 담고 있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그 전용게시판 서비스를

인터넷상의 홈페이지 운영자와 같은 정보통신서비스가 인터넷에 불법정보를 방치하였을 때 그 게시물을 삭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어야 하며, 다만, 제공자의 삭제 의무가 있는지는 게시의 목적, 내용, 게시 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 반론 또는 삭제 요구의 유무 등 게시에 관련한 쌍방의 대응태도, 당해 사이트의 성격 및 규모·영리 목적의 유무, 개방정도, 운영자가 게시물의 내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 삭제의 기술적·경제적 난이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sup>110)</sup> 판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단지 홈페이지 운영자가 불법게시물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운영자가 그 글을 즉시 삭제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sup>111)</sup>

#### 나. 영리목적의 범죄수익 몰수 추정 강화

정보통신서비스는 제공자는 손해배상의 책임뿐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상의 몰수 추정 규정을 적용한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에 의하면 적용대상 범죄로서 ‘특정범죄’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2호 및 6호의 죄가 포함된다. 특정범죄는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 중에서 별표에 규정된 죄를 말하는데 이를 중대범죄로 정의하고 있다.

영리목적으로 사이버 음란물을 유포하여 범죄수익을 얻은 경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몰수 및 추정규정을 적용하므로 별도로 몰수 추정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의 적용대상은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 등,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 등 그 적용범위가 넓게 인정되고 있다.

---

일시 중지시킨 컴퓨터 통신 사업자의 행위를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110) 대법원 2003. 6. 7. 선고 2002다72194 판결.

111) 2001다36801 판결은 영리 목적의 전자게시판에 관한 것인 반면, 2002다72194 판결은 비영리 목적의 전자게시판에 관한 것 이었는데, 전자의 경우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삭제요구를 받고도 이를 5~6개월간 방치하였던 반면, 후자의 경우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삭제요구를 받고 신속하게 대응하였던 점, 전자의 경우 운영자와 이용자 사이의 약관에 운영자에 의한 일방적인 삭제근거가 마련되어 있었던 반면, 후자의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였다는 점 등에서 차이가 존재함을 발견할 수 있고, 이러한 차이가 손해배상의 성립여부의 차이를 가져왔다.

다. 형사책임 : 삭제 조치 등의 불이행시 방조범의 죄책

통상적으로 웹사이트의 특성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관리 운영하는 사이트에 올라오는 정보에 대해서 매번 이를 모니터링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명예훼손 행위가 발생한 이후에 피해자나 다른 이용자들의 요청을 받은 후에 비로소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행위 비난의 중점은 정보통신망의 운영이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삭제, 정보처리의 제한 등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조치의무 불이행이 부작위범에서의 부작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작위의무의 발생근거를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피해자의 삭제 요청 시 필요한 조치의무(제44조의2 제2항)와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삭제 조치의무(제44조의2 제3항),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정보에 대한 정보처리 거부·정지 또는 제한명령에 대한 이행의무(제44조의7 제3항)를 직접적인 근거로 볼 수 있다.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의 정보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해당 정보 삭제요청을 받으면 지체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작위의무는 법률에 근거한 법적 의무인 것이다.

① 판례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운영직원이 필요한 조치의무를 하지 않고 방치한 것에 대해 조리상의 의무 위반으로 방조범의 죄책을 인정하였다.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내 오락채널 총괄팀장과 위 오락채널 내 만화사업의 운영 직원인 피고인들에게, 콘텐츠제공업체들이 게재하는 음란만화의 삭제를 요구할 조리상의 의무가 있다고 하여, 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 위반의 방조죄 성립을 인정하였다. 위 판례의 피고인들은 콘텐츠 제공업체들이 성인 만화방에 게재하는 만화 콘텐츠를 관리·감독할 권한과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음란만화들이 지속적으로 게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안 이상 이를 게재한 콘텐츠 제공업체에게 그 삭제를 요구할 조리상의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sup>112)</sup>

112) 인터넷 포털서비스 사이트의 담당 직원들인 피고인들은 사전에 콘텐츠 제공업체들과 협의의 함으로써 위 성인 만화방에 대체로 어떠한 내용의 콘텐츠가 게재될 것인가를 사전에 예상하였고 그 콘텐츠의 뷰잉(viewing)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등 게재의 편의를 적극적으로 도모하였으며, 사후에 콘텐츠의 실제 게재 여부 및 정상 서비스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만화 콘텐츠가 저장된 서버에 대한 시스템상 사용 및 보안권한 설정권을 보유하는 등 일반적 통제권한을 보유하여 콘텐츠의 내용을 실시간에 지속적으로 쉽게 검색·파악할 수 있었고, 이러한 것들이 피고인들의

②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전원합의체판결에서는 인터넷 종합정보사업자가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 삭제 및 차단요구를 받은 경우는 물론,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으로 요구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하게 드러나고 또한 기술적·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위 게시물의 삭제 등의 조치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즉,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피해자로부터 조치를 요구받지 않았더라도 불법성이 명백한 권리침해정보를 인식 내지 인식 가능성이 있으면 정보접근차단조치를 취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대법원의 전원합의체판결과 같이 피해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적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정보의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가 제공자가 정보전달과정에서 불법정보를 효과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문지기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을 수행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본다.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삭제요구는 없었으나 삭제를 희망하고 있음을 간접적인 경로를 통하여 충분히 알게 된 때에는 삭제요구가 있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삭제의무를 인정할 여지는 있을 것이다. 다만 비록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삭제요구는 없지만, 피해자가 명예훼손 게시물의 존재를 알았다더라면 삭제요구를 하였을 것으로 확실히 예상되는 때에는 삭제의무를 인정할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국가의 형벌권 행사 여부를 피해자의 처벌의사를 추정하거나 가정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피해자가 보호요청 등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하지 않고 있음에도 그에 앞서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적어도 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성이 명백한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난 때에는 피해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삭제 등의 조치의무가 있다고 볼 것이다.<sup>113)</sup>

---

주요 업무내용이었던 사실을 감안한다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음란만화들을 안이하게 생각하여 방치한 사실 등에서 조리상의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용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113) 불법정보의 게시물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여 모르고 있는, 즉 선의의 경우에는 어떠한 때에도 삭제·차단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의 반대의견에 의하면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삭제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의 삭제요구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할 것

그러나 웹사이트 운영자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용자에 의한 법익침해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이 없거나 현실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없거나 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라면 부작위범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개별적 행위가능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조치의무 이행의 기술적 가능성과 관련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기능적 측면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sup>114)</sup>

### 3.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표현 개선안

#### 1) 입법 개선안<sup>115)</sup>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성과 관련한 공격적 행동이나 표현에 해당하는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표현의 피해의 발생빈도나 피해 정도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은 아주 미비하다. 현행법 중에서도 성폭력 처벌법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입법 개선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대한 처벌 강화

대법원의 판결 성향을 보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입법목적이나 보호법익에 대해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보다는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보는 입장에 더 가까웠다. 하지만 정보통신망의 발달에 따른 위법행위의 형태들이 급속도로 변화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그 보호법익을 개인의 인격권이나 성적자기결정권으로 보는 것이 현대적인 흐름에 더 적합

인데, 이러한 삭제요구의 방식은 원칙적으로 ‘구체적·개별적으로 특정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다.

114)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도1435 판결은 비록 온라인서비스이용자들이 해당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복제·전송함으로써 그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그와 같은 침해사실을 알고 저작권의 침해가 되는 복제·전송을 선별하여 이를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다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판시하였다. 즉, 삭제의 기술적·경제적 난이도를 고려하여 해당 온라인서비스에서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를 하였다고 판단된다면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115) 일부 내용은 이건호 교수(한림대)와 이인영 교수(홍익대)의 자문에 기초하였음.

하다. 이에 독일 형법이나 스위스 형법에서 타인을 권한 없이 타인의 사생활영역을 사진촬영하거나 전송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참고하여,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다양한 법익침해행위들을 처벌할 수 있는 위법행위 유형들을 다양화하고 그에 다른 적절한 형사제재의 종류와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① 카메라 등 이용촬영물의 촬영 및 반포 등 행위에 대한 법정형 상향

성폭력처벌법상의 법정형 적정성 판단에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유형과의 처벌의 강도를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보호법익을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합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로 해석하고 있다. 즉 성적자기결정권과 초상권과 같은 권리를 보호하는 법익이다. 의사에 반한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반포 등의 행위는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하는 강제추행죄와 범죄의 성격과 보호법익의 침해 내용 면에서 어느 정도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유형으로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성폭력처벌법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 성폭력 촬영물의 촬영 및 유포죄를 성적 자유와 초상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정의한다면, 성적 자유를 침해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추행에 준하는 행위로서 그 처벌의 정도도 추행의 법정형에 준하여 규정하는 방안도 있다. 하지만 그보다는 처벌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벌금형을 없애고 아예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것으로 입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 ② 촬영행위와 유포행위 처벌의 차별화 및 재유포행위 처벌 강화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입법 취지에 대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촬영물의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행위가 피해자에게 주는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고려할 때, 촬영물의 유포행위도 죄책이나 비난 가능성이 촬영행위 못지않게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유포행위에 대해서도 촬영행위와 동일한 처벌을 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신속하고도 광범위한 확산력을 가진 온라인 공간의 특성으로 인해 촬영물 유포로 인한 피해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유포행위에 대한 처벌의 강도를 더 높이는 방식으로 촬영행위와 유포행위의 처벌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입법 개선안으로 현행 성폭력처벌법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이와 별도의 법 규정을 통해서 사후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영상물을 반포, 판매, 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히 전시 상영하는 행위 등을 가중처벌하도록 분리하여 규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개인 인격권의 침해행위는 그 침해가 급속도로 나타나며 단기간에 광범위하게 확대되는 특징을 가진다. 그러므로 카메라 등 이용촬영물의 재유포행위에 대해서는 1차 유포행위보다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 ③ 촬영행위와 반포 등 행위의 결합범에 가중처벌하는 입법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입법 취지를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자와 유포한 자의 행위의 성질상 죄책이나 비난 가능성에서 큰 차이가 없으므로 각각의 행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즉 의사에 반한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처벌할 수 있는 행위유형을 열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유포행위의 주체가 촬영물을 촬영한 자와 동일인이 아니어도 된다는 의미이며, 촬영한 자가 촬영물을 유포하는 경우처럼 양 행위의 결합을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이 양 행위의 결합범에 대해서는 양형에서 검토하여 참작할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촬영자가 촬영한 이후 유포행위를 하여 그 죄책과 비난 가능성에 따라 가중처벌의 필요성이 있다면, 입법 개선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에 촬영행위와 반포 등 행위의 결합범을 가중처벌하기 위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촬영물을 촬영한 자가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가중처벌 조항을 추가하는 입법 개정을 제안해본다.

## (2) 다양한 유형의 촬영물로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적용범위 확대

성폭력처벌법상의 불법 촬영과 유포의 객체를 타인의 신체에서 자신의 신체, 신체 이미지로 확대하고, 촬영물을 가공하거나 합성한 행위도 포섭할 수 있는 입

법개선이 요구된다. 현행 카메라 등 이용촬영에 관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처벌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직접'촬영하는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다. 대법원도 동 조항에 대해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의 촬영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입법해석을 하고 있다. 이처럼 불법촬영 및 불법유포의 객체를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불법촬영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다양한 형태의 촬영물을 포섭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예를 들면 SNS에서 유포되는 지인 디지털 합성사진이나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의 재촬영물 등이 성적자기결정권이나 초상권을 침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컴퓨터로 재생한 후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경우에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제1항의 처벌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직접'촬영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컴퓨터로 재생한 후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경우,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자의에 의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및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에 대한 촬영물과 이에 대한 편집 및 유포행위가 제1항의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다른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이미지를 다시 촬영하거나 이를 편집 및 유포하는 행위는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보호법의 측면에서 촬영행위와 크게 다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촬영이라는 법문을 좁게 해석함에 따라 법적 공백이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촬영의 주체가 본인이 되어 자신의 신체를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 신체를 직접 촬영하지 않고 촬영대상이 이미지인 촬영물, 그리고 가공이나 합성에 의한 영상물의 촬영과 유포도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요구된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3조와 제14조의 규정만으로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성폭력에 대처하기는 힘들다.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다양한 법익침해행위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고 그에 따른 적절한 형사제재의 종류와 정도를 결정해야 한다. 개인 인격권에 대한 다양한 침해들에

대응하기 위한 보다 다양한 구성요건들을 구체적인 법규로 입법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① 재촬영물, 재편집물 등을 처벌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현행 법률 및 판례에 의하면, 촬영자 신체를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 촬영의 대상이 이미지인 촬영물, 가공이나 합성에 의한 영상물과 이를 유포하는 행위가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같은 유형의 촬영물도 다른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과 피해의 정도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성폭력처벌법상 구성요건에서 불법촬영의 행위객체 및 불법유포행위 객체의 행위태양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촬영자 신체를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을 촬영자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이 배포, 전시, 상영하는 행위를 형사제재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다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수준이 아닌 영상의 경우, 당해 영상 또는 이미지를 인터넷 등 전기통신망 등에서 제거하라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요구가 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는 행위를 처벌하는 형식으로 규정할 수 있다. 둘째, 다른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 촬영물을 재촬영, 편집,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제작한 소위 2차적 촬영물이나 재편집물의 제작과 유포를 처벌하는 규정이 요구된다.

현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촬영,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는 것’이외에 ‘촬영한 이미지 및 영상을 편집하는 행위’ 또는 ‘2차적 촬영물, 재촬영물, 재편집물’도 적용범위에 포함하자는 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sup>116)</sup> 불법으로 생성된 개인정보의 편집행위나 편집물 반포 등

116) ① 2017. 9.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대표발의, 제9334호)의 내용은 “촬영,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으로 한정되어 있는 현행법 제14조의 행위양태를 기술의 발전에 따른 편집가능성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몰래카메라 범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이다.  
 ② 2018. 10. 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대표발의, 제16019호)은 “제14조 제1항과 제3항 중 촬영물을 각각 촬영물(촬영물을 재촬영한 촬영물을 포함한다)로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③ 2018. 10. 1. 국회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 제15812호)에 의하면 “2차적 촬영물”의 개념을 도입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 촬영물을 촬영, 편집,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제작한 촬영물을 반포하는 행위도 처벌한다.  
 ④ 2018. 9. 1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박재호의원 대

행위로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도 직접 촬영한 경우와 거의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 타인의 신체 촬영물을 재촬영한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는 경우도 신체 촬영물과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며 피해자가 받은 불이익도 다를 바 없다.

## ② 성표현물과 타인의 얼굴 이미지의 디지털 합성사진 처벌방안

일반인의 얼굴을 알몸 사진과 합성한 신종 디지털 성폭력은 새로운 형태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일 뿐 아니라 초상권침해에도 해당한다. 하지만 이것은 현행 성폭력처벌법 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는 온라인 성폭력 행위로서, 입법 대책이 요구된다. 즉“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 포함된 이미지 또는 영상에 타인의 동일성을 판단할 수 있는 영상을 결합하여 정보통신망 등에 게시, 전파, 전시, 상영하는 행위”를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으로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 (3) 정보통신망 이용한 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유포의 처벌 강화

### ① 영리 목적의 유포행위로 인한 재산적 이익 회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성폭력 촬영물의 유포로 인한 피해의 정도는 확산속도와 광범위성이라는 매체의 특성상 매우 심각하다. 이처럼 타인에 대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타인에 대한 성폭력 촬영물의 유포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를 규제하기 위해, 디지털 성폭력 촬영물 등 유포행위라는 범죄행위로 얻는 수익과 수단들을 몰수 또는 추징하는 형벌 규정을 신설하거나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법 개정이 요구된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 유포죄에 대한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따라서 법정형을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거나 유포행위로 인해 얻는 경제적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하는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

표발의)의 법안 내용은 거울 등 다른 물체에 반사된 신체 이미지 또는 모니터 등에 표시되는 신체 이미지를 다시 촬영하여 이를 반포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카메라 등을 이용한 재촬영 및 반포행위도 처벌한다.

## ② 비영리 목적의 유포행위 처벌조항 신설

영리 목적에 국한하여 정보통신망 이용 불법 촬영물의 유포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비영리 목적의 정보통신망 이용 유포행위를 포섭할 수 있는 입법이 요구된다. 즉 영리 목적에 상관없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법 촬영물이 유포될 경우, 피해효과의 광범위성과 피해정도를 고려할 때 그 파급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비영리 목적의 유포행위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법정형도 징역형으로 하는 입법 개선이 요구된다.

## ③ 제3자의 접근 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유포행위에 포함하는 방안

카메라 등 이용촬영물을 공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제3자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 예를 들면 링크와 같은 행위도 촬영물의 유포행위에 포함하는 입법 개정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sup>117)</sup>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음란한 부호 등이 공연히 전시되어 있는 다른 웹사이트를 링크의 수법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한 경우 사이버음란물죄의 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인정하였다. 위 사례에서 음란한 부호 등으로 링크를 해놓는 행위자의 의사 내용, 그 행위자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성격 및 사용된 링크기술의 구체적인 방식, 음란한 부호 등이 담겨 있는 다른 웹사이트의 성격 및 다른 웹사이트 등이 음란한 부호 등을 실제로 전시한 방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다른 웹사이트 운영자의 실행행위를 방조하는 정도를 넘어, 이미 음란한 부호 등이 불특정·다수인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있는 다른 웹사이트를 링크의 수법으로 사실상 지배·이용함으로써 그 실질에 있어서 음란한 부호 등을 직접 전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되고, 이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이 이러한 링크를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음란한 부호 등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다면, 그러한 행위는 전체로 보아 음란한 부호 등을 공연히 전시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117)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도1335 판결.

#### (4) 성희롱 개념의 법적 정의의 범위확대

성희롱의 법적 개념은 주로 업무, 고용 등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에 한정되어 정의되고 있다. 이와 같은 법적 정의는 그 밖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을 포섭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지닌다. 따라서 인권위법과 양성평등기본법의 정의조항에서 업무, 고용 등의 관계 이외의 '그 밖의 관계에서'가 어떤 관계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지에 관한 법적 해석이 필요하며, 이를 포함하는 성희롱 개념을 정의할 수 있는 입법 개선이 요구된다.

#### (5) 온라인상의 여성혐오표현으로 인한 피해구제수단

온라인상의 여성혐오표현을 규제하는 별도의 입법은 없다. 여성혐오표현이 여성 개인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에 해당할 경우 모욕죄로, 여성 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표현인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온라인상에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여성이란 집단에 대한 혐오표현은 형사적 처벌이 어렵다. 다만 여성혐오표현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될 경우 피해가 상당히 중대하고 행위의 해악성이 중대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 감독관리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 등이 피해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피해 및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포함하는 민사상 구제수단이나 행정법적 구제수단을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상의 여성혐오표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망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가진 기관의 신속한 대응수단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 규제가 적절하다고 보인다. 법원은 일반적인 법률적 문제들을 다루기 때문에 정보통신망이 가진 특성이나 경제·문화적 중요성과 특수성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관리 감독기관의 삭제 명령 등의 결정에 법관이나 법률가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2) 정책 및 제도 개선안

다음은 본 연구가 실시한 사이트 사례분석, 피해 및 피해구제실태, 여성 인식조사, 판례 및 통신심의 사례분석,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도출해본 정책 및 제도 개선안이다.

## (1) 온라인 여성혐오표현 규제안 마련

성차별적 혐오표현에 적절한 대응 수단은 방송통신망을 관리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의 행정기관을 통한 법제도적 대응이 형사법적 대응에 우선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보통신망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을 통해서 혐오표현적 말, 영상, 이미지 등 콘텐츠가 업로드된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게 그 관리감독의 책임을 부담시키는 방법이 적절하다. 해당 사업자의 관리·감독의 부실 여부를 규명하고, 그 고의·과실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시키며 그에 따른 법률효과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잠재적인 피해자 및 피해대상이 있을 경우를 예상하여 혐오표현을 정보통신망에서 제거·배제시킬 수 있는 즉각적이며 임시적인 대응조치를 법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정보통신망사업자에게 일정한 극단적 혐오표현에 대한 자율적 배제 권한 및 조사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사회적 및 기업적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법률 또는 규정을 도입하는 것 등이다.

##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책무 강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와 관련한 책무 강화는 두 가지로 제시될 수 있다. 하나는 기존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다. 인터뷰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통신심의와 관련해서 이미 가지고 있는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우선, 온라인 성희롱과 여성혐오표현에 대해 해당 기관(직장·학교·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이 자율규제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증오 선동과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에 대한 직접 규제를 실시해야 한다. 또 현재 개발된 특정 동영상 인식 필터링 기술(DNA 필터링, Hash 필터링 등)만이라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적극 활용하여, 온라인 성폭력 동영상에 대한 삭제 명령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성폭력 담론이 팽배한 사이트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다 신속하고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피해신고 접수 절차를 최대한 간단하게 하고, 접수가 이루어지면 피해내용에 대한 접근을 바로 차단함으로써 피해속도와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포르노 영상이 이슈가 되면

신속하고 강력한 차단조치를 취하면서 온라인 성폭력과 여성혐오표현 관련 사이트에 대해서는 적극적 개입을 부담스러워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었다.

두 번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새롭게 마련해야 할 대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우선, 전문가들은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표현 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표현 관련 상담과 심의 및 수사 현장에서는 여전히 개념과 적용이 애매한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새롭게 생산되는 표현들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사건의 중요한 단서가 되는 표현 자체를 간과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따라서 모니터링하며 발견된 사례들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해 놓고, 심의 및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의 구축하여 관련 담당 부서와 직원들이 공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온라인 성폭력의 경우 삭제를 해도 교묘한 기술 변환을 통해 재업로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규제 기관은 ‘삭제’를 목적으로만 하지 말고, 무엇을 언제 삭제했는지 기록해, 유사 내용을 재업로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강력한 이중 처벌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현재 온라인 성폭행 피해자가 의존할 수밖에 없는 고비용의 사설 디지털 장의사 서비스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주도적으로 구축, 관리하여, 사업자의 자율규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경우에 강력한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제 근거로 사용하여야 한다.

### (3)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자율 규제와 책무 강화

사이트 사례분석, 설문조사 결과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볼 때,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자율규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먼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이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 이미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는 사업자들도 있으나,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의 다양한 유형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동영상, 성행위 동영상, 타인의 얼굴과 노출된 신체의 합성 사진, 음란한 글·사진·영상 전송 행위 등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의 모든 유형을 포함하여 자율 규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상시 감시 및 규제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규제시스템이 적극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점이다. 조사 결과, 5명 중 1명은

서비스센터에 신고했지만, 어떠한 조치나 처벌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난 것에서 당위성을 재확인할 수 있다.<sup>118)</sup>

또 특정 단어나 음란물, 스팸 등을 차단하는 기술을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sup>119)</sup> 이에 대해서는 정부나 규제기관에서 차단 기술 개발을 지원하거나 개발된 시스템을 제공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자율 규제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고, 위반 시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자율 규제의 내용에는 기사나 콘텐츠에 달린 게시글(댓글)도 포함되어야 한다. 게시글 분석을 통해, 피해의 책임을 피해 여성에게 돌리거나 오히려 가해자로 몰아가는 명예훼손, 모욕적인 댓글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댓글들은 종종 여성비하로 연결되기도 한다. 물론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비난하는 언어폭력을 처벌할 수는 없으나 해당 사건의 피해자를 특정 하는 경우 좀 더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은 다양한 이유를 대며 댓글을 소홀히 관리해 왔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근거와 이유도 없이 피해 여성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 여성혐오표현 등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 (4) 피해자 신속 지원 및 연계시스템의 구축

온라인 성폭력 피해가 접수되어도 즉각적인 대응(수색, 구속, 디지털 포렌식 등)이 이뤄지지 않다보니, 온라인 피해가 더 커지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온라인 성희롱과 성폭력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한 여성들 대부분은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했을 때 즉각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회적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sup>120)</sup> 또 조사 결과, 온라인 성희롱·

118) 설문조사 결과,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을 당해 해당 서비스 신고센터에 신고했지만 (201명), 피해를 준 상대방이 ‘어떠한 조치나 처벌도 받지 않았다’는 응답이 22.4%, ‘처벌을 받았다(게시글 삭제, 서비스 이용 차단, 사이트 폐쇄 등)’가 15.9%,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61.7%로 나타났다.

119)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조사 참여자의 88.3%가 특정 단어나 음란물, 스팸 등을 차단하는 기술을 포털 등 플랫폼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제해야 한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120) 조사 참여자 10명 중 9명(89.2%)은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성폭력을 직간접으로 경험한 여성들은 매우 위축되는 경향<sup>121)</sup>을 보였으며, 자책하거나 자살하고 싶다는 비율도 10명 중 1명 내지 2명으로 나타나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속한 지원 시스템은 온라인 성희롱과 성폭력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온라인상의 전송물들을 삭제하는 서비스부터 법적 대응을 지원해주는 일은 물론,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자유로운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까지를 의미한다.

또한, 피해자를 지원해주는 기관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관련 공공기관과의 연계는 물론, 전문성을 갖춘 시민단체와의 연계 시스템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 문제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 유형별로 관련 기관 간의 연계를 통하여 전문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관련 기관들과의 연계 시스템은 전문성이 강화된 서비스를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좀 더 체계적인 수사와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 성폭력은 피해자가 사실을 증명해야하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수사기관의 젠더 감수성이 낮아 수사 과정 중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 말과 행동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2차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따라서 성폭력 사건을 전담으로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며, 수사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젠더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수사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5) 사회적 인식 전환 방안 마련

설문조사 참여 여성의 과반수 이상은 동의 없이 유포된 타인의 온라인 동영상이나 사진을 본 사람도 가해자라고 보았다. 시청 행위만으로 법적 처벌을 하는 일은 쉽지 않겠지만, 그러한 행위가 잘못된 것이며 누군가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

---

방안으로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했을 때 즉각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회적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응답을 했다.

121) 온라인 성희롱과 성폭력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뒤 여성들은 ‘화가 났다’(49.3%) ‘불안하고 우울했다’(41.5%), ‘온라인 공간에 접속하는 것이 두려워졌다’(28.2%), ‘사람들이 무서워서 밖에 나가는 게 두려워졌다’(15.7%) 등

는 행위라는 인식은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정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 여성들이 과거와 달리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의 문제를 피해자 책임 프레임에서 벗어나 사회적 범죄행위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경험 후 정서적으로 불안해하며 위축되는 모습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게다가 여전히 사회 전체적으로는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이 ‘피해자의 책임’, ‘여성의 그럴만한 행동’, ‘과민 반응하는 여성이 문제’와 같이 잘못된 고정관념이 아직도 재생산되고 있다. 그러한 고정관념은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들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 온라인에서 성희롱·성폭력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 조사에 참여한 여성들은 ‘성 평등 인식이 약한 우리 사회의 문제’와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분위기’,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낮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사회 전반적으로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분위기를 전환시키고, 성평등의식을 확산할 수 있는 좀 더 체계적인 방안들이 실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상의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표현은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다양화되고 있다. 이는 직접적 행위보다 언어적 행위에 관대한 사회적 인식 때문에 더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 여성정책의 핵심은 성 평등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1월 제49회 국무회의에서 특히 ‘공공기관들부터 인식 전환과 더욱 엄정한 조치들이 필요하다’며 성폭력 근절을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정부는 오프라인에서의 심각성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의 심각성도 강하게 인지하여 온라인 특성에 맞는 정책적 수단 마련을 서두르고, 더불어 사회적 인식 전환을 통하여 온라인상에서 상호존중 문화를 성립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 (6)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다각화된 교육·홍보방안 마련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사에 참여한 여성들 대다수는 온라인 시민의식 형성을 위한 교육이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실제로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의 직간접 경험자 10명 중 2-3명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는 점과 대처 방법을 잘 몰라서라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여성들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온라인 성폭력과 성희롱 피

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교육하고 홍보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시켜준다.<sup>122)</sup>

이와 함께 몰래 카메라 등으로 찍은 타인의 동영상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보는 사람들에게도 자신이 재미 삼아 보는 동영상이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바꾸고 싶을 정도의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해 줄 수 있는 교육과 홍보방안이 장구되어야 할 것이다.

즉, 기존에 오프라인에서의 성 평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상의 양성평등을 위한 교육을 직장, 학교 등에서 의무화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여성혐오표현은 성 평등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하게 교육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교사 양성 및 교사 연수 프로그램에서 핵심 과목으로 운영함으로써 초·중·고등학생에서부터 인식을 전환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 개인이나 집단에 따른 적합한 교육내용을 선정하여 개인별, 집단별 이해를 도모하는 맞춤형 교육 등도 진행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 성폭력 교육안의 전면 검토가 필요하다. 학생들은 온라인에서 왜곡된 성의식에 쉽게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젠더 차별적 시각과 표현이 그대로 남아 있는 성폭력 교육안을 현실적 문제와 인식이 반영된 성교육 교재로의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며 적대적·온정적 성차별을 벗어난 균형과 조화에 기초한 프로그램을 신속히 만들어 내야 한다.

## (7)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체계화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조사에 참여한 여성 과반수는 온라인에서 자기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여성 스스로가 자기 정

---

122)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의 직간접 경험자 10명 중 2-3명(147명)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와 이들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가 ‘신고할 해도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31.3%), ‘대처 방법을 잘 몰라서’(24.5%), ‘신고나 처벌 절차가 번거로워서’(17.0%), ‘다른 사람이 알게 될까봐 걱정되어서’(6.1%) ‘상대방의 보복이 두려워서’(4.8%)였다.

보를 관리해야한다는 데 동의했다. 또 온라인에서 성희롱과 성폭력을 경험한 여성들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만 친구로 추가하고 신뢰할 수 없거나 의심이 되는 특정 계정을 차단했으며, SNS 계정의 공개설정 범위를 확인하고 재설정했다. 이와 같이 자기 정보를 관리하는 행동은 지금과 같은 미디어 환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갖추어야 할 미디어 리터러시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어릴 때부터 실시해서 자기 정보 관리의 중요성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이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중요한 역량 중 하나는 미디어를 이용하는 ‘책임과 권리’이다. 자신이 올린 글이나 사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항상 조심스럽게 온라인 매체를 이용하는 책임의식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함양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성폭력과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크다는 점, 온라인의 확산속도와 타인의 반응은 피해자에게 이중 삼중으로 피해를 미친다는 점, 온라인에서의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상상도 못할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을 깨닫고 온라인을 책임 있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나가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여성혐오표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으로,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국민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화하여 실천해야 할 것이다.

### (8) 올바른 보도를 위한 언론 및 미디어의 노력 및 관심 증대

온라인 성희롱과 성폭력 및 여성혐오는 명백히 성차별을 기반으로 하는 폭력으로 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해자의 잘못이라는 프레임이 존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잘못된 프레임을 재생산하고 강화하는 데 언론이 일조해왔음을 부인하기 힘들다.

예를 들어, 비동의유포 성적촬영물의 경우 피해자의 사례를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독자나 시청자들조차도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갖게 하는 보도들이 많았다. 비동의유포 성적촬영물의 유출과 확산의 경로를 밝히기는 하지만 관련자들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고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보도하지 않았다. 피해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보도가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변화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비동의유포

성적촬영물 사건의 개요를 선정적으로 보도할 뿐, 문제의 해결 방안에 초점을 맞추는 보도를 찾아보기 힘들다.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어쩔 수 없다, 애초에 찍거나 찍히지 말아야 한다, 유출하고 퍼뜨린 사람은 중형에 처해야 한다, 심지어 찍는 것에 동의한 여성도 문제가 있다 등등의 본말이 전도된 문제인식과 단편적인 해결 방안만을 보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양진호 회장의 위디스크 사례에서 보듯, 비동의유포 성적촬영물의 유포 이면에는 단순 이용자들의 호기심이나 성 인권 의식의 결여뿐만 아니라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포르노산업이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사건이 터지기 이전에 이런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추적하고 폭로한 언론보도는 소수에 불과하다.

실제, 이번 조사에 참여한 여성들은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여성혐오표현 관련 보도들이 여성의 시각을 반영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공정하게 보도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선정적으로 보도하고 있다는데 대부분 동의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볼 때 언론이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여성혐오표현 문제를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언론인의 의식에는 영미식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에 대한 관념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혐오발언을 어느 정도 선까지 용인하고 어떤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배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이 뚜렷하지 않다. 혐오발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책임 또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인식에 비례해서 발전해야 한다. 그래야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또한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다. 혐오발언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차원에서만 다루는 것은 부족하다. 헌법이나 법률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겠지만, 최소한 언론 실천의 차원에서 혐오발언을 배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올바른 보도를 위해 우선 보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공유하고 이를 체화해야 할 것이다. 또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여성혐오표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언론이 할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언론은 이 문제에 있어 비교적 자유롭고, 따라서 앞서 나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언론의 사회적 역할이기도 하다. 언론이 각종 혐오발언을 경쟁적으로 중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수준에서 배제하고 비판적으로 보도하는 준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17년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행하는 미디어이슈(2권 7호)에서 성인 남녀 1,03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여성혐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

안 5개를 제시하고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를 선택하게 한 결과, 신문이나 방송 등 대중매체에서 여성혐오를 부추길 수 있는 표현이나 보도를 했을 때 징계조치를 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온라인의 성희롱과 성폭력, 여성혐오로 인해 극단적인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언론이 이를 흥밋거리로 다루면서 갈등을 더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인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피해 사례를 소개하면서 오히려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주거나 사안의 본질을 제대로 읽지 못하면서 갈등을 조장하는 언론들에 대해 자율 규제나 공적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3)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제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먼저, 너무 광범위한 연구 범위를 갖고 진행했다는 점이 이 연구의 가장 큰 한계점이다. 온라인 성희롱·여성혐오표현이 넓은 의미에서 온라인 성폭력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온라인 성희롱·성폭력과 여성혐오표현은 분리하여, 실태 및 대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이란 개념 자체가 법적·학술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고, 우리 사회 구성원들 간에 폭넓게라도 동의할 만한 개념이 정착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연구 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향후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의 개념과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본 연구는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여성혐오표현의 전반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사이트 사례분석, 설문조사, 판례 및 통신심의 사례분석, 피해자 및 전문가 심층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는 부분에는 기여했지만, 다소 짧은 연구 기간 동안 폭넓은 연구문제를 다양한 방법론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개별 사안별로 심도 깊은 분석을 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온라인 성폭력과 여성혐오표현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개별 연구들을 좀 더 깊이 있게 파고들 필요가 있다.

특히 온라인 성폭력의 많은 부분이 불법 동영상 유포와 관련이 있음에도 불법 동영상 분석을 포함하지 못했다는 점은 가장 아쉬운 부분이다. 공식적인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사생활보호의 문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공개된 대표적인 심의사례만을 분석하는데 그쳤다.

보다 실질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불법 동영상의 유통되고 있는 웹하드에 대해서는 집중 분석을 실시해야하며, 불법 동영상이기 때문에 사법권을 가진 기관이 직접 진행해야할 필요가 있다.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한다면, 우선 온라인 사이트에 대한 광범위한 양적 실태분석이 필요하다. 양적 실태분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서 생각해볼 수 있다. 먼저, 포털, 페이스북, 유튜브 등 많은 이용자가 이용하는 사이트에 대한 양적 실태분석을 실시해야할 것이다. 다음으로, 불법 동영상이 유포되는 웹하드 등을 대상으로 양적 실태분석을 실시해야한다. 이것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법권을 가진 기관이 실시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실태와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설문조사가 필요하다. 10대부터 전 연령대의 남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실태는 물론 온라인 성폭력과 여성혐오표현에 대한 인식을 파악해서 향후 대책 마련과 교육·홍보 등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한다.

셋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책무 강화를 위해 통신심의규정이 현재의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여성혐오표현의 현황을 반영할 수 있는 심의규정인지에 대한 분석과 통신심의 절차와 제재과정, 제재 효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여전히 전 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대중매체인 텔레비전에서 방송하는 뉴스·드라마·오락·토크 프로그램 등에서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여성혐오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일정기간 모니터링해서 방송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밝혀내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여성혐오표현의 문제는 인권의 문제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여성혐오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재생산, 강화하는 현상을 근절하여,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서 대중매체에 대한 분석과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끝으로, 온라인의 성희롱, 성폭력, 여성혐오 현상은 매우 심각한 상태이며,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대안 마련이 없다면, 앞으로도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여성혐오표현에 대한 대안을 찾기 위해 인터뷰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다양한 공적 영역에서 논의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따라서 큰 일이 생기면 언론이 대서특필하고 전문가들이 모여 급하게 해법을 내놓는 일을 반복하기 보다는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시

적인 위원회를 만들어, 심도 있는 논의와 대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도출할 필요가 있다. 또 온라인 성희롱·성폭력과 여성혐오표현의 문제는 정파적 차원에서 혹은 진보/보수의 차원에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문제는 기본적인 인권의 침해라는 관점에서 다뤄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동욱 (2009).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고찰. <비교법연구>, 9(2), 33-61.
- 고혜리·양은경 (2017). 남성 아이돌 그룹의 여성혐오 논란과 여성 팬덤의 분열. <한국 콘텐츠학회논문지>, 17(8), 506-519.
- 구자준 (2017). 전략적 여성혐오 서사의 등장과 그 의미-웹툰 <뷰티풀 군바리>를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23(3), 245-276.
- 국가인권위원회 (2012). <성희롱 진정 사건 백서>.
- 국가인권위원회 (2015).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시정권고 사례집 제7집>.
- 김보화·김신아·서승희·김여진·이효린 (2017). <사이버성폭력 피해 지원을 위한 안내서>. 서울특별시.
- 김수아·이예슬 (2017). 온라인 커뮤니티와 남성-약자 서사 구축. <한국여성학>, 33(3), 67-107.
- 김수아·허다운 (2014). <온라인상의 여성 혐오 표현 모니터링 보고서>. 서울: 한국여성단체연합.
- 김수아 (2015). 온라인상의 여성 혐오 표현. <페미니즘 연구>, 15(2), 279-317.
- 김태한 (2013. 8. 7). 영국, ‘악플’ 피해자 자살 잇따라 ‘술렁’.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30807188400085>.
- 김현아·김숙희·김영미·장운정·서승희 (2018).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지원 방안 연구>. 서울: 국회여성가족위원회.
- 김현아 (2016).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실태 및 판례분석. 온라인 성폭력 실태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심포지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의 판례분석을 통한 성폭력 처벌법 개정 등>, 한국여성변호사회, 13-70.
- 김혜숙·이선아·허은영 (2016). <대학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 구제 강화를 위한 방안>. 세종: 교육부.
- 김효인 (2017). SNS 해시태그를 통해 본 여성들의 저항 실천. <미디어, 젠더 & 문화>, 32(4), 5-70.
- 박길자 (2017. 3. 15). 리벤지 포르노, 사이버 스토킹... 디지털 폭력에 떠는 세계 여성들. <여성신문>, <http://www.womennews.co.kr/news/112563>.
- 박미숙·추지현 (2017). <혐오표현의 실태와 대응방안>.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선영·윤덕경·박복순·김정혜·장민선 (2011). <성희롱 관련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세종: 한국법제연구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7). <제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백서>.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1). <2011년 방송통신심의사례집>.
- 범유경, 이병호, 이예슬 (2017). <오버워치>, 그리고 다른 목소리-게임 <오버워치> 내 여성 게이머에 대한 폭력적 발화 분석. <공익과 인권>, 17, 283-337.
- 서승희 (2017). 사이버성폭력 피해의 특성과 근절을 위한 대응방안. <이화젠더법학>, 9(3), 59-95.
- 오영근 (2008). <형사특별법 정비방안(6)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윤상민 (2017). 일본의 '리벤지 포르노방지법'의 내용과 우리나라의 대처 현황 및 그 시사점. <법학연구>, 68, 199-222.
- 윤정숙·박미숙 (2016). <성희롱 실태분석과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윤정숙 (2012). <아동음란물과 성범죄의 상관관계 연구>. 과천: 법무부.
- 이나영·배은경·김교성·원민경·구미영·성정숙 (2015). <2015년 성희롱 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이미나 (2018. 2. 14). 방심위, 디지털 성범죄 접수 즉시 '차단', 긴급 심의제 운영...심의 기간 단축 계획. <PD저널>,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61611>.
- 이미정·이인선·김기현 (2014). <성폭력피해자 가족개입 및 지원방안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미정·장미혜·이인선·이아름·최경숙 (2014).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기능강화 방안>. 서울: 여성가족부.
- 이미정·이인선·김기현 (2013). <성폭력피해자 사례분석을 통한 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상경 (2015).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반사회적 혐오표현의 규제. <헌법학연구>, 21(4), 197-239.
- 이성호 (2005). 사이버스토킹의 개념과 법적 규제. <저스티스>, 5-37.
- 이수연·김현정·정수연 (2016). 텍스트마이닝 기반 토픽 분석을 통한 온라인 성차별성의 이해.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33(3), 159-199.
- 이수연 (2015). 온라인 여성인권 피해의 개념과 현황. <젠더리뷰>, 38, 4-13.
- 이수연·정수연·김수아·나운주 (2015). <온라인 성차별성 모니터링 및 모니터링 도구 개발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수연·이혜림·김수아·김하얀 (2014). <여성의 온라인 인권피해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승현 (2017). 해외 인권위원회의 혐오표현 대응정책 소개와 시사점. <언론과 법>, 16(2), 1-34.
- 이승현·강지현·이원상 (2015).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영철·김소정 (2011).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인터넷과 성의 영향. <사회복지연구>, 42(2), 155-177.
- 이정진 (2013. 8. 14). 영국 ‘사이버 폭력’ 심각...악플때문에 자살도. <연합뉴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422&979aid=0000022>.
- 전정운 (2018. 5. 28). 처음부터 끝까지 ‘홍대 몰카범 수사’는 달랐다. <한겨레21>,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5393.html](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5393.html).
- 정 완 (2006). <사이버공간상 인권침해범죄에 대한 법제도적 통제방안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정인경 (2016). 포스트페미니즘 시대 인터넷 여성혐오. <페미니즘 연구>, 16(1), 185-219.
- 정진수·정완·김은경 (2000). <신종 성폭력 연구: 사이버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정한라 (2013). 국내외 사이버폭력 사례 및 각국의 대응방안. <Internet & Security Focus>, 10월호, 31-47.
- 정현미·장명선·한지영·이희진·이영희·박윤진·김명숙 (2015). <성희롱 2차 피해 실태 및 구제강화를 위한 연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정훈진·박광섭 (2013). 성폭력범죄 관련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 24(2), 381-419.
- 조계원 (2017). 한국에서 증오범죄의 가능성과 규제 방안. <법과 사회>, 55(0), 65-97.
- 조소영·김중철 (2016). <인터넷에서의 혐오표현(Hate Speech) 규제개선방안 연구>. 서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조주은·최진웅 (2018).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책의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 추지현 (2017). <대항발화의 조건과 한계: 온라인상의 여성혐오를 중심으로>, 한국인권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문.
-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올림 (2017). <반성폭력 이슈리포트 11호>.
- 홍성수·김정혜·노진석·류민희·이승현·이주영·조승미 (2016).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홍주현·나은경 (2016). 온라인 혐오표현의 확산 네트워크 분석: 이슈 속성별 확산 패턴 및 혐오표현의 유형과 강도. <한국언론학보>, 60(5), 145-175.
- 황정임 (2017). <2016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서울: 여성가족부.
- 황정임·박선영·윤덕경·장명선·동제연 (2017). <초중고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실태 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황정임·주재선·정수연·권인숙·윤수경 (2015). <2016년도 군 성폭력 실태조사 사전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 황정임·윤덕경·이미정·김영란·주재선·김동식·이인선·정수연·김현정 (2013). <2013년 성폭력 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해외문헌>

- Banks, J. (2010). Regulating hate speech online. *International Review of Law, Computers & Technology*, 24(3), 233-239.
- Bluett-Boyd, N., Fileborn, B., Quadara, A., & Moore, A. D. (2013). The role of emerging communication technologies in experiences of sexual violence: A new legal frontier?. *Journal of the Home Economics Institute of Australia*, 20(2), 25.
- Citron, D. K. (2014) *Hate crimes in cyberspac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Dodge, A. (2016). Digitizing rape culture: Online sexual violence and the power of the digital photograph. *Crime, media, culture*, 12(1), 65-82.
- Fairbairn, J. (2015). Rape threats and revenge porn: Defining sexual violence in the digital age. *eGirls, eCitizens*, 229-252.
- Gagliardone, I., Gal, D., Alves, T., & Martinez, G. (2015). *Countering online hate speech*. UNESCO Publishing.
- Hardaker, C., & McGlashan, M. (2016). "Real men don't hate women": Twitter rape threats and group identity. *Journal of Pragmatics*, 91, 80-93.
- Stavros Assimakopoulos, Fabienne H. Baider, Sharon Millar (2017) *Online Hate Speech in the European Union: A Discourse-Analytic Perspective*. ebook. SpringerOpen.
- Thompson, L. (2018). "I can be your Tinder nightmare": Harassment and misogyny in the online sexual marketplace. *Feminism & Psychology*, 28(1), 69-89.

<사이트>

<http://bbs.ruliweb.com>

<https://bit.ly/2B4Hfr1>

<https://bit.ly/2NJ4lVS>

<https://www.dcinside.com>

<https://www.dogdrip.net>

<http://www.ilbe.com>

<https://www.similarweb.com>





## 부 록



##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 실태조사

안녕하세요?

본 조사는 온라인에서의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 실태를 파악하여, 방지 대책 및 방안 그리고 정책 수립을 목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한국방송학회에서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모든 질문에는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므로 평소 선생님께서 알고 계시는 대로, 느끼시는 대로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설문 도중에 과거 경험을 기억하면서 심리적인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설문 중간에 언제라도 그만둘 수 있습니다. 설문을 중단 하면, 결과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본 조사에 수집되는 개인 정보는 나이, 학력 등이며, 연구진은 각 설문의 응답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응답해주신 모든 내용과 결과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조사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0월

- ▣ 연락처      **주관기관** : 한국방송학회  
                  **조사기관** : 코리아리서치

※ 이 조사에 참여결정은 선생님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 참여할 수 있으며,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어떠한 불이익이 없습니다. 설문조사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위 내용을 모두 읽고 이해하였으며, 조사에 참여하겠습니다.

※ 모든 문항에 대해 최근 1년 동안 온라인에서 경험하신 것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SQ3-2. 선생님께서는 **지난 1주일 동안** 인터넷 (포털사이트, 커뮤니티, SNS, 메신저, 게임, 이메일 등의 이용 시간 모두 포함)으로 뉴스를 **하루 평균** 어느 정도 보셨습니까?

하루 평균 이용 시간

\_\_\_\_\_시간 \_\_\_\_\_분

SQ3-3. 선생님께서는 **지난 1주일 동안** 언론사(종이신문, 텔레비전 뉴스, 인터넷 뉴스)에서 제공하는 뉴스를 **하루 평균** 어느 정도 보셨습니까?

하루 평균 이용 시간

\_\_\_\_\_시간 \_\_\_\_\_분

문1. 선생님께서는 다음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오프라인 세상보다 온라인 세상에서 여성의 자율성이 존중된다	①	②	③	④	⑤
2. 오프라인 세상보다 온라인 세상에서 양성평등의식이 정착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오프라인 세상보다 온라인 세상에서 남녀 간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4. 오프라인 세상보다 온라인 세상에서 성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	①	②	③	④	⑤
5. 오프라인 세상보다 온라인 세상이 더 권위적인 분위기이다	①	②	③	④	⑤
6. 오프라인 세상보다 온라인 세상에서 여성이 고립/배제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2. **지난 1년 동안** 온라인에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선생님 본인이 직접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각 항목별로 선택해 주십시오.

	경험한 적이 없다	드물게 경험했다	가끔 경험했다	자주 경험했다	항상 경험했다
1. 온라인에서 나의 외모를 대상으로 한 불쾌한 메시지(메일, 댓글, 카톡 등)를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온라인에서 성적인 욕설이 담긴 메시지(메일, 댓글, 카톡 등)를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온라인에서 원치 않는 음란물(글, 영상, 음향파일 등)을 전송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온라인에서 원치 않는 성적 대화(채팅)를 요구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온라인에서 사적 만남을 강요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온라인에서 특정 신체 부위 노출을 요구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온라인에서 특정 신체 사진을 보내라는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온라인에서 내 사진이나 영상이 무단 유포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온라인에서 나의 성적 행위가 찍힌 사진이나 영상이 무단 유포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온라인에서 성관계 제안을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온라인에서 성매매(조건만남) 제안을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2-1. 선생님 본인이 직접 경험하신 성희롱·성폭력의 가해자는 누구입니까?

구분	그렇다	아니다
1. 연인(전 연인 또는 현재 연인)	①	②
2. 가족(배우자, 남매 등)	①	②
3. 직장상사나 동료	①	②
4. 친구(선후배 포함)	①	②
5. 일회성으로 만난 상대	①	②
6. 오프라인에서 만난 적은 없고 온라인에서 지속적으로 연결된 사람	①	②
7. 온라인에서 처음 만난 사람(전혀 모르는 사람)	①	②

문3. **지난 1년 동안** 온라인에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선생님이 직접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각 항목별로 선택해 주십시오.

	목격한 적이 없다	드물게 목격했다	가끔 목격했다	자주 목격했다	항상 목격했다
1. 온라인에서 외모를 대상으로 한 불쾌한 메시지(메일, 댓글, 카톡 등)를 목격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온라인에서 성적인 욕설이 담긴 메시지(메일, 댓글, 카톡 등)를 목격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온라인에서 원치 않는 음란물(글, 영상, 음향파일 등)을 목격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온라인에서 성적 대화(채팅)를 목격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온라인에서 시적 만남을 강요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온라인에서 특정 신체 부위 노출을 목격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온라인에서 특정 신체 사진을 보내라는 메시지(메일, 댓글, 카톡 등)를 목격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의 사진이나 영상이 무단 유포된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의 성적 행위가 찍힌 사진이나 영상이 무단 유포된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온라인에서 성관계 제안을 목격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온라인에서 성매매(조건만남) 제안을 목격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4. 선생님께서 직접 경험하시거나 목격하셨을 때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각 항목별로 선택해 주십시오.

	없다	있다
1. 상대방에게 항의하고 사과를 요구했다	①	②
2. 여성가족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상담·접수했다	①	②
3. 시민단체에 도움을 요청했다	①	②
4. 사설업체에 문의하거나 영상물 등의 삭제를 의뢰했다	①	②
5. 해당 서비스(사이트, 어플)의 아이디를 새로 만들거나 아예 한동안 이용하지 않았다	①	②
6. 해당 서비스(사이트, 어플)에서 완전히 탈퇴했다	①	②
7. 해당 서비스(사이트, 어플) 신고센터에 신고했다 ⇨ ②번 응답 문4-7-1로	①	②
8. 경찰(온라인 사이버 수사대 포함)에 신고했다 ⇨ ②번 응답 문4-8-1로	①	②
9.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 ⇨ ②번 응답 문4-9-1로	①	②

문4-7-1. 해당 서비스 신고센터에 신고를 하셨다면, 피해를 준 상대방은 처벌을 받았습니까?

- ① 처벌을 받았다(계시글 삭제, 서비스 이용 차단, 사이트 폐쇄 등)  
☞ 문4-8로
- ② 어떠한 조치나 처벌도 받지 않았다 ☞ 문4-8로
- ③ 잘 모르겠다 ☞ 문4-8로

문4-8-1. 경찰에 신고를 하셨다면, 피해를 준 상대방은 처벌을 받았습니까?

- ① 처벌 받았다 ☞ 문4-9로
- ②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 문4-8-2로
- ③ 잘 모르겠다 ☞ 문4-9로

문4-8-2. 피해를 준 상대방이 처벌을 받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상대방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어서 ☞ 문4-9로
- ②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해서 ☞ 문4-9로
- ③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는 관련 법이 없어서 ☞ 문4-9로
- ④ 잘 모르겠다 ☞ 문4-9로

문4-9-1.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 ② 대처 방법을 잘 몰라서
- ③ 도움 받을 곳이 없어서
- ④ 신고나 처벌 절차가 번거로워서
- ⑤ 상대방의 보복이 두려워서
- ⑥ 다른 사람이 알게 될까봐 걱정되어서
- ⑦ 신고를 해도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 ⑧ 기타(직접작성: )

문5. 온라인에서 선생님이 성희롱·성폭력을 직접 경험하시거나 목격하신 후 다음과 같은 감정이나 생각이 들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하찮게 느껴지고 내 잘못이라고 자책했다	①	②	③	④	⑤
2. 불안하고 우울했다	①	②	③	④	⑤
3. 화가 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①	②	③	④	⑤
4. 자살·자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①	②	③	④	⑤
5. 온라인 공간에 접속하는 것이 두려워졌다	①	②	③	④	⑤
6. 사람들이 무서워서 밖에 나가는 게 두려워졌다	①	②	③	④	⑤

문6. 현재 우리사회 오프라인에서의 성희롱·성폭력 정도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심각하지 않다
- ② 별로 심각하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다소 심각하다
- ⑤ 매우 심각하다

문7. 현재 온라인에서의 성희롱·성폭력 정도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심각하지 않다
- ② 별로 심각하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다소 심각하다
- ⑤ 매우 심각하다

문8. 선생님께서는 다음의 행위가 온라인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항목 별로 선택해 주십시오.

	전혀 성폭력 아님	별로 성폭력 아님	반반 이다	다소 심한 성폭력	매우 심한 성폭력
1. 온라인에서 음담패설이나 성적인 언사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	①	②	③	④	⑤
2. 상대방이 싫어할 줄 알면서도 온라인으로 음란물(글, 영상, 음향파일)을 보내는 행위	①	②	③	④	⑤
3. 여성 또는 남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하는 행위	①	②	③	④	⑤
4. 인터넷 개인방송(아프리카TV, 유튜브 등)에서 여성BJ에게 선정적인 질문을 계속하는 행위	①	②	③	④	⑤
5. 특정인 또는 불특정다수에게 성적인 글이나 사진, 영상물을 전송하는 행위	①	②	③	④	⑤
6. 온라인을 이용하여 특정인에게 원치 않는 접근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행위	①	②	③	④	⑤
7. 누군가의 얼굴사진에 신체가 노출된 타인의 사진을 합성하거나 조작하여 온라인에 유포하는 행위	①	②	③	④	⑤
8.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동영상을 온라인에 유통시키는 행위	①	②	③	④	⑤
9. 성행위 동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①	②	③	④	⑤
10. 동의하에 촬영한 성적인 촬영물을 동의 없이 온라인에 유포하는 행위	①	②	③	④	⑤

문9. 다음의 행위자가 온라인 성폭력 가해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각 항목별로 선택해 주십시오.

	가해자가 아니다	가해자이다
1. 사진이나 동영상의 최초 유포자	①	②
2. 해당 동영상이나 사진을 본 사람	①	②
3. 해당 동영상을 본 후에 유포 시킨 사람	①	②
4. 해당 사진이나 동영상이 유통되는 플랫폼 운영자	①	②

문10. 선생님께서는 다음 진술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온라인에 유포된 여성사진은 그 사진(영상)을 찍은 여성의 잘못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온라인에서 성희롱·성폭력을 당한 여성은 그럴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3. 온라인에서의 성적 농담에 과민 반응하는 여성에게 문제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사건발생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피해자의 책임도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는 가해자보다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문11. 선생님께서는 온라인을 이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감정이나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 개인적인 정보가 온라인에 유포될까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2.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SNS에 방문해 내 일상을 엿보거나 감시할까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에 대한 유언비어나 일방적인 비난이 온라인에 유포될까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4. 내 사진에 음란한 이미지가 합성되어 온라인에 유포될까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5. 온라인에서 성적인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받을까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6. 온라인에서 나의 외모나 신체를 대상으로 한 불쾌한 메시지를 받을까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7. 온라인에서 원치 않는 음란물(글, 영상 및 음향파일)을 받을까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8. 내 신체 일부가 찍힌 사진이나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될까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9. 나의 성적 행위가 찍힌 사진이나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될까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문12. 선생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다	드물게 그런 적이 있다	가끔 그런 적이 있다	자주 그런 적이 있다	항상 그런 적이 있다
1. 온라인에서 나에 대한 신상정보가 검색되는지 확인했다	①	②	③	④	⑤
2. 내 사진이 잘못 사용될까봐 SNS 계정의 공개설정 범위를 확인하고 재설정했다	①	②	③	④	⑤
3. 온라인에서 누군가 나를 엿보거나 감시할까봐 내 일상에 관한 게시물을 올리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⑤
4. 온라인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만 친구로 추가하고, 신뢰할 수 없거나 의심이 되는 특정 계정을 차단했다	①	②	③	④	⑤
5. 원치 않는 메시지나 동영상 받은 온라인상의 아이디나 이메일을 삭제 또는 변경했다	①	②	③	④	⑤
6. 온라인에 유포된 내 사진이나 영상을 본 사람이 있을까봐 외출을 자제했다	①	②	③	④	⑤
7. 비난이나 차별을 당할까봐 여성이라는 것을 온라인에서 밝히지 않거나 아예 활동하던 온라인 공간을 떠났다	①	②	③	④	⑤
8. 여성이라는 이유로 범죄 피해를 당하거나 여성혐오자들의 공격을 받을까봐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글을 쓰기 어려웠다	①	②	③	④	⑤
9. 여성혐오표현을 보게 될까봐 SNS를 자주 사용하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⑤

문13. 선생님께서는 온라인에서 성희롱·성폭력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분위기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2. 성평등 인식이 약하기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3. 여성의 신체 노출 사진이나 영상이 온라인에 공유되기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4. 여성이 자신의 사진이나 영상을 무심코 업로드하기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5.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에 여성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기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6.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낮기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7.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문14. 선생님께서는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해결을 위한 다음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온라인에서 자기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여성 스스로가 조심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여성 스스로가 피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여성들이 연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미디어가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을 감시하는 보도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온라인 시민의식 형성을 위한 교육이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사법적 제재가 강화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했을 때 즉각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회적 시스템(상담, 수사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8. 특정 단어나 음란물, 스팸 등을 차단하는 기술을 포털 등 플랫폼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제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15. 선생님께서는 온라인에서 여성에 대한 혐오표현을 보거나 들은 경험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 ① 보거나 들은 적이 없다 ⇨ 문16으로 이동      ② 드물게 경험했다 ⇨ 문15-1로 이동  
 ③ 가끔 경험했다 ⇨ 문15-1로 이동              ④ 자주 경험했다 ⇨ 문15-1로 이동  
 ⑤ 항상 경험했다 ⇨ 문15-1로 이동

문15-1. 온라인에서 여성혐오표현을 보거나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별 느낌이 없었다	①	②	③	④	⑤
2. 재미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3. 거북하고 불편했다	①	②	③	④	⑤
4. 모욕적이었다	①	②	③	④	⑤
5. 공감되는 말이었다	①	②	③	④	⑤
6. 문제가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했다	①	②	③	④	⑤

문15-2. 온라인에서 여성혐오표현을 보거나 들었을 때, 다음의 행위를 한 적이 있습니까?

구분	없다	있다
1. 재미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었다	①	②
2.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여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었다	①	②
3. 옳지 않다고 생각하여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었다	①	②
4. 동의한다는 내용을 올렸다	①	②
5. 무시하였다	①	②
6. 반대한다는 내용을 올렸다	①	②
7. 사이트 관리자에게 신고하였다	①	②
8. 경찰,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공공기관에 신고하였다	①	②

문15-3. 온라인에서 여성혐오표현을 보거나 들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그곳에 다시 방문하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⑤
2. 경험한 상황과 비슷한 상황을 피하려고 노력했다	①	②	③	④	⑤
3.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글을 쓰기 어려워졌다	①	②	③	④	⑤
4. 자존감이 떨어졌다	①	②	③	④	⑤
5. 스트레스,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6. 일상생활에서 불안을 느끼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문16. 선생님께서는 다음 표현이 여성혐오표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하는 것을 선택해 주십시오. 무슨 뜻인지 모르시면 모른다는에 응답해 주세요.

구분	여성혐오 표현이 아니다	여성혐오 표현이다	모른다
1. 메갈년	①	②	③
2. 메콩광	①	②	③
3. 메택지	①	②	③
4. 자박꿈	①	②	③
5. 보름내	①	②	③
6. 꼴페미	①	②	③
7. 김치년	①	②	③
8. 보험	①	②	③
9. 보적보	①	②	③
10. 골뱅이	①	②	③

문17. 현재 우리사회 오프라인에서의 여성혐오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심각하지 않다
- ② 별로 심각하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다소 심각하다
- ⑤ 매우 심각하다

문18. 현재 온라인에서의 여성혐오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심각하지 않다
- ② 별로 심각하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다소 심각하다
- ⑤ 매우 심각하다

문19. 선생님께서는 여성혐오와 관련된 다음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여성혐오는 우리사회에 실제로 존재하는 현상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여성혐오는 사회 전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일부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의 문제이다	①	②	③	④	⑤
3. 여성혐오는 사회현상을 반영하기보다는 일부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전략적으로 만들어낸 용어이다	①	②	③	④	⑤
4. 여성혐오는 별 실체가 없는 허상을 미디어가 확대·재생산하고 있는 현상이다	①	②	③	④	⑤
5. 여성혐오는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구조적 문제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20. 선생님께서는 언론(신문, 방송뉴스, 인터넷 뉴스 등)과 관련된 다음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언론은 여성의 시각을 반영하여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보도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언론은 여성의 시각을 반영하여 온라인상의 여성혐오 문제를 보도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언론은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선정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언론은 온라인상의 여성혐오 문제를 선정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언론은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공정하게 보도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언론은 온라인상의 여성혐오 문제를 공정하게 보도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 응답자 배경 질문

끝으로 선생님의 인적사항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통계적인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 안심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문1. 선생님께서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 ① 고등학교 졸업 이하
- ② 대학교 재학 중
- ③ 대학교 졸업
- ④ 대학원 재학 이상

배문2. 선생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① 농축수산/광업
- ② 자영/판매업(음식점 주인/종업원 4인 이하 상점 주인)
- ③ 서비스직(미용사, 이발사, 조리사, 음식점, 다방/카페 종사자, 도우미 등)
- ④ 노무직(단순노무직, 생산, 구두미화원, 퀵서비스)
- ⑤ 기능직(운전기사, 목수, 자동차정비공, 유리/인쇄/금속 관련 종사자, 생산직 근로자 등)
- ⑥ 사무직(일반사무원, 영업사원, 기술관리직, 비서, IT관련 종사자, 6급 이하 공무원 등)
- ⑦ 전문직(교수, 의사, 약사, 변호사, 판/검사, 회계/세무사, 종교/언론/예술 관련 종사자 등)
- ⑧ 기술전문직(컴퓨터전문가, 기술연구원, 이공계전문가, 건축가, 기사 이상 자격소지자 등)
- ⑨ 경영관리직(5인 이상 사업장 경영자, 5급 이상 공무원, 대기업 과장 이상 관리자 등)
- ⑩ 전업주부
- ⑪ 학생
- ⑫ 무직/퇴직
- ⑬ 기타(직접작성: )

배문3. 선생님의 혼인상태는 어떠하십니까?

- ① 결혼
- ② 미혼
- ③ 기타

배문4. 선생님께서는 자녀가 있습니까?

- ① 자녀 없음
- ② 자녀 있음

♣ 이상으로 모든 설문이 끝났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해주신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 실태조사

| 인쇄일 | 2018년 11월 26일  
| 발행일 | 2018년 11월 26일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 주 소 | 044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저동 1가)  
나라키움 저동빌딩  
<http://www.humanrights.go.kr>  
| 전 화 | 성차별시정팀 02)2125-9953  
| F A X | 02)2125-0926  
| 제 작 | 도서출판 한학문화 (02) 313-7593 (代)

ISBN: 978-89-6114-658-6 93330 비매품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저동 1가) 나라키움 저동빌딩 차별시정국 성차별시정팀  
TEL.02-2125-9953 FAX.02-2125-0926 [www.humanrights.go.kr](http://www.humanrights.go.kr)

ISBN 978-89-6114-658-6 93330 비매품